



소청결정사례집

Appeals Commission, Government of Korea



제50집 | 2013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

발 간 사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난 1963년 소청심사위원회가 설립된 이래 매년 심사하여 결정한 소청사건 중 주요 사례들을 선정하여 소청결정사례집을 발간해 온 지 올해로 50회째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 간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징계 등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고 구제를 요청하는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함으로써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0년 이후에 매년 약 1,000여 건 내외의 소청사건을 처리해 왔습니다. 이렇게 소청 건수가 증가하게 된 데에는 징계시효의 연장, 상훈감경 제한, 징계부가금 신설 등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강화 추세에 기인합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권리구제에 대한 인식의 확산으로 징계처분뿐 아니라 경고, 전보 및 호봉 재획정 거부 등의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도 증가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권익 보장이라는 소청제도의 목적과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청심사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위원회는 민간전문가를 비상임 위원으로 확보하여 공직 외부의 시각을 반영하는 등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소청당사자에게도 충분한 소명을 위한 진술기회 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심사에 있어서는 금품·향응수수, 성폭력·성매수 등 공직자의 청렴의무를 위반하거나 파렴치한 비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국민의 편익을 우선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푸는 방향으로 심사하여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소청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공무원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올바른 인식 함양에 도움이 되고, 행정기관 징계양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서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문화를 바탕으로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자신의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14. 6.

안 전 행 정 부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김 상 인

일 러 두 기

- 이 사례집에 수록된 소청결정례 90건은 2013년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한 967건 중에서 참고가 될 만한 것을 유형별로 선별한 것입니다.
- 사건 배열은 크게 제1편 징계 처분, 제2편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제3편 형식 요건으로 나누고, 이를 비위유형에 따라 세분하였습니다.
- 사건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각 결정례별로 요지를 앞부분에 실었고, 제목과 처분종류 및 결정내용을 모두 게재하여 참고하기에 편하도록 하였습니다.
- 부록으로 소청심사위원회의 연혁, 관계법령 및 최근 5년간 소청심사 통계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 이 결정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 행정과☎ 02)3668-6743, 6748 FAX 02)3668-6767)로 연락해 주시면 성실히 안내하겠습니다.
- 소청에 관한 일반적인 의문사항은 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sochung.mosp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제1편 징계 처분

I. 복무규율 위반	3
1. 민원인 사적접촉 금지 위반(감봉2월→기각)	5
2. 정기재산변동신고 불성실(견책→불문경고)	10
3. 기본근무결락 및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정직1월→기각) ...	15
4. 당직근무 중 근무지이탈 및 피의자 폭행(해임→정직3월) ...	20
5. 순찰근무결락 및 경찰장비 무단 방치(견책→기각)	28
6. 유흥주점 업주 접촉금지 위반(감봉1월→기각)	32
7. 게임장 업주 접촉금지 위반(감봉1월→기각)	38
8. 사건문의 일원화 지시 위반(감봉1월→기각)	43
9. 직장이탈 및 직속상관 폭행(해임→강등)	51
10. 개인정보 사적 조회(감봉1월→기각)	58
11. 개인정보 사적 조회(감봉1월→견책)	63
12. 근무지 이탈 및 물의 야기(감봉1월→견책)	68
13. 허위 연가 신청 및 무단 결근(감봉1월→기각)	73
14. 검찰수사 회피 목적으로 직장 무단 이탈(파면→기각)	79
15. 사전 허가 없이 지참, 외출 및 조퇴(감봉1월→기각)	84

Ⅱ. 업무과실 및 직무태만 91

16. 피의자 신문조서 임의 작성(견책→기각)	93
17. 사건 수사태만 및 변호사 알선(정직1월→기각)	98
18. 피의자 관리소홀(견책→불문경고)	105
19. 피의자 감시소홀(정직3월→기각)	110
20. 과세자료 처리 업무 소홀(정직1월→감봉3월)	115
21. 양도소득세 과세자료 처리 소홀(견책→기각)	121
22. 이송사건 처리 태만(견책→불문경고)	126
23. 교통사고 임의 내사종결(견책→기각)	133
24. 교통사고조사 업무 태만(정직1월→감봉2월)	138
25. 근무성적평정 업무 태만(견책→기각)	142
26. 차량정보 유출 및 허위공문서 작성(해임→기각)	148
27. 112신고 사건접수 소홀(견책→불문경고)	154
28. 지명수배자 정보유출 및 검거 태만(정직1월→기각)	160
29. 등기우편물 분실 및 대리서명(견책→기각)	166
30. 미 배달 우편물 유기(파면→기각)	172

Ⅲ. 품위손상 177

31. 음주운전(감봉1월→기각)	179
32. 음주운전사고(강등→정직3월)	183
33. 교통안전 담당 경찰관의 음주운전사고(강등→기각)	187
34. 가정폭력 및 존속협박(견책→기각)	191
35. 동료직원과의 상호폭행(감봉3월→기각)	195

36. 미신고 이륜자동차 운행(감봉2월→기각)	203
37. 상사 등에게 전화로 음주추태(해임→강등)	208
38. 지구대 내 축·조의금 및 공금 절취(해임→기각)	214
39. 불건전한 이성교제(정직2월→기각)	221
40. 공공질서 문란 및 주거침입(정직1월→감봉1월)	227
41. 성희롱, 성추행 및 보험급여 부당수령(해임→기각)	234
42. 도박행위 방조 및 하극상(정직1월→기각)	244
43. 상습적 경마도박 행위(정직2월→기각)	250
44. 상습적 휴무 지연신청 및 불건전 오락 행위 (감봉1월→기각)	258
45. 주민 폭행 및 음주측정 거부(해임→정직3월)	263

IV. 금품향응수수 269

46. 경찰대상업소 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파면→해임, 징계부가금 3배→기각)	271
47. 고소사건 관련자로부터 사건처리 명목으로 금품수수 (정직1월→취소, 징계부가금 1배→취소)	276
48.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수수 (감봉1월→견책, 징계부가금 1배→기각)	282
49. 부하직원으로부터 승진인사 명목으로 금품수수 (감봉3월→감봉1월)	287
50. 범죄조사사건 피조사자로부터 금품수수(해임→정직3월) ...	291
51. 사기사건 피의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수수(파면→기각)	297
52. 금품 및 향응수수 후 개인정보 유출 (파면→기각, 징계부가금 1배→기각)	302

53. 수사관에게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 수수 (해임→기각, 징계부가금 3배→기각)	307
54. 노래방 단속무마 명목으로 금품 수수 (파면→기각, 징계부가금 1배→취소)	313
55. 뺑소니 교통사고 사건 무마 명목으로 금품수수 (파면→기각, 징계부가금 1배→기각)	321
56. 감독대상 사업장 직원으로부터 향응수수 (감봉1월→기각, 전보→기각)	330
57. 세무조사대상업체로부터 상품권 수수(감봉1월→기각)	337
58. 수배자인 정보원으로부터 명절선물 등 금품수수 (감봉2월→ 기각, 징계부가금 1배→기각)	342
59. 법인 리스 자동차 무상사용 및 수감자 부당접견 기회 제공 (정직3월→기각, 징계부가금 3배→기각)	350
60. 직무관련자의 차량 무상 사용(견책→기각)	359

V. 공금횡령 365

61. 출장비 부당 사용(감봉1월→견책, 징계부가금 1배→취소) ...	367
62. 급여의 각종 수당 횡령(파면→해임)	373
63. 자녀학비 보조수당 중복 수령(해임→기각)	379
64. 급여공제금 유용(해임→기각, 징계부가금 1배→취소)	386
65. 특정업무경비 개인용도로 사용 (견책→기각, 징계부가금 1배→기각)	392
66. 수사활동비 횡령(해임→기각, 징계부가금 3배→1배)	398
67. 국고금 횡령(해임→기각, 징계부가금 1배→기각)	404
68. 시간외근무수당 및 특근매식비 부당수령 (감봉3월→기각, 징계부가금 1배→취소)	410

69. 연구개발과제비 부담 사용 (정직3월→기각, 징계부가금 1배→기각)	418
70. 이전비 부담 수령(견책→기각, 징계부가금 1배→기각)	422

Ⅵ. 감독책임 427

71. 피의자 관리소홀 감독책임(감봉2월→기각)	429
72. 부하직원 음주운전 감독책임(감봉1월→견책)	435
73. 부하직원 금품수수 행위 감독책임(견책→불문경고)	442
74. 부하직원 공금횡령 감독책임(견책→기각)	446
75. 전·의경 관리감독 책임(견책→불문경고)	452
76. 회계검사 감독 태만(견책→기각)	459

제2편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77. 징계처분에 따른 수사경과 해제 (견책→기각, 수사경과 해제→기각)	467
78. 수사업무능력 및 의욕부족을 이유로 수사경과 해제 (수사경과 해제→기각)	473
79. 의사에 반하는 전보 처분(전보→기각)	476
80. 근속승진 제외처분(근속승진 제외처분→취소)	482
81. 명예퇴직 무효확인 청구(명예퇴직 무효확인→기각)	486
82.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직위해제→취소)	492
83. 세액산정 소홀로 부실과세 초래(불문경고→취소)	497

84. 특정 수용자에게 편의 제공(불문 경고→기각)	506
85. 시보경찰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직권면직→취소)	511
86. 운전면허 취소로 인한 직권면직(직권면직→기각)	517

제3편 형식요건

87. 징계시효 도과(견책→취소)	525
88. 소청제기기간 도과(파면→각하)	532
89. 징계위원회 구성하자(견책→취소)	537
90.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자에 대한 징계(파면→취소)	540

부 록

- ▶ 소청심사위원회 연혁
- ▶ 관계법령
- ▶ 소청심사 현황분석
- ▶ 소청심사 통계
- ▶ 우리 위원회 발간물 현황

제1편 징계 처분

I . 복무규율 위반

1. 민원인 사적접촉 금지 위반(감봉2월→기각)

처분요지 :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여성 민원인 B와 연락하며 지내던 중 112신고 시 폭행한 남편으로 지목되어 내연관계를 의심받고, 경찰 휴대용 단말기 10대를 이용하여 B와 통화, 폰 메일을 하는 등 총 110회 사적 이용하고, 주취상태로 야간근무 출근한 비위로 감봉2월 처분

소청이유 : 당시 B는 만취상태로 실수로 소청인이 폭행하였다고 신고를 하였던 것이고, B는 술에 취하면 같이 있는 남자에게 남편이라고 호칭을 하는 버릇이 있는 사람으로 소청인과 내연관계가 아니며, 경찰 공용 휴대단말기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므로 원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3-26 감봉2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는 자로서, 업무로 알게 된 여성 민원인의 핸드폰 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사적만남을 하지 말라는 지시에도 불구하고,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여성 민원인 B와 연락하며 지내던 중, 2012. 8. 6. 23:19경 ○○구 ○○동 ○○번지 2층에 남편이 때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장에서 B(신고자)가 소청인을 남편이라고 지목하며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여 폭행 및 내연 관계를 의심받는 등 경찰공무원의 품위손상 및 지시명령을 위반하였으며,

경찰 공용 휴대단말기는 사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2012. 8. 1.~.11. 30.까지 4개월간 ○○지구대 휴대용 단말기 10대를 이용하여 내연관계를 의심받고 있는 위 B에게 총 110회에 걸쳐 전화 통화, 폰 메일을 하여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였으며,

112순찰차를 운전해야하는 지구대 팀원으로, 주취상태에서 출근하지 말라는 지구대장과 팀장의 지시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2012. 11. 23. 경 야근근무에 임하면서 주취상태로 출근하는 등 지시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소청인의 비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므로 약 22년 8개월간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등 총 17회의 표창을 수상하는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2012. 8. 6. 폭행신고건의 경우, 당시 신고자는 만취상태로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심신박약 상태로 소청인에게 억지스러운 말을 하여 제발 그만하라고 말한 적은 있으나 폭행을 하지는 않았으며 신고자가 실수로 신고를 하였던 것인데, 신고자는 술에 취하면 같이 있는 남자에게 자기 또는 남편이라고 호칭을 하는 버릇이 있고 소청인은 신고자와 단순한 친구관계로서 그 이상의 내연관계는 절대 아니며,

경찰 공용 휴대단말기를 사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향후에는 절대로 이런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2012. 11. 23. 야간근무에 임하면서 주취상태로 출근한 이유는 전일 주간근무를 마치고 집에서 가사문제로 새벽까지 과음을 하여, 야간근무 출근 전까지 잠을 자고 출근을 하였으나 평소 간이 좋지 않아 해독이 느려 술 냄새가 감지되었던 것으로,

경찰공무원 배명 후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점, 22년의 공직 기간 동안 경찰청장 표창 등 총 17회의 표창을 수여 받은 점, 슬하에 자녀가 4명이고, 시골의 노부모까지 부양할 책임이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112 폭행 신고건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B가 술에 취해 실수로 112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B는 신고를 두 차례나 하고 소청인의 처벌은

원치 않는다고 하는 등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였으며, 이후 소청인을 형님 댁에 데려다 주었는지를 유선 상 경찰관에게 확인하는 등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업무로 알게 된 여성 민원인과 따로 만나면 안 된다는 경찰청 지시 사항이 있어 교양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를 1년 이상 알고 지내며 수시로 연락하고, 늦은 밤 혼자 사는 B의 집에 찾아가 함께 술을 마셨고 B는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소청인을 수차례 ‘남편’이라고 칭할 뿐 아니라 “우리 남편이 마음은 착한데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반복 진술하고, 소청인은 처에게 B를 고향친구라고 거짓 소개를 하는 등 사회 통념적으로 단순한 여자 친구로 보기는 다소 무리가 있는 관계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는 B와 소청인의 관계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불륜관계로 본 비위를 특정한 것이 아니라 단지 가정폭력으로 112신고가 되어 물의를 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만 비위로 삼은 것이므로 경찰관으로서 품위 유지의무를 저버린 원 처분 상당의 비위는 충분히 인정된다.

공용 휴대단말기 사적이용과 관련, 공용 휴대단말기는 경찰정보통신 운영규칙 제60조 제2항에 따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4개월간 110회에 걸쳐 사적으로 사용한 소청인의 비위는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하여도 원 처분 상당의 비위로 인정된다.

2012. 11. 23. 야간근무 시 주취상태로 출근 관련, 소청인은 출 퇴근 시 음주여부를 감지한다는 것을 지시·교양 받았고, 본인이 건강이 좋지 않아 술 깨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다음 근무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로 음주량을 자제하여야함에도, 대민업무가 많은 지역경찰관으로서 근무에 임하면서 특히 야간근무의 경우 긴박한 신고가

찾을 수 있어 순찰차 운전근무 등이 수시로 필요함에도, 음주 측정 될 정도의 주취상태로 출근하였을 뿐 아니라 술 냄새를 감지하고 상급자로부터 귀가할 것을 여러 차례 권유받았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았으며, ○○경찰서 근무기간부터 본 비위 발생까지 여러 차례 주취상태로 출근하였던 점 등을 비추어볼 때 비위가 충분히 인정된다.

4. 결 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비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은 일상생활에서도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여성 민원인을 사적으로 접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업무 처리로 알게 된 B와 1년 여간 만나며 늦은 시간 B의 집에서 단둘이 술을 마시고, 가정폭력으로 112신고 되는 등 품위를 손상하였고, B와 공용휴대폰으로 4개월간 110회 통화·폰 메일로 연락하였을 뿐 아니라,

근무지가 바뀌면서도 수년간 관심직원으로 관리되는 상황임에도 여러 차례 주취상태로 야간근무에 임하며 지역경찰관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치 못하고 공·사 관계에서 술로 인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야기 시킨 비위가 모두 인정되는 등 여러 비위가 경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는 소청인이 총 22년 8개월간 근무하였으며, 자녀가 4명이고 부채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감봉2월로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바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2012년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 시 본인 채무 6건, 배우자 예금 6건과 채무 1건 등 총 13건, 순 누락금액 196,519,000원을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하고 변동 없음으로 불성실하게 신고하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결과 징계의결이 요청되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 제1항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등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2012. 2. 10. 정기 재산변동등록을 한 후, 2012. 7. 23. ○○지방경찰청 ○○계로부터 ‘누락된 재산신고가 있으니 누락된 채무 및 예금 총 21건에 대하여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이하 ‘PETT시스템’이라 한다.)에 보완신고서를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아 그 보완사항을 소명 등록한 바 있고, 위와 같이 2012. 7. 23.경 보완신고서를 함께 등록했던 ○○지방경찰청 소속 직원 ○○여명에 대해서는 소명서 제출을 감경근거로 하여 1단계 감경하여 경고 및 시정조치 대상자로 처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위 보완명령에 따른 감경 대상자에서 누락된 것으로,

2012. 9. 24.에 재차 소명서를 제출하였고, 보완신고 재 지시에 의거 2012. 12. 10.에 재산변동보완신고 등록을 하였는데, 불합리하게 최초 등록한 신고서만 가지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경징계(견책) 처분한

것은 형평성에 위배되며,

배우자의 아파트 담보대출을 제외하면 누락된 재산 대부분이 고의로 누락하여야 할 이유가 없는 보험과 채무에 해당하는바, 징계처분을 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되며,

22년여 간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3회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하였고 진정 등의 민원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징계로 인해 근속승진 대상 자격이 박탈되는 등의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점, 상훈 경력을 정확히 기재하여 소청인의 이익이 되게 하여야 함에도 피소청인은 감경대상 표창을 1회(실제는 경찰청장 표창 3회)로 잘못 적시하여 징계위원들이 제반 정상을 참작하지 못하도록 한 사실이 있는 점, 맡은바 업무에 충실하여 소속 부서에서 매우 신뢰를 받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지방경찰청의 보완요구 등에 따라 성실하게 재산변동 보완신고를 하였음에도, 2012. 7. 23.경 보완신고서를 함께 제출했던 ○○여명의 직원들에게 경고 및 시정조치를 하면서, 소청인에 대해서는 최초 등록한 신고서만 가지고서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여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펴보건대,

2012. 10. 9.경 ○○지방경찰청은 소속 재산등록의무자 ○○명(경위 및 경사) 중에서 재산신고를 부실하게 처리한 ○○명을 가려내 심사한 뒤, 소청인을 포함한 ○○명을 징계 및 과태료 대상자인 법적조치 요청자로, ○○명은 경고 및 시정조치 대상자로, ○○명은 보완명령 대상자로,

○○명은 실무종결 대상자로 각 분류하였고, 법적조치 요청자 ○○명에 대해서는 경찰청 보고 후에 서면 소명서를 징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경고 및 시정’으로 감경조치 하겠다는 취지의 2012년도 등록재산 심사 결과를 각 경찰서 등에 하달하였는바,

경찰청은 위와 같은 일련의 심사 및 소명의 과정을 거쳐 위 법적조치 요청자 ○○명 중에서 최종적으로 ‘전체 재산을 변동 없음으로 신고’한 소청인과 경위 B 등 2명만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청 대상으로 보고하여 이 사건 징계요청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서 소속 경사 C도 ‘전체 재산을 변동 없음으로 신고’ 하였으나, C의 순 누락 금액은 70,055천원으로 소청인의 그것(197,868천원)보다 훨씬 적은 금액에 해당하고, 그 대부분은 C의 부모재산(61,878천원)이 누락된 것이어서, 소청인 및 경위 B의 부실신고 내용보다는 훨씬 가벼운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법적조치 요청자 ○○명 중 나머지 ○○명의 부실신고 내역은 각각 사실과 다르게 잘못 신고한 재산에 해당하여, 소청인과 같이 ‘전체 재산을 변동 없음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시한 문책의 가중사항에 해당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처분이 형평성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등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공직자의 재산등록제도는 재산형성과정의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 취득의 규제 등을 통하여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하는바(공직자윤리법 제1조), 매년 1회 실시하는 정기재산변동신고를 소청인과 같이 전년도 신고금액과 동일한 금액, 즉 각 재산항목의 변동액 란을 모두 '0'으로 처리하여 '재산변동사항 없음'으로 신고하는 것은, 공직자 윤리법의 제정목적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행태로써 용납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합리적인 심사 및 처분기준에 따라 소청인에 대하여 징계의결 요청을 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도 할 수 있겠으나, 관계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순 누락금액(-196,519천원) 중에서 본인 명의 누락액은 -32,681천원(16.6%)에 불과하고 나머지 누락액은 모두 배우자 명의의 예금과 채무인 점, 배우자 명의의 순 누락액(-163,838천원)도 대부분은 아파트 담보대출액(-149,500천원)이고, 나머지 6건의 예금누락액(-14,338천원)은 모두 보험계좌로써 재산을 은폐하려는 고의성은 없어 보이는 점, 상훈감정 사항이 임의적 조항에 해당하지만, 피소청인이 징계위원회 개최 시에 소청인에게 존재한 감정 대상 표창 3회의 경력을 1회로 잘못 적시함으로써 징계양정을 할 때에 소청인의 공적이 낮게 적용된 측면이 있고, 위 3회의 표창 경력이 모두 2009년부터 2011년도 중의 매년도 각 1분기 중에 근무실적이 우수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한 경찰청장 표창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소청인이 본 건을 거울삼아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 ○○팀장으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설 명절 특별형사활동 기간(2013. 1. 28.~2. 11.)을 포함해 2013. 1. 3.~3. 6.(약 2개월)간 총 18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없이 상습적으로 조기퇴근 하는 등 기본근무 및 직원 관리·감독에 태만하였고,

위 18일간 근무시간에 맞춰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총 52시간 36분의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허위로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하여 부당하게 수령하였으며,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팀장으로서 부하직원에게 모범을 보이고 관리·감독을 해야 할 위치에서 상습적 조기퇴근으로 내부질서를 문란케하고 초과근무수당을 부당수령한 점 등에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며, 장관 및 경찰청장 표창 등 수상공적과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12. 12월말 경부터 복시와 굴절현상 등으로 고통 받던 차에 병원에서 ‘○○번 뇌신경마비’ 소견을 받았는데 이는 치료가 오래

걸리고 뇌경색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계속 통원치료가 필요하여 병원, 한의원 등으로 치료를 받기 위해 조기 퇴근한 것이고 병가휴가를 내면 바쁜 직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내지 못했고 퇴근 시 직원들의 양해를 받았었고 비상을 대비해 10여분 이내 복귀할 수 있도록 항상 대기하고 있었으며,

2013. 2. 11. 명절근무 시 조기퇴근은 노인병원에 입원하신 노모를 보기 위해 친척들이 왔다고 하여 할 수없이 하게 되었고, 시간외수당은 행정처리가 일괄적으로 되기 때문에 미처 따로 처리하지 못한 것이지 고의성은 없었고,

그간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하였고 퇴직까지 약 5년 남은 점 등을 감안해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복시·굴절현상 등 뇌신경마비 진단을 받고 치료받기 위해 부득이 조기 퇴근한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었고 직원들에게 양해를 구했고, 10분 이내 거리에서 비상대기 하였으며, 병가를 내면 직원들에게 피해를 줄 상황이라 내지 못했고, 시간외근무수당은 일괄적으로 지급되어 바쁘고 몸이 아파 따로 정산처리하지 못한 것이지 고의적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건대,

소청인은 징계사유 상 조기퇴근 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있고, 소청인의 주장대로 병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면 병가를 신청하는 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었던 점, 직원들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해 병가를 사용하지 못했다고 하나 시간 병가나 조퇴 신청 등 적법한 절차에 따른

조기퇴근 방법이 얼마든지 있었음에도 이를 전혀 활용하지 않은 점에서 소청인의 건강상의 문제를 근무결락에 대한 참작사유로 고려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또한 소청인이 제출한 병원 진단서상 내원일자가 소청인의 근무결락일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병원치료를 위해 조기퇴근 한 것이라는 소청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직원들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했고 10분 이내 복귀할 수 있도록 비상 대비 하였다고 하나 확인되지 않는 사항이고,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로써 소청인의 근무결락 사실, 결과적으로 팀장으로서 부하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게 된 사실이 사라지거나 합리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관련, 소청인은 현업대상자로서 계획된 근무시간 내에 시간외근무가 포함되어 있는 형태의 근무를 하고 있으므로 정해진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은 사실로서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의 결과가 초래된 것으로 보이는데, 기본근무와 초과근무가 혼재된 형태의 근무를 하고 있어 따로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수당이 지급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청인이 거짓이나 허위로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해 부당 수령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조기퇴근이라는 의무위반행위에 수반하여 초과근무수당을 부당수령하게 된 결과책임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은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약 2개월간 총 18회에 걸쳐 정해진 근무시간을 결락, 임의로 조기퇴근하고, 52시간 36분의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하는 등 성실히 근무해야 할 의무 등을 위반한 비위가 인정되고,

부하직원들의 복무상태를 관리·감독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팀장의 위치에서 오히려 이와 같은 비위를 저질렀고, 부하직원들로부터 문제가 제기되어 조직 내 기강확립을 저해하고 물의를 야기한 측면이 있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건강상 문제였다고 하나 병가 등 충분히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조치할 수 있었음에도 임의적으로 근무결락을 한 점에서 의무위반행위 발생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볼 수 없고 중간관리자로서 평소 경각심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4. 당직근무 중 근무지이탈 및 피의자 폭행(해임→정직3월)

처분요지 : 당직근무 중 경찰서 밖에서 동료경찰관과 식사 및 음주 후 귀서하는 등 근무지이탈 및 수사 당직자로서 직무 태만, 형사 피의자 호송 중 차량 내에서 피의자를 수회 폭행하고 상황실장의 석방지휘를 받지 않고 임의로 피의자를 석방하는 등 직권 남용한 비위로 해임 처분

소청이유 : 당직근무 중 술을 마신 행위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만취된 피의자의 난동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술을 깨고 난동을 중단하라는 취지로 등과 얼굴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통상의 구타·폭행은 아니었으며, 석방 전 상황 관리관에게 보고하려 하였으나 새벽시간대에 수면을 취하고 있는 상황관리관에게 즉시 보고를 할 수 없는 문제점을 고려하여 원 처분의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호송차량 내에서 항의하며 반항하는 피의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폭행에 이른 점, 유사 비위 등 징계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감경 결정

사 건 : 2013- 171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13. 2. 14.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정직 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2013. 1. 17.(목) 09:00~익일 09:00경까지 수사 당직 근무를 명받고 근무를 하던 중, 교통조사계 경장 B가 승진 턱을 낸다고 하자 2013. 1. 17.(목) 19:00 부터 익일 02:30경까지 당직 사무실에 대기하거나 형사당직 기본근무를 하지 않고 경찰서 밖으로 나가 동료경찰관 경장 B 등 5명과 식사 및 음주 후 귀서 하는 등 근무지 이탈 및 수사 당직자로서 직무를 태만히 하고,

2013. 1. 18.(금) 00:20경 ○○지구대로부터 인계(경장 C) 받은 형사 피의자 D를 ○○서 유치장으로 입감하기 위해 03:20경 호송 차량에 함께 타고 피의자를 감시하며 이동 중 ○○ 국도상 군 ○○읍 지하차도 부근 차량 내에서 왼손으로 형사 피의자 D의 수갑 찬 부위를 누른 상태에서 서 오른 손바닥으로 뒤통수와 오른뺨을 수회 폭행(진단 14일)하고,

같은 날 04:00경 형사피의자를 입감지휘서에 의해 ○○서 유치장에 입감하여야 함에도 ○○서로 다시 돌아와 상황실장의 석방 지휘를 받지 않고 임의대로 피의자를 석방하는 등 직권 남용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 하여 언론에 보도되는 등 경찰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실추시키는 등의 품위손상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형법 제125조(폭행, 가혹 행위), 헌법 제12조 제2항, 범죄수사규칙 제3조(인권보호), 제4조(법령 등 준수), 제56조(임의성확보), 제83조(현행범인의 조사 및 석방),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4조(인권보호원칙), 제8조(폭행, 가혹 행위 등 금지)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14년 2개월간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금번 비위와 동일한 비위 등 비위전력 없고,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징계 등의 정도), 경찰공무원 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9조(상훈감경)에 따른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중한 처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근무지 이탈 및 수사 당직자로서 직무태만 부분과 관련해서는 근무 중 술을 마신 행위로 인해 경찰조직의 위신을 추락시키고 동료 경찰관들에게 피해를 준 점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소청인이 마신 술의 양은 소주 1병, 맥주 1병이었고 약간의 취기는 있었지만 만취상태는 아니었으며,

주 65시간 이상의 과도한 업무시간과 당직근무 시 사건사고가 발생할 경우 다음날 비번근무를 보장받지 못하는 등 지역형사팀 근무체계에 문제가 있으며, 지난 1년 동안 기본근무 외에 월평균 약 12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며 민생치안 활동에 힘써 왔던 점을 참작하여 주시길 바라며,

피의자 폭행 및 피의자 임의 석방 부분과 관련해서, ○○경찰서에서 출발한지 5분 정도가 지나자 술에 취해 앉아 있던 D가 술도 안마셨는데

왜 유치장에 가냐며 태도가 돌변하였고, 차량문을 열고 나가려고 시도 하는 과정에서 D를 말리면서 정신 좀 차리라며 왼손바닥으로 등 부위를 1~2회, 어깨부위를 2회 정도 치면서 진정토록 한 것으로,

호송을 강행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몰라 ○○경찰서로 돌아가자고 한 것인바, 운행 중인 차량에서 만취된 피의자의 난동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술을 깨고 난동을 중지하라는 취지로 등과 얼굴을 때린 점은 인정하지만 그것은 통상의 구타, 폭행 등의 가책은 아니었으며,

D의 진술과 진단서(2주)만으로 수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과정상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부당성이 있었으며,

첫째, 소청인이 이유 없이 D를 차량 내에서 계속 폭행하였다면 C에게 차량을 멈추게 할 이유가 없고, D의 사기죄는 경제팀에서 담당하는 업무 이므로 소청인이 D를 조사할 이유도 없고 자백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징계위원회에서는 범죄수사규칙 제3조(인권보호), 제4조(법령등 준수), 제56조(임의성 확보)란 규정을 내세워 소청인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피의자로부터 범행을 자백받기 위해 폭행한 것처럼 잘못된 규정을 적용하였고,

둘째, D가 교통사고로 인한 기왕증이 상해진단서 상에 기재되었고, 징계위원회에서 왼쪽 머리에도 좌상이 있다고 하였는데 좁은 차량 내에서 우측에 앉아 있는 소청인이 때려서 난 상처라고 하기에는 모순이 있고,

셋째, D는 언론에 제보한 후 합의금으로 3,000만원을 요구한 점, D는 사행행위 및 절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 하여 D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살펴봐야 하고,

넷째, C 경장은 심야시간 대 차량 운전 중에 백미러 상으로 뒷좌석의 상황을 볼 수 없고, D가 난동을 부리고 소청인이 제지한 것은 불과 1~3분 사이에 이루어졌고, C 경장은 차량을 세운 후 잠깐 뒤를 돌아본 것이 전부이므로, 때리는 소리가 나는 것만으로 D를 폭행한 것으로 오인한 것이고,

○○경찰서로 귀서한 후 D가 술집 주인과 술값 문제를 해결한 후 출선한다고 하고 사안이 경미하여 수사당직자 C 경장이 키스상 현행범인 석방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올렸고,

석방 전 상황관리관에게 석방 사유 등을 구두 보고하려 하였으나 새벽 시간대에 수면을 취하고 있는 상황관리관에게 즉시 보고를 할 수 없는 제도상의 문제점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먼저 근무지 이탈 및 수사 당직자로서 직무태만 부분과 관련해서 살펴보건대,

소청인과 동료 경찰관들의 진술에 따르면 소청인은 적어도 소주 1병, 맥주 2병 정도를 마신 것으로 보이므로 소청인은 당직근무 중 적지 않은 양의 음주를 한 것은 명백하고,

경장 C가 긴급 체포된 피의자의 신병처리 등을 위해 소청인에게 3회 전화하였음에도 즉시 귀서하지 않는 등 7시간 30여분 동안 당직근무를 결락하고 근무지를 이탈하여 음주를 하였는바, 만취된 상태가 아니라 할지라도 소청인의 비위는 용납하기 어려운 중한 비위라 할 것이고,

과중한 업무량 등을 인정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본 건 비위가 정당화 될 수 있는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피의자 폭행 부분과 관련해서 운행 중인 차량 내에서 만취된 피의자의 난동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등과 얼굴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그것은 통상의 구타·폭행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펴보건대,

D는 수사기관에서 소청인으로부터 뒤통수, 뺨 등을 10여회 폭행 당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경장 B 역시 경찰서에서 소청인이 피의자의 얼굴과 등을 2~3회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고, 소청인이 피의자를 때리는 소리가 난 횟수를 더하면 소청인이 피의자를 때린 횟수는 10여회 정도에 이른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피의자 D와 경장 C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 경장 C가 조장인 소청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까지 허위진술을 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 달리 회유와 강압에 의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볼만한 사정 역시 발견하기 어려운 점, 법원에서 경장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이 피의자의 뒤통수와 얼굴 등을 수회 때린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다만, 호송차량 내에서 항의하며 반항하는 피의자에 대하여 우발적으로 본 건 비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유사 비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의 여지가 있다.

마지막으로 피의자 임의석방 부분과 관련하여 상황관리관은 새벽시간대에 수면을 취하고 있어 즉시 보고할 수 없었고, 경미한 사안이라 석방 후 사후 보고를 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펴보건대,

범죄수사규칙 제83조에서 현행 범인을 체포하거나 이를 인수하여 음주

등으로 인하여 조사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가 아니면 지체없이 조사하고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관서장의 지휘를 받아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4조에서 야간 또는 공휴일에는 상황실장이 유치인보호 주무자의 직무를 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치안상황실 운영규칙 제4조에서 상황관리관은 일과 후, 토·공휴일에 치안상환 관리 및 당직업무를 총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하거나 석방하는 것은 권한 없는 실무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비록 사안이 경미했다거나 상황관리관이 대기근무 중이라 할지라도 상황관리관의 지휘를 받는 등 관계 규정에 따른 절차를 지켜 피의자를 석방해야 함이 마땅하고, 동 피의자는 상황관리관의 지휘를 받아 유치장에 입감시키기 위해 호송 중이었던 자이므로 사안이 경미하여 사후보고 하려 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바,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및 형법 제125조(폭행, 가혹행위)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은 고도의 준법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당직 근무 중 7시간 30여 분간 근무지를 이탈하여 3차에 걸쳐 음주하고, 상황관리관의 지휘를 받아 유치장에 입감시키기 위해 호송 중이던 피의자를

폭행한 후 임의 석방한 비위가 인정되는 점, 근무지를 이탈한 시간과 음주량이 적지 않은 점, 이 사건이 언론 보도되어 경찰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킨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하겠으나,

호송차량 내에서 항의하며 반항하는 피의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폭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유사 비위 등 징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감정대상 표창을 6회 수상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소청인을 배제나 강등의 징계로 문책하기 보다는 이 건을 교훈 삼아 다시 한 번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순찰근무결락 및 경찰장비 무단 방치(견책→기각)

처분요지 : 도보순찰 근무 중 지구대로 돌아와 소일하는 등 약 1시간 10분간 근무를 결락하고, 경찰장비인 가스총을 무기고 옆 책상에 무단 방치한 사유로 견책 처분

소청이유 : 도보순찰 근무 중 친척이 위독하다하여 팀장 승인 없이 지구대로 복귀하였으며, 마침 팀장이 부재하여 조기퇴근하기 위해 사복으로 갈아입고 경찰장비를 책상위에 둔 것으로 소청인의 관리 하에 있었던 점, 감경대상 표창이 있는 점, 정년이 3년 밖에 남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원 처분의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 :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3-325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2013. 5. 1. 19:00~5. 2. 07:00까지

자원근무(도보순찰 및 소내근무)를 신청에 의해 명받았음에도 2013. 5. 2. 05:50경 근무 장소를 이탈, 지구대로 돌아와 사복으로 갈아입고 지구대 1층 사무실 책상에 앉아 소일하는 등 지정된 장소에서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정당한 소속 상관의 근무지시 명령인 자원근무를 약 1시간 10분간 결락하고,

위와 같이 지구대로 돌아왔으면 즉시 경찰장비(일명 가스총 경봉)를 장비관리규칙에 따라 집중무기고에 입고하여야 함에도 팀장이 화장실에 가고 없다는 이유로, 가스총을 무기고 옆 책상위에 방치한 채 지구대 2층으로 옷을 갈아입기 위해 올라가는 등 경찰장비를 무단 방치하여 경찰장비관리규칙을 어겼으며,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징계 사유) 제1항 제1, 2호에 해당하므로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사건 당일 도보순찰 근무 중, 이웃에 거주하는 당숙이 위독하다 하여, 당직팀장의 승인 없이 지구대로 돌아와 보고 후 퇴근하려 하였으나, 마침 팀장이 화장실에 있어 급한 마음에 우선 지구대 2층에서 사복으로 갈아입고, 승인을 받기 위해 가스총을 무기고에 입고시키고자 무기고 앞 탁자위에 두고 근무일지를 정리하고 있을 때, 06:00경 근무확인을 나온 ○○계장 및 부청문관 등에게 의무위반행위가 지적된 것으로,

비번 자원근무는 23:00~03:00까지는 고정 근무이고 그 외의

시간은 팀장 보고 후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이며, 갑자기 조기 퇴근할 사유가 생겼던 것으로 고의로 팀장 승인 없이 조기 퇴근하려한 것이 아니고,

당시 무기고 열쇠를 관리하는 당직 팀장이 화장실에 있어 즉시 가스총을 입고할 수 없어 무기고 앞 탁자에 두고 근무일지를 작성하고 있었고, 통상 장비를 혁대에서 풀어 탁자위에 두고 확인한 후에 입고시키는데, 가스총은 소청인이 앉아있던 책상 위에 있어 소청인의 관리 하에 있었으므로 이를 방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소청인이 경찰청장 표창을 받아 임의 감경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경을 하지 않은 점, 소청인의 의무위반행위가 통상 경고나 계고 등에 처해지는 비위임에도 견책에 처한 점은 부당하고, 소청인이 32년 7개월간 재직하며 경찰청장 표창 포함 15회 표창을 수상하는 등 성실히 근무하고 정년이 3년여 밖에 남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원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3. 판 단

근무결락 비위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소청인의 개인 사정이 있다면, 팀장 보고 후 승인을 얻어 근무 시간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소청인 소속 지구대 내부 CCTV 녹화영상 및 당시 당직 팀장 진술에 따르면 소청인은 사건 당일 03:00부터 도보순찰근무를 결락하고 지구대 2층에서 취침한 후, 사복으로 갈아입고 05:50경 1층으로 내려와 있었으며, 당시 당직 팀장도 지구대 사무실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소청인이 도보순찰근무를 결락한 비위가 인정된다.

또한, 경찰장비 무단 방치 비위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소청인은 조기 퇴근하기 위해 사복으로 갈아입고, 현대 및 가스충 경봉 등 자신의 경찰장비를 책상위에 올려놓은 채로 근무일지를 작성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건 당시 사무실 내에 당직 팀장이 근무 중이었고, 즉시 경찰장비를 입고할 수 있었음에도 책상 위에 방치한 사실은 인정되나,

소청인이 책상에서 근무일지를 작성하면서 그 책상 위에 경찰장비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자리를 비운 사실은 없는 점, 책상 위에 올려놓은 시간이 약 10분가량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징계위원회 개최 시에도 경찰장비 무단방치 비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이 경찰장비를 방치한 비위는 징계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정

원 처분의 징계 이유 중 경찰장비 무단 방치 부분은 주의 또는 경고에 그칠 사안으로 판단되나, 도보순찰 근무결락 비위의 경우, 당시 소청인 소속 지구대 내 CCTV 녹화기록 확인 결과, 소청인은 사건 당일 원 처분 사유(1시간 10분간 근무 결락)보다 긴 약 3시간이나 근무를 결락한 점을 고려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감안 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6. 유흥주점 업주 접촉금지 위반(감봉1월→기각)

처분요지 : 유흥주점 업주 B로부터 3천만원을 차용하여 전직 경찰 C에게 빌려준 후 매달 이자지급 등 명목으로 B와 직접 만나고 4회 전화통화를 하였으며, C가 접촉금지 대상업소 관련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5천만원의 채권채무 관계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비위로 감봉1월 처분

소청이유 : C는 한때 소청인이 속한 ○○과 팀원으로서, 사업 자금 3천만원이 급히 필요하다고 부탁하여 ○○유흥주점 사장인 B와 금전거래를 하게 된 것이고, 채무 변제 이후 부터는 단 한 차례도 만나거나 전화통화한 사실이 없는 점, 이자도 전부 지급하고 변제기일도 지킨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3-326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2012. 2. 8. 직무관련자인 ○○ 유흥주점 업주 B에게서 수표로 3천만 원을 빌려 차용한 후, ○○게임장 유착 비위로 해임되어 2012. 12. 17.부터 본인 명의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구속된 전직 경찰관 C에게 위 차용금 3천만원을 빌려주고, 위 B에게 2012. 12. 31. 수표로 2천850만원을 1차, 2013. 1. 월경 현금으로 150만원을 2차에 걸쳐 원금을 모두 변제하기까지 매달 이자금 등의 명목으로 현금 20만원을 지불하였고,

그 후 2012. 3월부터 12월까지 이자지급 등 명목으로 위 유흥주점 업주 B와 매달 만나고, 2012. 10. 6.~2013. 1. 6. 사이 자신의 휴대 전화를 사용하여 동인에게 전화를 걸어 채무변제에 대하여 상의한다는 명목으로 4회 통화하였으며,

또한, 2009. 11월경 ○○은행 마이너스통장 대출금 2천만원과 2012. 2. 8. 위 차용금 3천만원을 위 C에게 빌려주어 총 5천만원의 채권채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2. 12. 17. 위 C가 접촉 금지 대상 업소인 ○○게임장의 바지사장이 된 이후 2012. 12. 22.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동인에게 전화를 걸어 1회 통화하였고, 2012. 12. 말경 위 C가 ○○게임장의 운영에 관여하고 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와의 채권채무관계 등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경찰청공무원행동강령 제16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호에 해당되어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전직경찰 C는 한때 소청인이 속한 ○○과의 팀원이었고, 경찰 조직을 떠난 뒤 했던 사업의 막바지 자금 3천만원 정도가 급히 필요하다고 하여 이를 뿌리치지 못하고 C의 부탁대로 ○○유흥주점 사장인 B에게 부탁하여 경찰대상업소 업주와 금전거래를 하게 된 것이며,

그런 이후부터 B와 매달 한 번 정도 만나고 월 1회 정도는 전화통화를 했던 것이 사실이고, 감찰조사를 받으면서 전화통화 기록을 확인해 보니 2012. 10.경부터 2013. 1.경 사이 B와 전화통화 했던 것이 4차례 확인 되었으며,

B와에게 차용한 금원에 대한 이자로 매달 20만원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이 약속을 이행하고 이자를 지불하기 위해 만났던 것이고 채무를 변제한 이후부터는 단 한 차례도 만나거나 전화 통화 했던 사실이 없었으며,

C가 ○○게임장 바지사장이 된 이후 게임장 업주 여주인이 실종된 사실과 관련하여 C가 동 내용을 알고 있다고 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C와 통화한 사실이 있으며, C와 채권채무 관계가 있는 사실에 대해 C가 경찰대상업소에 관여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 소속 기관장에게 채권채무의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사실은 정말 알지 못하였으며,

경찰대상업소를 운영하는 B와 채권채무관계를 유지한 잘못은 있지만 관계가 형성된 10개월 동안 단 한차례의 이자지급을 면한 사실도 없으며 변제기일 약속을 단 하루도 어김이 없이 2012. 12. 31. 채무를 변제해주었으며,

이런 행동으로 인해 그 어떤 민원도 발생한 사실이 전혀 없고, 문책성 전보인사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공직에 몸 담아온 23년 동안 징계처분 한 번 없이 열심히 근무해 온 점, 경찰청장 표창 4회 등 20여 차례 이상 표창을 받은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경찰청에서는 유착비리 근절을 위하여 경찰대상업소 접촉금지 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경찰대상업소 운영자와 접촉한 경우에는 사전 사후 모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경찰청공무원행동강령 제16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경우에는 금전차용 신고서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소청인은 다년간 수사부서에서 근무하여 관련 규정을 잘 알고 있었고, 돈을 빌리기 전 4번 정도 만나 B가 유흥업소 업주임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전직 경찰관인 C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고 유흥주점 업주인 B에게 차용증을 써 주고 3천만원을 차용한 후 이를 다시 C에게 빌려 주었고,

C도 3,000만원은 ○○사업을 하기 위해 소청인이 B에게 빌려서 다시 본인에게 빌려 준 돈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소청인은 유흥주점 업주 B에게 채무변제를 상의한다는 명목으로 4회에 걸쳐 전화 통화하였고, 불법게임장인 ○○게임장의 바지사장이 된 C와도 1회 전화통화 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경찰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침을 위반한 것이 사실인 점,

소청인은 진술조서 작성 시 경찰대상업소 업주와 금전거래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징계위원회에서도 대상업소 접촉금지, 금전거래 금지 및 사후신고 등에 대해 알고 있었으나 몇몇하지 못해 신고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소청인은 직무 관련자와의 금전거래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초 C는 경찰대상업소 접촉금지 대상자가 아니었지만 2012. 12월경 불법오락실 운영에 관여하게 되면서 경찰대상업소 접촉금지 대상자가 되었고, 소청인도 이런 사실을 2012. 12월말 경에 알았다고 진술한 바, 소청인은 경찰청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C와의 채권채무 관계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경찰청공무원행동강령 제16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 등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은 유흥주점 업주와 금전거래를 하면서 채무변제를 상의한다는 명목으로 4회 전화 통화하고, 불법게임장 운영자인 C와 1회 전화통화 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경찰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침을 위반한 점, 또한 직무관련자와 금전거래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아 경찰청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한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7. 게임장 업주 접촉금지 위반(감봉1월→기각)

처분요지 : 게임장 업주 B에게 단속관련 통화내용을 알려주어 지시 명령을 위반하고, 게임장 업주 D와 단속사항에 대해 대화 하고, 게임장 단속 후 전화통화 11회, 문자 4회 하였으나 사전·사후 신고하지 않은 비위로 감봉1월 처분

소청이유 : 게임장 업주 B로부터 전화 받고서 사건담당자인 C경사에게 전화한 것은 단속이 잘못 되었는지를 물어 본 것으로 사건을 잘 봐 달라고 하거나 사건에 관해 청탁 하려는 것이 아니고, D는 개인적으로 가깝게 지내온 후배로, D가 B의 게임장 바지사장을 하다가 단속되었다기에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던 것이므로 원 처분의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 :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3-670 감봉1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대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대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2013. 6. 11. 08:00경 전직 경찰관 B로부터 “○○팀에 단속 당해 기계를 압수당했는데 그 기계가 정상적인 기계인데 무리하게 단속했으니 기계만 돌려주면 문제 삼지 않겠다”라는 내용을 경사 C에게 전달하라는 전화를 받고 경사 C와 통화결과 “단속 및 기계 압수 절차는 모두 정상적이었다”라는 답변을 듣고, 다시 B로부터 전화를 받아 C와 통화한 내용을 알려 주는 등 사건문의절차 일원화 지시명령을 위반하였으며

경찰 접촉금지 대상업소인 사행성 게임장 운영자 등과 전화 통화, 사적 면담 등 부적절한 접촉행위를 금지하고 접촉 행위 시에는 사전·사후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아니하고, 2013. 7. 5. 17:00경 게임장 업주 전직 경찰관 D로부터 “사고를 쳤다. B와 게임장을 했는데 3일 만에 단속을 당했다”라는 전화를 받아 통화하고 같은 날 20:30경 ○○식당에서 D를 만나 식사를 하면서 단속사항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고, 2013. 7. 3. 게임장이 단속된 이후 2013. 7. 5.부터 7. 24.까지 전화통화 11회, 문자 4회를 하였으나 사전·사후 신고를 하지 않아 경찰 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시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해당되며, 소청인은 1999. 12. 29. 순경으로 임용된 후 12여 년간 근무하면서 징계처분 받은 사실 없고 경찰청장 표창 2회 등 14회 표창을 수상한 공적 등 제반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의무위반 행위 근절을 위한 지시명령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인되기 어려운 의무 위반 행위로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B, D는 당시 ○○경찰서에서 함께 근무를 했던 동료들로, B는 소청인의 경찰관 선배였고 D는 함께 근무를 했던 동료로서,

2013. 6. 10. B로부터 자기가 운영하는 게임장을 단속 당했다는 전화를 받았는데 잘못된 단속이라 문제 삼으면 단속한 C 경사와 다른 직원들도 다칠 수가 있으니까 압수한 게임기만 돌려주면 문제 삼지 않고 조용히 끝낼 것이라고 했고, 당시 B는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기에 사건담당자인 C 경사에게 전화하여 단속이 잘못 되었는지를 물어 본 것이지 사건을 잘 봐 달라고 하거나 사건에 관해 청탁하려는 것이 아니었으며,

D는 ○○경찰서 ○○팀에서 함께 근무를 하였고 개인사정으로 인해 경찰을 그만 두었으나 개인적으로 가깝게 지내온 후배로, 2013. 7. 5. D가 B의 게임장에서 바지사장을 하다가 단속되었다는 말을 하기에 D는 게임장이나 경찰대상업소와 전혀 관계되는 사람이 아니어서 D를 만났고, 소청인이 다시는 그런 일 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던 것으로,

이번 일도 B와 통화하고, D를 만난 것이 그 사람들의 게임장에 도움 주려고 한 것이 아닌 오히려 게임장을 하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 만난 것으로, 피소청인은 그 내용은 보지 않고 단순히 통화를 하고 만났다는 사실에 대하여 감봉1월의 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너무 과하고,

약 12년 동안 근무를 해오며 본 처분 이외에는 징계 처분을 받은 적이 없고 경찰청장 표창 2회 등 14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심기일전하여 경찰조직에 이바지할 각오인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사건 문의절차 일원화 지시 위반 관련, 소청인은 본 사건 이전부터 경찰관 선배였던 B가 경찰 접촉금지 대상업소인 사행성 게임장의 업주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2013. 6. 11. 소청인은 B에게서 게임장 단속과정을 문제 삼으며 단속경찰관 C 경사에게 연락하라는 전화를 받았고 이후 여러 차례 C 경사에게 연락하라는 독촉전화를 받았음에도 사후 접촉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등 경찰 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시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며, 조직내 부당한 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수사 사건처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급자 또는 동료 등 ‘내부 직원’간의 사건관련 문의를 각급 경찰관서 청문감사관실로 일원화하고 사건담당자에게 직접적·간접적인 사건 문의를 금지하는 사건문의절차 일원화 지시에 대해 주기적인 교양을 받았음에도 사건담당자인 C 경사에게 전화하여 단속과정의 잘못을 묻는 행위는 ‘내용만 알려 달라’, ‘친절하게만 해 달라’는 등 단순사향도 직접 문의를 금지하는 사건문의절차 일원화 지시를 위반한 비위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경찰대상업소 접촉 금지 지시 위반 관련, 소청인은 작년 3~4월경 D를 만나 B가 운영하는 게임장에서 실장을 했었다는 말을 들었고 2013. 7. 5. D와의 전화 통화 당시 B의 게임장에서 명의 사장을 하였다가

단속되었다는 사실을 그 때 알았다는 소청인의 진술을 볼 때 D는 게임장이나 경찰대상업소와 전혀 관계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소청인의 주장과 같이 단속 후 D가 사행성게임장의 명의사장을 한다는 것을 알았고 게임장 명의사장을 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기 위해 만났다면 사후 접촉사실을 신고했어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은 소청인의 책임은 면하기 어렵다.

4. 결 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살펴보면, 2013. 6. 11. 소청인은 이전 경찰관 선배였던 B가 경찰 접촉금지 대상 업소인 사행성 게임장의 업주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B의 부탁으로 해당 게임장 단속과정에 대해 사건담당 경찰관인 C 경사에게 문의하여 수사사건 문의절차 일원화 지시를 위반한 점, 2013. 7. 5. 소청인은 이전 경찰관 후배였던 D로부터 전화를 받고서 사행성 게임장 업주이고 3일전 해당 게임장이 단속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만나서 식사를 하였고, 2013. 7. 5.~7. 25. 동안 총 11회 전화통화와 4회 문자메시지를 교환 하면서 사후 접촉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경찰 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시를 위반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 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8. 사건문의 일원화 지시 위반(감봉1월→기각)

처분요지 : 조직폭력배가 연관된 폭행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고도 사건이 교통조사계로 배당되도록 방임하고, 진행과정을 지켜보며 사건관련자들과 부적절 접촉 처신으로 ‘사건관련 문의는 청문감사실로 일원화’ 지시를 위반하였으며, 사건 접수 이후 1주일간 수사진행을 지시하지 않아 조폭 비호 의혹으로 언론 보도된 비위로 각북1월 처부

소청이유 : 사건에 대하여 어떠한 청탁이나 부적절한 조치를 해달
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비변인 소청인에게 사건배당 권한이
없었으며, 조직폭력배를 적극적으로 비호하거나 사건을
축소할 의도가 없었으므로 원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3- 392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형사과에서 강력팀장으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으로서, 비번으로 집에서 쉬고 있던 2013. 5. 12. 17:30경에 중·고등학교 동창생인 B로부터 “폭행당했으니 급히 와 달라”는 도움 요청 전화를 받고 같은 날 17:50경 현장에 도착하여, 주변에 조직폭력 관리 대상인 ○○파 행동대장 C를 발견, ○○파 조직원 E가 때려서 검거되어 순찰차에 탑승해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조직폭력배가 상해 범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즉시 팀원들을 소집하여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같은 날 18:00경 ○○파출소 경찰관들에 의해 피해자 B, 가해자 E, F, 음주운전자 G가 파출소로 동행되자, 직접적으로 개입하면 오해를 받을 것 같다며 파출소 근처에서 중·고교 동창생 H를 불러내어 파출소로 들여보내 사건을 알아보도록 하고,

같은 날 19:00경 B가 ○○병원으로 후송되자 그곳에 찾아가 사건 내용을 모두 알게 되었고, 같은 날 19:50경 B, H와 함께 ○○오피스텔 주변 소주방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사건관련자와 2회에 걸쳐 접촉하고, B로부터 조직폭력배 E를 걱정·부탁한다는 말을 들어 사건 전모를 파악했음에도,

같은 날 형사과 당직팀 경사 I에게 재차 전화하여 사건관련 문의를 하고, 같은 날 21:05경 ○○파출소에서 E를 ○○경찰서 형사과로 동행한 후 E의 석방과정을 지켜보다가 같이 밖으로 나오는 등 사건

초기부터 전모를 파악하고도 그 사건이 교통조사계로 배당되도록 방임하고, 진행과정을 지켜보며 사건관련자들과의 부적절 접촉·처신으로 ‘사건 관련 문의는 청문감사실로 일원화’ 지시를 위반하였으며,

다음 날 당해 사건이 형사과에서 수사토록 조정되어 소청인의 팀원인 경사 J에게 사건이 재배당되었으면, 사건관련자 B와 친구관계 및 사전 접촉사실이 있으므로 수사의 공정성을 잃을 염려가 있거나 의심을 받을 우려가 충분함에도 그 수사를 회피하지 않았고, 사건 접수 이후 B가 타 지역 출장 중에 있다는 이유로 1주일간 특별한 수사 진행을 지시하지 않아, 2013. 5. 22. ○○뉴스 등에 “경찰 조폭 비호 의혹”이라는 제하로 보도되어 경찰 품위를 실추시키는 등의 의무위반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등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2,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32년 3개월 동안 성실히 근무한 점, 조직폭력배를 적극적으로 비호하거나 사건을 축소할 의도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제반 정상을 참작하고, 경찰청장 3회 및 치안본부장 1회 표창을 수상한 공적 등을 참작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B의 전화를 받고 폭행 현장에 가기는 했지만, 출동 경찰관들이 이미 E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워놓은 상태였고, 조직폭력배 간 싸움 등이 있는 급박한 상황은 아니어서 비변인 소청인이 이에 관여할 정도는 아니었으며,

소청인은 이 사건에 대하여 어떠한 청탁이나 부적절한 조치를 해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형사당직팀 경사 I에게 전화하여 조폭이 관여되었다는 말을 하면서 궁금한 마음에 어느 부서에서 사건을 처리해야 되는지, 사건이 경찰서로 인계되었는지 등을 물어보았을 뿐인데, ‘사건 문의 청문감사실 일원화 지시’를 위반했다고 하는 것은 수궁하기 어려우며,

또한 이 사건과 같이 음주교통사고와 폭력사건이 경합된 사건은 형사과 당직팀장이나 교통조사계에서 서류 검토 및 협의를 하여 사건 담당부서에 적의 배당을 하는 것으로, 비변인 소청인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아니고,

소청인도 본 경합사건이 어느 부서에서 처리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해 형사당직팀 경사 I에게 문의하였는데, 소청인이 단지 2차적으로 조직폭력배가 관련된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형사과가 아닌 교통조사계로 사건이 배당되도록 방임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수궁하기 어렵고,

소청인은 사건의 원인이 된 B가 출장 중이라며 출석을 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수사가 1주일간 지연된 후 B를 조사하였고, 이때 그로부터 C와 E의 가담 경위에 관한 진술을 받아내는 등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였음에도 이를 근거로 직무태만을 했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으로 여겨지며,

소청인이 좀 더 현명하게 처신하지 못한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징계의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소청인이 조직폭력배를 적극적으로 비호하거나 사건을 축소할 의도가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을 적시하면서도 감봉1월에 처하고 타서로 재량적 전보 조치까지 한 것은 그

간의 공적에 비추어 너무 과다한 처분인 점 등의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사건 문의 청문감사실 일원화 지시 위반 관련해서 살펴보면, 2013. 2. 22. ○○경찰서장이 각 부서에 하달한 ‘사건 문의 청문감사실 일원화 적극 이행 지시’에 따르면, 사건문의는 사건담당자에게 직접 문의 금지, 민원인 문의 시 사이버경찰청 내 ‘내 사건 문의’ 창구 활용 유도 등을 지시하고 있는바,

소청인은 이 사건 폭행 피의자인 E에 대한 수사를 직접 수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도 없이, 형사당직팀 관계자에게 사건배당 관계를 문의하고 그 처리결과를 계속적으로 탐지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위 사건문의 청문감사실 일원화 적극 이행 지시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인다.

소청인은 이 사건 폭행에 대한 사건배당이 형사당직팀의 소관에 해당하고 비변인 소청인의 권한에 속하지 않으므로 교통조사계로 배당되도록 방임하였다는 것은 수궁하기 어렵고, 이후 형사과로 재분류된 뒤 소청인이 그 수사를 회피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여 살펴보면,

2013. 3. 15. ○○지방경찰청장이 하달한 ‘국민중심 수사절차 준수 등 재강조 지시’내용 중의 「부서간 경합사건 처리 지침」에 따르면, ‘교통사고 선행행위로 단순 폭행 경합시’ 교통조사부서에서 담당하게 되나, 이 사건 폭행과 같이 ‘교통사고와 상해·폭력행위등 사건이 경합된

경우'에는 형사과에서 담당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소청인은 ○○경찰서 형사과에서 강력팀장, 조직폭력배 전담팀인 강력1팀장을 맡아 왔으며, 특히 이 사건 폭행 당일 경사 I와의 통화에서 “깡패 실적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사무실에 들어가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소청인이 위 처리지침의 사건배당 기준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소청인은 경사 I 등이 이 사건을 교통조사계로 잘못 배당을 하는 과정을 직접 목격하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이 교통조사계로 잘못 배당되도록 방임하였다는 징계사유는 타당하다고 보인다.

다음으로, 범죄수사규칙(경찰청훈령 제669호) 제8조는 ‘경찰관은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과 친족 관계에 있는 등 수사의 공정성을 잃을 염려가 있거나 의심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소속 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그 수사를 회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B는 “20여 년 전부터 소청인과 친하게 지내는 사이”라고 진술하는 점, 이 같은 친구관계로 인해, B는 E에게 폭행을 당한 뒤 조직폭력배 C에게 전화하고 곧이어 소청인에게 전화를 하는 등 112신고에 앞서 친분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며, 이에 소청인이 이 사건 폭행 현장에 도착한 뒤 그 상황을 지켜보다가 다른 친구인 H에게 전화하여 ○○파출소를 찾아가 B에 관한 사건처리 경과를 알아보게 하고, 이후 소청인도 ○○병원을 방문하여 B를 위문하는 등 개인적인 오랜 친분관계에서 이 사건에 깊이 관여하게 된 사정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으로서는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하게 될 경우 그 수사의 공정성을

있을 염려가 있으므로 그 수사를 적극적으로 회피했어야 마땅할 것임에도, 이 사건이 교통조사계에서 형사과로 재분류된 뒤 수사를 회피하지 않으므로써, 결과적으로 조폭 비호 의혹 보도를 야기하는 결과를 초래한 측면이 있으므로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소청인은 사건의 원인이 된 B가 출장 중이라며 출석을 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수사가 1주일간 지연된 후 B를 조사하였고, 이때 그로부터 C와 E의 가담 경위에 관한 진술을 받아내는 등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였는데도 직무를 태만히 했다고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펴보건대,

이 사건 폭행과 같이 조직폭력배가 관여하여 가두에서 상해를 입힌 사건은 사회이목을 집중시키고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수사지휘매뉴얼에 따라 경찰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소속 팀원인 경사 J에게만 이 사건 수사를 맡겨둔 채 B가 외지에 출타 중이라는 이유로 5일 이상 수사를 진행한 바 없다가, 사건을 배당받은 날로부터 6일 만에야 B에 대한 피해자 조사를 처음 실시하였고, 이때까지 외관상 드러나 있는 2차 폭력의 가·피해자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지도 않은 상태였다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소청인은 조직폭력배 전담팀장으로서 위와 같이 6일 동안 별다른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등 그 직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경찰이 조폭을 비호한다는 의혹을 불러일으켰다고 보이므로, 소청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정

원 처분 사유 중의 일부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 즉 ‘비변인 소청인이 이 사건 폭행 당일 소속 강력1팀원들을 즉시 소집하여 수사에 착수해야 할 정도로 긴급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사정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나머지 징계사유, 즉 사건 문의 청문감사실 일원화 지시를 위반하고, 이 사건 폭행의 전모를 파악하고도 형사당직팀에서 이를 교통조사계로 잘못 배당하도록 방임하였으며, 다음 날 이 사건이 형사과로 재분류된 뒤에도 그 수사를 적극적으로 회피하지 않았고, 상당기간 수사를 지연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한 잘못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조직폭력배 전담팀장인 소청인이 이 사건 폭행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그 상황을 스스로 잘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일련의 비위를 범함으로써 언론보도되어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고 경찰기관의 위신과 신뢰를 크게 실추시켰다고 할 수 있으므로, 소청인이 조직폭력배를 적극적으로 비호하거나 사건을 축소할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한 피소청인의 처분 사유 부분과 기타 소청인에게 존재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해 보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9. 직장이탈 및 직속상관 폭행(해임→강등)

처분요지 : 점심식사를 하면서 음주를 하고 14:30경 사무실에 복귀하였고, 직속상관 ○○과장에게 시비를 걸고 1회 폭행하여 전치 2주의 턱 염좌상을 가한 비위로 해임 처분

소청이유 : 점심식사 주체가 선임인 C계장이고 소청인도 주량 및 귀청시간과 관련하여 C계장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점, 상관 폭행은 사소한 언쟁 끝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 약 23년간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의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말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폭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폭행 직후 과장에게 사과한 점, 피해자도 소청인에 대해 형사처벌 및 중징계는 바라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간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등을 감안하여 감경 결정

사 건 : 2013-443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지방검찰청 6급 A

피소청인 : 검찰총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13. 7. 1.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강등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검찰공무원으로서, 2013. 5. 7. 12:00경 ○○지방검찰청 ○○지청 ○○과 ○○계에 근무하는 ○○서기보 B의 생일을 축하해 주기 위해 같은 계 소속 ○○주사 C, ○○주사 D, ○○서기보 E, ○○서기보 B등과 같이 청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점심을 하면서 소주 3병, 맥주 4~5병을 나눠 마시고, 같은 날 14:30경 청에 복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였고,

2013. 5. 7. 14:40경 ○○지방검찰청 ○○지청 ○○과 ○○계 사무실 앞 복도에서, ○○계 창고 내에 개인적으로 비치하여 두고 이용해 오던 소청인의 안락의자를 치우라고 지시하였다는 이유로 ○○과장 F(5급)에게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전치 2주의 좌측 턱 염좌상을 가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사건 당일 11:00경 C선임계장이 B수사관의 생일 축하 겸 점심자리를 같이 하자고 하여 선배의 말을 거역할 수 없어 점심 식사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고, ○○계 직원 8명이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낙지매운탕에 소주 3병과 맥주 4병을 나누어 마셨으며, 12:50경 G등 직원 3명은

청에 먼저 들어가고 나머지 직원들은 C계장이 술을 조금 더 먹자고 하여 남아서 13:30경까지 술을 더 마시게 된 것이고, 13:50경 택시를 호출했는데 택시가 14:10경이 조금 넘은 시간에 도착하여 이를 타고 귀청하게 된 것이며,

F과장을 폭행하게 된 경위와 관련해서, 소청인은 사건 당일 C계장이 과장이 의자를 치우라고 한다는 말을 하여 과장이 의자를 치우라는 지시를 하였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으나 과장으로부터 의자를 치우라고 직접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고,

사건 당일 점심을 먹고 청사에 도착하였고 공무원증이 없어 사무실에 들어갈 수 없게 되자 문을 좀 세게 두드리게 된 것이며, 누군가 문을 열어 주어 복도에 들어서자 F과장과 마주치게 되었는데 왜 시끄럽게 소란을 피우냐고 언성을 높여 소청인은 당황하였고 막내아들 문제로 예민해져 있던 터라 소청인도 언성을 높이며 “문을 열어 달라고 한 것뿐입니다.”라고 하였고, 과장은 “계장이 과장한테 이렇게 소리를 질러도 되는 겁니까?”라고 언성을 높였고, 언쟁 끝에 안락의자 이야기도 나와 소청인이 “너무 하신 것 아닙니까?”라고 소리를 지르자 과장이 큰 소리로 “뭐가 너무해요, 소란을 피우면 당연히 과장으로서 훈계해야 합니다. 똑바로 하세요.”라고 언성을 높이면서 소청인에게 덤빌 듯이 바짝 다가왔고, 그때 소청인은 순간적으로 F과장이 직속상관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우발적으로 오른손 주먹으로 F과장의 왼쪽 턱을 1회 때리게 된 것인바, 항명을 하거나 명령을 어겨 대든 상황이 아니었고 말다툼 끝에 사사로운 흥분으로 인한 우발적·순간적 행동이었으며,

1회 가격 후 직원들이 말려 더 이상의 몸싸움은 없었고 얼마 후

소청인이 과장에게 사과하여 과장도 이를 받아들였으며, 사건 다음날도 과장에게 사과를 하자 다친 데도 없고 아프지도 않다고 하였고, 사건 이틀 후에도 과장에게 죄송하다고 하였으며 F과장도 “제가 처벌의사가 없으니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하였으나,

H과장이 “청·차장님이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하여 어쩔 수 없이 2013. 5. 11. 진단서를 발급 받아 ○○계장에게 제출하였다”라고 하였는데, 2차 피의자 신문조사를 받고 나서 F과장의 진단서 제출로 인하여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가 아닌 상해죄로 처벌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징계위원회는 징계가중 규정을 적용하여 해임 의결을 하였으나 본 건 징계사유인 음주행위 및 직장이탈과 직장 내 상급자 폭행의 관계는 시간적 근접성, 음주행위가 폭행 발생 과정에 미친 영향을 감안하면 이는 ‘서로 관련이 없는 비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가중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검찰공무원에 대하여는 법규성을 지닌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검찰청 예규)’에 징계양정기준을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른 징계양정보다 동 지침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당일 소청인과 피해자는 서로 화해를 하였고, 피해자는 형사적 처벌 불원의를 밝히고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것도 원치 않고 있는 입장인 점, 본 건은 폭력행위 및 구약식 기소(벌금 100만원)에 해당하므로 견책-감봉에 해당하고, 가사 폭력행위의 경우 구약식 기소 시 적용되는 징계양정기준이 견책이 아니라 감봉이 타당하더라도 이를 1단 가중하는 경우에 정직이 적정한 징계양정이라 할 것인바, 본 건 해임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므로, ○○부장관표창 등을 수상한 점, 약 23년간 성실히 근무하여 징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직장이탈 및 음주행위 부분과 관련하여 살펴보건대, C계장은 각자 원하는 사람에 한해 생일 축하 건배를 하였고, 소청인의 이야기를 들어 주다 보니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다고 진술하고, E·B는 소청인을 포함한 세 명의 계장들이 술이 남았으니 조금 더 있다가 가자고 하여 점심 시간이 넘어서까지 식당에 머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C계장의 제안으로 음주를 하게 되었다거나 늦게 귀청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설령, C계장의 제안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러한 사정이 본 건 비위에 대한 참작사유는 될 수 없고, 소청인의 근무경력, 직급 등을 감안할 때 음주를 자제하고 제때 사무실로 복귀하는 것이 바람직한 처사였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직속상관 폭행 부분과 관련하여 살펴보건대, 소청인 및 직원들 진술에 의하면, 소청인은 음주 후 14:40경 사무실로 복귀하면서 사무실 앞 복도에서 우연히 직속상관인 F과장과 마주치자 C계장에게 창고에 있는 소청인의 안락의자를 치우라고 한 것에 대해 큰 소리로 따지면서 과장의 얼굴을 1회 폭행하였다는 것인바,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과장에게 큰 소리로 따지면서 폭행한 소청인의 행위는 검찰조직의 위계질서를 크게 손상시킨 행위로써 어떤 이유로든 용납하기 어려운

비위라 할 것이고, 그 정도가 매우 중해 보인다.

다만, F과장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폭행이 발생한 측면이 있어 보이고, 본 건 외에 유사 비위 전력이 없는 점은 참작의 여지가 있다.

징계 가중사유 및 징계양정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징계의 가중)에서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청인은 직원 생일을 축하해 주기 위해 점심시간을 넘어서까지 사무실 밖에서 음주하는 비위를 저지르고, 이후 사무실로 복귀하다가 우연히 마주친 F과장에게 소청인의 의자를 치우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따지는 과정에서 폭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비위 발생 경위, 비위 행태 등을 감안하면 직장을 이탈하여 음주한 행위와 직속상관 폭행은 각각 별개의 비위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므로, 징계가중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징계위원회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등에 따른 징계양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의결 할 수 있고, 소청인의 직속상관 폭력행위는 조직의 위계질서를 손상한 비위로써 상기 지침에 따른 단순 ‘직장 내 폭력행위’로 보기 어렵다.

4. 결 정

소청인은 고도의 도덕성과 성실성이 요구되는 검찰공무원으로서

적지 않은 양의 음주를 하고, 14:30경 사무실로 복귀하는 등 직장을 이탈한 점, 또한, 창고에 있는 소청인의 안락의자를 치우라는 ○○과장의 지시에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큰 소리로 따지면서 얼굴을 1회 폭행하였고, 이로 인해 상해죄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점, 직속상관을 폭행한 행위는 검찰조직의 위계질서를 크게 훼손한 비위로써 어떤 이유로든 용납하기 어려운 중한 비위에 해당하고, 조직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해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되어 한 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은 중한 처분을 면하기 어려우나,

○○과장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폭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폭행 직후 과장에게 사과한 점, 본 건 외 유사 비위 전력이 없는 점, 폭행 피해자인 ○○과장도 소청인에 대해 형사처벌 및 중징계는 바라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약 22년간 징계 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점, 감정대상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소청인의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배제 징계는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0. 개인정보 사적 조회(감봉1월→기각)

처분요지 : B 등 2명에 대해 개인정보를 사적 조회하고, 개인정보 사적조회 건을 무마할 의사로 조회 대상자에게 허위 진술서 작성을 부탁한 비위로 감봉1월 처분

소청이유 : 근무 중 노숙자처럼 보이는 C가 어디에 사는지 확인 하려고 특정조회를 한 것이고, B는 실성한 것처럼 보인 다는 일반신고가 있어서 가출인 인지 확인하여 가족에게 인계하기 위한 업무상 조회로 근무수첩에 조회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했으나 인정되지 않았고, B를 봤다는 목격자의 진술이 있었으나 정확하지 않아 자술서를 폐기 하여 제출하지 않았던 것이지 사적조회를 무마할 의사로 진술서를 부탁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므로 원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3-509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2013. 4. 27. 14:55경 순찰근무를 종료하고 귀소하여 경찰온라인 포털조회 시스템에 연령미상의 50대 여자 B의 성명과 추정연령을 입력하고 동명이인을 순차적으로 검색하는 방법으로 7회, 같은 날 20:25경 재차 위 B에 대하여 4회, 같은 달 29. 03:17경 야간근무를 하면서 또 다시 4회 등 도합 15회에 걸쳐 특정조회를 하고,

2013. 4. 27. 14:50경 연령미상 40대 남자 C의 성명과 추정연령을 입력하여 순차적으로 검색하는 방법으로 8회, 같은 날 20:23경 재차 6회, 도합 14회 특정조회를 하는 등 총 29회 업무목적 외 사적용도로 조회하는 등 지시명령을 위반하였고,

2013. 6. 18. 개인정보 사적조회를 무마할 의사로 주민에게 특정조회 하였던 B와 C에 대하여 신고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진술서 작성을 부탁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위신을 실추한 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지방경찰청장 2회 표창 등 총 13회의 표창을 수상한 경력 등 제반 정상참작 사유를 적용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근무 중에 ○○공원에 노숙자처럼 보이는 C라는 사람이

신분증도 없고 성명만 이야기하여 어디에 사는지 확인하려고 특정조회를 한 것이고,

B는 2013. 4. 27. 14:05경 ○○고등학교 앞에서 웃으면서 실성 거리고 다닌다는 일반신고를 한 여자가 있었는데 이름만 말하고는 지나가버려 혹시 가출인은 아닌지 앞으로 B에 대한 신고가 있으면 가족에게 인계할 목적으로 조회한 것으로,

2명에 대하여 총 29건의 조회를 한 것은 업무목적 외 사적용도로 조회한 것은 아니라고 외근경찰관이 소지하고 다니는 근무수첩에 기재된 2명에 대하여 조회사유를 복사하여 제출하였음에도 인정되지 않았으며,

또한, 소청인이 개인정보 사적조회를 무마할 의사로 주민에게 허위 진술서 작성을 부탁했다고 하나, B라는 사람을 본 주민이 있는지 확인 하던 차에 2~3번 본 적이 있는 주민에게 자술서를 받았으나 B인지 다른 사람인지 정확하지 않아 자술서를 폐기하여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적조회를 무마할 의사로 진술서를 부탁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2명에 대하여 29회 특정조회를 한 것에 대해 사적용도로 사용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봉1월은 너무 과한 처분으로 본 건 발생이후 소청인이 받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개인정보 사적조회 관련, 소청인은 C에 대한 조회는 어디서 거주 하는지 확인하고자 조회한 것이었고, B에 대한 조회는 가출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회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신고를 받고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업무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근거가 되는 기록인 순찰차 근무일지 등에 신고처리 기록이 없는 점, 소청인이 신고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시간대의 순찰차 동승자인 동료경찰이 2건 모두 전혀 기억이 나지 않으며, 신고처리 기록을 2건이나 기록하지 않을 가능성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B에 대한 조회는 시간대와 날짜를 달리해서 3회 반복조회 하였고 C에 대한 조회는 시간대를 달리해서 2회 반복조회 한 점, 소청인이 관련 신고내용을 근무수첩에 기재했다고 하나, 날짜순으로 기록을 하다가 C, B에 대한 신고내용만 수첩 뒷부분에 별도로 기재된 점을 보아 소청인이 감찰조사 후 추가로 허위 기재했을 가능성이 농후한 점, 소청인이 신고와 관련, 주민들에게 허위 진술서를 작성해달라고 부탁한 사실로 보아 사적조회한 사실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수행 목적으로 조회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개인정보 사적조회를 무마하기 위한 허위진술서 작성 부탁 관련, 소청인이 2013. 6. 18. 감찰조사 시에 B에 대한 신고 목격자, C에 대한 신고자를 찾아 진술서를 받아 소명자료로 제출하겠다고 진술하였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서 B 관련 신고 목격자인 D를 상대로 진술서 작성 경위를 조사한바, D가 소청인의 부탁을 받고 허위로 진술서를 작성한 점을 알게 되었고,

위 사실이 드러난 후 6. 19. 감찰조사 시에 소청인이 스스로 “목격하였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허위로 진술서를 부탁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소청인이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았던 것은 감찰부서에서 참고인이 진술서를 작성한 경위를 조사한 이후 허위 진술서임을 인지하여 소청인의 진술서 부탁 사실을 감추고자 했던 행위로 추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 처분의 적정성에 대해 살펴보면, 소청인은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위반하고 2명에 대해 총 29회에 걸쳐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비위가 인정되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취급 권한을 부여받아 누구보다도 엄격하게 개인정보를 다뤄야 할 경찰공무원으로서 의무위반 행위를 하여 조직전체의 위신을 실추시킨 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경찰내부의 강도 높은 지시 및 지속적인 교양이 있어온 점, 향후 재발을 방지하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는 점,

또한, 사적 조회를 은폐하고자 근무수첩에 신고내용을 허위로 기재 하여 소명서를 제출하고, 적발 후 주민들에게 허위 진술서 작성을 부탁 하는 등의 행위로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킨 점, 비위가 경합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같은 경찰서 ○○과 근무 당시 2013. 6. 9. 01:50~02:40까지 온라인 포털 조회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모 및 외사촌으로 추정되는 B, C 등 5명의 주민(특정조회 포함)·운전면허 등의 개인정보를 총 53회에 걸쳐 사적으로 조회하였고,

2013. 6. 13. 당직근무 중 ○○지구대에서 순경 D의 ID·PW를 이용하여 01:33~01:38까지 위 같은 방법으로 이모 및 외사촌으로 추정되는 E, F, G 등 4명의 주민·운전면허·차적 등의 개인정보를 총 8회에 걸쳐 사적으로 전산조회를 하는 등 총 9명을 대상으로 61회에 걸쳐 주민·운전면허·차적을 조회하여 경찰정보통신 운영규칙을 위반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등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2,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소청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고 가족을 찾는다는 목적으로 한 행위에 대해 참작해 달라고 변소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연락이 되지 않는 연로한 이모님을 찾아보라는 친형의

당부 말에 ○○경찰서 민원실 ‘헤어진 가족 찾기’ 담당자에게 문의하였으나, “직계가족이 아니면 헤어진 가족 찾기의 접수를 받을 수 없고, 경찰관 신분을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조회하는 것은 문제만 되지 않으면 된다”는 답변을 들었고, ○○구청에 들러 이모를 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지만, 생모(H)의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었기에 이모(B)의 이름만으로 관계 증명서류를 찾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듣게 되어 전산조회를 하게 된 것이며,

본 건 소청인의 전산조회는 ‘헤어진 가족 찾기’를 위한 것으로 국민의 고충과 고민을 풀어주는 경찰업무 수행의 일환이므로 사적조회가 아니며, 친척을 찾기 위한 조회로 외부 유출 목적이 없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의 목적외 용도 활용 및 오용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며, 조회 대상자의 성과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어 불가피하게 전산조회 횟수가 많을 수 밖에 없었던 점, 14년 2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여러 차례 표창을 받은 바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본 건 전산조회는 ‘헤어진 가족찾기’를 위한 경찰 업무수행의 일환이므로 ‘사적조회’에 해당하지 않으며, 친척을 찾기 위한 조회로 외부 유출 목적이 없었으므로 개인정보의 목적외 사용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목적외 용도로 사용 및 유출은 엄격히 금지되고, 「경찰정보통신 운영규칙」 제51조에 따르면

전산자료 조회는 경찰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고, 저장중인 모든 자료는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열람 및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헤어진 가족 찾아주기’는 경찰관서 민원실 소관업무로, 관련 업무 담당자를 지정, 이에 관한 개인정보 조회 권한을 부여하여 업무를 수행케 하고 있어, 경찰관이 본인의 가족 찾기를 원할 경우에도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소청인은 동 업무의 담당자도 아니고, 헤어진 가족찾기 신청 절차도 없이 동료 경찰관의 ID로 직접 조회를 실시한 것이며, 동 업무의 신청대상이 ‘민법상 가족’으로 한정하고 있어 찾고자 하는 이모·이종사촌들이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알고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전산조회를 한 것이므로, 이러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친척을 찾기 위한 조회로 외부 유출 목적이 없었으므로 개인정보의 목적외 사용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개인정보의 조회에 부정한 의도나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소관 경찰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사적인 경우라면 조회사실만으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인바,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 정

소청인은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위반하고 9명에 대해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비위가 인정 되고,

온라인 포털조회시스템 접근 권한이 없음에도 타인의 ID·PW로 접속하였고 소관업무 목적외 용도로 개인정보를 조회한 점, 헤어진 이모를 찾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나 민원실에 문의하는 등 적법한 방법을 찾아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보다도 엄격하게 개인정보를 다뤄야 할 경찰공무원이 의무위반 행위를 하여 조직전체의 위신을 실추시킨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다만, 부정한 의도나 목적이 아닌 연로하신 이모를 찾기 위한 것 이었다는 점, 2012. 9. 19. 경찰청 하달 ‘개인정보의 유출 및 사적조회 등 처리기준’에 따르면 견책 상당에 해당하는 점, 경찰청장 표창 2회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할 때, 본 건 징계를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2. 근무지 이탈 및 물의 야기(감봉1월→견책)

처분요지 : 자원근무 중 4회 136분, 주간근무 중 1회 199분 등 총 5회에 걸쳐 335분간 근무지 이탈 및 근무결락하였고, 2013. 2. 19. 16:43 자원근무 중 불건전 이성문제로 처와 다툼 중 경찰관이 폭행한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된 비위로 감봉1월 처분

소청이유 : 근무지 무단이탈은 처 대신 집안일 등을 처리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웠던 것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소청인과 관계가 소원해지자 소청인의 처가 협박하기 위해 허위로 112신고한 행위였던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근무결락한 시간이 짧다는 점, 처가 112에 소청인이 폭행하였다는 신고 내용은 허위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감경 결정

사 건 : 2013-595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13. 9. 3. 소청인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 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뿐 아니라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순찰팀장으로서 팀원들에 대한 근무감독 및 현장지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원근무 중 4회 136분, 주간근무 중 1회 199분 등 총 5회에 걸쳐 335분간 근무지 이탈 및 근무결락하였고,

2013. 2. 19. 16:43 자원근무 중 ○○공원 노상에서 소청인 소유의 승용차량 내에서 불건전 이성문제를 항의하러 온 처와 다투던 중 경찰관이 폭행한다는 내용으로 112신고 되어 물의를 야기한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의 주거지는 근무하던 ○○지구대와 약 3분 정도 소요되는 경계에 있는데, 지원근무 중 주거지를 방문한 사유 4회는 보험회사에 입사하여 교육중인 처를 대신해 아파트 수도고장 신고, 처가 구입한 중고 소파를 집에 옮겨 놓기 위한 것, 처가 운행하는 차량이 눈 때문에 미끄러져 이동할 수가 없다하여 이동 주차를 하기 위한 것, 처의 차량 부속물 분실 신고를 대신해주기 위한 것 때문이었고, 주간근무 중 6분은 처가

눈이 많이 와서 차량 운행을 할 수 없다고 하여 물건을 대신 집에 가져다 놓으라고 해서 방문했던 것이고, 같은 날 193분은 처가 구매한 인조 조형물 조립을 부탁하여 조립하다가 시간이 오래 걸려서였고, 부득이하게 빠른 시간 내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직무에 전념해야겠다는 일념으로 일시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하는 과오를 범한 것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2013. 2. 18. 처가 소청인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처음 두 번은 볼 일 때문에 받지 못하고 세 번째에 반자 왜 전화를 받지 않느냐 따지며 큰 소리를 질러 옆에 지인도 있어 전화를 끊어버리자, 다음날 오전 소청인이 근무하던 지구대로 찾아와 오전 근무를 마칠 때까지 돌아가지 않고 있다가, 소청인의 차량에 승차하여 소청인 명의인 현거주지 아파트를 처의 명의로 이전해 주고 현금 4,000만원을 요구하며, 욕설을 하고 차량 내에 침을 뱉으며 물건을 던지는 행패를 부리자 소청인이 그만두라고 제지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하였다고 112에 신고한 것이며, 사건 발생 당시 ○○지구대로 동행하였을 때 폭행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고,

소청인은 처를 지인의 소개로 만나 약 6개월간 사귀다가, 이후 혼인 신고를 하여 같이 거주하면서도 처가 술을 마시면 욕설 등 폭언을 일삼았고, 경제적인 문제로 소청인과 처의 관계가 더 나빠져 합의하에 별거하기로 하고 이후 3개월 이상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다가 다시 만나기 시작하였으나 과음을 하면 과거의 행적이 다시 나왔고,

현재 처가 소청인의 약점을 잡기 위해 일부러 일을 저질렀다고 고백하였고 이는 처의 자필 진술서에도 기록되어 있으며 청문감사실 조사 시에도 진술하였다고 하였으며, 처는 112신고한 다음날 야간 근무 때에도 술에 취해 소청인의 근무지로 찾아와 주차된 소청인의 차량을 손괴(약

274만원)하고 약 5시간에 걸쳐 다수의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 사실이 있어 팀장의 직책도 직위해제가 되었고, ○○경찰서로 인사 조치되어 장시간 출퇴근하면서 많은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먼저, 소청인은 빠른 시간 내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직무에 전념해야겠다는 일념으로 근무 중 잠깐의 시간을 이용하여 처가 요청한 가사 일을 돕기 위해 일시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소청인은 지역 치안 유지를 담당하는 지역 경찰관이면서 순찰팀장으로서 근무지를 이탈하고 순찰 및 상황 등 지정된 근무를 결락하여 그 비난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 처가 요청한 일들은 차량 이동 등 사소한 일들로서 근무를 결락하면서까지 긴급히 처리하여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근무지를 이탈하고 근무 결락한 것은 공무원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복무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소청인의 차량 안에서 처가 현금 등을 요구하며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112에 신고한 것이고, 사건 발생 당시 ○○지구대로 동행하였을 때 폭행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소청인이 주장대로 사건의 경위가 그렇다할지라도 처로부터 112에 신고되어 물의를 야기한 점, 소청인의 폭행 여부는 감찰 조사 시에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본건 징계사유도 아니라는 점, 처가 사건 당일 자신의 근무지에 찾아와 다수의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다른 여자와의 이성관계를 말하면서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소청인의 불건전 이성관계의 사실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평소 소청인의 처신이 부적절하였다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근무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는 경찰관이고, 특히 팀원의 순찰 및 근무상황을 감독해야할 위치에 있는 순찰팀장임에도 불구하고 근무지를 이탈하고 순찰·상황 등 지정 근무를 결락하여 근무 태만한 비위가 인정되는 점, 불건전한 이성교제 등으로 처가 112에 신고하는 등 물의를 야기하여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다만, 근무 결락한 5회 중 2013. 2. 7. 12:57~13:05(8분) 및 2013. 2. 4 13:23~13:29 (6분)의 2회는 근무결락한 시간이 짧다는 점, 처가 112에 소청인이 폭행하였다는 신고 내용은 허위라는 점, 그간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국무총리, 경찰청장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본건 징계를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2013. 6. 3.(월)부터 6. 11.(화)까지 7일간 휴가를 상신하여 지휘관의 결재를 얻고 ‘○○’에서 해외여행 중,

2013. 6. 11. 18:31경 같은 소속의 서무 업무를 담당하는 순경 B에게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로 귀국행 비행기가 결항되었다고 거짓말을 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순경 B로 하여금 추가로 연가를 상신(2013. 6. 12.)하도록 한바 정당한 사유 없이 허위로 연가를 1일 연장하였고,

거짓 사유로 휴가기간을 연장한 것이 종료되었음에도 아무런 보고 없이 출근일인 2013. 6. 13.(목)에 무단결근을 하였으며,

소청인의 무단결근으로 소청인에게 부여 예정이었던 근무에 차질이 있었던 점, 경찰공무원의 해외여행 중 연락두절로 ‘피습, 납치’등을 염두에 두고 ○○주재 영사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그 파장 또한 컸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반되며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성실히 근무해온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상훈 감경) 제1항에 의한 징계양정 감경기준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 여행 당시 허위사유를 들어 휴가를 1일 연장하고 1일 무단결근한 사실에 대하여 그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2013. 6. 11. ○○에서 만난 현지인 여성이 ○○ 관광을 시켜주겠다고 하여 휴가를 하루 더 연장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불가피하게 휴가를 연장(2013. 6. 12.)하는 과정에서 그에 맞는 사유가 떠오르지 않아 한 순간의 판단 잘못으로 허위 사유를 이야기한 것이지고의로 허위보고를 한 것은 아니며,

2013. 6. 13. 무단결근한 것은 같은 해 6. 12. 귀국행 비행기를 타러 공항으로 가던 중 ‘휴대전화, 신분증, 현금, 여권사본’이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되어 휴대전화와 신분증이라도 찾아야 할 것 같아 현지인 여성과 함께 ○○시내를 돌아다니며 찾아보느라 시간이 지체되었고, 결국 분실물을 찾지 못한 채 다시 공항으로 가는 도중 해당 여성이 병원에 들르고 교통체증도 심하여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감찰조사 시 2013. 6. 12. ‘신분증, 현금, 휴대폰, 여권 등을 분실’ 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중요한 소지품 등을 분실하였다는 뜻이지 고의로 ‘여권 사본’이 아닌 ‘여권’을 분실하였다고 진술한 것이 아니며, ‘여권을 분실하여 탑승할 수 없었다’거나 ‘여권분실로 항공사에 협조요청을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은 없고, 소청인은 당시 상황에 대하여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였을 뿐 진술을 번복하거나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고,

소청인이 근무하던 ○○기동대의 인원은 100여명으로 대체근무가 가능하여 소청인이 결근을 하였더라도 근무에 차질이 있는 것은 아닌 점,

경찰관 근무기간 동안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등 총 4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허위 연가 신청 관련하여, 소청인은 이미 7일의 휴가(2013. 6. 3.~6.11.)를 사용하여 총 9일간 ○○ 여행을 한 상황이었으므로 현지인 여성과 하루 더 ○○ 관광을 하는 것이 휴가를 1일 연장하여야만 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이지 아니하고,

소청인이 탑승하기로 되어 있던 비행기는 결항된 사실이 없음에도 소청인은 비행기 탑승시간 약 5시간 50분 전인 16:30경(현지시간) 공항에 가보지도 않은 채 비행기 결항을 이유로 휴가 연장을 요청한바 고의성이 인정되며, 법정연가일수 범위 내에서 연가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임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무단결근 사유 및 ○○에서의 행적에 대한 진술 관련, 소청인은 2회 감찰조사 시 2013. 6. 12. 저녁 무렵 공항에 도착한 후 ‘여권, 휴대폰, 신분증(면허증), 현금’ 등을 분실한 사실을 인지하여 ○○항공사 직원에게 ‘여권 등’ 분실에 대하여 상담하였다고 진술하고, 여권 등을 분실하였음에도 대사관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감찰관에게 마치 여권을 분실하여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한 것처럼 진술하였고,

청문감사관실에서 ○○항공사에 문의한 결과 2013. 6. 12. 22:40경 전후에 소청인으로부터 여권 분실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았다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이를 추궁하자, 3회 감찰조사에서 실제로는 여권이 아닌 ‘여권 사본’을 분실한 것이었고,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한 이유는 여권분실이 아니라 공항에 늦게 도착했기 때문이라고 진술을 번복한 바, 소청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결여되고,

나아가 소청인은 감찰조사 시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하게 된 정황에 대하여만 언급하고 ○○기동대에 사전 연락 및 보고를 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는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청심사 시에도 이에 대하여 적극적인 해명을 하지 않으며 주요 쟁점을 회피하고 있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반되며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본 건의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은 ○○ 여행 시 허위사유를 들어 2013. 6. 12. 휴가를 1일 연장하고, 연장한 휴가가 종료되었음에도 2013. 6. 13. 아무런 연락 없이 무단결근한바,

정해진 근무시간을 지켜 성실히 복무하는 것은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기본적인 의무에 해당하는 점, 의무위반행위를 할 만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여행 후 일정 시간이 지난 것을 감안하더라도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되어 신빙성이 결여되고 주요 쟁점에 대하여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소청인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하여 행정력이 낭비되고 해외여행 중

경찰관 피습·납치 가능성으로 ○○ 주재 영사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동료 경찰관과 경찰조직에 큰 피해를 입힌 점, 예정되어 있던 근무에 차질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4. 검찰수사 회피 목적으로 직장 무단 이탈(파면→기각)

처분요지 : 뇌물공여 혐의로 ○○지검으로부터 수사를 받아 오던 중 병가를 실시하고 또 다시 우편으로 병가를 1개월 연장 신청하여, 처분청에서 병가 불허와 직장복귀를 명하는 메시지 및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음에도 직장에 복귀하지 않은 비위로 파면 처분

소청이유 : 소청인이 ○○지방경찰청 ○○과 재직 시 구속 수감한 B가 소청인에게 양심을 품고 보복하기 위해 허위, 날조된 진술을 가지고 검찰에서 무리하고 위법한 수사를 진행 하였으므로, 소청인의 방어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등 직장에 정상 출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실제적인 진실은 법원의 재판결과에 따라 유·무죄를 판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원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3-52 파면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지방경찰청 경감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2. 6. 26.부터 ○○지방경찰청에 대기 중인 자로서, 2012. 6월 초순경 뇌물공여 혐의로 ○○지검으로부터 수사를 받아 오던 중,

2012. 6. 18.~7. 17. 간 어깨통증 및 요추추간판탈출증의 병명으로 병가를 실시 후, 병가가 종료되었으면 직장에 복귀하여야 하나 아무런 연락 없이 다음날인 7. 18. 우편으로 병가를 1개월 연장 신청하여 이를 불허하고 소청인에게 병가 불허와 직장복귀를 명하는 메시지 및 내용 증명서(2012. 7. 19.)를 발송하였음에도 직장에 복귀하지 않고 아무런 연락이 없는 등 2012. 7. 18.부터 현재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무단이탈 하였고, 이는 검찰 수사 회피 목적으로 도피한 것으로 판단 되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경찰청장 표창 등을 수상한 공적과 20여 년간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여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엄중 문책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지방검찰청 ○○부의 B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소청인이 2011년 ○○지방경찰청 ○○과 재직 시 구속 수감한 B가 소청인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을 하기 위해 허위, 날조된 진술을 하였음에도, 검찰은 이러한 B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편파적이고 일방적인 짜맞추기식 위법수사를 진행하였고, 결국 검찰에서는 소청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수사를 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는바, 검찰의 위법한 수사로 인해 정신적·육체적 압박을 받는 상황이 지속되었던 것이며,

이와 같은 검찰의 무리하고 위법한 수사에 의해 소청인의 방어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등 직장에 정상 출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나 실제적인 진실은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라 유·무죄를 판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바, 소청인에 대한 징계처분은 부당하므로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검찰은 B의 허위 진술에만 의존하여 편파적인 수사를 진행하였고, 이러한 검찰의 수사로 인해 정신적·육체적 압박을 받았으며, 소청인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직장에 정상 출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법원의 재판결과에 따라 유·무죄를 판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본 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당시 검찰에서 뇌물수수 등 혐의로 소청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었던 점, 2012. 6. 22. 소청인은 뇌물공여 혐의로 지명수배 된 점, 검찰의 표적수사 등을 밝힐 수 있도록 병가를 허락해 달라는 취지로

○○지방경찰청에 보낸 소청인의 편지내용, 소속 상관이 소청인의 병가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음에도 2012. 7. 18.부터 징계의결일(2012. 9. 10.)까지 직장에 복귀하지 않고 연락두절 상태였던 점 등을 볼 때 검찰 수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도피하여 직장을 무단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바, 범죄를 예방·진압 및 수사하여야 할 경찰관의 신분이라는 점에서 소청인의 비위는 그 정도가 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

검찰에서 위법한 수사를 진행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자신의 혐의사실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사를 받아야 함에도 현재까지 검찰의 수사를 피해 도피 중인 것으로 보이는 바, 직장을 무단이탈한 경위 등에 참작할 사정은 없어 보이는 점,

소청인의 도피로 인해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소청인의 금품수수 혐의에 대한 형사상 유·무죄 여부는 수사회피 목적으로 직장을 무단이탈한 본 건 비위 책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본 건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본 건의 징계양정에 있어,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하며, 소속 상관의 허가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할 수 없음에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도피하여 직장을 무단이탈하였는바, 비위의 정도가 중해 보이는 점,

범죄를 예방·진압 및 수사하여야 할 사명이 있는 경찰관이 오히려 수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도피하는 등 직장을 무단이탈한 경위 등에 참작할 사정은 없어 보이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이는 점, 소청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우리 위원회 심사에도 출석하지 않는 등 소청인이 자신의 비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경찰청장 표창 6회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고, 20여 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5. 사전 허가 없이 지참, 외출 및 조퇴(감봉1월→기각)

처분요지 : 130일 동안 소속 상관의 허가 없이 지참 91일(48시간 30분), 외출 28일(33시간 10분), 조퇴 14일(9시간 47분)을 한 비위로 감봉1월 처분

소청이유 : 직장 무단이탈을 입증한 주차관리시스템의 입·출차 기록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기기 오작동 등으로 징계 처분의 증거로 사용되는 것은 위법하고, 외부 기관과 만나거나 외출을 해야 할 경우가 많은 업무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징계이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점을 참작 하여 원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3-484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대학교 조교 A

피소청인 : ○○대학교총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대학 조교로 임용되어 근무 중인 교육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하며, 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에 따라 휴가·지참·조퇴·외출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2012. 10. 2.부터 2013. 4. 8.까지 소속 상관의 허가 없이 지참 91일(48시간 30분), 외출 28일(33시간 10분), 조퇴 14일(9시간 47분)을 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주차관리시스템에 제공한 개인정보는 정기주차권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제공한 것이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의해 목적을 벗어나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단지 외부 차량과 구분 짓기 위해 제공한 개인정보를 소청인의 출결사항을 체크할 목적으로 이용한 것은 명백히 법을 위반한 행위로서 그 기록을 징계절차에서 증거를 사용할 수 없고,

징계평가 절차는 대상자 전원에 대해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차를 교내에 두고 퇴근하는 교직원은 차량 입·출차 기록되지 않고, 본 건과 같이 주차관리시스템의 차량출

입내역으로 출결상황을 파악한다면 차량을 이용하는 소수의 교직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객관적이고 공평하지 않아 매우 부당하며, 소청인이 지각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등 주차체크 기기의 오작동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하는 것 자체가 위법 부당하며,

소청인이 속한 실험실은 업무 특성상 실험상황을 수시로 살펴야 하고 분석이 종료된 이후에도 기기를 멈춘 후에야 퇴근이 가능하여 일과(오전 9시~오후 6시) 준수와 그다지 상관이 없어 출퇴근 시간은 큰 의미가 없으며, 실험실 조교에게는 시간외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음에도 주말에도 출근을 했고, 실제로 징계의결 요구서상의 기간에도 시간외 근무 시간이 총 163시간에 이르며, 소청인의 외출은 대부분 인근의 기관들을 업무상 방문으로 인한 것이었고, 점심시간 직후 외출로 기록된 것은 대부분 외부에서 분석 시료를 가지고 온 방문자, 엔지니어들과 시험 분석에 대한 의견을 나누면서 점심식사를 대접한 것이었고, 정부출연 기관 등 외부업체에 방문 홍보를 위한 외출도 적지 않았으며, 그밖에 20~30분이 소요된 외출의 경우는 실험실 용품구입을 위하여 직접 운전 하고 나가게 된 경우이고, 지금까지 출근시간과 관련하여 어떠한 경고도 받은 적이 없으며, 오히려 소청인의 복무를 감독하는 상급자인 B는 소청인을 성실한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실험실은 근무시간 변경, 유연근로제가 적용될 수 있는 전형적인 부서로서 소청인이 유연근무제를 신청하였다면 업무 특성상 당연히 승인되었을 것이고,

소청인은 밤샘 작업 시 대학원생들의 식대나 각종 세미나 참석 시 소요 되는 비용을 개인적으로 부담하면서도 애교심과 후배들을 위한 마음이 앞서 외부에 불만을 표시한 적도 없었고, 후배들을 위해 장학금을

서슴지 않고 내놓았으며, 소청인은 속해있는 실험실을 운영하면서 높은 실적을 거두었고, 이는 우수한 근무성적 및 장관 표창을 비롯한 각종 수상 실적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37년간 모교와 후배를 위해 일해 온 여정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수집한 주차관리시스템의 입·출차 기록은 징계처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② 주차관리시스템의 입·출차 기록은 기기의 오작동으로 인한 오류 가능성이 높아 신뢰할 수 없는 자료이며, ③ 본 징계처분은 소청인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④ 지난 37년간 모교의 발전과 후배들에게 기여한 업적을 외면한 처분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위 ①의 주장과 관련, 주차관리시스템에 제공한 개인 정보는 정기 주차권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제공한 것으로 직원들의 복무 점검을 위해 이용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목적외 사용이라고는 보여지나,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은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민사소송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대법원 1995. 5. 25. 선고 99다1789 판결), 소청절차 및 행정소송 절차에 있어 증거능력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 이론이 적용되므로 증거능력과 관련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위 ②의 주장과 관련, 소청인이 주차출입관리시스템의 오류 가능성이 높다는 근거로 제출한 2012. 10. 22. 09:16과 같은 날 09:18에 2회 지참한 것으로 기록된 사항은 ○○대학교 ○○과 공문으로 소청인의

차량이 2012. 10. 22. 9시 16분에 정문으로 입차하여 같은 날 9시 18분에 ○○주차장으로 좌회전하면서 ○○문측 리더기에 출자로 인식된 것으로 주차관제시스템 차량 인식에는 문제가 없다고 확인한 점, 설령 오류 사항이라 할지라도 이는 소청인이 추가 제출한 자료 4회를 포함하여 총 5회에 불과하므로 소청인의 비위 사실 전체를 부인할 정도로 오류가 많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위 ③의 주장과 관련,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서는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고 하여 직장 이탈 금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르면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외출 또는 「공무원 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소청인의 업무 특성은 별론으로 두더라도 소청인은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교육공무원이라는 점, 시험분석 업무처리 등 업무 특성상 오전 9시~오후 6시 복무가 어려웠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유연근무제 등을 신청하여 근무할 수 있었고, 소청이유에서 자신이 유연근무제를 신청하였더라면 승인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한 점, 복무 점검 기간 약 6개월 동안 지참 91일, 외출 28일, 조퇴 14일로 복무 위반 일수가 상당히 많고, 특히 지참 91일 중 월요일이

21일로서 소청인은 관련기관과의 회의 등을 이유로 지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일반적으로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 점, 비위 발생 시점에 ‘조교 복무 등 관리 강화 철저’ 공문 등 수차례에 걸쳐 복무관리 철저에 대한 지시를 받았음에도 의무 위반한 점 등을 살펴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위 ④의 주장과 관련, 소청인이 모교 발전 등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할지라도 복무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점,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비위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소행, 근무성적, 뉘우치는 정도, 징계요구한 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징계위원회의 재량행위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은 약 6개월 동안 소속 상관의 허가 없이 지참 91일, 외출 28일, 조퇴 14일 등 총 133일에 걸쳐 복무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며, 공무원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복무규정을 위반한 바 공직기강 확립 및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Ⅱ. 업무과실 및 직무태만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형사과에 근무 중이던 2012. 5. 6. 자신의 처가 휴대폰을 도난당했다는 말을 듣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토록 하거나 이해관계인의 직무를 회피하여야 함에도 자신이 직접 절도사건으로 인지하여 수사를 개시하고, 2012. 5. 7. 약 30여분 동안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피해자인 자신의 처가 감기몸살 및 동료 경찰관 대면에 따른 부담을 느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사건 내용대로 피해자 진술조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집으로 가져가 처에게 열람시킨 후 날인을 받는 등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고, 2012. 6. 12. 위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피해자 진술조서)를 절도사건 기록에 첨부해 ○○지방검찰청에 송치하여 허위작성공문서를 행사함으로써 직무고발되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뒤 검찰로부터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에 대하여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등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2,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21년 11개월간 근무하면서 징계전력이 있으나 경찰청장 표창 1회 등의 수상경력이 있는 점, ○○지구대로 인사 조치된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2012. 5. 6. 소청인의 처가 휴대폰을 도난당하여 전화를 수없이

했는데도 전화를 받지 않았으며, 당해 휴대폰은 전원이 꺼진 상태였고 아무런 연락이 없어 도난당한 장소에 가서 CCTV를 재생해봄으로써 불상의 여자가 휴대폰을 들고 나가면서 카드로 결제하는 장면을 확인 하였는바,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하여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지 않고서는 피해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사안으로 판단하여 2012. 5. 7. 소청인이 근무하는 ○○경찰서 형사과에 사건을 접수하기로 하였는데, 소청인의 처는 이번 일로 신경을 쓰면서 심한 감기몸살을 앓아 거동을 할 수가 없어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라, 부득이하게 치료부터 위 내용을 모두 위임받아 소청인이 본 건 일체에 대하여 사건접수를 하고, 소청인이 처의 명의로 진술조서를 작성한 후 이를 처에게 보여주고 도장을 날인 받은 것이지, 소청인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피해자진술조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2012. 5. 14.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피해품 만을 돌려받고 합의서를 작성·제출하였으며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처의 위임을 받아 피해자진술조서를 작성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부분은 소청인이 강력팀에서 근무한 경력이 얼마 되지 않아 업무가 미숙하여 처리절차를 간과하였다는 점, 단지 소청인이 처의 위임을 받아 피해자진술조서를 작성한 것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명확한 법률의 유보 없이 행한 처분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12. 9. 5. 민원인에게 진정으로 사과하여 민원인이 징계 철회를 요구한 점, 그동안 성실히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1회와 지방 경찰청장 6회 등의 표창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공직자의 청렴의무)는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같은 법 제8조 제1항은 “제7조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률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 행동강령(시행 2011. 2. 3. 대통령령 제22471호) 제5조 제1항 제1호는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피소청인의 이 사건 징계처분은 소청인이 위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문제 삼고 있으므로, 법률의 유보 없이 행한 처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소청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소청인은 처의 휴대폰 도난사건을 인지한 후 피해 발생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 등에 신고토록 하거나, 공무원 행동강령이 규정하고 있는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이 직접 당해 도난사건을 인지하여 수사를 개시한 뒤, 피해자(처) 출석 없이 마치 피해자가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것처럼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진술조서’를 작성하였으며, 이를 절도피의자에 대한 사건송치 서류의 증거자료로 첨부하여 행사함으로써 2012. 11. 27. ○○

지방검찰청으로부터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죄명으로 각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바,

이로 볼 때, 공무원 행동강령이 정하고 있는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에 관한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한 점, 처로부터 절도사건에 대한 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소청인이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해자(처)의 수임자 역할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실을 감춘 채 허위 내용으로 피해자진술소서를 작성하였다는 점, 비록 감찰조사에서 불친절 민원응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처리되기는 하였으나 처의 휴대폰 도난과 관련한 사건을 소청인이 직접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모친이 모욕을 당했다는 취지의 진정까지 제기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소청인의 비위 정도를 결코 가볍게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정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등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처의 휴대폰 도난사건을 직접 수사함으로써 공무원 행동강령이 정하고 있는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한 점, 이 과정에서 처의 피해자진술소서를 허위로 임의 작성하고 송치서류에 첨부하여 행사하는 등의 사실로써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1. 8. 4. 발생한 강도상해사건 피해자 B와 형 C로부터 첩보 입수하고 인지사건으로 수사한 사건담당자로, 위와 같은 강도상해 사건 첩보입수 당시부터 피해자인 B와 형 C로부터 이러한 체포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들어 알고 있었음에도 위 C 및 E를 상대로 사람을 체포한 이유 및 즉시 경찰에 인도하지 않은 이유를 조사하지 않았고, 불법체포·감금죄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형사입건 하는 등 수사를 개시하여야 함에도, D 등 4명의 소년범들의 강도상해사건만 인지사건으로 수사하고, C, E 등 2명의 성인들의 불법 체포 및 감금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를 개시하지 않았고,

2012. 8. 11. ~ 8. 17.까지 소년범 D의 부모로부터 수사요청을 수차례에 걸쳐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를 개시하지 않는 등 수사요청을 묵살하였으며,

2012. 8. 11. 10:30경 ○○서 ○○팀 사무실에서 피의자 D 등 4명의 소년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할 당시, 보호자가 입회를 하겠다며 수회 요청하였음에도, ‘보호자는 나가 있으라’며 정당한 입회요청을 거부하였으며,

재판이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G에 대한 수사업무를 담당하던 중인 2011. 5. 9.경 ○○경찰서 ○○과 사무실 내에서 위 G에게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구속될 것이다, 내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를 잘 아는데 그 분을 선임 하면 구속되지 않을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여, 위 G로 하여금 그 무렵 H 변호사의 사무직원인 I와 상담하게 한 다음, 2011. 5. 18. 위 살인 미수 사건에 관하여 H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도록 소개하여 ○○ 지방검찰청에 변호사법위반으로 입건되어, 2012. 7. 25.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던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나,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동안 성실하게 근무해온 점, 감경대상 표창이 3회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2012. 8. 9. 강도상해사건 피해신고를 하러온 피해자 B와 그의 형 C가 당시 피해경위를 진술하면서 피의자들을 불법체포하고 감금, 합의한 과정 등에 대하여는 이야기하지 않았고, 피의자 4명과 같이 출석한 피의자 D의 어머니도 위 사실을 진술하지 않았으나 이후 2012. 8. 12. J 경장이 피해사실을 확인코자 D의 부모와 전화통화 하는 과정에 이 부분에 대해 간략하게 듣게 되었지만 이미 강도사건의 조사가 끝난 상황에서 합의과정에 나타난 별건 피해사실을 수사하지 못한 것이며,

이후, 2012. 8. 12. 09:00경 D의 어머니가 J 경장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자신들의 피해내용에 대해 왜 들어주지 않느냐, 죄명이 강도 상해가 맞느냐'는 질문을 하여, J가 이런 사실은 처음 듣는 말이라고

하자 D의 어머니 또한 피해사실에 대해 이야기하려 했는데 하지 못했으며 약 10분간 통화한 사실이 있으며,

같은 날 11:00경 D의 아버지가 J 경장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였으나 받지 못하다가 이후 12:13경 전화를 걸어 통화하면서 본인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을 정리하여 팩스로 보내주면 확인하고 연락을 준다고 말하였으나 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2012. 8. 17. 고소장을 작성하였다는 연락을 받게 된 것이며,

2012. 8. 9. 20:30~21:30까지 보호자들 3명과 연락이 되었으며, 혐의사실 등 출석이유 통지하고, 진술거부권 등 방어권에 대하여 고지하며 보호자들의 문의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였으며,

2012. 8. 11. 10:00경 강력4팀 사무실에 피의자 조사를 하기 위해 피의자에게 질문을 하자 D의 어머니는 피의자들이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하면서 본인이 대신 답변을 하여, 답변을 제지하고 재차 피의자에게 질문을 하면 다시 답변을 못하게 막은 뒤 본인이 반복해서 답변을 하는 등 조사에 지장을 초래하여 강력4팀장, 강력계장의 지시에 따라 소청인이 피의자 D의 어머니를 대기실에 대기하라고 한 것인 바,

‘소년사건 수사 시 처리지침 준수 철저 지시’ 등에 따르면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보호자, 변호인 의 입회를 허용하여 공정성을 확보하라는 것으로 위와 같은 D 보호자의 진술방해 행위는 조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여 입회를 제한한 것이고,

본 건 강도상해 사건은 J 경장이 첩보를 받아 수사하면서 피의자 출석요구, 보호자 통화 등도 직접 하였기 때문에 소청인은 징계이유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일임에도 본 건이 소청인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여 이루

어진 것으로 본 건 징계 의결은 부당한 처사이고,

소청인은 2011. 4. 21. 발생한 살인미수사건 피의자 G에게 H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도록 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나, 당시 소청인은 동 사건을 수사하면서 살인미수사건임에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여 불구속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검찰에서 재지휘 의견이 떨어져 G에게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위한 피의자 신문을 하자 G가 겁을 먹고 형사변호를 잘할 수 있는 변호인을 선임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이후 소청인과 평소 친분이 있는 H 변호사 사무직원 I와 전화를 하던 중 G가 했던 말이 생각나 I에게 G와 상담해 볼 생각이 있냐고 물어보자 I가 상담해보겠다고 하여 G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던 것으로, 소청인은 이와 같은 일이 변호사법 위반이 된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한 일인바,

약 14년의 재직기간 동안 경찰청장 표창 등 다수의 수상경력이 있고, 5인가족의 가장으로서 이번 징계처분으로 경제적인 부담이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감찰조사 시, ‘피해자 B를 경찰서 주차장에서 우연히 만나 오토바이를 매매하려던 중 강도피해를 당한 사실과 형인 C가 피의자들을 쫓아가 피해물건을 돌려받고 피의자 4명 중 2명과 합의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을 볼 때,

본 건이 강도상해 피해자가 피의자를 직접 체포한 일이므로 체포한 피의자를 경찰관에게 즉시 인도하였어야 하고, 코뿔이 부러져 전치

4주의 상해를 당한 피해자의 형이 피의자를 쫓아가 붙잡고, 합의금까지 받았다면 최소한 협박이나 폭력 등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점,

설혹, D의 부모와 통화하면서 처음 피해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범죄혐의를 인지하였다면 위 범죄수사규칙에 의해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들이 수사를 태만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

소청인은 검찰진술에서 ‘M이 고소장을 썼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형사님이 검토하여 달라고 하자, 고소장을 제출하면 제가 확인할 내용이고, 고소장을 제출할지 안할지의 부분은 아버님이 결정할 부분이다’라고 답변하였다고 하고, 이는 M의 입장에서는 소청인이 고소장을 제출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는 의미로 들려질 수 있고, 결국 M이 청문감사실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소청인이 M의 수사요청을 묵살한 것으로 보여지고,

본 건 강도상해 사건은 주차장에서 우연히 만난 B의 구두진술을 듣고 즉시 수사에 임하였음에도 D의 부모들이 수사 요청한 피해사실은 수차례에 요청에도 듣지 않고 팩스로 내용을 정리해서 보내라고 한 후 연락이 없자, 곧바로 본 건을 사건종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청인이 조사의 임의성에 의심받을 만한 방법을 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소청인은 2012. 8. 9. 16:00경 피의자 중 가장 나이 어린 D에게 나머지 공범 3명에게 연락을 취하고 보호자에게 말하라고 전화한 점, 통지 후 3시간 후인 19:00까지 거주지인 ○○에서 ○○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하여 결국 아무도 출두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소년범들이 미성년자인 점을 감안하면 당연히 보호자에게 직접 전화하여 출석요구 취지와

협조를 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임의로 위 피의자 출석요구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건은 미성년자들을 중범죄인 강도상해혐의로 조사한 사항인 점을 고려하면 당연히 보호자나 변호인의 입회하에 조사를 받도록 하여야 함에도 D의 어머니 N이 수회에 걸쳐 입회를 시도하고 입회요청을 하였음에도 묵살한 것은 소청인이 미성년자인 피의자에게 부당하게 수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변호사법 위반 관련하여, ○○지방법원은 동 비위에 대해 벌금 500 만원을 구형하고 불구속 처분한 점, 소청인도 피의자 G에게 H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도록 한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기타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청인은 국민의 권익과 공정한 법집행을 위해 힘써야 할 경찰공무원으로서, 강도상해 사건을 수사하면서 소년범의 보호자가 수회 입회를 요청하였음에도 묵살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무관련자에게 변호사를 알선하여 ○○지방법원에서 불구속 입건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품위를 손상한 점, 비위가 경합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8. 피의자 관리소홀(견책→불문경고)

처분요지 : 피의자 수사 후 피의자가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음을
유치장 직원에게 인계하지 않고 입감 시 신체수색에 입회
하지 않는 등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비위로 견책 처분

소청이유 : 사건 해결을 위해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었고, 신체수색을 해야 할 주책임자인 유치인보호관 보다
가혹하게 처분한 징계양정은 과하다고 생각되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원 처분의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공범 출석을 종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결과적으로
공범이 자진 출석한 점, 적극적으로 업무처리를 한 점
등을 감안하여 감경 결정

사 건 : 2013-184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13. 2. 13.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
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3. 1. 23. 강도상해 등 혐의로 유치장에 입감된 관련자

B를 수사하는 사건담당자로서, 출감된 관련자를 상대로 추가 수사를 하면서 공범 C의 출석을 종용하기 위해 관련자에게 휴대폰을 사용하게 한 후 유치장에 재입감하면서 관련자의 휴대폰 소지사실을 유치장 직원에게 인계하지 않고, 신체수색 시 입회하지 않는 등 조치를 소홀히 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 사유에 해당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13. 1. 25. 피의자 B의 공범 C에 대해 수사를 하게 되었고, 피의자 B를 통하지 않으면 공범 C를 검거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팀장에게 유선으로 유인 검거하겠다는 지휘 보고를 하였고, B의 처가 C의 전화번호가 저장된 B의 휴대폰을 가져와 B가 C에게 전화하였으나 ‘착신 정지’로 인해 통화가 되지 않아 B의 지인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C를 찾아줄 것을 부탁한 후 2013. 1. 25. 14:32경 B를 유치장에 입감하게 되었으며,

유치장 입감 시 “휴대폰을 집 사람에게 건네줘라”고 이야기 하니 피의자가 “C와 통화가 안 된 상태이고 다른 지인에게 부탁하였기 때문에 내일 다시 시도해 보겠다. 휴대폰을 유치장 직원에게 맡기겠다.”고 하여 피의자의 말도 일리가 있고, 입감 시 유치장 직원이 피의자에 대해 신체 수색을 할 것이기 때문에 유치장 개인사물 보관함에 영치하였다가 계속 수사토록 할 계획이었으며,

2013. 1. 26. 15:30경 피의자 B를 유치장에서 출감하여 피의자의 휴대폰으로 지인과 통화하여 공범 C의 소재를 파악해 달라고 하였고,

17:00경 C로부터 전화가 와서 출석을 종용하니 2013. 1. 28. 14:00경까지 자진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후 17:30경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하였는바, 소청인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유치장 직원이 피의자의 휴대폰을 반납 받아 개인 사물함에 보관하고 있다고 생각하였고,

2013. 1. 27. 10:00경 피의자 B가 유치실 모포 속에서 통화하고 있는 것을 유치인보호관 D 경위가 적발하여 휴대폰을 회수하였고, 피의자 B는 '2013. 1. 25.에 상의 안주머니에 휴대폰을 넣고 들어갔는데 유치장 직원이 신체검사를 형식적으로 하여 직원에게 휴대폰이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말을 하였고, 당시 통화내역을 확인해 본 바, 휴대폰이 유치장에 반입되면서 B를 포함하여 다른 유치인들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 어떤 증거인멸이나 다른 사건이 일어나지는 않았으며,

소청인은 유치장 입감 전 피의자 입감지휘서에 피의자의 특성 등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여 상황담당관 및 유치장 직원 모두가 피의자의 성향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하여 사전 유치장 사고에 대비하도록 적극적으로 업무처리를 하였고, 외근형사 2인이 피의자를 호송하여야 하나 E 경장과 F 순경은 형사 경력이 짧아 소청인이 항상 참여하면서 피의자 도주사고에 대해 나름대로 철저히 준비하였으며,

피의자를 입감하면서 신체수색을 하지 않았거나 피의자가 자해를 했던 당시 근무자에 대해서는 견책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하였음에도 소청인에게는 모든 1차 책임을 물어 감봉1월(경찰청장 표창으로 상계하여 견책 처분) 처분을 하였고,

소청인은 현 형사과 강력팀에서 7년간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하였고, 중요범인 검거 등 유공으로 경찰청장 표창 2회 등 총 16회에 걸쳐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피의자 B의 신병을 인수받아 수사하는 과정에서 11회에

걸쳐 시가 10,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범죄사실을 밝혔고, 공범 C, 장물업자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으며,

사건 해결을 위해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었고, 피의자가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치인보호관에게 이야기 해주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으나, 휴대폰을 반입하도록 동조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신체수색의 주책임자가 아닌 형사에게 모든 1차 책임을 물어 주책임자인 유치인 보호관 보다 가혹하게 처분한 이번 징계양정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되는바,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추가 수사 등을 위해 출감한 피의자에게 공범의 출석을 종용 하는 과정에서 유치장 반입금지물품인 휴대폰을 소지하게 하였으면 재입 감시 유치인보호관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야 하고, 경찰청 지시(유치인 보호관 현안 업무 지시, 2011. 7. 18.)에 따라 담당형사는 피의자 신체 수색 등 입감 완료시까지 입회하여야 함에도, 2회에 걸쳐 피의자를 재입감 하면서 피의자가 유치인보호관에게 휴대폰을 반납하겠다는 말을 하였고 유치인보호관이 신체수색을 하여 휴대폰을 회수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 으로 유치인보호관에게 피의자의 휴대폰 소지 사실을 알리지 않고 신체 수색 시 입회하지도 않았으며, 익일 다시 출감시켜 조사를 하면서 피의자가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해 확인하지 않는 등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비위가 인정되고,

피의자의 휴대폰 소지 사실을 알고 있던 소청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 였더라면 징계처분의 발단이 된 휴대폰 유치장 반입사건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본 건과 관련하여 소청인의 과실이 크다고 판단된다.

다만, 공범의 출석을 종용하는 과정에서 본건 비위가 발생한 점, 결과적으로 공범 C가 자진 출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최초 입감시 피의자의 특성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는 등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점 등은 참작의 여지가 있다 하겠다.

4. 결 정

소청인은 유치장에 입감된 피의자를 수사하는 사건담당자로서, 피의자를 출감시켜 추가 수사를 하면서 공범의 출석을 종용하기 위해 피의자에게 휴대폰을 사용하게 한 후 2회에 걸쳐 유치장에 재입감하면서 피의자의 휴대폰 소지사실을 유치장 직원에게 인계하지 않고, 피의자 신체수색 시 입회하지 않는 등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점, 관련자를 재출감하여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관련자가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해 확인하지 않는 등 안일하게 대처한 점, 결과적으로 반입금지물품인 휴대폰이 유치장 내로 반입되어 유치인들이 사용하는 결과를 초래한 점, 본 건 징계처분의 발단이 된 휴대폰 반입과 관련하여 소청인의 과실이 커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나,

공범 출석을 종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위인 점, 결과적으로 공범 C가 자진 출석한 점, 최초 입감 시 입감지휘서에 피의자 B의 특성을 상세히 기록하는 등 적극적으로 업무처리를 한 점, 감경대상 표창 등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소청인이 본 건을 거울삼아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인적사항을 대며 경찰관을 밀쳐 휴대폰조회기를 파손한 피의자 B(21세, 사기 등 21건 수배)의 신병을 인계받았으면 감독자로서 사건배당, 사건 담당 경찰관외 「도주방지 전담관」등 지정 및 경찰장구(수갑) 사용의 적절성, 피의자 도주방지를 위한 형사데스크 근무 등을 확인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위반하여, 2013. 8. 14. 05:34경 조사대기 중인 피의자가 감시 소홀을 틈타 수갑에서 손을 빼고 형사데스크에 설치된 출입문 잠금장치 스위치를 눌러 시정해제 후 도주하는 사건을 야기하였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되고,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대상자의 제반 정상과 수사경과 배제, 인사발령 조치 등이 내려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13. 8. 13. 18:00경부터 이 사건 당일 09:00경까지 데스크 근무자를 지정하였고, 소청인의 휴무로 인하여 팀장 직무대리자인 경사 C가 수사종합검색시스템(키스)의 사건 배당부에 경장 D를 사건 담당자로 지정하였으며, 형사데스크 근무일지에 따라 이 사건 당일 04:00부터 06:00까지 경사 C를 ‘도주방지 전담관’ 으로 지정, 수갑을 피의자의 왼손에 채우고 다른 한쪽 수갑은 보호실의 철제의자 모서리에 채워 피의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신병을 인치하는 등 업무 매뉴얼에 규정된 직무상의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였고, 피의자 도주사실을 사유 후 05:51경 사무실에 들어가면서 알게 되었음에도 이 사건 징계에서는

이에 대한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지 아니하였고,

00:03경부터 05:51경까지 숙직실 취침 및 세면 등으로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하였으나, 초과근무 운영지침,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휴게로 볼 수 있고 형사당직근무자를 전·후반 근무자로 나누어 휴무 시간을 가진 것은 약 10여년 전 부서의 관행이며,

소청인은 1차 감독자(직상)로 행위자가 경징계의 경우 ‘경고’ 처분, 중징계의 경우 ‘견책’ 처분을 하도록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정직3월의 중징계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한 것이므로,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라는 것이다.

3. 판 단

2013. 1. 4. 경찰청에서 하달한 「피의자 도주방지 종합대책」에 따르면, 피의자 관리 철저 및 도주방지요령 숙지, 수갑 등 경찰장구 적극 사용 관련 수시 교양 등을 지시하며, 감독자 의무사항으로 모든 체포·구금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사건처리 경찰관 외 ‘도주방지 전담관’ 지정, 경찰장구가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조사중 피의자를 홀로 방치하지 않았는지 등 일반적 유의사항에 대한 확인과 수시 교양 및 감독을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소청인은 형사4팀장임에도 8. 14. 00:03~04:46간 숙직실에서 취침, 05:25~05:51간 4층 샤워장에서 세면하여, 03:47경 본 사건의 피의자(B)를 지역경찰관으로부터 인계 받을 당시 취침 중에 있었고 04:50경 본건에 대해 인지한 후에도 팀장으로서 수사지휘 등 피의자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를 하지 않았고,

팀장으로서 권한이자 의무사항인 사건배당을 실질적으로 경사 C에게 맡겼고, 형사데스크근무자와 별도로 체포된 중요 피의자에 대해 '도주 방지 전담관'을 지정하지 않았으며, 피의자가 노후된 수갑을 느슨하게 착용하고 있었으나 수갑 사용의 적절성에 대해 확인을 하지 않았으므로, 업무매뉴얼의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숙직실에서 취침한 부분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휴게이며 형사당직근무 관행상 유지된 휴게라고 하나, 이러한 휴게는 근무명령 또는 근무일지에 기재되지 않은 임의적인 것이며, 야간근무가 18:00~09:00까지 15시간인 점을 고려하면 근무시간 1/3정도에 해당하는 시간을 취침한 것을 두고 정당한 휴게라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팀장이므로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감독책임에 해당하는 수준의 징계양정이 합당하다고 주장하나, 소청인도 형사4팀 구성원으로서 당직 근무를 한 당사자이고, 도주방지 전담관 미지정, 근무 중 취침, 피의자 관리 태만 등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행위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장구 사용의 적절성 확인, 형사데스크 근무 등 팀원들의 복무관리 등에 대한 감독책임이 경합되므로, 감독자 징계양정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

(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형사당직 팀장임에도 숙직실에서 취침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하고, 도주방지 전담관 지정, 사건배당 및 수사지휘 등 팀장으로 실질적인 피의자 관리 역할을 수행하지 않은 점, 팀원들의 형사 데스크 근무, 수갑사용의 적절성 등에 대한 확인의무를 게을리 하는 등 전반적인 피의자 관리소홀로 이 사건 도주사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점, 범죄수사를 고유 업무로 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수배자를 도주케 한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큰 행위인 점, 금년 들어 5번째 도주사건으로 소개되며 주요 방송 및 신문에 보도되는 등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실추시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과세자료 처리 업무 소홀(정직1월→감봉3월)

처분요지 : 신고서 미 입력, 무납부 세액 고지결정 누락, 소득합산표
과세자료 처리를 소홀히 한 비위로 정직1월 처분

소청이유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후 검증이 가능하고 세수일실의
중과실이 아닌 점 비리가 있었던 것도 아닌 단순한 실수에 의한
지연처리에 불과한 점, 근무경력이 일천하여 처리역량에
한계가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의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납세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등 부정처사가 없었던 점,
지적 이후 고지가 이루어진 점, 근무 경력이 일천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감경 결정

사 건 : 2013-2 정직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세무서 8급 A

피소청인 : ○○지방국세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12. 12. 31. 소청인에게 한 정직1월 처분은 이를
감봉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2011. 12. 27. ○○세무서 민원실에 접수된 납세자 B의 토지 등

매매차의예정신고서(3차 신고서)가 국세통합시스템에 입력되지 아니한 채
소청인에게 인계되었으므로 위 신고서를 입력하거나, 입력하도록 운영
지원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감사일 현재
까지 방치하여 B가 무납부한 세액 580백만원을 고지 누락하게 하였고,

납세자 B는 2011. 11. 28.자 신고(2차 신고분) 시 납부할 세액
329백만원을 무납부 하였으며, 같은 해 12. 15. 신고납부 불부합
명세서가 출력되자 소청인은 “02”코드 무납부로 사유규명 하였고, 같은
월 24일 신고납부 불부합사유규명 내역서와 당연경정 결의서 제외자
명단이 출력되었으나 즉시 고지결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이견 세액과 관련
하여 B는 같은 해 12. 30.자에 332백만원 상당을 납부한 바 있으며,

또한, 2011. 12. 31.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1차 신고분 분납세액
101백만원, 2012. 1. 25. 납부할 4차 신고분 세액 201백만원, 2012.
1. 31.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2차 신고분 분납세액 329백만원을
무납부 하였고, 2012. 2. 16. 신고납부 불부합명세서가 출력되었으므로
소청인은 무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즉시 고지결정 하여야 함에도 고지
하지도 아니하고, 신고납부 불부합명세서 등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지도
아니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2012. 2. 27.자 정기
인사이동시 ○○세무서로 전근함으로 인하여 위 B가 5차례 무납부한
세액 1,211백만원(신고서 입력 누락분 2건 580백만원 포함)을 감사일
현재까지 고지 누락하여 조세채권 일실위험을 초래하였고,

2011. 9. 30. 납세자 B의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소득합산표 과세
자료 처리담당자인 소청인은 과세자료가 출력된 2011. 9. 30.부터
2012. 2. 정기인사 이동시까지 처리하지 아니하였고, 후임자에게 별다른

조치 없이 전산으로만 자동 인계한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징계등의 정도 결정)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내지 제5조(징계의 가중)와 제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11. 12. 27.에 접수된 납세자 B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 신고서(3차)가 2012. 1.에 접수된 4차 신고서(신고서는 담당자에게 인계되지 않았음)로 착각하여 위 3차 신고서에 대한 전산 입력이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후 검증이 가능하고, 부동산매매업자로나 양도자료전 등으로 추후 과세가 가능하며, 납세자 B의 재산 대부분이 신탁재산이라 적시에 고지를 하였더라도 압류 등의 조치를 할 수 없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처리는 필지연정 세수일실 등의 중과실 사항은 아니고,

2012. 2. 16. 출력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불부합명세서상의 납세자 B 건(총 3건)에 대하여 무납부로 사유규명을 하였는데 전산 오류로 이에 대한 당연경정 결의서 제외자 명단이 출력되지 않았고, 불부합 처리 후 무납부자에 대한 고지결정은 같은 해 3월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 신고납부 불부합에 대해 처리할 당시 소청인은 ○○세무서로 인사이동 되어 위 B의 무납부 금액에 대해 고지결정을 할 수 없었으며, 신고납부 불부합명세서 및 신고납부 불부합사유규명 내역서, 당연경정 결의서 제외자

명단은 전산으로 자동 인계인수되기 때문에 별도의 인수인계절차를 밟지 않은 것임에도 모두 소청인의 귀책사유로 처분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고 과한 처사라 생각되고,

○○청 세적관리 직원이라면 누구나 미결업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소청인이 처리한 합산 I 표 148건 중 1건을 처리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는 지적은 형평성이 결여된 것이며,

소청인은 2010. 2. 28. ○○세무서 소득세과에 발령받아 모든 업무에 최선을 다하였고, 근무경력이 일천하여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의 한계가 있었던 점, 세수일실이 있었던 것도 아니며, 단순한 실수에 의한 지연 처리임에 불과함에도 중대한 비위가 있는 것으로 본청 감찰계에서 조사 받아 징계이상의 고통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검증이 가능하고 B의 재산 대부분이 명의 신탁 되어 있어 압류 등의 조치를 할 수 없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지연 처리는 필지언정 세수일실 등의 중과실은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소청인은 2011. 12. 27. ○○세무서 민원실에 접수된 납세자 B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서(3차 신고서)를 같은 세무서 운영지원과로부터 인계받았으면 그 신고서 내용과 국세종합시스템에 입력된 내용의 일치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위 신고서의 전산 입력이 누락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납세자 B가 무납부한 세액 580백만원에 대한 고지 또한 누락된 점, 납세자 B의 재산 중 상당

부분이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이 이견 업무태만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무납부 세액 고지 누락 관련하여 살펴보건대, 소득세사무처리 규정(국세청 훈령) 제44조 제2항에 따르면 소득세담당과장은 신고·납부 불일치명세서를 운영지원과장으로부터 인수한 후 건별로 신고자료와 수납자료를 확인하여 불일치사유를 규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소득세담당과장은 사유규명을 완료한 후 불일치 사유 규명 내용을 출력하여 보관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규정 제45조 제1항에 따르면 세무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신고·납부자료를 비교하여 무납부자·납부부족자에 대해서는 무납부·납부부족 금액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소청인은 2012년 1월 신고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불부합명세서를 통해 납세자 B가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하면서 납부할 세액인 631백만원 상당을 무납부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면 이에 대해 관련 절차에 따라 고지할 의무가 있는 점,

소청인의 주장처럼 당시 당연정정 결의서 제외자 명단이 출력되지 않았고, 더욱이 다른 세무서로 전보되는 상황이었다면 관련 자료를 후임자에게 인계하여 납세자 B가 무납부한 세액에 대한 고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위 주장을 정당한 사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소청인은 자신이 처리한 소득합산 I 표 148건 중 납세자 B 건만 처리하지 않은 것을 지적한 것은 형평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2011. 9. 30. 출력된 납세자 B의 2010년 귀속 소득합산 과세자료는 B가 2010년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수입금액 61억원과 그에 상당하는 소득금액 8억원이 발생되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과세자료 임에도 위 출력일로부터 2012. 2. 정기 인사이동시까지 방치한 것은 업무태만에 해당하는 점,

피소청인은 소청인 소속 소득1계 직원 11명 중 10명이 정기인사이동 전에 과세자료 모두를 처리하였다고 답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업무태만 책임을 물은 것이 형평성 결여라고 하기 어렵다.

4. 결 정

본 건의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은 신고납부 불부합사유규명과 무납부 금액에 대한 고지 업무는 소득세과 소득1계 직원이 매월 처리하는 업무이고, 국세의 부과와 징수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중요하고 기본적인 업무임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12억원 상당의 조세채권 일실 위험을 초래한 점, 소득합산표 과세자료 처리를 소홀히 한 점, 국세청의 기납부 세액 부당 공제 등 양정기준(2012. 11. 7.)에 따르면 고지 누락한 건수가 10건 미만이거나 세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징계 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하겠으나,

다만, 소청인이 납세자 B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등 부정처사는 없었던 점, 본 건 지적이후 위 B에 대한 고지가 이루어진 점, 2008. 1. 21.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세무공무원으로서 그 경력이 일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1. 양도소득세 과세자료 처리 소홀(견책→기각)

처분요지 : 소청인에게 배부된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간 처리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업무를 잘못 처리하여 양도소득세를 부족 징수한 비위로 견책 처분

소청이유 : 업무 병목현상과 신중하고 꼼꼼한 성격으로 처리건 수가 적었을 뿐 방치한 것은 아닌 점, 양도소득세 부족 징수 관련하여 지적된 5건 중 1건은 과세 실효성이 미미한 건이고, 그 외 4건은 자료의 지연처리와 필요경비 관련이며, 납세자 B와 F의 경우 부족 징수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의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 :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3-195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세무서 7급 A

피소청인 : ○○세무서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세무서에 전입한 이후 재산제세 세원관리 및 종합

부동산세 총괄업무를 담당하면서, 본인에게 배부된 과세자료를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간 처리하지 않은 채 방치하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한 결과 다른 직원들이 대신 처리하게 하여 타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과중하게 한 잘못이 있고,

B 등 5명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처리하면서 취득원인이 공매로 확인되어 공문 등으로 확인하면 취득가액을 즉시 확인할 수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신고 시인하는 등 업무처리를 잘못하여 양도소득세 112,906,750원을 부족징수 한 사실이 있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한 비위로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종부세 업무 총괄담당자로서 9월초부터 12월초까지 업무가 집중되는 특성으로 업무 병목현상과 신중하고 꼼꼼한 성격으로 인해 휴일에도 쉬지 않고 근무하는 등 많은 업무 처리시간을 투여하였지만 타 직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리건 수가 적었을 뿐 양도세 과세자료를 방치한 것은 아니며, 단순히 일정시점 미결건수가 많고 처리건수가 적다는 이유로 성과평가 등 불이익이 아닌 성실의무 위배에 따른 징계처분은 부당하고,

B 등 과세자료 처리 5건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 분설하면, 납세자 B건은 2012. 10. 7. 과세자료 생성한 것으로 감사지적 당시 1개월 남짓 경과한 자료로서 당해 납세자의 부동산이 ○○구청의 공매에 의해 양도되었는 바, 세수일실 등 문제가 될 만한 것이 아니므로 타 업무에 우선하여 시급히 처리할 자료가 아님에도 생성한지 1개월 남짓 경과한 과세실익 없는 자료를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지적하는 것은

부당하고,

납세자 C, D 건의 경우 취득세 등 필요경비 지급증빙이 없었으나 그 정도 있다고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1,919천원 및 979천원 과소 부과한 사실이 있으며, 납세자 E 건의 경우 양도소득 68백만원을 신고한 자료 1999년 취득하였고 취득 경락가액 확인하지 아니하여도 양도소득을 비교적 많이 신고하여 신고 시인 하였을 뿐 양도소득세 6,349천원 과소 신고한 것으로 해명요구 하더라도 납세자가 필요경비를 제출하면 추정 세액은 얼마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러한 자료를 지적하는 것은 실효성 없는 업무를 버리려는 현 추세와 맞지 않고, 납세자 F의 경우 부족 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지연처리에 해당하며,

본 건 처분으로 ○○세무서로 발령받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18년 간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종합부동산세 총괄담당자로서 9월초부터 업무 병목현상이 있었고 신중하고 꼼꼼한 성격으로 인해 많은 업무 처리시간을 투여하였지만 타 직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리건 수가 적었을 뿐, 과세자료를 방치한 것이 아님에도 성실의무 위배에 따른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2011년 하반기 소청인에게 배부된 양도소득세 과세자료 318건 중 303건을 미처리하여, 이 중 134건이 담당자 재지정 배부되었고, 2012년 하반기에도 소청인에게 배부된 양도소득세 과세자료

168건 중 115건을 미처리하여, 이 중 86건이 담당자 재지정 배부되는 등 소청인이 처리하여야 할 업무를 다른 직원들이 대신 처리하게 한 사실이 있고,

담당자를 재지정 배부한 이후에도 타 직원들에 비해 처리비율이 저조하여, 소청인과 같은 과 동일직급 다른 직원들이 과세자료를 96% 이상 처리한 반면, 소청인은 2011년 하반기 78.26%, 2012년 하반기 73.17% 처리하는데 그쳤으며,

소청인은 종합부동산세 총괄담당자로서 업무 병목현상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사무분장표 등 일건 기록을 종합해 보면, 대부분 직원들이 각자 맡은 총괄업무를 수행하면서 소청인보다 많은 과세자료를 처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의 업무량이 다른 직원에 비해 특별히 과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세무공무원으로서 관련 법규정에 따라 적기에 업무를 처리하여 세수 일실 위험 등을 방지하여야 함에도 신중하고 꼼꼼한 성격으로 인해 과세자료 처리가 늦어졌다는 주장은 소청인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는 점,

2011년 하반기 뿐만 아니라 2012년 하반기에도 소청인이 처리해야 할 과세자료가 타 직원에게 배부되도록 하여 타 직원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국세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 소청인은 양도소득세 부족 징수 관련하여 지적된 5건 중 1건은 과세 실효성이 미미한 건이고, 그 외 4건은 자료의 지연처리와 필요 경비 관련이며, 납세자 B와 F의 경우 부족 징수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국세공무원으로서 법과 규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바, 과세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자료처리를 지연하거나, 즉시 고지 결정 가능한 신고 자료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과세자료 처리를 지연하였고, 막연한 추정에 근거하여 필요경비를 과다 공제하는 등 업무 처리를 소홀히 하여 총 112,906,750원을 부족 징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 건의 징계양정에 있어서, 소청인은 세무공무원으로서 맡은 바 책임 완수를 위하여 성실히 근무하여야 함에도 2011년 하반기 양도소득세 과세자료 318건 중 303건을 미처리하여, 이 중 134건이 담당자 재지정 배부되고, 2012년 하반기 양도소득세 과세자료 168건 중 115건을 미처리하여, 이 중 86건이 담당자 재지정 배부되게 하는 등 소청인의 업무를 다른 직원들이 대신 처리하게 한 사실이 있고, 재배부한 이후에도 타 직원들에 비해 처리비율이 저조하였으며, 소청인이 과세 자료처리를 지연하게 된 경위에 있어 특별히 불가피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양도소득세 업무 처리를 소홀히 하여 총 112,906,750원을 부족 징수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최근까지 양도소득세 부족 징수, 감면검토 소홀 등 사유로 수차례 경고 및 주의 조치를 받았음에도 본 건 비위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2. 이송사건 처리 태만(견책→불문경고)

처분요지 : 고소 사기 사건을 ○○경찰서에서 이송 받아 수사하던 중, 공소시효에 대한 확인 없이 사건을 방치하다 공소시효가 도과한 후 ○○검찰청에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한 비위로 건책 처분

소청이유 : 관행상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은 최초 접수관서에서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경찰관서로 이송하였던 점, 소청인이 수사과에 발령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업무 처리가 미숙하였던 점, 고소인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고소사건의 경우 민사로 해결되어야 할 사안이었기 때문에
공소시효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부당하게 처리된
것은 아닌 점, 고소인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여
준 점, 본 건으로 인하여 근속승진에서 누락되고 인사조치
된 점 등을 고려하여 감경 결정

사 건 : 2013-453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13. 6. 27.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
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에 근무하는 자로, ○○과 ○○팀에 근무할 당시인 2013. 1. 8. ○○경찰서(2012. 12. 14. 접수)에서 고소인 B(70세)가 고소한 사기 사건을 이송 받아 수사하던 중, 공소시효에 대한 확인 없이 만연히 사건을 방치하다 공소시효(2013. 2. 12.)가 도과한 2013. 4. 5.에 ○○검찰청에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직무 태만한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15년여 간 성실히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등 총 9회의 각급 기관장 표창을 받은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적법 절차 준수가 엄격하게 요구되는 수사 담당 경찰공무원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공소시효의 확인을 간과하여 공소시효가 도과하도록 사건을 방치한 행위는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할 것이므로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본 고소사건은 2012. 12. 14. ○○경찰서에 접수되어, 2013. 1. 2. 공소시효를 1개월 10일 남기고 ○○경찰서로 이송되어, 같은 달 8일 소청인이 사건 담당으로 이송 접수를 받았으며, 같은 달 30일 피고소인에게 전화 출석 요구하였으나, ‘허리디스크 수술로 장시간 차량 탑승이

어렵다'며 기일 연장을 요청하여, 2. 12. 출석요구를 독촉(공소시효는 2013. 2. 12.자로 도과함)하여, 4. 2. 조사를 종료하였고, 4. 5. ○○지점에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으로 위 고소 건을 송치하였는데,

소청인이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바, 피고소인은 채무액을 변제할 의사가 있었으며 고소인이 잔금을 받고자 고소를 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형법상의 사기죄라기보다는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로 판단되어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한 것이며,

고소사건의 이송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사건이송 및 수사촉탁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에서는 ① 업무관행상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은 최초 접수 관서에서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경찰관서로 이송하였고, ② 고소 사건 이송 시, '이송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③ 이송할 사건에 대해서는 고소 접수 즉시 처리하여야 하나 약 2주간 지연 처리하였고, ④ 이송기일로 1주일이 더 소요되었으며, ⑤ 피고소인이 ○○의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소재 수사를 하지 않고 사건을 이송하였으며, ⑥ 공소시효 완성일이 임박한 사건을 불가피하게 이송할 경우, '사건인계서'의 '기타 참고사항' 란에 공소시효 만료일을 빨간 글씨로 기재하여 함에도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⑦ 공소시효 만료일이 임박한 사건을 불가피하게 이송할 경우, 이송받는 경찰관서에 별도 전화연락을 하여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으나, ○○서에서는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아니하였는데,

사건을 이송 받을 당시 소청인은 3개월 간 총 72건을 배당받아 37건을 처리하고, 나머지 건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는 등 바쁜 수사업무를 수행

하느라, 본 고소사건의 공소시효가 도과된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하였고, 2012. 12. 10. ○○경찰서 ○○과 ○○팀으로 발령받은 지 약 28일 만인 2013. 1. 8. 본 고소사건을 배당받아 처리하게 되었으나, 이러한 업무에 대한 처리 경험이 미숙하여 공소시효에 대하여 이를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것으로,

고소인 B는 피고소인 C가 연락두절상태라 패썹해서 형사고발하여 만나려고 했던 것이라면서, ‘본의 아니게 소청인에게 불이익을 당하게 하였고, 일차적으로는 늦게 고소한 고소인에게도 책임이 크므로 소청인에 대해 진심으로 선처를 바란다’며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소청인은 2013. 7. 1. 경위 근속 승진 예정이었으나, 본 건으로 인해 근속승진 3일 전인 2013. 6. 27. 견책 징계처분을 받아 경위 승진임용이 6개월 연기되었고, 본 건 징계로 인하여 ○○지구대로 발령 받아 순찰요원으로 근무하는 등 3중의 신분상 불이익을 받은 점, 약 15년간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경찰청장 표창을 비롯하여 9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먼저, 소청인은 업무관행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본 고소사건의 이송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첫째, 소청인은 업무관행상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은 이송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고소사건을 이송함에 있어 관련 규정에 비추어 절차상 문제가 없고, 오히려 업무관행을 들어 피의자의 이송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송을 할 수 없다고 본다면 더욱 문제의 소지가 될 것인 점,

둘째, 소청인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을 불가피하게 이송할 경우 ‘사건인계서’ 기타 참고사항 란에 붉은 글씨로 공소시효 만료일을 기재 하여주거나, 이송 받는 경찰관서에 별도로 전화연락을 하여 주의를 환기 시켜주었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고소·고발 사건이송 및 수사 촉탁에 관한 규칙 및 같은 지침상 정해진 절차가 아니라 관행 또는 도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한바, 소청인의 입장에서 개인 적인 아쉬움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이것이 공소시효를 확인하지 아니한 소청인의 과오를 정당화할만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셋째, ○○경찰서에서 피의자 C의 실거주지를 수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고소·고발 사건이송 및 수사촉탁에 관한 규칙과 사건이송 및 수사촉탁에 관한 지침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이 이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근거라고 보기 어려운 점,

넷째, 고소 접수 이후 이송하기까지 약 2주가 소요되었고, 사건이송 으로 인하여 이송기일로 또 다시 1주가 소요되어, 소청인이 사건을 배당받을 당시(2013. 1. 8.)에는 이미 공소시효 만료(2013. 2. 12.)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였던 것은 사실이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소청인이 사건을 송치한 날짜가 위 공소시효 만료일로부터도 약 7주 이상 소요되었음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의 비위 사실에 있어 접수 및 이송 과정에 소요된 기간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경찰서의 본 고소사건 이송 업무 처리가 바람직스러웠다고 보기는 어려울지라도, 이송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바, 소청인의 위

주장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시효가 만료된 뒤에야 사건을 처리한 비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회피하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팀으로 발령 받은 지 한 달이 채 되지 아니하여 업무에 미숙한 점이 있었고, 당시 업무가 과중하여 순서대로만 사건을 처리하느라 공소시효 도과 사실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청인이 ○○팀으로 발령받은 지 한 달이 채 되지 아니한바, 업무 처리상 미숙한 점이 있을 수 있을 것이나, 업무의 특성에 따라 주의를 기울여 처리하여야 하는 부분이 상이하므로 이와 관련한 사항들을 파악하고 숙지하는 것은 업무 담당자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인데, 이를 제대로 숙지하지 아니하여 고소사건의 공소시효가 지나게 된 것은 업무 담당자인 소청인의 과오로 밖에 달리 볼 수 없으며, 기본적으로 확인하였어야 할 공소시효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본 건과 같은 결과에 이른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을 것인바,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본 건의 징계양정에 있어, 특정 사건이 법의 엄정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형벌권이 유효한 기한, 즉 공소시효를 확인하고 준수하는 것은 사건 수사 담당 경찰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문제된 사건에 대하여 공정하게 판단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점, 단순 실수라 하더라도 이는 사안에 따라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수 있어 엄중 문책하여 경각심을 줄 필요가 큰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었으나,

다만, 본 고소사건의 경우 민사로 해결되어야 할 사안이었기 때문에 공소시효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사건이 부당하게 처리된 것은 아닌 점, 공소시효가 만료된 데 대하여 소청인이 부정한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점, 공소시효 만료에 따라 피해를 입을 수도 있었던 고소인이 오히려 소청인에 대하여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여 준 점 및 본 건으로 인하여 소청인이 근속승진에서 누락되었고, 인사 조치되어 징계 외적 고통이 가중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본 건 징계를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3. 교통사고 임의 내사종결(견책→기각)

처분요지 : 교통사고 가해자가 임산부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며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적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단순 물피 교통사고로 보고하여 내사종결
처리하여 견책 처분

소청이유 : 내사종결 처리할 목적으로 팀·계장에게 허위 보고한
것이 아닌 점, 그동안 징계전력 없이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짧은 교통조사업무 경험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의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 :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3-268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2012. 8. 21. 19:20경 ○○시 ○○구

○○동 ○○삼거리에서 교통사고 가해자 B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적색 신호임에 비보호 좌회전(신호위반)한 잘못으로 녹색신호를 받아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 처리와 관련하여, 당시 피해자가 사고 발생 2일 후인 8. 23. 09:50경 ○○경찰서 교통조사계를 방문하여 ‘신호위반 사고로 인하여 ○○병원에서 치료받고 귀가하였고, 가해자가 신호위반을 부인한다’는 진술서를 작성하여 사고 접수하고, 가해자 B는 같은 날 20:00경 출석하여 ‘비보호 좌회전에 적색 불에 진입하여 사고남(상대방 차는 녹색불에 진입) 보험처리 원함’이라며 신호위반 사고임을 인정하는 자필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바,

소청인은 가해자가 임산부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며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인적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단순 물피 교통사고로 보고하여 내사종결 처리할 목적으로 2012. 8. 27. 교통사고조사 결과보고서를 인적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작성하였고, 담당자 의견으로 ‘위 사고는 단순 물피 사고로 보험가입 되었으므로 내사 종결함을 보고합니다’라고 작성하여 팀장 및 계장에게 보고하였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결재권자로부터 내사종결 결재를 받은 후 아무런 조치(입건 및 행정처분) 없이 내사종결 처리한바,

본인의 과오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동안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표창 수상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이 사건 피해자는 가해자의 신호위반을 인정하지 않아 신호위반 여부만 확인해 달라고 하였으며, 가해자가 소청인의 설명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보험처리하자 피해자는 ‘신호위반 사실에 대해 상대방이 모두 인정하고 보험회사로부터 100% 보상받을 수 있고, 가해자가 딸 같은 임신부이고, 비보호좌회전을 언제 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처벌 의사나 진단서 제출 의사가 없다’라고 하였고,

당시 소청인도 신호위반 사고라도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처벌의사가 없고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실무상 내사 종결 처리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내사종결 처리할 목적으로 팀·계장에게 허위 보고한 것이 아니라 통상 실무상 하던 방식으로 10여건을 일괄 결재 받고자 책상 위에 올려놓은 것뿐이고, 가해자가 임신부라는 사실에 온정주의가 앞선 것은 사실이나 청문감사실에서 소청인과 가해자간 유착여부는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교통조사분야 업무실태 일제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와 관련하여, 2012. 11. 27.경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진단서 제출 및 진단서 발급 동의서 작성을 거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해자 진단서제출을 공문으로 요청하였으나 압수수색영장 또는 피해자의 동의가 없으면 발급해 줄 수 없다는 공문 회신을 받은 후 팀·계장과 상의하여 내사 종결 처리한 것이고,

또한, 소청인과 같이 2012년 교통조사분야 업무실태 일제점검에서 지적된 내사종결 처리 건에 대한 타 경찰서의 징계 처분은 ‘경고·주의·불문’ 처분으로 모두 마무리하였으나, 소청인만이 형평성에 어긋난 ‘견책’ 처분을 받아 2013. 2. 17.자로 ○○파출소로 강제 인사 조치되었고, 2013. 7. 1.자 예정된 경위 근속승진 대상에서 배제되는 상황에 놓였으며, 다수의 포상경력이 있는 점, 그동안 징계전력 없이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피해자 및 가해자가 탄원서를 제출한 점, 약 6개월이라는 짧은 교통조사업무 경험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피해자가 처벌의사 없다며 진단서 제출을 거부하였고, 가해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실무상 내사 종결처리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내사종결 처리할 목적으로 팀·계장에게 허위 보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교통사고 인피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한 때에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여야 하고,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진술서만으로도 충분히 인피 사고였음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교통사고조사 결과보고서에 가해자 및 피해자 진술서 내용과 다르게 작성하고 단순 물피사고로 처리한 점, 또한 피해자의 진단서 제출 거부 등으로 인한 내사종결 처리 경위의 불가피함을 최소한 결재 시 감독자에게 설명하고 검토를 거치는 등 좀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통상적인 절차에 준해 소홀히 처리한 점, 법과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경찰공무원이 가해자가 임신부라는 사실에 온정주의로 업무를 처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012년 교통조사분야 업무실태 일제점검에서 지적된 후 피해자에게 다시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진단서 제출 및 진단서 발급 동의서 작성을 강하게 거부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압수수색영장 또는

피해자의 동의가 없으면 발급해 줄 수 없다는 공문 회신을 받은 후 팀·계장과 상의하여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데,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처리하면서 피해자 진료병원 및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만 의뢰하여 발급을 거부당하자 전술한 추가 확인하는 절차 없이 당일 내사종결 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점, 이로 인해 가해자의 검찰 송치 및 벌점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3호에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은 가해자가 임산부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며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독자에게 별도의 보고 없이 교통사고조사 결과보고서를 가해자 및 피해자의 진술서 내용과 다르게 작성하여 인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단순물피 교통사고로 보고하여 내사 종결 처리한 점, 감사에 지적되어 시정 지시를 받은 후에도 피해자가 진료한 병원 또는 보험회사에 상해 정도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압수수색영장 또는 피해자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발급을 거부당하자 당일 내사종결 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사항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4. 교통사고조사 업무 태만(정직1월→감봉2월)

처분요지 : 접수된 교통사고 15건에 대해 전혀 조사를 하지 않고 사무실 내에 있는 자신의 서류함에 방치한 비위로 정직1월 처분

소청이유 : 종결하지 못한 사건들은 사고 보험처리가 종결되고 당사자인 민원인들에게 양해를 구하여 민원이나 원성을 사지는 않은 점, 근무기간이 그리 길지 않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의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소청인 스스로 비위사실을 자백하여 사건들이 무리 없이 종결되어 파생적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무경력이 길지 않은 점, 관리체계상의 문제점도 있어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감경 결정

사 건 : 2013-415 정직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순경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13. 6. 4. 소청인에게 한 정직1월 처분은 이를 감봉 2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경찰서 교통사고계에 근무하면서 2012. 6. 6.부터 2012. 11. 12.간

접수된 교통사고 15건에 대해 전혀 조사를 하지 않고 사무실 내에 있는 자신의 서류함에 2013. 5. 2.까지(5~10개월) 방치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였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평소소행, 근무성적, 개전의 정, 지방청장 등의 표창을 받은 공적, 4년간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2011. 8. 19.부터 2013. 5. 2.까지 ○○경찰서 교통사고계에서 근무하면서, 교통사고 조사규칙 제23조 제1항, 제2항의 교통조사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개월 내에 교통사고 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고 사건이 방치된 부분에 대하여는 경찰관으로서 할 말이 없고,

교통사고 접수 시 신속히 종결하여야 하나, 2012. 5.부터 종결치 못한 사건들이 누적되었는데, 먼저 접수한 사건부터 종결을 하여야 하나, 이후 종결된 사건들 또한 장기사건이 될 수 있다는 염려로 후에 접수된 사건들을 종결하면서 장기사건들이 방치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팀장 및 팀원들과 상의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했어야 하나 혼자 고민을 하다 2013. 5.에야 팀장, 계장에게 보고하여 현재에 이르게 되었고, 종결하지 못한 사건들은 사고 보험처리가 종결되고 당사자인 민원인들에게 양해를 구하여 민원이나 원성을 사지는 않았으며,

경찰에 입문한 후 성실히 근무하여 지방경찰청장 표창 1회, 경찰서장

표창 4회 등 5회에 걸쳐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근무기간이 그리 길지 않았던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교통사고조사규칙(경찰청훈령 제701호, 2013. 4.15.시행)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의 물피 사고에 대해서는 즉시 처리하고, 인피사고 및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없는 물피사고 등에 대하여도 접수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처리하며, 교통사고 당사자의 의식불명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로교통공단 등 전문기관의 사고분석 기일 지연 등으로 2월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그 이유를 보고한 후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완료토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소청인은 2012. 6. 6.부터 같은 해 11. 12.까지 접수된 15건의 교통사고 건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도 없이 5개월에서 10개월씩이나 방치한 점, 나중에 접수된 사건들이 장기사건이 될 수 있어 이를 우선 처리하여 장기사건이 방치되었다는 등의 주장은 본 건 직무태만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소청인이 방치한 사건들은 비교적 경미하여 조금만 주의와 노력을 기울였더라면 적기 처리에 무리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 조사·처리 업무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대민업무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경찰공무원으로서의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소청인 스스로 비위사실을 자백하여 사건이 원만히 처리되는

등 사건 당사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민원이 야기된 사실은 없는 점, 비위 당시 소청인의 근무경력이 3여년에 불과한데도 타 직원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사건을 배분하여 사건처리에 무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다수의 표창 공적이 있는 점 등에 대하여는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 정

소청인은 교통사고조사규칙 등 관련 규정에 의해 최대한으로 보더라도 2개월 이내에는 처리하여야 할 교통사고 사건(15건)을 5개월에서 10개월간이나 방치하였고, 본건 외에도 2012. 5경 10여건에 대하여 3~4개월 지연 처리한 사례가 있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한 점, 본 건 직무태만에 있어 특단의 사정이나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징계책임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소청인 스스로 비위사실을 자백하여 사건들이 무리 없이 종결된 점, 본 건으로 인해 민원이 야기되거나 파생적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공무원으로서의 근무경력이 길지 않은 점, 교통사고접수시스템(TCS)과 키스시스템이 연계되지 아니하여 소청인이 비위사실을 자백하기 전까지는 감독자에 의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관리체계상의 문제점도 있어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소청인에게 중징계 상당의 징계 책임을 묻기 보다는 본건을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원 처분을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5. 근무성적평정 업무 태만(견책→기각)

처분요지 : 근평위원회, 근평확인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근평 권한도 없는 B가 미리 승진후보자 순위를 정하고, 인사담당자 C가 부당한 근평결정 절차 등을 은폐하기 위해 근평 위원회 회의록 등 근평 관련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알면서도 결재하여 인사질서를 어지럽힌 비위로 견책 처분

소청이유 : 타 시·도 처분과의 형평성, 징계의결 요구 사유의 하나였던 B의 직권남용 혐의는 검찰청에서는 인정되지 않은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3-450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부 고위공무원 A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가. 지방공무원 인사업무 부당 처리

소청인은 근평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근평 권한도 없는 B가 미리 특정인의 승진후보자 순위를 정하면 ○○과 인사담당자 C 등이 그에 맞춰 거꾸로 평정대상 공무원들의 근평 순위와 근평점을 정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두었고,

인사담당자 C가 부당한 근평결정절차 등을 은폐하기 위해 마치 근평위원회가 개최되어 평정대상 공무원의 근평 순위와 근평점 등을 심사·결정한 것처럼 근평위원회 회의록 등 근평 관련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소청인에게 결재를 요청하자 그 문서들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대로 결재한 사실이 있으며,

나. 중등 교육공무원 인사업무 부당 처리

부교육감이자 근평확인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10년도와 2011년도 중등 교감에 대한 근평확인점을 부여하였고, 교육감이 2011. 1. 31.과 2012. 1. 31. 기준 교장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업무를 보좌하면서, 인사담당자와 교육감이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인사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외부에서 임명된 부교육감은 인사에 관여하지 않아야 행복하다는 등의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근평이 확정되기도 전에 작성된 2010년도 및 2011년도 교장승진후보자 명부에 그대로 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감사에 대비하여 2011년도 및 2012년도 승진후보자

명부와 관련하여 허위로 작성된 근평확인위원회와 근평조정위원회 관련 서류에 그대로 결재하는 등 부교육감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게을리 하였으며,

그 결과 교육공무원 근평 및 승진관련 규정이 유명무실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사질서를 어지럽힌 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2013. 3. 감사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교육청 등 2개 교육청의 징계의결사항과 다를 것이 없음에도, 감사원은 ○○교육청의 교육감과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단순히 주의조치만을 촉구한 반면, 본 소청인을 포함한 ○○교육청의 교육감과 관계자 모두에 대하여는 징계를 요구하거나 수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동일하지 않은 잣대를 적용한 것으로서 법의 일반정신인 형평성의 원칙을 결한 처분이라 생각하며,

소청인은 중앙징계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당시 징계의결 요구사유를 모두 인정한 바 있으나, 징계의결 요구 사유의 하나였던 B 교육감의 직권 남용 혐의는 검찰청에서는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소청인에 대한 징계도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지방공무원 인사업무 부당처리와 관련하여 당시 인사팀장 C의 수사를 담당했던 ○○지방검찰청이 피내사자 C에 대하여 피내사자(C)가 인사

팀장으로 근무하기 전부터의 업무관행에 따라 본 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아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음을 들어 입건 자체를 유예한 바 있으며,

소청인이 근무할 당시 ○○교육청에는 25여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었고 부교육감은 그 모든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었으며, 어떤 때는 위원이 한 자리에 모일 시간이 없어 실무자가 위원들을 찾아다니며 설명을 하고 도장이나 서명을 받는 경우가 자주 있었으며, 2011. 2경, 2011. 7경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경우도 바로 그런 형태로 진행된 것으로, 그간의 관례로 일종의 서면결의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며,

인사업무총괄자인 부교육감으로서 당시 소관 업무를 꼼꼼히 챙기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는 점, 여러 중요 현안들을 주도적으로 처리한 공로로 ○○포장과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교육청과 동일한 사안으로 적발된 ○○교육청 등 2개 교육청에 대하여는 단순히 주의 조치만을 촉구하였고, 검찰에서 교육감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하여 혐의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인사담당자인 C도 입건유에 처분을 하면서 적용한 사정들은 소청인에게도 충분히 참작할 이유가 된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교육청과 달리 ○○교육청의 경우, 중등 교육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뿐만 아니라 지방공무원의 인사업무도 부당하게 처리한 것으로 지적된 점 등을 고려하면 타 교육청과의 형평성 문제만으로

위 소청인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지방검찰청에서 ○○교육감 B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교육감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이르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인사담당자 C에게는 총무과 인사팀장으로 근무하기 전부터의 업무 관행에 따라 본 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의하면 ○○교육청 이외의 다른 교육청에서도 이와 같이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실제 개최하지 아니하고도 이를 개최한 것처럼 문서를 구비한 업무 행태가 확인되었으나 주의 조치만 하였던 점 등의 이유로 입건유예 처분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인사담당자 C에게 위와 같이 입건유예 처분을 하면서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는 인정하였던 점,

소청인은 ○○교육청 부교육감으로 근무할 당시 지방공무원법 제76조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근평 심사·결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의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중등 교감에 대한 근평 확인자는 부교육감인 소청인이며, 근평 확인점은 자신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근평 확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인사담당자 등이 근무성적평정이 확정되기 전에 작성한 승진후보자 명부에 그대로 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근평위원회·근평확인위원회와 근평조정위원회 관련서류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대로 결재하여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도 사실인 점 등을 종합하면 소청인은 인사담당자들에게 인사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지시하지 않는 등 부교육감으로서 직무수행을 게을리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처분의 적정성에 대해 살펴보면, 소청인은 ○○교육청 부교육감으로 근무 시 지방공무원 및 중등 교육공무원 인사업무 처리과정에서 근무성적평정위원회 등이 개최되지 않아 회의록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결재하여 직무를 태만히 한 점, 이로 말미암아 근평 및 승진 관련 규정이 유명무실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사질서를 어지럽힌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을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6. 차량정보 유출 및 허위공문서 작성(해임→기각)

처분요지 : 지인의 부탁을 받고 차량에 대한 전산조회를 하여 차종, 도난 여부 등 차량정보를 유출하고, 허위 수사첩보 보고서 등을 작성·행사한 비위로 해임 처분

소청이유 : 차량 소유자의 성명이나 주소 등 개인정보를 누설한 것은 아닌 점, 소재 파악이 되지 않은 차량이 범죄에 이용될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앞서 경솔하게 차량을 찾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한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원 처분의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3-454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가. 도난차량 장물업자에게 차적조회 정보 유출

2013. 4. 18. 장물인 도난 차량을 헐값에 매입하기 위해 차적 조회를

해 달라는 지인(B, 구속)의 부탁을 받고 PDA 휴대용 단말기로 마티즈 차량에 대한 전산조회를 하여 차종·도난 여부 등을 지인에게 알려주는 등 차량정보를 유출하고,

나. 지인 점유차량 발견을 위한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1) 2013. 5. 30. B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같은 날 허위 수사첩보 보고서를 작성하여 범죄정보분석시스템에 등록, 내사착수보고 및 사건수사시스템에 접수하였으며,

2) 2013. 6. 1. 소청인의 사무실에서 B로부터 허위차량 도난신고대행을 부탁받은 C가 ‘차량도난신고서·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자 일시·장소를 변경하여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3) 2013. 6. 1. 신고자 C로부터 차량도난신고서·피해진술서를 교부받아 ‘수배차량 전산처리 신청서’ 1매를 허위로 작성한 후에 과학수사팀에 의뢰하여 도난차량 수배입력을 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의 복무규율 위반 및 품위를 손상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11. 10월경 ○○식당에서 가끔씩 회식을 하면서 알게 된 식당 사장인 B와 사회친구 사이로 지내게 되었고,

2013. 4. 18. 저녁 B로부터 자신의 식당 앞 노상에 장기간 주차된 차량이 있는데 도난차량인지 확인을 해 보라는 연락을 받고 B가 알려진 차량이 도난차량인지 여부를 PDA휴대용 단말기로 조회한 결과, 도난차량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B에게 ‘도난차량 아니다’고 말해 준 사실이 있으나, 차량 소유자의 성명이나 주소 등 개인정보를 누설한 것은 아니고,

본건 징계사유에서는 소청인이 장물인 도난차량을 헐값에 매입하기 위해 차적 조회를 해 달라는 B의 부탁을 받고 차적을 조회한 것으로 적시되어 있으나, B로부터 이 같은 말이나 부탁을 들은 사실이 없으며,

B가 2013. 4.경 평소 친하게 지내던 ○○차주가 급하게 돈을 빌려가면서 맡겨 놓은 차량을 친구가 지방 가면서 빌려 타고 갔는데, 그 후, B가 소청인에게 전화하여 “차를 빌려 간 친구가 연락이 되지 않아 차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는지 확실하지 않다, 대포차량이 되거나 범죄에 이용되면 문제가 커질 것 같다, 차량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도난신고를 하는 수 밖에 없다고 한다. 그러니 차량도난신고를 하도록 도와 달라”고 하였는데, 그동안 친구로 지내면서 정보원으로 활용하여 절도사건 피의자를 검거한 것도 있어 B의 부탁을 매정하게 거절하지 못하고 ‘절도용의자 첩보입수보고서와 내사착수보고서’를 허위 작성하였으며,

차량도난 신고 대행을 부탁받은 C가 ‘차량도난신고서·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자, 발생일시·장소를 변경하여 기재하도록 요구하였다는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소청인이 차량 점유자인 B를 상대로 진술서를 작성하기 위해 경찰서로 오라고 했더니 식당을 비울 수 없다며 후배 C를 대리인으로 출석시키겠다고 하였고,

C로부터 차량도난신고서 등을 교부 받아 ‘수배차량 전산처리신청서’ 1매를 허위로 작성한 후, 과학수사팀에 의뢰하여 도난차량수배 입력하였다는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소청인이 C로부터 차량도난신고서 및 피해진술서를 받은 후, ‘수배차량 전산처리 신청서’를 작성하여 차량 수배 담당 부서인 과학수사팀에 의뢰, 위 차량이 ○○지방경찰청 관할구역에서 발견되어 점유자인 B에게 인계되었으며,

소청인은 B로부터 장물 차량을 매입하기 위해 차적 조회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은 없으며, 소청인이 ‘도난차량이 아니다’고 B에게 말해 준 사실은 있으나, 차량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려 준 바는 없어 개인정보 누설은 하지 않아 이는 개인정보 누설은 아니므로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다만 B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도난차량 관련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한 것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절대로 하여서는 안 되는 잘못된 행동이었음을 통감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허위로 도난차량 신고를 하였을 경우의 처벌규정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에 명시하고 있는 경미한 범죄로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형으로서, B가 소청인에게 이 건을 부탁하면서 금품을 제공하거나 약속할 만한 이익이 있는 사건은 아니며,

16여년 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경찰청장 표창 1회를 포함하여 총22회에 걸친 표창 수상 공적이 있는 점, 본 건 징계사유로 조직에 누를 끼치고, 동료 경찰관들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B가 차량담보대출 등을 하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① 2013. 1.경에도 위 B로부터 차적 조회를 부탁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② 노상에 장기간 차량이 방치되었다고 하여 도난차량으로 단정하여 차적 조회를 요청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2005년경 처음 B와 알게 된 이래 가정사까지 이야기 하는 등 상당한 친분 관계를 유지해 온 점 등의 사정으로 볼 때, 소청인은 B가 식당 운영 외에도 차량 담보대출 관련 일을 하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 할 것이고,

설령, 이 같은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경찰정보통신 운영규칙(경찰청 예규 제449호) 제51조에 ‘전산자료 조회는 경찰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지인인 B의 부탁을 받고 차적을 조회하고 그 결과를 B에게 알려주는 등 동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본 건 어디에도 소청인이 개인정보를 조회하여 유출하였다고 하거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지적한 사실이 없어 이는 과잉 내지는 확대 주장에 불과한 점, 그 외에도 식당을 운영하는 관련자가 수시로 차적 조회를 요청한 것은 그 의도에 상당한 의심의 여지가 있음에도 ‘도난차량 여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이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소청인은 B를 정보원으로 활용하여 절도사건 등의 피의자를 검거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서류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범법 행위를 도와주어 그 비위의 정도가 더 중하다고 판단되는 점, 소청인은 B가 허위의 차량도난신고 사실을 알고도 수사첩보 보고서,

내사착수보고 및 사건수사시스템(KICS)에 접수하여 결과적으로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에 이르렀고, 이 같은 행위는 형법 제227조 및 같은 법 제229조 규정에 의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여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의무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이에 대한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정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1조(청렴의 의무)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경찰정보통신 운영규칙 등에 의해서 목적으로의 조회 및 이용이 제한된 차적 정보 등을 B에게 알려주어 장물취득 등 불법행위에 이용되도록 한 점, 범법자를 검거해야 할 직위에 있는 소청인이 허위 차량도난신고인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적극적으로 도와 주고 사건을 직접 처리해 주는 등 허위공문서 작성·행사한 점, 특히 이 같은 비위에 대해 형법 제227조 및 같은 법 제229조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비위의 정도나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의무위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고,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 정상을 참작해 보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징계책임을 인정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7. 112신고 사건접수 소홀(견책→불문경고)

처분요지 : 112종합상황실에 근무하면서 최초접수자로서 신고자의 신고내용을 시스템상 잘못 입력하거나 관할 지정을 잘못 하는 등 사건처리를 소홀히 비위로 견책 처분

소청이유 : 신고내용상 음주운전 의심차량으로 생각하였고, 신고 내용을 요약·입력하는 과정상의 실수였던 점, ○○고속도로순찰대에 통보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여 행동한 것으로 사건 처리를 태만히 한 것은 아닌 점, 깊이 반성하고 있고 고의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소청인이 업무처리 자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관할 판단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경 결정

사 건 : 2013-648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

주 문

피소청인이 2013. 9. 13.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청 112종합상황실(접수요원)에 근무하면서, 2013. 8. 17. 05:39경 신고자 B가 ○○고속도로 ○○IC 부근 주행중 위험 운전차량을 발견하고 1차 112신고 후, 동 차량을 ○○시 ○○동까지 추격(06:25까지 약 32km)하며 4회에 걸쳐 112신고 및 6회 전화통화 하였으나 ‘경찰은 관할타령, 시민에게 추격부탁하고 출동 안 해’ 등 내용으로 같은 달 22.경 ○○ 등 언론매체에 비난보도된 것과 관련,

소청인은 2013. 8. 17. 05:39경 “○○가 ○○도로에서 벽을 약간 들이받고 비틀비틀 달리고 있다. 지금 ○○IC 빠지는 데를 지나 ○○ 쪽으로 달리고 있다”는 내용으로 1차 전화신고를 받았음에도 112신고 사건 처리표에 ‘음주운전 차량이 ○○IC를 지나고 있다’며 단순 음주 운전 차량으로 예단해 입력하는 등 112신고접수를 소홀히 하고 ○○IC 관할이 ○○서임에도 관할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 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로 이첩하는 등 112신고사건 처리를 태만히 한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 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소청인은 혐의내용을 시인하며 선처를 바라나 사건처리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므로, 소청인의 상훈공적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건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112신고사건 처리표에 ‘음주운전 차량’으로 입력한 것은 신고내용상 음주운전 의심차량으로 생각하여 출동경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유도하기 위해 그렇게 한 것으로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아니고, ‘○○IC를 지나고 있다’고 입력한 것은 전화내용을 요약·입력하는 과정상의 실수임을 인정하나 차량진행방향에는 아무 영향이 없었고,

112신고사건처리 태만 관련, ○○분기점에서 차량이 서울방향이나 목포방향으로 가더라도 ○○고속도로순찰대 관할이라서 통보하였고 신고자가 ○○IC를 빠져나와 톨게이트를 나왔다고 했으면 ○○서로 통보했을 것이며, 신고자가 ○○고속도로를 타고 올라왔으면 ○○고속도로로 빠지기 3km전, ○○분기점 1km전, ○○분기점 3km 전이고, ○○방향으로 계속 달린다고 신고하였고 위 구간은 ○○고속도로 및 ○○고속도로 ○○분기점 이전까지는 ○○고속도로순찰대 관할로 통보하는 것이 맞고, 1개소 이외는 관할을 지정할 수 없어 ○○청 보다는 ○○고속도로순찰대에 통보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여 행동한 것으로, 사건처리를 태만히 한 것이 아니며,

조직에 누를 끼쳐 반성하고 있는 점, 고의가 없는 점, 21회 표창수상 공적 등을 감안해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신고내용 입력과정에서 실수는 있었지만 처리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고 신고 당시 관할은 ○○청이었고 분기점에서 어디로

빠질지도 알 수 없어 ○○청으로 통보한 것으로 사건처리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건대,

소청인은 최초 접수자로서 신고자의 위치, 신고내용 등을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히 파악, 시스템에 입력하여 이후 최단시간에 지령과 현장 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임무가 있었고,

신고자가 “○○도로이고, 앞차가 비틀 비틀거리며 가고, 벽을 약간 들이받고 계속 가고 있다. ○○분기점을 지나 ○○빠지는데서 계속 ○○쪽으로 달리고 있다”고 현재 위치와 차량의 진행방향에 대해 비교적 명확히 설명하였음이 확인되고 소청인이 ‘○○IC를 지나고 있다’고 시스템상 신고내용을 잘못 입력한 사실이 분명한 점,

소청인이 입력한 ○○IC는 ○○서 관할구역으로 위험차량 진행방향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장소인 점, 입력한 내용과는 달리 소청인이 실제 이첩은 ○○서가 아닌 ○○청으로 했고, ○○청에서는 입력내용을 토대로 ○○서로 재 이첩하고, ○○서에서는 신고자와 통화해 다시 신고 하라고 하는 등 총 7회에 걸쳐 관할이 이첩되고 사건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점 등에서 사건 대응을 적절히 하지 못한데 대한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이첩관련, 소청인은 신고자가 말한 위치가 ○○청 관할이어서 ○○청으로 이첩했다고 주장하나, 최초 신고위치는 ○○청 관할이 맞는다 해도 차량이 계속 이동 중에 있었고 신고자가 ‘○○고속도로 ○○방향’이라고 이동경로를 구체적으로 신고하였다면 ○○청 관할 고속도로 진입을 예견하여 미리 대처하도록 처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했을 것으로 보이며, ‘112신고사건 접수·지령시스템 개선계획(○○지방

경찰청, 2013. 6.)'상 관할 구역을 이동하는 광역성·기동성 범죄사건은 112종합상황실에서 지휘토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고자의 신고 당시 위치가 ○○청 관할인 것은 맞으므로 ○○청으로의 이첩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고 112신고코드분류 매뉴얼에 따라 '코드1'으로 제대로 지정한 점 등은 참작될 수 있을 것이나, 소청인이 최초 신고 접수를 시스템상 오기하여 이후 적절한 경찰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한데 대한 원인을 제공한 과실 책임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정

소청인은 112종합상황실 접수요원으로서 신고자의 위치·피해상황 등을 신속·정확히 파악해 적절한 경찰조치가 이뤄지게 해야 함에도, 최초접수자로서 신고자의 신고내용을 시스템상 잘못 입력하거나 관할 지정을 잘못하는 등 사건처리를 소홀히 한 비위사실이 인정되고,

사건 접수 과정에서 미흡하게 대응하여 이후 신고자가 범죄용의차량을 약 45분간(총 32km가량) 추격하고 경찰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게 된 점, 112신고접수는 급박한 위험에 처한 국민이 최초로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인 만큼 국민들로부터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가 기대되는 업무임에도 안일하게 대처한 측면이 있는 점, 그간 112신고체계 개선을 위한 경찰의 내부노력이 있었고 소청인도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수시로 교양 받아 온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에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다고 하겠으나,

소청인이 업무처리 자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112 신고처리 상황별 대처요령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교육이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전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종합 판단해야 할
112종합상황실내 팀장 및 실장 등 지휘부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시스템상 오기의 잘못이 있으나 ○○청 관할로 판단한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을 징계로
문책하기 보다는 본 건을 거울삼아 더욱 직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8. 지명수배자 정보유출 및 검거 태만(정직1월→기각)

처분요지 : 소청인의 처가 투자한 모텔의 건축업자 B의 수배정보를
사적조회하여 처에게 B의 지명수배 사실을 유출하고,
수배자임을 인지하였음에도 즉시 검거하지 않은 비위로
정직1월 처분

소청이유 : 시공업자 B가 공사대금을 주지 않자 하도급업자D가
소청인과 처를 ○○지검에 고소한 상태였던 점, 소청인은
B에게 사기를 당해 빠른 피해회복만을 염두에 두고 이를
마무리 하려고 하였던 점, 징계전력 없고 다수의 표창수상
공적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의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3-573 정직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처가

투자한 모텔의 사업진행이 되지 않자 건축업자 B의 수배정보를 확인 하려는 목적으로 2012. 1. 7. ○○지구대에서 자신의 아이디로 통합 포털시스템에 접속, B에 대해 주민 특정조회하여 지명수배 정보를 확인하는 등 총 4일에 걸쳐 8회 B의 형사사건 지명수배 정보 등을 사적조회 및 취득 후, 2013. 1.~3.경 처 C에게 B의 지명수배 사실을 유출하여 개인정보 사적조회 및 유출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고,

B가 지명수배자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근무하고 있던 중, 2012. 5. 경과 같은 해 10월 불상 일자에 ○○파출소에서 2회 및 불상의 일시·장소에서 3회 등 총 5회 B를 만났음에도 즉시 검거하지 않고 있다가 약 1년 2개월 후인 2013. 3. 3. ○○파출소에 B의 수배사실을 뒤늦게 알려 검거하게 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지명수배 된 자를 발견 시 검거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직무를 태만히 하는 등 의무위반을 한 것이며,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경찰공무원법 제18조 제2항(직무태만 등)을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행위의 중대성, 그간 동종 의무위반에 대한 형평성, 개인정보를 조회 하게 된 동기, 성실하게 근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당시 소청인의 처가 B가 수배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로부터 들었는데,

모텔공사를 같이 진행하면서 B는 전무라는 직책으로 실질적인 공사를 도맡았으나 서류상으로 ○○대표이사 ○○○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B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름과 나이를 추정해 여러 차례 특정조회를 한 것이며, 조회 당시 B에 대해 1960년생부터 1963년생까지 조회한바 10여명이 조회되었고 그 중 1명이 지명수배 되어 있어 짐작으로 B라고 생각했고 처에게도 수배자가 1명이 나왔는데 B인지 모르겠다고 얘기한 것뿐이며,

B에게 속아 대출을 받아서 7억 5천만 원이 공사대금으로 들어갔는데 돈만 계속 달라고 하고 공사는 재개하지 않은 상태였고, 하도급업자인 D는 시공업자인 B가 공사대금을 주지 않자 B는 물론 공사와 관계가 없는 소청인과 처 C를 ○○지검에 고소하였고, 소청인과 처는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B는 불출석해 조사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지검에 수배됐을 것으로 확신하고 처가 B에게 공사 관련 사실확인서를 받아 놓은 것을 알고 B의 주민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여 수배 조회를 하였고, 그 결과 사기 등 10건의 수배사항이 확인되어 2013. 3. 3 같이 근무하는 직원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려 검거한 것이며,

현재 처가 B를 사기로 고소한 상태이고, B는 소청인이 제보하여 수배자로 체포되었다고 생각해 악의적으로 소청인을 검찰에 고소한 것이며, B는 ○○파출소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소청인이 출근하는 것을 보고 찾아와 얘기 좀 하자고 하여 만나게 되었고, 당시 소청인은 사기를 당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빠른 피해회복만을 염두에 두고 이를 마무리 하려고 했을 뿐이며,

소청인은 본 건으로 팀장에서 직원으로 인사 조치되고 다른 경찰서로

인사발령 될 예정이며, 종전부터 앓고 지병이 재발되는 등 건강이 많이 악화되었고, 약덕 건설업자로부터 사기를 당해 대출 이자 감당이 힘들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점, 26년 동안 근무하면서 단 한 번도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고, 경찰청장 표창 등 모두 26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처가 성당에서 B의 수배 사실을 들었으나, B의 정확한 인적 사항을 몰라 이름과 나이를 추정해 여러 차례 특정조회를 한 것이며, 10명 중 1명이 지명수배 되어 있어 짐작으로 B라고 생각했고, 처에게도 수배자가 1명 나왔는데 B인지 모르겠다고 얘기한 것뿐이라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2012. 1. 7. 소청인은 1960년 · 1962년생부터 1963년생 B에 대해 4회 특정 주민조회를 하였고, 이후 2012. 2. 16.부터는 1962년생 B에 대해 4회 특정 주민조회를 실시하였으며, 피소청인 답변서에 따르면 소청인이 조회한 조건과 동일하게 조회해 본 결과, 1962년생 B는 한 명만 조회되었다는 것인 점,

또한 소청인은 감찰 조사 시, ‘개인정보 조회 후 B가 수배가 있다는 사실을 소청인의 처에게 알렸고, 소청인의 처는 B를 소개해 준 사람에게 수배된 사람을 소개해 주었다고 항의하였으며, 이를 B가 알게 되어 문제가 된 것 같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소청인은 개인정보 조회 결과 나타난 수배가 있는 B가 자신이 찾던 B라는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경찰정보통신 운영

규칙(경찰청예규 제449호) 제51조 및 관련 지시에 따라, 경찰공무원은 개인정보를 공무 목적 외에 사적인 목적으로 조회하거나 이로 인해 알게 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처가 투자한 모텔 공사 건축업자인 B의 개인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수차례 조회하고, 이로 인해 알게 된 B의 수배 사실을 처에게 이야기 하였는바, 이는 실정법을 위반한 비위로써 어떤 이유로든 용납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범죄수사규칙 등에 따라 지명통보된 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1개월 이내에 통보관서에 출석하거나 사건이송 신청을 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지명통보자소재발견보고서를 출력하여 피의자에게 교부하고 통보관서로 사건인계서를 작성하여 인계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소청인은 B의 개인정보를 조회하여 'B가 수배자라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파출소 1팀장으로 근무 중 파출소 및 불상의 장소에서 B를 5회 만나고도 처와의 사업관계 등 사적인 이유로 B를 검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B는 추가 범행을 저질렀는바,

B에게 적지 않은 돈을 사기 당했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범죄를 예방하고 경찰사범을 단속 및 검거할 의무가 있는 경찰관으로서 사적인 이유로 직무를 태만히 하고 이로 인해 추가 범행을 예방하지 못한 점 등을 볼 때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 하겠다.

4. 결 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경찰관으로서 사적인 목적으로 B의 개인정보를 수차례 조회하고, 이로 인해 알게 된 수배 사실을 자신의 처에게 누설한 비위가 인정되는 점, 개인정보 사적 조회 및 유출 금지 관련 교양을 수차례 받았고, 특히 소청인은 팀장으로서 부하직원을 교양 하여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이와 같은 비위를 저지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처에게 타인의 수배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하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는 점, 이와 관련 B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지방검찰청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경찰관의 품위를 손상한 점,

개인정보 조회로 수배자라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B를 수차례 만나 고도 사적인 이유로 검거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B는 추가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죄를 예방하고 경찰사범을 단속 및 검거할 의무가 있는 경찰관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9. 등기우편물 분실 및 대리서명(견책→기각)

처분요지 : 등기우편물을 소포담당 직원과 교차 배달해오던 중 소포 담당 직원으로부터 우편물이 보이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았음에도, 마감시간까지 다른 소식이 없자 정상 배달된 것으로 추정하여 본인이 대표 수령인 이름으로 대리 서명하여 배달완료 처리한 비위로 견책 처분

소청이유 : 교차 배달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행하고 있는 업무처리방식이었으며, 소포담당 집배원이 우편물을 마감시간까지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연락이 없어 정상적으로 배달완료된 것으로 추정하여 대리 서명한 것인 점, 등기우편물 분실 후 사후조치를 통해 크게 문제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의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 :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3-456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우체국 기능8급 A

피소청인 : ○○우체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우체국 ○○과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평소 ○○회관에 배달되는 등기통상 우편물을 우편물양이 많고 우편물 중 부피가 큰 것은 오토바이로 배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소포담당 집배원(B)에게 배달을 부탁하였으며, 우편물 인계인수 시 PDA, 포스넷 등을 통하여 전산 등록하여 규정대로 처리하여야 하나, 이를 결행하고 우편물만 인계한 후 본인이 대표 수령인 이름으로 서명하여 배달완료 처리하여 왔으며,

2013. 4. 23. 사건 당일에도 본인 구역의 우편물을 배달하던 중 B로부터 ○○회관으로 배달될 우편물이 보이지 않는다는 소식을 들었으나, 그 이후 마감시간까지 다른 소식이 없자 정상 배달된 것으로 추정하여 본인이 ○○단체 대표 수령인 이름으로 대리 서명하여 배달 완료로 처리하였으며, 다음날 뒤늦게 우편물이 분실된 사실을 알고 찾아보았으나 우편물의 행방을 찾지 못하여 ○○회관으로 배달될 등기통상우편물 12통 및 일반우편물을 최종적으로 분실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소청인은 집배원으로서 직무관련 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고 업무처리에 있어 소홀히 한 것으로 이에 대한 변명의 여지가 없을 뿐 아니라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판단되며,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해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어 건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등기우편물 중 오토바이로 배달하기가 어려운 비교적 부피가 큰 등기우편물은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적 처리를 위해 택배차량으로 배달하는 소포담당 집배원에게 주었고, 대신 소포담당 집배원이 배달하여야 할 택배를 넘겨받아 배달하였으며, 이는 정상적인 업무방식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그동안 관행적으로 행하고 있는 업무처리방식이었으며,

우편물 인계인수 시 PDA, 포스넷 등을 통하여 전산등록하여 처리하지 않은 것은 직원상호간 믿음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기인한 것이며,

사건 당일 소포담당 집배원으로부터 ○○회관으로 배달될 우편물이 보이지 않는다고 연락을 받았으나, 택배차량 내에 우편물이 많아 쉽게 발견할 수 없어 그런 줄 알고 그 외 통상적인 배달업무를 하고나서 소포담당 집배원이 끝내 우편물을 마감시간까지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연락이 없어, 정상적으로 배달완료된 것으로 추정하고 소청인 본인이 ○○단체 대표 수령인 이름으로 서명하여 배달완료 처리하게 된 것이며,

소청인은 등기우편물 12통이 분실된 사실을 다음날 인지하고 발송인과 수취인에게 분실사실을 통보하여 업무상 과실 책임에 대하여 사죄하고 양해를 받았으며, 이중 한 곳에서만 부가세신고서류가 분실된 점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되었을 뿐 크게 문제가 대두되지는 않았으며,

재직기간 15년간 성실히 근무하며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은 점, 어린 자녀와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본건 전책처분으로 타 지역으로 전보될 경우 온 가족이 이사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는 점, 본 건을 거울 삼아 심기일전하여 성실히 근무할 각오인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먼저, 소청인은 교차배달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행하고 있는 업무처리 방식이었으며, 우편물 인계인수 시 PDA, 포스넷 등을 통하여 전산 등록하여 처리하지 않은 것은 직원상호간 믿음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란 생각에서 기인한 것이라 주장하여 살피건대,

우편업무취급에 있어서 배달하여야 할 등기우편물을 집배원에게 인계하는 때에는 전산시스템에서 생성된 배달자료와 우편물을 대조 확인한 후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수수하도록 우편업무취급세칙에 규정되어 있고, 인수인계 철저 등 우편물 분실사고 예방을 위하여 그간 지속적인 교육 및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등기통상 우편물을 인계자와 인수자 간 확인 없이 임의로 일정한 장소에 놓고 인계절차를 밟지 않고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안일한 업무자세라 할 수 있으며, 우편물 인계인수 시 규정대로 처리하지 않은 잘못은 명백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소포담당 집배원으로부터 ○○회관으로 배달될 우편물이 보이지 않는다고 연락을 받았으나, 소포담당 집배원이 우편물을 마감시간까지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연락이 없어 정상적으로 배달완료된 것으로 추정하고 소청인 본인이 ○○단체 대표 수령인 이름으로 서명하여 배달완료 처리하게 된 것이라 주장하여 살피건대,

등기취급제도란 우편물의 접수에서 배달까지 전 과정을 기록하여 만일 취급도중 망실 또는 훼손된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송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로써, 일반우편물보다 배당과정 및 배달 사후 기록

관리에도 명확성을 기하고 있으며, 발송인이 우편물을 보내면서 더 높은 금액을 지불하면서도 일반우편이 아닌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것은 우편물이 틀림없이 도착하도록 하고 또 이를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므로, 등기우편물을 정확하게 배달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체국의 우편 업무에 대한 신뢰로 직결되는 중요한 일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우편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도 등기우편물의 경우 수령인 본인 또는 대리수령인의 서명이나 날인을 직접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 못하고 소청인이 직접 배달하지 않았음에도 정상 배달된 것으로 추정하여 대표수령인 이름으로 대리 서명하여 완료 처리한 것은 등기 우편물 배달업무 태만히 한 것임을 부인할 수 없으며,

또한, 등기우편물 분실 사실을 전화로 통보 받았으면 즉시 현장을 방문하여 우편물을 찾아보거나 상사에게 신속히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일 이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우편물 분실로 인하여 업무처리방식에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이후 상당기간 동일한 방식으로 대리서명 해 온 것은 잘못된 업무처리 방식에 대한 개선의 정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소청인은 등기우편물 12통이 분실된 사실을 다음날 인지하고 발송인과 수취인에게 분실사실을 통보하여 업무상 과실 책임에 대하여 사죄하고 양해를 받았으며, 이중 한 곳에서만 부가세신고서류가 분실된 점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되었을 뿐 크게 문제가 대두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우체국에서는 우편물 분실 및 대리서명 등으로 인한 민원 제기와 대외적으로 문제가 대두될 것을 막기 위하여 우편물류과장 등이 발송인 및 수취인을 직접 방문하여 우편물 분실에 대하여 양해를 구하고 관할 세무서에 부가세 신고 납부기한을 연기 요청하는 등 사건 수습을 위해 상당 기간 노력하였기 때문에 민원의 발생이 적었던 것으로 보여지며,

본 분실건과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한 업체의 경우, 분실된 우편물에 중요한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사후 외부유출 등에 대해 책임질 것을 요청한 상태로서 이는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며, 민원의 발생 여부와는 별개로 등기우편물 배달 업무를 태만히 한 의무위반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등기우편물의 정확한 배달을 위한 우편관계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원에게 배달을 맡기고 소청인이 임의로 대리서명을 한 것은 등기우편물 배달 업무를 소홀히 한 것임을 부인할 수 없는데다가, 소청인의 대리서명행위는 우편배달업무에 대한 신뢰를 심히 손상케 하는 행위인 점, 또한 본 분실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이후 상당 기간 동안 이전의 방식대로 등기우편물을 배달하고 대리서명 해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0. 미 배달 우편물 유기(파면→기각)

처분요지 : 미 배달 우편물 약 705통을 업무가 힘들다는 이유로 하천변에 유기한 비위로 파면 처분

소청이유 : 소청인은 지체장애 6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으로서 2013년 6월 팀 내에서 가장 많은 빠른등기소포 물량을 소화한 점, 비위 혐의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의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 :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3-601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우체국 기능9급 A

피소청인 : ○○지방우정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3. 1. 14. ○○우체국에 임용되어 집배업무를 수행하던 공무원으로서, 2013. 7. 7.(일) 24:00경 미 배달 우편물 약 705통을 업무가 힘들다는 이유로 하천변에 유기하였으며, 이튿날 민간이 발견 신고함으로써 우정사업의 대외 이미지를 크게 실추한 비위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또한 당시 시보임용 중이었으므로 시보임용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면, 우편물을 유기한 행위는 공무원으로서의 소양 부족과 기본의무를 저버린 위법행위로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고, 우편서비스 이용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훼손을 예방하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문책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피소청인은 이 사건 비위행위가 소청인의 시보 임용기간 중 벌어진 점을 이유로 배제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시보 임용은 임용 예정직의 업무를 수행할 기회를 부여하며 그 업무에 적응도를 높이기 위한 기간으로서, 시보임용 중 비위 혐의를 저질렀다고 하여 반드시 배제 징계를 할 것이 아니며, 이 사건은 소청인이 2013. 1. 14. 임용된 이래 약 6개월 가량의 시간이 지난 후에 발생한 것으로, 소청인의 시보 직위 등을 문제 삼아 가중 처벌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사료되고,

소청인이 업무량과 관련하여 “본인이 감내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은 이 사건 비위를 저지른 것에 대한 반성차원에서 위 우편물을 모두 배달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 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의 진술일 뿐 결코 소청인의 업무가 과중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아니며, 이 사건 비위 발생 경위를 보더라도 소청인이 새벽 2시까지 근무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바, 소청인의 업무는 그 과다함이 상당하다고 볼 것이고,

아울러, 소청인은 지체장애 6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으로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일반인에 비해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여, 2013. 1. 14. 임용된 이래 매일 14시간 이상 근무하며 수시로 야근을 하였으며, 2013년 6월 팀내에서 가장 많은 빠른등기소포 물량(791건)을 소화하였고, 소포물량을 기준으로 전임자와 비교시 일 평균 약 2.4배 업무를 부담하였으며,

우정사업본부 징계양정세칙 ‘징계의결 요구기준’을 살펴보면, 우편물의 유기가 고의일 경우 ‘정직이상’을 요구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이 사건 징계처분은 특별한 사유 없이 징계양정세칙 징계의결 요구기준을 3단계나 상회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국가공무원법」 제29조에 따르면, 6급 이하의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6개월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에 근무성적이 좋으면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하고,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 근무성적이나 교육훈련 성적이 나쁜 경우에는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시보 공무원은 정규공무원에 대한 신분보장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아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임용을 배제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통상 시보기간 중에는 보다 성실히 근무하고 더욱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소청인이 동 징계처분의 양정판단의 참작사유로 삼은 것에 특별한 문제점이 있어 보이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소청인 소속팀의 6월 한 달간의 배달물량을 전체적으로 살펴

보면, 빠른등기소포 물량도 팀 내 비슷한 물량을 배달하는 집배원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총 배달물량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소청인은 팀 내 14명중 7번째에 해당하는 등 배달물량이 팀내 타 직원에 비해 월등하게 많은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집배업무량은 배달물량뿐만 아니라, 이동거리, 배달 난이도, 우편물 순으로 구분, 우편물 수집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집배실장은 오히려 소청인을 배려하여 이동거리가 짧고 순으로 구분 및 배달이 용이한 아파트단지 및 다량 배달처를 배달구역으로 배정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2013. 11. 25. 이 사건 소청심사 시 참석한 피소청인 대리인이 ○○우체국에 근무하는 대다수 집배원들이 관내 인구량의 증가 등에 따라 야근을 많이 하고 있고, ○○지방우정청내 장애인 집배원 84명이 모두 정상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에게 업무량이 과도하게 배분되었다거나 업무량이 지나치게 많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가사, 소청인의 주장대로 업무량이 과중하여 배달하기 곤란하였다면, 먼저 팀장이나 집배실장, 우편물류과장에게 배달구역 조정 또는 배달 지원을 요청 하여 합리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노력 없이 소청인이 자의적으로 다량의 우편물을 유기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징계양정은 징계혐의자의 비위유형 및 정도, 과실의 경중과 평소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의결하는 징계위원회의 재량사항인 바,

본 건의 경우, 우편물을 약 705통이나 무단으로 유기하여 우정사업의 대외 이미지를 실추시킨점,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소양과 배달사고 관련

교육을 수시로 받아왔음에도 시보기간 중 집배원의 기본의무를 저버린 행위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우편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 문책으로 공직기강 확립이 필요한 점, 우편물 은닉에 대한 해임처분 사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계양정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동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은 집배원임에도 우편물 약 705통을 무단으로 유기한 비위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우편물 유기행위는 국민의 소중한 우편물을 안전하고 정확하게 배달해야 하는 집배원의 가장 기본적인 직분을 망각한 행위인 점, 형사고발 대상비위로 우편법 제48조에서 우편종사자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점, 다량의 우편물을 무단 유기한 행위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 비위 정도가 중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이는 점, 우편서비스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실추시킨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Ⅲ. 품 위 손 상

31. 음주운전(감봉1월→기각)

처분요지 :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주취상태에서 차량의 이동 주차를 위해 약 300m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된 비위로 감봉 1월 처분

소청이유 : 원 처분이 관련 징계기준 규정에서 정한 지극히 제한적인 징계양정 범위에서 결정된 점을 고려할 때 과중한 처분이며, 타지방청으로 전보처분을 받은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의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3-123 감봉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교도소 9급 A

피소청인 : ○○교도소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교도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2012. 12. 14.(금) ○○도 ○○시 ○○구 ○○동에 위치한 주점에서 지인과 소주 약 6잔과 맥주 1명을 마신 후 자동차를 주차해 둔 ○○주차장이 24:00에 문을

닫는다고 하여 차량을 인근 주차공간으로 이동주차하기 위해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백화점 주변까지 약 300m를 진행하던 중 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혈중알코올농도 0.108%)되어, 2013. 1. 3.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위반으로 구약식 기소된 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및 동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동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 사유에 해당되므로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본 사건의 경우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주차장의 폐장으로 인해 이동주차를 하던 중 적발된 것으로, 공무원 징계령 시행 규칙을 보면 최초 음주운전의 경우 ‘견책~감봉’으로 징계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부 산하기관인 ○○국(○○공무원), ○○국(○○공무원), ○○본부(○○공무원) 등의 음주운전 징계기준이 소청인과 동일한 사항인 경우 ‘견책~감봉’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 시달’에서는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그 사건의 내용과 상관없이 징계수위를 ‘감봉’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원 처분의 경우 제반사항을 참작하여 결정되었기 보다는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에서 정한 지극히 제한적인 징계양정 범위에서 결정된 점을 고려할 때, 원 처분은 과중한 처분이며,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 시달’에 따라 소청인이 ○○지방교정청 소속기관으로 전출되었고, 이로 인해 소청인 뿐 만 아니라 주위 가족도

감당해야할 고통이 너무 큰 점, ○○교도소에 임용되어 경력 기간이 짧지만 성실하게 근무한 점, 벌금 ○○만원 처분 및 감봉 1개월 처분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은 점,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직무의 내·외를 따지지 않고 헌신적으로 살며 이번 오점을 만회하고자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및 결정

소청인은 이동주차를 하고자 운전을 하였으며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의한 원 처분이 과중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여 살피건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및 1999. 8. 20. 선고 99두2611 판결 참조)에 따르면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으로, 재량권의 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등 제반 요소를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직무의 특성과 사안의 성질 등에 따라 징계의 종류와 양정을 차별적으로 취급하더라도 이는 합리적 차별에 해당하여 평등원칙 내지 형평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어 징계권자는 당해 기관의 직무 특성과 행정목적 등을 감안하여 다른 기관과 차별되는 별도의 징계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는바,

본 건은 ○○직 공무원의 직무 특성 등을 고려한 별도의 징계기준인 ‘○○공무원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양정이 이루어졌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서도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견책~감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청인이 비록 이동주차를 하기 위해 운전을 하였던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시보의 신분으로 혈중알코올 농도 0.108%의 상태에서 약 300m을 운전하던 중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었고, 이로 인해 벌금 ○○만원의 형이 확정된 점을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은 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복무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6. 18. 02:50경 본인 소유 차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22% 주취상태로 운전하여 귀가하다 ○○시 ○○구 ○○동 소재 ○○터널 출구 약 100m 지점에서 중앙분리대와 접촉하는 사고를 야기하고, 같은 날 ○○경찰서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형사 입건되는 등 복무규율을 위반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그간 ○○과 등에서 가정을 등한시 한 채 열심히 근무하여 수많은 ○○범과 ○○범들을 검거하였지만,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둘째와 심근증을 앓고 있는 셋째에게 더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과에서 지구대로 옮겨 가정에 충실하고자 하였고, 2011. 2.경 ○○지구대로 발령 받은 이후에도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지역형사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절도범들을 검거하는 등 열심히 근무하였으며, 집에 와서는 아이들을 돌보며 시간을 보냈으나 두 아이의 치료비와 주택담보 대출 이자 상환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워 수당을 더 받기 위해 자원근무를

신청하여 휴무일에도 근무하였고, 소청인이 휴일근무를 하면서 잘 돌봐주지 못하자 둘째 아이가 경기(뇌전증) 증상으로 치료를 시작해 치료비가 더 들게 되어 음주사고 발생 두 달 전부터 수당이 더 많은 야간자원 근무를 하게 되었으며,

2013. 6. 17.경 근무를 마치고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종사촌형 장례식에 가서 이종사촌누나를 위로하면서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는데 소청인의 둘째와 셋째 아이가 아픈 사정을 이야기 하면서 안주도 없이 계속 술을 마시게 되었고,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모르지만 이후 기억이 없고 깨어나 보니 병원 응급실 이었으며, 옆에 있던 치료부터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냈다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게 되었는바,

아이들이 아파 언제 응급실에 가야될지 모르는 상황과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인해 평소 술을 거의 입에 대지 않았던 점, 15년 동안 경찰을 평생직장으로 생각하고 성실히 근무해 온 점, 음주운전으로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및 결정

소청인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음주운전을 단속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경찰공무원의 지위에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소청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2%(기기측정)의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음주운전을 회피하고자 하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2013. 6. 10.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으로 자체 음주운전 등 예방을 위한 특별감찰 기간이었고, 청문감사실에서 거의 매일 음주운전 금지 관련 문자를 보냈으며, 소청인은 사고 전일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던 점, 검찰에서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〇〇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다만, 소청인과 피소청인은 당 위원회에 참석하여 소청인이 평소 술을 많이 마시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본건 외 음주운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두 자녀의 병원치료비 등으로 가정 형편이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본건 징계를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3. 교통안전 담당 경찰관의 음주운전사고(강등→기각)

처분요지 : 혈중알코올농도 0.149%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 소유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처가로 가던 중 사거리 앞 노상에서 신호대기중인 택시기사 B의 차량 운전석 뒤 펜더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비위로 강등 처분

소청이유 : 평소 내리기사를 부르는 등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와 원만한 사고 처리를 한 점, ○○처장 표창 1회, 경찰청장 표창 2회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점, 소청인의 아내와 동료경찰관 등 158명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의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3-483 강등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교통안전계에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으로서, 2013. 6. 22. 야간 당직근무이나 휴무를 신청하여 같은 날 13:00~22:00경까지 ○○대학교에서 열린 ○○배 ○○대회에 참가하고, 같은 날 23:00경부터 다음날 01:00까지 ○○시 ○○구 ○○동 소재 ○○식당에서 위 ○○동호회 회원들과 회식하면서 소주를 한 병 반 정도를 마신 후,

혈중알코올농도 0.149%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 소유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처가인 ○○시 ○○구 ○○동 소재 ○○아파트로 가던 중 2013. 6. 23. 02:30경 ○○시 ○○구 ○○동 ○○ 사거리 앞 노상에서 신호대기중인 택시기사 B의 차량을 발견치 못하고 운전석 뒤 펜더부분을 충격하여 차량수리비 약 147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도로교통법위반으로 형사 입건 및 언론보도로 물의를 야기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배한 것으로 동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각호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음주단속 근무를 하고 있어 음주운전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평소에도 음주를 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였으며, 부득

이하계 소청인의 차량을 가지고 나갔다가 갑자기 음주를 하게 되면 택시를 이용하거나 대리운전기사를 이용하였는데,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는 함께 근무한 동료경찰관인 D 외 12인이 진술서 상에 확인해준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연락하여 본의 아니게 피해를 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리고 차량 수리비 147만원에 대해서는 보험처리를 하였으며 인적피해가 없는 점,

부모님이 연로하여 매월 용돈을 드리는 등 부양을 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동료경찰관들이 소청인과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방경찰청 인터넷 공지사항에 사죄의 글을 올린 점, 약 16년간 성실히 근무하면서 ○○처장 표창 1회, 경찰청장 표창 2회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하며 확고한 국가관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성실히 근무하여 전년 2개년도 인사고과 및 치안성과 등급이 우수한 점, 소청인의 아내와 상하 동료경찰관 등 158명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감경하여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및 결정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더욱 엄정한 사회규범의 준수와 품위를 유지해야 할 경찰공무원이 이를 위반할 경우 그 비난의 정도가 매우 높은 실정인 바,

소청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상당히 높은 수치로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의 차량을 후미에서 추돌하여 물피사고 야기하였으며, 이와 같은 비위에 대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징계양정은 해임·강등인 점, 이 사건 당시에 음주운전을 해야만 하는 급박한 사정이나 불가피성, 음주운전 회피노력은 전혀 없었다고 보여 지는 점, 소청인이 그동안 음주운전 및 입직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경찰청장 표창을 1회 수상한 경력이 있으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은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에 대하여 상훈감경을 제한’ 하고 있는 점, 소청인은 직접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교통외근 요원으로서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더 알고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취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함으로써 이와 같은 내용이 ○○등 총 8회에 걸쳐 언론 보도되어 성실한 대다수 경찰관의 명예와 품위를 실추시킨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인되기 어려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4. 가정폭력 및 존속협박(견책→기각)

처분요지 : 처와 처남, 장인에게 상해, 재물손괴, 협박을 가하여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각각 벌금 ○○만원 및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비위로 견책 처분

소청이유 : 단순한 부부싸움까지 징계대상으로 삼는 것은 가혹한
처사로 과도한 기본권의 제한이고, 피해자인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므로 원 처분의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 :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3-178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청 7급 A

피소청인 : ○○위원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됴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11. 6. 14.부터 2012. 3. 10.까지
총 32회에 걸쳐 가정불화로 이혼 이야기가 오가던 중 별거를 위해 가출

하였다는 이유로 처에게 공포심과 불안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2011. 10. 16. 처에게 폭행을 가하여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을 입혀 2012. 10. 19.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상해 등의 죄명으로 벌금 ○○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처남이 자신을 상대로 욕설과 폭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을 가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표재성 손상 및 찰과상을 입히고, 처남의 안경을 벗겨 집어던지는 행동으로 150,000원 상당의 손괴를 입혀 2012. 11. 26.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상해 및 재물손괴 등의 죄명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2012. 9. 12. 장인에게 문자로 위협하여 2012. 12. 11.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존속협박 죄명으로 벌금 ○○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라 하였고, 단순한 부부싸움까지 징계대상으로 삼는 것은 가혹한 처사로서 개인의 자유를 심히 침해한 것이며, 과도한 기본권의 제한으로 위헌적인 소지가 크고, 피해자인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단순한 부부싸움까지 징계 대상으로 삼는 것은 가혹한 처사로서 개인의 자유를 중대히 침해한 것으로 과도한 기본권의 제한이며, 피해자인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어 공소권 없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소청인이 가족인 처 및 처남, 장인에게 상해, 재물손괴, 존속 협박 사실로 ○○지방검찰청으로부터 벌금 ○○만원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은 단순한 부부싸움으로만 보기 어려우며, 그 사실이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비위 사실이 공무집행과 관련된 것이 아니더라도 공무원으로서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한 때에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는 점, 대법원 판례(1987. 12. 8. 선고, 87누 657,658 판결 및 1998. 2. 27. 선고, 97누 18172 판결)에서 공무원의 품위손상 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징계벌과 형사벌은 권력의 기초·목적·내용·대상 등이 다른 별개의 제재로서 형사벌과 무관하게 징계벌이 가능하다는 점, 소청인이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라 가족들의 처벌 불원 의사와 상관없이 소청인에 대한 공무원범죄사실 통보로도 징계 처분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 건의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은 공무원으로서 일반 국민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서 규정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가족인 처와 처남, 장인에게 상해, 재물 손괴, 협박을 가하여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각각 벌금 ○○만원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5. 동료직원과의 상호폭행(감봉3월→기각)

처분요지 : 파출소 내 근무시간 중 근무복을 입은 상태에서 동료 경찰관과 상호 욕설을 하고 폭행을 2회나 하여 물의를 야기하고 품위를 손상한 비위로 감봉3월 처분

소청이유 : 1차 폭행의 경우, B에게 욕설과 폭행을 당한 것으로 소청인은 위해를 가하지도 못하였고 이 정도 반응은 일반적이라 생각되는 점, 2차 폭행의 경우 먼저 사건의 원인을 유발하지는 않은 점, 1차 폭행 이후 화해를 위해 노력한 점, 그간 성실히 근무한 점 등 제반 정상을 감안 하여 원 처분의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3-346 감봉3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대통령 취임식 관련 경계강화기간 중으로 경찰관으로서 복무기강을

확립하라는 지침이 있었던 2013. 2. 21. 18:53경 소청인이 “2월 중 ○○팀의 심야근무가 2번 남았고, ○○팀에서 한 명은 지원 나와야 하는데 왜 안 나오냐”고 하자, 경사 B는 “네가 ○○팀에 있을 때에 심야 근무 안했으니, 네가 따블로 하면 되겠네”라고 대꾸하고 신문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

소청인은 “몸이 1개인데 어떻게 따블로 하느냐”라고 답하자 이에 경사 B가 “따블로 해, 개호로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너 지금 나 간 보냐”고 하여, 소청인은 “에이 이 사람아 나이도 두 살 밖에 차이 안 나면서 누구에게 반말을 해”라고 하니 경사 B는 “두 살 더 먹은 사람이 두 살 적은 사람에게 반말 못해”라고 하며 약 10분간 언쟁을 벌이던 중, ○○팀장 경위 C가 이에 개입하여 근무지정표를 민원 안내대에 놓고 대화하고 있는데 갑자기 흥분한 경사 B가 왼손바닥으로 소청인의 오른쪽 뺨을 1회 폭행하고 파출소 뒤편 주차장에서 다시 발로 소청인의 배를 1회 폭행하였는데 이에 소청인도 “죽여 버리겠다, 쌍놈의 새끼”라고 욕을 하며 경사 B의 근무복을 잡아당기며 주먹과 발을 휘두르며 폭행하였으나 동료들의 제지로 끝이 났고,

소청인과 경사 B는 위 폭행사건 이후 서로 화해하지 않고 감정이 남아있던 중 2013. 3. 12. 07:30경 경사 B는 112 신고 접수 컴퓨터 앞에서, 소청인은 보일러 앞 의자에 앉아 TV를 시청하다가,

소청인이 실내보일러와 책상 사이의 비좁은 통로로 들어오더니 경사 B가 앉아 있던 의자를 밀면서 “비켜, 이 새끼야, 어디를 막고 있어”라고 욕을 하자 경사 B가 “뭐야?”하며 일어날 때 소청인이 경사 B의 왼쪽 잠바 계급장 부분을 잡아당겨 똑딱 단추가 떨어지고 안경이 바닥에

떨어졌고, 경사 B는 소청인의 먹살을 잡고 주먹으로 안면을 수회 폭행하여 위, 아래 입술에 상처가 나고 치아 3개가 시리고 약간 흔들릴 정도였는데 소청인도 이에 흥분하여 참지 못하고 근무를 위해 차고 있던 가스 분사기를 꺼내 대항하려다 동료들의 제지로 꺼내지 못하고, 다시 삼단봉을 꺼내 들었으나 동료들의 제지로 역시 집어넣은 후 파출소 내 화분 위에 있던 돌(무게 1.04kg, 12×7×7cm)을 집어 들고 달려들었으나 동료들이 대상자를 잡고 에워싸 제지하여 폭행을 가하지는 못한 것으로, 경찰관 으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아니 될 행위를 2회씩이나 하여 물의를 야기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에 위반되고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해당하며, 형법 제260조(폭행),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3조(근무기강의 확립) 제1항,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규율), 제4조(예절), 제7조(일상생활)에 위반되어 감봉 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2013. 2. 21. 1차 폭행 관련, 소청인은 경사 B에게 후배들을 비롯한 동료들이 모두 모여 있는 자리에서 “개 호로놈의 새끼야”, “개새끼”, “니가 따블로 해” 등 심한 욕설을 듣고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했고, 이에 대응하여 주먹과 발을 내 질렀으나 위해를 가하지는 못하였는데, 제복인 으로서 좀 더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감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사실이지만 경찰관이기 이전에 감정을 가진 인간으로서 소청인 정도의 반응을 보이는 것은 오히려 일반적인 정도로 생각되고,

2013. 3. 12. 2차 폭행 관련, 처분청은 소청인이 바쁘지도 않은데 열쇠를 가지러 일부러 좁은 통로를 지나면서 경사 B가 누운 의자를 밀어 먼저 사건의 원인을 유발하였다고 하나, 파출소 내 경찰관 대부분은 지근 거리인 난로 옆 통로를 지나다니며 특히 소청인은 마른체형으로 좁은 통로라고 하나 지나는데 용이하여 늘 이용하며,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는 경우 경사 B가 길게 누워있어 다리에 걸리거나 서로 얼굴을 마주보게 될 것이 예상되어 기피하였던 것이므로, 처분청이 일부러 좁은 곳을 지나면서 원인을 유발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개개인의 경험칙을 가지고 잘못 유출한 것이며,

소청인은 1차 폭행 이후 경사 B가 사과를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팀장에게 사과해줄 것을 전달하여 달라하고 기다렸으나 사과하지 않았고 이후 소청인이 오히려 소장에게 “B경사와 사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경찰서장에게 찾아가 사죄드리자는 말을 수회 전하는 자구책을 구한 것으로, 총 22년 8개월간 근무하면서 경찰서장 16회, ○○지방경찰청장 2회 표창을 받는 등 맡은 바 일을 다 하는 외근 경찰관으로 음지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였고, 탄원인들도 공통적으로 소청인이 어렵고 힘든 일에 늘 앞장서서 일하는 적극적인 업무태도를 일하는 모범직원으로 평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 처분은 다소 과하다고 판단되므로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2013. 2. 21.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폭행 사건의 단초가 된 야간 자원근무 문제의 경우, 야간 자원근무에 필요한 인원이 부족

하면 팀장이나 파출소장이 이를 조정할 것이지 같은 팀원 입장인 소청인이 경사 B에게 야간 지원근무를 하라고 할 권한은 없을 것이며,

소청인의 주장대로 경사 B가 소청인에게 욕설을 하고 소청인의 뺨을 먼저 때렸으며 소청인은 경사 B에게 직접적으로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는 곤란하고 경사 B도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으나,

당시 함께 있었던 동료 경찰관의 진술과 CCTV 영상을 미루어볼 때 소청인도 경사 B에 폭력으로 맞대응하기 위해 주먹과 발을 휘두르고 먹살을 잡는 등 양자 간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이며 다만 동료들의 제지로 정확하게 가격하지는 못하고 일부 몸에 빗맞은 것으로 보이므로 폭력에 폭력으로 대응하였던 것은 결코 부인할 수 없고, 소청인은 위와 같은 자신의 행위가 경찰관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 당연한 것으로 주장하나 이는 근무시간 내에 정복을 착용하고 지구대 내에서 동료경찰관과 심한 욕설과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행동을 한 것에 대한 변명에 불과하며 폭행 당시 직속상관인 경위 C가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상관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치 않은 점 등을 미루어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2013. 3. 12.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1차 폭행사건 이후 더 이상의 동료경찰관 간의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어야함에도 그러지 아니하고 굳이 야간 근무를 마치고 앉아 있는 경사 B의 의자를 밀고 들어가 2차 폭행사건까지 야기 시킨 점, 실제 주야간 교대시간에 서로 장비를 확인하여야 하므로 미리 순찰차량에 실어 두지는 않는 점, 함께 근무한 동료들 대부분 소청인이 사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2회 폭행사건 모두

소청인이 먼저 싸움의 단초를 제공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일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다음으로 소청인은 자신이 먼저 경사 B에게 수차례 안면을 가격 당하여 이가 흔들리고 입술에 상처가 나 피가 나는 등의 일방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소청인은 경사 B의 계급장을 떼고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도록 한 정도에 그쳤다 하더라도,

이는 1차 폭행과 같이 동료들의 제지로 맞대응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소청인은 긴급한 공무수행을 위해 지급된 가스총과 삼단봉 등을 꺼내려 하고 무게가 1kg이 넘는 화분 위 돌을 집어 들고 “죽여 버리겠다, 끝장 내겠다”고 말하는 등 극도의 흥분상태를 보였는 바, 이는 단순폭행을 넘어선 특수폭행을 예비한 행동으로 보여 지는 너무나도 경솔하고 위험한 행동이 아닐 수 없고, 더불어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2000도5716)를 볼 때 소청인이 일방적으로 경사 B에게 폭행당한 사건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1차 폭행 다음 날 ○○팀장인 경위 C가 소청인과 경사 B에게 각각 화해를 권유하였음에도 모두 만나는 것 자체를 거부하였으나, 이후 4일이 지난 2.25경 ○○팀장인 경위 D가 경사 B에게 소청인을 회식 자리에 합석시켜도 되겠냐고 묻자 경사 B는 좋다고 하는 등 화해의 의사를 보였음에도, 정작 소청인은 듣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욕을 하는 등

화해의 의지가 없었고, 마라톤을 준비하면서 식사조절을 하고 있어 회식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하나 진정 화해할 의지가 있었다면 회식자리 전후에라도 얼마든지 기회는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바,

함께 근무하는 다른 동료와의 팀워크를 생각해서라도 본인의 감정은 가라앉히고 최소한 만남에 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감정만을 내세웠던 것으로 보이며,

소청인이 진술한 것과 같이 1차 폭행 사건 시 화해했다면 2차 폭행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임은 당연한 상황임에도 그러지 아니하다가 뒤늦게 2차 폭행 이후 ○○팀장 경위 C가 화해하라고 하자 “죄송합니다. 화해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였던 것은, 파출소장이 ○○과장과 청문 감사실에 보고하기로 정한 상황에서 징계를 받는 등 인사 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질 수 밖에 없어 화해를 위해 노력했다는 소청인의 해명이 쉽게 납득되기 어렵고,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건대, 처분청은 본 건 비위 관련자인 경사 B와 소청인 모두 중징계 의결 요구하였으나 징계위원회는 경사 B에게는 ‘정직1월’ 처분 후 타 서 인사발령 시켰음에도 소청인에게는 경징계에 속하는 ‘감봉3월’ 처분을 하였는데, 이로 볼 때 경사 B가 선 폭력을 행사한 점, 소청인은 실질적인 폭력행사는 제대로 하지 못하고 폭행 피해를 입은 점, 그간의 근무 기간과 공로를 이미 감안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 처분이 과중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정

소청인은 국민간의 폭행행위를 예방·방지해야할 경찰공무원으로서,

근무시간 내 정복을 입은 상태에서 경계강화 기간임에도 동료경찰관과 사소한 이유로 1차 폭행사건을 일으킨 점, 그럼에도 반성하지 않고 화해 하라는 팀장들의 중재에도 응하지 않다가 다시 2차 폭행사건을 일으키는 등 2회에 걸쳐 폭행사건에 연루된 점, 2차 폭행사건 시에는 동료들의 제지로 실제 사용은 하지 못했다고 하나 업무를 위해 지급된 가스총과 삼단봉과 나아가 돌까지 들어 대응하려 했던 점으로 볼 때 그 양태가 상당히 나쁜 점, 이와 같은 행동에 대해서도 본인이 먼저 폭행을 당하여 이에 대응한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다소 부족한 점, 관련자인 경사 B는 ‘정직1월’ 처분을 받았고 소청도 제기하지 않은 점, ○○년 ‘견책’ 징계 사유도 폭언·폭행으로 인한 민원 야기인 점 등 그간 갑자기 흥분하는 성격으로 인한 업무적으로도 물의를 자주 야기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고, 앞으로 남은 공직생활에서 사적 감정을 자제하고 본 건을 거울삼아 공무에 정진하라는 의미에서도 원 처분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소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근무하여야 하고,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관련 서류가 없어 사용신고 및 의무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오토바이센터’를 통하여 ○○경찰서 ○○계에서 공매한 이륜자동차(○○cc)를 구입하여 4년여를 불법으로 운행하였으며,

2012. 11. 15. 16:00경 ○○시 ○○구 ○○동 ○○은행 앞 노상에서 등록번호가 없는 당해 이륜자동차를 불상거리 운행한 혐의로 2012. 12. 28. ○○경찰서에서 불구속 입건되고, 2013. 1. 31.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2013. 3. 13. ○○구청에서 과태료(○○만원) 처분을 받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바,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반되며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그 동안 근무하면서 경찰서장 등 표창 수상 경력이 있는 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12. 11. 15. 발생한 뺑소니 교통사고의 피해자로서

당시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하였으며, 가해자를 잡기 위하여 스스로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조사를 받다가 적발되었으나 현재까지도 가해자가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감봉 2월 처분을 받은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약 21년 6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범인검거 우수실적표창 등 총 10회 표창을 수상한 점, 소청인이 받은 심적·경제적 고통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나, 자신은 뺑소니 교통사고의 피해자로서 교통사고 사실을 신고하다가 의무위반행위가 적발된 것이고, 당시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으며, 여전히 교통사고 가해자가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감봉 2월’ 처분을 받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청인이 2012. 11. 15. ○○구 ○○동 ○○은행 앞 노상에서 본인 소유의 무등록 이륜차량을 운행하다가 다른 이륜차량을 운행하는 신원 불상자에게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하여 전치 3주의 부상을 입고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가해자가 잡히지 않아 당해 교통사고에 대하여 ‘기소중지’된 사실이 있으나 이러한 사실과 징계사유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할 것이고,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행위자에 대한 의무위반행위의 유형·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의결을 하여야 하는 바,

본 건 징계 처분을 의결한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는 위법행위를 단속하는 주체인 경찰관에게 고도의 준법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와 제84조(과태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운행의 금지)와 제46조(벌칙)에 따라 사용 신고 및 의무보험가입을 하지 않은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처벌대상이 되는 점, 소청인이 이러한 내용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등록이 불가능한 이륜자동차를 구입하여 약 4년 간 불법으로 운행하다 적발되어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소청인의 평소 행실과 근무성적 등의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2월’ 처분을 내린 바,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은 위법행위 단속의 주체인 경찰공무원으로서 고도의 준법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며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사용 신고 및 의무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이 위법행위라는 사실과 당해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사용 신고 및 의무보험가입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약 4년 간 불법으로 운행한 사실에 대하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르면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 위반 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감봉’을 징계기준으로 삼고 있는 점,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구청으로부터 과태료(○○만원) 처분을 받은 점, 출퇴근 시에도 당해 이륜자동차를 이용한 사실이 있어 경찰공무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으로 보이는 점, 법령을 준수하며 국민의 모범이 되는 경찰공무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7. 상사 등에게 전화로 음주추태(해임→강등)

처분요지 : 2012. 12. 27. 새벽 상사들에게 전화를 하여 음주추태를 한 후 ○○파출소를 방문하여 추태를 보이고, 2013. 3. 5. 전 ○○서장에게 전화를 하여 모욕적인 언사로 위계질서를 문란하게하고 음주추태를 부리는 등의 비위로 해임 처분

소청이유 : 2012. 12. 27. 전화한 내용과 ○○파출소에서의 음주 추태는 전혀 기억나지 않고, 2013. 3. 5. ○○서장에게 전화는 인사차 한 것인데 통화내용은 기억나지 않으며, 22년 7개월간 성실히 근무한 점, 가장으로 생계를 책임 지고 있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2012. 12. 27.은 전화하여 특별히 욕설이나 폭언 등의 언사는 없었던 점, 평소 근무는 성실히 해온 것으로 평가 받고 있는 점, 징계이후 문책성 인사발령 등으로 조직 적응에 어려움이 있었을 사정과 평소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은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감경 결정

사 건 : 2013-367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13. 5. 14.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강등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2012. 12. 27. 04:03경 술에 취해 전 ○○경찰서장(총경 B 1회, 총경 C 2회), 전 청문감사관(경감 D), 전 파출소장(경감 E) 등 상관에게 전화를 걸어 “이 전화는 녹음되고 내일 사표 제출하겠다. 서운하다”, “내가 이렇게 밤에 상관에게 전화하여 징계를 먹었다”는 등 횡설수설하며 음주추태 하고, 같은 날 08:13경 ○○파출소를 방문, ○○파출소에 전화하여 “나 ○○팀 A경사인데 차 좀 보내라”고 말하고 직원들 앞에서 ○○파출소 직원임을 알리고 사직서를 읽어주고, 피의자 대기석에 앉아 “여기가 F경사가 근무하던 곳 맞죠, F경사가 한번 실수한 것인데 징계가 너무 세지 않았냐, 내가 ○○파출소 A경사인데 오늘 사표를 낼 것이다”고 하며 횡설수설하는 음주추태를 보이고, 2013. 3. 5. 15:28경 술에 취해 전 ○○경찰서장(총경 G)에게 전화를 걸어 “너 ○○서장 G 맞냐? 내가 선배인데 모르냐, 많이 컸다, 똑바로 해라”라고 지휘관에게 모욕적인 언사로 횡설수설하며 상관에 대한 위계질서를 문란케하고 음주추태 부리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2012. 12. 27. 04:30경 음주추태 관련, 당시 휴무 날 지인 목사 문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양주 반병정도 마시고 술을 깨기 위해 거리를 방황하다 B서장에게 전화하였으나 통화를 못했고, 이어 C서장, 전 청문관 D, 소장 E에게 통화한 내역이 확인되나 내용은 전혀 기억이 없는데 지인이 40대 나이에 타계한 슬픔 때문에 그랬는지 알 수 없으나 잘못은 인정하고, 같은 날 ○○파출소에서 음주추태 관련, 만취상태에서 전혀 기억나지 않고 F는 면식조차 없는데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이해 되지 않으며, 2013. 3. 5. ○○경찰서장에 전화 관련, G총경과는 ○○대 ○○장과 팀원으로 같이 근무했고 인사차 한 것인지 통화내용이 전혀 기억이 없고, 이후 사과하려고 2번 방문하였으나 만나지 못했는데 잘 못된 부분이 있다면 사과드리고 싶고, 22년 7개월간 성실히 근무한 점, 노부모와 처, 세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실장 표창 등 표창 공적,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2012. 12. 27. 전화한 내용이 전혀 기억나지 않고 2013. 3. 5. ○○서장에게 전화 관련, ○○대 시절 같이 근무하여 인사차 전화한 것인데 통화내용은 기억나지 않고, 이후 2번 방문해 사과하려 했으나 만나지 못했으며, 22년 7개월간 성실히 근무한 점, 가장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하여 이를 살펴보건대,

「경찰공무원복무규정」에 따르면 제3조 제3호에서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며, 상사에 대한 존경과 부하에 대한 신애로써 규율을 지켜야 한다’고 하고, 제4조에서 ‘상·하급자 및 동료 간에 서로 예절을 지켜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12. 12. 27. 상사에게 전화로 음주추태, ○○파출소 방문 음주 추태와 관련, 소청인은 집에서 음주이후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소청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전화 받은 당사자들의 진술 등으로 보아 소청인이 만취상태에서 새벽시간대 파출소장, 전 경찰서장, 청문감사관 등 상사에게 전화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직접 목격한 ○○파출소 직원들 및 ○○파출소장의 진술이 일치하고, 소청인이 파출소에서 직접 작성한 사직서가 확인되는 점, 만취되어 기억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잘못된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서 소청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적절하게 행동한 비위사실이 인정되고,

2013. 3. 5. ○○경찰서장에게 음주추태와 관련해서도, G총경에게 반말로 “너 ○○서장 G 맞냐? 내가 선배인데 많이 컸다, 똑바로 해라”는 식의 언사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통화내역이 확인되는 점, 서장부속 실에서도 소청인이 전화하여 서장과 통화하려했으나 당시 만취한 상태여서 전화연결하지 않았다고 하는 점, 소청인이 2013. 3. 6. 진술에서는 안부 차 전화한 것이고 당시 통화내역을 기억하는데 부적절한 언사가 없었다고 하였으나, 소청이유에서는 통화내역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점, 소청인은 총경 G를 잘 아는 사이라서 안부 전화한 것이라고 하나, 총경 G는 소청인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이고, 사건이후 사과하려고 부속실 방문했으나 만나지 못했다거나 ○○서장 부임 때 인사로

전화한 적이 있으나 그 후 약 1년3개월간 통화하거나 만난 사실은 없다고 하는 점 등에서 사적으로 잘 아는 사이라는 소청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역시 징계사유 상 상사에게 모욕적인 언사로 음주 추태한 사실이 인정되며,

만취상태에서 04:00경~05:30경의 새벽시간대에 경찰서장 등 지휘관에게 전화하고 음주 후 경찰서장에게 반말로 ‘똑바로 해라’는 식의 언사를 하는 것은 조직 내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는 부적절한 처신임이 분명한 점, 22년 넘게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로서, 평소 불만이 있었다면 다른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것임에도 주취상태에서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징계사유와 같은 방법으로 감정을 표출한 것은, 고의성이 없었다하더라도 물의를 야기하고 품위를 손상한 과실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사유를 인정하는데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유사비위가 반복된 점을 감안하면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어,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정

소청인은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중요한 경찰조직에 몸담고 있으면서 새벽시간 만취상태에서 파출소장, 청문감사관, 경찰서장 등의 지휘관들에게 전화해 평소 불만을 하소연하는 등 음주추태하고, 경찰서장에게 반말로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등의 부적절한 행동을 한 비위가 인정되고,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동은 조직 내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로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연말 복무기강 확립 및 의무위반행위 금지 특별지시사항이 있었고 품위손상 등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점, 더욱이 소청인은 ○○. ○○. ○○. 상사에게 전화로 폭언 및 욕설 등 비위로 정직1월 처분을 받았고 이 때문에 문책성 인사발령을 받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형태의 비위를 반복한 점, 음주하면 사람들에게 전화하는 버릇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집에서 음주를 좀 하는 편이라고 하고, 2013. 3. 5. 전 ○○서장에게 전화로 한 음주추태는 감찰조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발생한 비위인 점에 비추어 자신의 행동을 주의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상당히 부족해 보이는 점,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이 사건 의무 위반행위는 소청인의 정직1월 처분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후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발생한 비위로서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한 징계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나,

2012. 12. 27.은 전화하여 특별히 욕설이나 폭언 등의 언사는 없었던 점, 운전경과자로서 사건처리 등을 하며 어려움이 있었으나 평소 근무는 성실히 해왔고 팀원들과도 별다른 문제없이 지내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점, 징계이후 문책성 인사발령 등으로 조직적응에 어려움이 있었을 사정과 병가 연장문제로 피병의심을 받아 섭섭한 마음이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평소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은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배제징계는 다소 과중한 것으로 보이므로, 중징계로 문책하되 본 건을 교훈삼아 다시 한 번 직무에 전념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8. 지구대 내 축·조의금 및 공금 절취(해임→기각)

처분요지 : 2013. 6. 4. 10:00경 ○○지구대 내 경위 F의 소재 수사함에서 경위 G가 F의 부친상에 보낸 부의금 봉투 1매(5만원), 경위 H, 경사 I가 보낸 부의금 봉투 2매(각 3만원) 등 총 11만원을 절취하는 등 2012. 8월 초~ 2013. 6. 4.까지 5회에 걸쳐 36만원을 절취한 비위로 해임 처분

소청이유 : 부의금 봉투의 분실을 방지하고 안전하게 보관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부의금 봉투 3개를 소지하게 된 것으로 절도 의사가 없었고, 단지 사건이 확대되지 않기만을 바라는 단순한 마음에 지구대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술서를 작성한 것으로 연로한 부모님과 처 및 3자녀를 둔 가장으로서 절도의 동기를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3-404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① 2012. 8. 초순경 ○○지구대 채송함 내에서 경위 B가 ○○지구대에 근무하던 경위 C의 자녀 결혼 축의금으로 보내기 위해 넣어둔 현금 5만원이 들어있던 봉투 1매를 절취하고, ② 2013. 1. 초순경 ○○지구대 서고 내 경장 D의 소재수사함에서 D가 야식비 등 팀원들의 공금으로 모아 봉투에 넣어 보관하던 현금 5만원을 절취하고, ③ 2013. 1. 초순경 ○○지구대 서고 내 경사 E의 소재수사함에서 성명불상의 직원들이 보낸 위 E의 장인상 부의금 봉투 2매(각각 5만원), 총 10만원을 절취하고, ④ 2013. 6. 4. 10:00경 ○○지구대 서고 내 경장 D의 소재수사함에서 D가 식비, 야식비 등 팀원들의 공금을 모아 봉투에 넣어 보관하던 현금 5만원을 절취하고, ⑤ 2013. 6. 4. 10:00경 ○○지구대 서고 내 경위 F의 소재수사함에서 경위 G가 F의 부친상에 보낸 현금 5만원이 들어있던 부의금 봉투 1매, ○○과 ○○팀에 근무하는 경위 H, 경사 I가 보낸 각각 3만원이 들어있던 부의금 봉투 2매 등 총 11만원을 절취하였는바,

위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현금 36만원을 절취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 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2013. 6. 1. ○○지구대 소속 경위 F가 부친상을 당해 2013. 6. 4.

부의금 전달방법에 대해 고민하던 중 F의 소재수사함에 넣어두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여 그 소재수사함을 열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이미 다른 직원들의 부의금 봉투 3개가 들어 있었고, 이를 안전하게 보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F의 소재수사함에 있던 부의금 봉투 4개(소청인의 봉투 포함)를 꺼내어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지구대 내의 ○○팀장의 서랍장에 보관하려고 했었던 것이며, 당시 소청인은 위 ○○팀장의 서랍장에 다른 직원들의 봉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그 서랍장을 열어보았는데 예상과는 달리 봉투가 1개도 없었고, 장례일로부터 3일이나 지난 시점이라 더 이상 부의금 봉투가 없을 거라고 판단하여, 3팀의 부의금 접수자인 경위 J에게 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한 후, 순찰근무를 나가게 되었는데 소청인이 외근순찰을 마치고 귀소하자, 경위 G가 F의 소재수사함을 열어 봉투가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자의적 판단으로 누군가 그 부의금 봉투를 훔쳐갔다는 식으로 크게 흥분하여 난리를 치고 있었고, 또한 이 사건 이전에도 ○○팀에서 도난사고가 있었다며 범인을 꼭 잡아야 한다는 식으로 분위기가 흐르며 사건이 확대된 것으로, 분위기가 너무 험악하게 확대되고 있어 아무런 판단도 할 수 없었으며, 그러다가 그 순간적 시기를 놓치면서 그 자리에서 부의금 봉투를 내놓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며,

다음 날(2013. 6. 5.) 주간근무를 위해 출근을 하자마자, 지구대장(K)이 2층 숙직실로 불렀고 그곳에는 ○○팀장(L)도 동석하였는데, 지구대장이 소청인에게 ‘CCTV를 분석한 결과, 소청인이 서고에 들어가는 모습과 ○○팀장 서랍을 열어보는 장면이 녹화되었다’고 하였고, 또 ‘경위 G의 이름이 적힌 파쇄된 봉투 조각을 파쇄기 안에서 찾았다’며

추궁하자 소청인은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라고 대답하고 그 즉시 소청인이 가지고 있던 타인의 부의금 봉투 3개 모두를 내놓으며 위와 같은 상황설명을 한 것이며,

위와 같이 소청인이 부의금 봉투를 내놓자, ○○팀장이 부의금 봉투에 적힌 필체가 G의 필체가 아니라며 소청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다그쳤고, 그렇게 30분 이상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소청인은 명할 수밖에 없었고, 이 같이 처한 현실이 어이없고 비참하여 정확한 판단을 못한 상태에서 동료나 가족들에게 이 사건이 확대 비약되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지구대장의 말만 믿고 그가 무조건 원하는 방향으로 진술서를 작성 제출하게 되었던 것으로, 이상과 같이 소청인은 절도를 하지 않았으며 절도의 의사도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의 창피함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사실을 사실대로 밝히지 못한 어리석은 행위를 하였고, 이에 대해 때늦은 후회와 너무나 큰 충격에 빠져 더 이상 사건이 확대되지 않기만을 바라는 단순한 마음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조차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게 되었던 것으로,

소청인은 연로한 부모님과 처 및 3자녀를 둔 가장으로서 현재는 물론 퇴직 후에도 연금을 받으면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어 몇 푼 되지 않은 돈에 대한 절도의 동기를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으며, 혹여 소청인의 행동에 미세하나마 의심의 여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사소한 순간의 실수 범위에 국한되는 것에 불과한 바, 소청인의 행동을 절도의 의사를 가진 행위라고 본다는 것은 너무나 편협된 잘못된 판단이라 할 것인바, 이 사건 해임 처분은 너무나 과중하므로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경위 G가 부의금 봉투가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누군가 이를 훔쳐갔다는 식으로 크게 흥분하여 난리를 치는 등의 상황을 연출하여, 오해받을 것 같아 순간적으로 시기를 놓치면서 그 자리에서 부의금 봉투를 내놓지 못하였고, 이후 지구대장과 ○○팀장이 30분 이상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회유를 함에 따라 순간의 창피함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사실대로 밝히지 못하고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감찰조사를 받으면서도 같은 취지로서 허위 진술서의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므로 살펴보건대,

이 사건에서 경감 K(지구대장)와 경위 L(○○팀장)이 지구대 내에 설치된 CCTV 영상자료 등에 근거하여 강한 의구심을 갖고 소청인에게 다소 거친 어투를 사용하여 절취 사실을 실토하도록 유도한 정황이 있어 보이는는 하나, 위 지구대장 등이 소청인에게 없는 사실을 만들어 허위로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강박을 하였다거나 회유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기 어려워 보이고,

관계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청인은 2013. 6. 4. 07:40:50경에 지구대 내 서고에 들어갔다가 07:41경 그 서고를 나온 장면이 CCTV에 찍혔는데, 1팀 소속 경장 D는 같은 날 08:00경 ‘서고 내 소재수사함에 보관하던 팀公款 총 13만원 중에서 5만원권 1매가 없어진 사실을 확인하고 경위 L(○○팀장)에게 보고하였다’고 하는바, 소청인이 이때 위 D가 관리하던 돈 5만원을 절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은 같은 날 08:14:09~08:14:13경까지 지구대 내 사무실에서 ○○팀장의 서랍을 약 5초간 열었다가 닫은 장면이 CCTV에 찍혔는데,

○○경찰서에서 ○○지검 ○○지청에 송치한 의견서(2013. 7. 31. 소청인에 대하여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보면, ‘이때 L팀장이 사무실 밖으로 나가는 것을 확인한 뒤 소청인이 빈손으로 순찰팀장의 책상 앞으로 가 서랍을 열어 약 5초 동안 열고 무엇인가를 뒤지고 소청인의 근무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이 CCTV에 촬영되어 있다’고 기술되어 있는바, 이로 볼 때 소청인은 위 08:14경에 경위 F가 사용하는 ○○팀장의 서랍을 열어 그 속에 부의금 봉투가 하나도 없음을 확인하고, 10:01:10경에 다시 지구대 내 서고에 들어갔다가 10:01:18경 그 서고의 문을 닫은 상태에서 약 10초 동안에 서고 내 F(○○팀장)의 소재수사함을 열어 그 속에 있던 이 사건 부의금 봉투 3개를 꺼낸 다음 10:01:28경 서고의 문을 열고 무언가(박스 형태)를 들고 나온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소청인은 2013. 6. 4.까지 F의 부친 장례식에 자신의 부의금을 전달하지 못함에 따라 이를 전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F의 소재수사함을 열어보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소청인은 이미 2013. 6. 2.에 부의금 3만원을 ○○팀 소속 직원 등에게 맡겨서 위 장례식장에 대신 전달케 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소청인은 자신의 부의금 봉투를 F측에 이미 전달하였으므로 그 부의금 전달을 목적으로 2013. 6. 4. 08:14경 ○○팀장의 서랍을 열어보고 그 뒤 10:01경에 또 다시 서고 내에 있는 F의 소재수사함을 열어보는 등의 행동은 전혀 불필요했던 행동으로 보이는바, 이 부분에 관한 소청인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식에도 반하므로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는 점,

소청인은 2013. 6. 5. 오전 경 이 사건 비위를 자인하는 진술서를 독자적으로 작성(경위 L은 소청인이 지구대 내 1층 사무실에서 진술서를 독자적으로 작성하였다고 한다.)하였고, 2013. 6. 6. 저녁시간 경 감찰조사를 받을 때에도 이를 그대로 시인한 사실로 볼 때, 위 진술서의 임의성이나 진정성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소청인이 2013. 6. 5.에 작성한 진술서는 외부의 강요에 따라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의 제반 상황과도 부합되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은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위와 같이 지구대 내에서 동료직원들의 경조금과 야식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모아둔 공금 등 총 36만원을 절취함으로써 동료 간의 우애와 신뢰 및 직장 내 분위기를 크게 해쳤다고 보이는 점, 2012. 8월부터 여러 차례 행해진 이 사건 절취 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2013. 6. 4.경 이 사건 절취 이후에 그 사실이 발각되고 이 사건 처분을 받기까지 소청인이 보인 행태, 즉 자신의 비위를 시인하였다가 이를 번복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면서 변명으로 일관하는 사정 등도 매우 나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9. 불건전한 이성교제(정직2월→기각)

처분요지 : 유부남 경찰공무원으로 당직근무 중 자살관련 상담 중 알게 된 원인 B와 총 7회에 걸쳐 성관계를 맺고 내연 관계로 지냈으며, 소청인의 이혼여부 등 진정성에 대하여 말다툼 하던 B가 ○○경찰서에 상담 전화를 하는 등 불건전한 이성교제로 물의를 일으킨 비위로 정직2월 처분

소청이유 :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 손상한 사실은 인정하고 징계 처분을 받은 점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으나 ‘정직 2월’의 처분은 너무 가혹하고, 경찰공무원 22년 동안 징계처분 전력이 없고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점, B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1개월가량으로 짧고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이었다는 점, 대외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의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3-437 정직2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자 경찰공무원으로서, 2012. 12월 중순경 당직근무를 하면서 자살관련 민원 전화를 받고 상담 중 알게 된 B(○○세, 여)와 전화 등을 주고받으며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중, 2013. 4. 15. 00:10경 B가 이사한 ○○시 ○○구 ○○동 소재 ‘○○오피스텔’ ○○호에 집들이 차 방문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성관계를 맺고, 계속하여 같은 해 5. 17.까지 총 7회에 걸쳐 성관계를 맺으며 내연관계로 지냈고, 2013. 5. 18. 소청인의 이혼여부 등 진정성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B가 같은 해 5. 20. ○○경찰서 ○○실에 상담 전화를 하는 등 불건전한 이성교제로 물의를 야기한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 의무), 제65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12. 12월 중순경 당직 근무를 하면서 자살 관련 민원 전화를 받고 상담 중 알게 된 B와 약 3개월가량 동안 2~3일에 한 번씩 전화 통화 및 문자, 카톡을 주고받으며 희망을 주는 상담을 하였으나, 2013. 4. 3.경 소청인의 당직 근무일에 술에 만취한 B가 경찰서로 찾아와 횡설수설하고 욕설을 하여 소청인이 피하는 방법으로 돌려보낸

후, 이런 식으로 찾아오면 절대 전화 통화나 문자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연락을 끊었으나 앞으로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계속 문자 및 카톡을 보내며 반성을 하여 소청인이 마음을 풀고 다시 연락을 하게 된 것이었고,

그 이후 B가 ○○시 ○○구 ○○동에서 소청인이 사는 ○○구 ○○동 근처 오피스텔로 이사를 왔다고 하면서 집들이 안 올 거냐고 하여 가게된 것이 소청인 잘못된 시작으로, B의 집 근처에서 술을 약간 마신 후 집들이 선물을 사들고 오피스텔로 가 술을 더 마시면서 분위기가 어울려져 부적절한 관계를 하게 된 것이었으나, 그 후 2~3번 더 부적절한 관계를 하고 나서부터 B가 소청인에게 지나치게 집착을 하였고, 술에 취해 “이혼할 맘은 없지?”라고 물어 본 이후로 점점 더 강도가 세지면서 집에 가면 화를 내고, 모임에 가거나 소청인의 어머니가 계시는 시골에 간다고 하여도 화풀이를 하였고, 약 10회에 걸쳐 B에게 더 이상 만나지 말자며 먼저 헤어지는 인사를 하고 갔다가 2~3일이 지나면 다시 연락이 와서 만나게 되는 일이 수차례 이어졌고,

이와 같이 B의 성격은 예측하기 어렵고 조울증 증상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술을 마시면 화를 내거나 욕을 하여 소청인이 술을 마시지 못하게 말렸으나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술을 마시고 취하면 화를 내고 욕설을 하였고, 약 2주 정도 후 소청인이 잘못된 것에 대하여 처벌을 받겠다고 하였더니 수차례에 걸쳐 혼인빙자간음죄를 상담했더니 법이 없어졌다, 강간으로 고소했다가 취하했다는 등 여러 차례 경찰서를 갔다 왔다는 말을 하였으나 소청인은 B의 억지 고소에 대하여 조사를 받고 혐의가 있다면 법대로 처벌을 받겠다고 관계를 정리하려고 노력하였고,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마음먹은 상태에서 2013. 5. 22.경 소청인이 근무하는 ○○경찰서의 청문감사관실에서 B와의 관계를 인지하고 호출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사실을 진술하고 징계처분은 받은 것이고, 그 이후 B를 직접 만나거나 전화 통화, 문자, 카톡도 하지 않았으며,

B가 ○○경찰서 청문감사관실로 항의 전화를 하면서 어떤 약을 먹었다고 하여 청문감사관실에서는 소청인에게 직접 병원으로 가 보라고 하였으나,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생각하였기에 소청인을 대신하여 친구인 C를 보내어 ○○대학교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게 하고 ○○동 ○○병원에서도 3일간 간호를 하게 한 후 퇴원 시 치료비 130만 원 가량은 소청인이 계산한 바가 있으며, 퇴원 후 B가 깨끗하게 잊겠다고 하면서 약 100만 원 가량의 이사비를 달라고 하여 소청인도 그 정도는 해결해 줄려고 하였으나 독일로 이민을 가겠다고 하면서 더 많은 위자료를 요구하여 감당할 수 없어 거절하였으며,

22년 경찰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징계처분 받은 적이 없고 경찰청장 4회 등 22회의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점, B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1개월 가량으로 짧은 기간이었고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이었다는 점,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지만 대외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은 점, 본건 발생이후 소청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배우자가 있는 유부남이면서 일상생활에서도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 12월 중순경 당직근무를 하면서 자살관련 상담 전화를 한 민원인과 전화, 문자, 카톡 등을 주고받다가 2013. 4. 16. 부터 약 한달 동안 7회의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불건전한 이성교제를 한 점, 내연녀가 소청인과 이혼여부 등 진정성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고 난 후 경찰서에 강간당했다고 민원 상담을 제기하는 등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점, 더욱이 내연녀가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술을 마시면 욕설을 하는 등 정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비위 사실이 적발 되기 전까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점, 비위 발생 시점에 수차례에 걸쳐 의무위반 행위 근절 등 복무기강 확립 지시가 있었고, 직속 상사로부터 지속적으로 교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무 위반한 점, 경찰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비위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소행, 근무성적, 뉘우치는 정도, 징계요구한 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징계위원회의 재량 행위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 의무), 제65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은 배우자가 있는 유부남이고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되고 직무상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해서는 아니 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당직근무를 하면서 자살 관련 상담전화를 하면서

알게 된 민원인과 7회에 걸쳐 성관계를 맺으며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내연녀가 경찰서에 강간당했다고 민원 상담을 제기하는 등 불건전한 이성교제로 물의를 야기한 점, 비위 발생 시점에 수차례에 걸쳐 복무기강 확립 지시가 있었고 직속상사로부터 지속적으로 교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무 위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40. 공공질서 문란 및 주거침입(정직1월→감봉1월)

처분요지 : 만취상태에서 ○○건물 노상에 눕거나 토하는 등 공공 질서 문란행위를 하고, ○○건물에 B를 따라 들어가 B가 거주하는 ○○호 출입문 손잡이를 2~3회 흔드는 등 여러 곳의 주거시설 문을 흔들고 돌아다니다가 주거침입 현행범으로 체포된 비위로 정직1월 처분

소청이유 : 물의를 야기한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나, 원 처분은 소청결정례와 비교해 볼 때 너무 가혹한 점, 임용 후 징계전력 없이 총 6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의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검찰에서 소청인의 이 사건 주거침입 혐의에 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한 점, 처분청의 감찰조사에서도 '소청인이 性범죄·절도 등의 관련 범죄에 대한 고의성은 없었다'고 판단한 점, 짧은 근무기간 동안에 총 6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경 결정

사 건 : 2013-447 정직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지방경찰청 경장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13. 6. 18. 소청인에게 한 정직1월 처분은 이를 감봉1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현장에서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으로서 보다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휴무일인 2013. 5. 29. 19:00~23:55간 ○○시 ○○구 ○○동 소재 불상의 고기집에서 소청인과 고향출신 초교동창생 등 4명이 1차 술자리에서 소주 약 2병, 다시 근처 상호불상 일본식 술집으로 옮겨 같은 친구 3명과 소주 약 1병 등 총 3병 가량을 마시고 만취상태에 이르러, 익일인 2013. 5. 30. 00:00경부터 00:35경까지 공중이 통행하는 ○○시 ○○구 ○○동 ○○빌딩 출입구 좌측 노상에 눕거나 구토를 하는 등으로 공공질서 문란행위를 하고,

2013. 5. 30. 00:35경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는 B(여, ○○세) 일행 2명이 동 건물에 들어가자 뒤따라 들어가 화장실을 찾는다는 이유로 동 건물 3~4층 사이 계단 등에 구토를 하고, B가 거주하는 ○○호 출입문 손잡이를 2~3회 흔드는 등 여러 곳의 주거시설 문을 흔들고 돌아다니며 주거의 평온을 해하다가, 이에 불안을 느낀 B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같은 날 00:55경 동 건물 현관에서 주거침입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등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소주 2~3잔 또는 맥주 3잔 정도를 마시면 온몸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숨도 가빠 힘들어서 술 마시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경찰관으로 직장생활을 하면서 술을 마실 기회도 많았고 사회생활을 하려면 어느 정도 마실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비번이나 휴무일이면 집에서 혼자 맥주 1~2캔씩 먹다 보니 소주 반 병 정도는 마실 수 있게 되었고,

사건 당일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로부터 ○○에서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에서 ○○로 올라가, 10여년 만에 반가운 얼굴들을 보면서 서로의 안부 등을 묻던 와중에, 친구들이 고향에서 세탁소 일을 계속하면서 힘들게 사시고 심근경색과 고혈압, 위궤양, 하지정맥류, 대상포진, 중이염 등으로 편찮으신 소청인의 부친의 안부를 물어, 부친의 건강이 점점 나빠지는 것이 속상하고 괴로워 잘 먹지도 못하는 술을 많이 먹게 된 것으로,

소청인이 과음한 상태에서 물의를 야기한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은 다른 품위손상 행위의 징계사례에 대한 소청결정례와 비교해볼 때 너무 가혹하여 평등의 원칙·비례의 원칙·이익교량의 원칙을 간과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임용 이후 ○○년여 간 징계 없이 총 6회의 표창을 수상하였고 그중 2회는 중요범인 및 수배자 검거 유공으로, 3회는 근무실적 우수로 표창을 수상하였다는 점, 소청인의 모친과 형, 술을 함께 마신 친구 C 외 2인, 소속 상관인 경감 D, 순경 E 등 동료경찰관들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선처를 해주신다면 심기일전하여 사명감과 긍지를 갖고 국가를 위해 헌신할 각오인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 평온을 해하여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고 그 잘못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먼저, 소청인이 이 사건 건물의 1층 출입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 ○○층까지 올라간 행위에 관하여 보면, 건조물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건조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 하더라도 관리자가 필요에 따라 그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관리자의 출입제지에도 불구하고 다중이 고품이나 소란을 피우면서 건조물에 출입하는 것은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것으로서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하는바(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41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소청인은 2013. 5. 30. 00:35경 이 사건 건물의 공동 거주자인 B등이 귀가하던 중에 그 1층 출입문을 통하여 들어갈 때에, “나도 같이 들어가게 해주세요”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뒤따라 들어갔고, 이때에 그 공동거주자로부터 제지를 받은 사실이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 건물은 ○○층으로서 1층은 건재상 등 상가, 2~○○층은 주거용 원룸 ○○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층은 옥탑의 형태라고 함), 1층 출입문은 평소에도 개방되어 있고 2층 계단부터는 번호키가 설치되어 있으나 사건당일은 개방되어 있었다고 조사된 점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이 평소 개방되어 있는 이 사건 건물 1층의 출입문을 통해 그 공동거주자로부터 출입을 제한받은 바 없이 ○○층까지 올라간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만으로는 소청인이 건조물을 침입하여 그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소청인이 이 사건 건물의 ○○호 출입문의 손잡이를 2~3회 흔드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에 관하여 보면,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 즉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므로,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는 바로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것으로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282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소청인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되어 길가에 쓰러졌다가 앉았다를 반복하고 정신이 혼미하였으며, 수시로 구토가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장실 등을 찾아다닌 상황이 엿보이기는 하나, 소청인은 이 사건 건물 ○○층에 위치한 ○○호의 출입문 손잡이를 2~3회 흔드는 등 주변의 여러 주거시설의 문을 잡아 흔들었던 것으로 조사된 점(이 사건 건물 ○○층은 ○○세대가 거주한다.), 소청인이 위와 같이 ○○호의 출입문 손잡이를 흔든 때는, 그 거주자인 B(여)와 F(남)가 잠깐 외출을 했던 때여서 그 집의 일시방문자인 G(여)만 혼자 있을 때에 해당한 점, 이에 따라 위 G(여)는 ‘소청인이 그 출입문의 손잡이를 돌리는 소리’를 듣고 너무 놀라, 도어락이 설치되어 그날은 열리지 않는 출입문임에도 불구하고 주거 내부에서 자물쇠까지 다 잠겼다고 하는 점,

소청인의 이 같은 행위 시각은 00:40경의 심야시간에 해당하는바, 만약 위 ○○호 또는 다른 주거시설의 문이 닫혀 있지 않은 상태여서 그대로 열리는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곧바로 그 거주자들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로 이어졌을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소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개연성을 충분히 갖추었으므로, 피소청인이 ‘소청인이 당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 평온을 해하였다’고 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 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등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 소청인이 어릴 적 친구들을 만나 평소 주량을 초과한 만취 상태에서 실수를 저지른 측면이 있어 보이기는 하나, 심야시간에 모르는 여자 2명의 뒤를 따라 이 사건 건물 안으로 진입하여, 3층과 4층 사이의 계단에 앉아 있어 그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했으며, G(여)만 혼자 있을 때에 ○○호의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 흔들고 다른 주거시설의 출입문 손잡이도 잡아 흔드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점, 이에 대해 그 고의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더라도 피해당사자들이 주거의 평온을 침해당하여 불안감을 갖도록 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물의를 야기하였다고 보이는 점, 소속 기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과도한 음주행위로 인한 품위손상 방지’를 지시한 바 있고, 2013. 2. 28.에는 소청인이 자체사고

근절을 위한 서약서를 제출하여 음주 시비다툼 등을 절대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사실까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의 이 사건 비위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으나,

이 사건 징계처분 이후에 행해진 검찰의 처분(○○지방검찰청)은 ‘소청인의 이 사건 주거침입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된 점, 처분청의 감찰조사(○○지방경찰청)에서도 ‘소청인이 性범죄·절도 등의 관련 범죄에 대한 고의성은 없었다’고 판단하였던 점, 소청인은 임용 이후 ○○년 ○○개월의 짧은 근무기간 동안에 총 6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본건 징계를 경징계 수준으로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① 2012. 6. 28.~7. 12.(15일)간 경추부염좌로 ○○정형외과에서 입원치료 중 2012. 7. 2. 15:00경 병원 2층 ○○치료실 접수대에 앞에 있던 간호사 B의 엉덩이를 왼손으로 1회 주물러 성추행하였고, ② 2013. 6. 15.~6. 26.(12일)간 ○○정형외과에서 입원치료 중 2013. 6. 20. 08:00경 간호사 C가 전일 무단 외박한 사유를 묻자 “와이프랑 성관계를 하러 갔는데 발기가 되지 않아서 못했고 그래서 밥도 못 얻어먹고 왔다”라는 성희롱 발언을 했으며, ③ 2013. 6. 27.~6. 28.(2일간) ○○정형외과에서 입원 치료 중 2013. 6. 27. 14:00경 간호사 D가 소청인의 팔에 주사를 놓기 위해 오른팔에 고무줄을 묶는 중 D의 오른 팔뚝 아래 부분에 손을 집어넣어 맨살 부분을 2~3회 주무르는 등 성추행 하였고, ④ 2013. 6. 28. 10:00경 간호사 E가 소청인의 엉덩이에 주사를 놓기 위해 “바지를 조금 내려 달라”고 하자 덮고 있던 이불을 걷어 부치며 성기를 노출하고, 계속하여 주사를 놓고 병실에서 나가려는 E에게 “아가씨”라며 5~6회 불러 뒤돌아보자 덮고 있던 이불을 다시 걷어 성기 노출하는 등 2회에 걸쳐 성추행하여 경찰관으로서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고,

⑤ 2012. 6. 25. 수영을 하다가 어깨근육이 파열되어 2012. 6. 28.~7. 12.(15일간) ○○정형외과, 2012. 7. 19.~8. 11.(24일) ○○정형외과에서 39일 동안 장기 입원 중에도, 39일 중 24일을 정상출근(주간 6, 야간 9, 탄력 2, 자원 5, 교육 2)하여 근무 후 각종 수당 등 급여를 수령

하는 등 실제 입원치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병원으로부터 위 기간 동안 입원 치료한 것처럼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아 ○○생명 등 4개 보험사에 보험급여를 신청하여 300여 만원을 부당 수령함으로써 실정법(형법 제347조 사기)을 위반하였고,

⑥ 2013. 6. 15.~6. 26.(12일)간 ○○정형외과 입원 중 8일은 정상 근무 후 초과근무 수당까지 신청·수령하였고, ⑦ 2013. 6. 27.~6.28.(2일간) ○○정형외과에 입원치료 받으면서 2013. 6. 28. 연·병가 등 정식보고 없이 근무 결락한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간호사 B에 대한 성추행 관련, 1년 이상 전의 일이기 때문에 정확한 기억이 나지는 않으나 간호사 B의 옆을 지나가면서 소청인의 손이 간호사 B의 엉덩이를 스쳤을 수는 있지만 서 있는 간호사의 엉덩이를 손으로 주물렀다는 부분은 다소 과장된 표현이 아닌가 생각되고,

간호사 C에 대한 성희롱 관련, 소청인은 2012년에 수영을 하다가 어깨근육이 파열되어 24일간 ○○정형외과에 입원을 한 적이 있고, 2013년에도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하다가 다쳐 ○○정형외과에 입원을 하게 되면서 간호사들과 어느 정도 안면이 있어 입원생활을 하는 동안 어느 정도 허물없이 지내 왔으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소청인이 C와 아무런 의식 없이 엮된 기분으로 장난삼아 서로 농담을 주고받던 중 징계사유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것이고, C를 성희롱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아니었으며 당시의 분위기도 성희롱과는 전혀 무관하였고 C도 서로 농담을 할 당시 전혀 기분이 상하였던 것은 아니었으며 서로 웃고 주고받던 말 중의 하나였을 뿐이고,

소청인은 주사를 맞다가 간호사 D의 팔뚝을 주물렀다고 하나 이와 같은 행동을 하였는지조차 잘 기억나지 않고, 주사바늘이 몸에 들어오자 반사적으로 팔을 스치게 되면서 D에게 기분 나쁜 접촉이 발생된 것일 수는 있으나 팔뚝을 주물렀다고 하는 표현은 다소 과장된 것으로 생각되며,

소청인이 E를 성추행하기 위하여 일부러 소청인의 성기를 노출시킨 것이 아니고, 주사를 맞기 위하여 바지를 내리는 과정에서 소청인의 성기가 일부 노출되었을 수는 있으나 소청인은 이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였고 E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 의도는 전혀 없었고,

소청인의 신중하지 못한 행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한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마음을 전하는 바이고, 비록 소청인이 고의를 가지고 악의적으로 한 행동은 아니지만 이 모든 결과가 소청인의 부주의한 행동이나 언행에서 비롯된 것이고, 과중한 업무에 피로감이 겹쳐 이성적 행동을 하지 못했던 것 같고, 피해자인 간호사들은 모두 소청인의 징계를 바라지 않고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하여 주길 바라고,

보험금 부당수령 관련, 소청인이 39일 입원기간 중 24일간 출근하여 근무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소청인은 병원에 계속하여 입원해 있던 상태였고 근무인원 부족으로 출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병원에서

출퇴근을 하였던 것이고, 퇴근한 이후에는 곧바로 병원으로 가서 계속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이에 따른 치료비도 모두 지급하여 보험사에 보험금을 신청한 것이고, ○○보험 상담사와 상담한 결과 치료비는 안 되지만 입원비는 보험금으로 지급해 줄 수 있다는 대답을 듣고 소청인의 행위가 잘못된 것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신청하게 되었던 것이고, 보험금수령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알고는 곧바로 보험사에서 수령한 보험금 2,760,976원을 모두 반환하고 보험사와 모두 합의하였으며, 소청인이 고의적으로 보험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나 결론적으로 소청인의 무지로 인하여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고 있고,

초과근무수당 수령 및 근무결락 관련, 소청인은 ○○정형외과 입원 중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적이 전혀 없고 초과근무일지를 살펴보더라도 소청인은 2013. 6. 15.부터 6. 26.까지 초과근무를 한 바가 전혀 없으며, 근무결락과 관련하여 2013. 6. 28. 퇴원하면서 당시 퇴원수속이 지연되어 2시간가량 지각하여 오전 11시경 출근하게 된 것이므로,

소청인은 21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해 오면서 징계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전혀 없이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근무해 왔고, 중요범인 검거 등으로 업무수행능력을 인정받아 경찰청장 등 28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등을 감안하여 다시 경찰공무원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충실히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성추행 및 성희롱 비위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판단기준

에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이란 성적 언동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끼는 불쾌한 감정으로, 성희롱 행위자가 스스로 성희롱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피해자는 성희롱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행위자의 성적인 의도가 없더라도 성희롱이 성립할 수 있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여부는 피해자의 관점을 기초로 판단하고 피해자가 느낀 감정을 중요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등)에 의하면, 성희롱(성추행)은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로 그 상대방이 성적 혐오감이나 굴욕감을 느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①항 관련, 피해자 B가 소청인으로부터 당한 성추행 사실을 ○○부장에게 보고하여 ○○부장이 소청인에게 왜 그랬냐고 물어보자 “딸 같아서 그랬다”라고 했다고 진술한 바 소청인도 자신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정형외과 원장 등 관련자들이 2013년도 소청인이 재입원할 당시부터 소청인이 2012년 입원 시 간호사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 하여 처음부터 주시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②항 관련, 소청인이 C를 성희롱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을지라도 피해자는 “그런 말을 하니까 당연히 황당하고 창피하죠. 그 사람은 눈동자도 이상하고 정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듯이 당시 상당한 성적 불쾌함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C의 진술 등에서 C가 소청인과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을 정도로 친밀했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달리 찾을 수 없다는 점,

③항 관련, 소청인은 주사바늘이 갑자기 몸에 들어와 반사적으로 피해자의 팔에 스칠 수는 있으나 주무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인 D는 “평소에 다른 사람 주사를 놓을 때 스치는 경우는 있지만 A처럼 주무르는 사람은 없습니다.”라고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당시 기분이) 완전히 나빴습니다. 당황스럽고 수치스러웠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④항과 관련, 소청인은 주사를 맞기 위해 바지를 내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성기가 노출된 것이지 E를 성추행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성기를 노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인 E는 “제가 옆쪽으로 살짝만 맞으면 되니까 살짝 내려달라고 하자, A가 갑자기 다리를 뺏고 있던 이불을 확 걷어 부쳤는데 환자복이 이미 무릎까지 내려 가 있었고 저한테 보란 듯이 성기를 드러낸 것입니다”라고 당시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소청인과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던 F가 “링겔을 맞기 위해 소변을 보러 화장실에 갔다 오자 E가 자신에게 저 아저씨가 성기를 보이면서 성추행했다며 흥분하여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라고 하고, ○○과장인 G도 “E가 울면서 ○○과를 찾아와서 A가 성기를 보여주며 성추행을 했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 및 관련자의 진술이 일관되게 부합하여 허위로 꾸민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E는 “너무 당황하였지만 모른 척하려고 엉덩이 주사를 놓아주고 뒤돌아서 링겔을 정리하는데 A가 뒤에서 아가씨라고 5~6회 정도 봐 달라는 뜻으로 저를 불러서 뒤돌아 보니까 제가 덮어 준 이불을 다시 다리 밑까지 걷어 부치고 누드사진처럼 포즈를 취하고 성기를 저에게 고의적 보이게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

하듯이 2회에 걸쳐 같은 행동으로 피해자를 성추행하여 의도의 고의성이 상당해 보인다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성희롱 등의 횡수가 1회에 그치는 경우에는 우발적인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나 소청인의 경우 2013. 6. 20.~6. 28. 동안 3명의 여성에게 성희롱·성추행하여 짧은 기간 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바 우발적인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피해자들이 소청인의 선처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탄원서에 소청인의 비위 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은 없다는 점, 경찰관이라는 신분이 노출된 상태에서 입원하였으면서도 부적절한 언행으로 ○○정형외과에서는 강제퇴원 조치를 당하는 등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보험급여 부당 수령 관련, 근무인원 부족으로 병원에서 출퇴근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39일간 장기간 입원을 할 정도였다면 경미한 부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소청인의 2012년도 근무상황부를 살펴보면 비위 발생 시점에 한 번도 연·병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점, 이를 반증하면 소청인은 지구대에 정상 출근하여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정도의 부상으로 연·병가를 신청하지 않은 것이지 근무인력 부족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연·병가를 신청하지 못하고 병원에서 출퇴근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감찰조사 시 “허위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경찰관으로서 위법한 행동인지 알면서도 했다”고 진술하여 스스로 비위 사실을 인정한 점, 자신에게 좀 안 좋을 것 같다는 이유로 병원 외출·외박 대장에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2회에 걸쳐 허위로 기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잘못인지 모르고 신청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 보험사에서 수령한 금액을 전액 반환하였다고 하나 2012. 8월, 2013. 1월에 수령한 금액을 감찰조사가 시작된 후인 2013. 7. 12.~7. 16.에 반환하여 자발적 의사에 의해 반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무엇보다 허위로 입원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것은 사회 문제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보험 사기죄에 해당되는 범죄 행위이고, 그러한 행위를 법을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이 하여 비난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초과근무수당 수령 및 근무결락 관련, 먼저 피소청인 대리인이 제출한 ○○활동일지를 살펴보면 2013. 6. 17.~6. 21., 6. 24.~6. 26. 각 일에 18:00~22:00시까지 ○○교육청에서 ○○교실 학생 모집 활동으로 자퇴생 H 등 30여명 전화 상담을 하면서 초과 근무하였다고 기재하고 센터장, 계장, 과장의 결재를 받은 점, 피소청인 대리인의 답변서 및 소청인이 근무하던 부서 급여담당자도 소청인이 제출한 ○○활동일지 등을 근거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려다 감찰 조사에서 소청인이 입원 기간 중 초과근무한 것으로 확인되어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살펴볼 때 소청인이 초과근무한 것은 사실로 보여 지고, 다만, 2013. 7월 소청인의 급여명세서상으로도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 초과근무수당 수령에 한해 소청인의 주장은 인정된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감찰 진술시 “6. 28. 당일 강제퇴원을 당하면서 10시 29분에 수납을 하고 13시경 ○○교육구청으로 출근하였다”고 진술한 점, 퇴원 수속 시간 및 병원 소재지인 ○○동과 ○○교육구청간의

거리를 감안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 점, 무엇보다 근무일이었음에도 복무규정에 따른 병가 등을 신청하지 않고 병원에 입원 했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공무원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복무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은 일상생활에서도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법을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한 병원에서 성기를 노출하는 등 일반상식에서 크게 벗어난 행동 등으로 간호사 4명을 성희롱·성추행하여 피해자들에게 성적수치심과 불쾌감 등 정신적 고통을 주고, 이러한 물의 야기로 병원에서 강제퇴원 당하는 등 경찰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비위가 인정되는 점, 최근 성 관련 범죄는 사회 문제로 크게 인식되고 그 비난의 가능성도 높아 엄벌에 처하고 있다는 점, 실제 입원 치료하지 않았으면서도 허위로 입·퇴원서를 발급 받아 입원비 등을 보험사에 보험급여로 청구하여 부당 수령한 점, 별도의 연·병가 없이 병원에 입원하면서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하고 근무결락한 점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 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42. 도박행위 방조 및 하극상(정직1월→기각)

처분요지 : 2013. 1. 15. 지인 등이 도박을 하는 것을 구경하다 나오면서 출동한 경찰관이 도박장소로 가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2013. 7. 23 지인 등이 도박을 하는 것을 보다가 경찰관에 적발되었으며, 민원인과 동료 직원들 앞에서 직속상관에게 욕설과 폭언 등을 하고 재차 팀장실 앞에서 욕설과 함께 폭행한 비위로 정직1월 처분

소청이유 : 출동한 경찰관이 아무 말 없이 달려들어 뿌리친 것이고, 고향 선후배들이 술을 마시기 위해 홀라를 하던 것을 만류하지 못하고 있다가 적발된 것인 점, 팀장의 편파적이고 부당한 업무수행에 대해 순간 화가 나서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가벼운 몸싸움이 있게 된 것으로 하극상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3-566 정직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지방경찰청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3. 1. 15. 18:40경 ○○시 ○○동 소재 ‘○○뷰티숍’ 내실에서 ○○지역 선배 B 등 민간인 4명이 판돈 222,000원을 놓고 홀라 도박을 하는 장면을 구경하다가 나오면서 도박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과 맞닥뜨렸을 때 경찰관들이 도박 장소인 내실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막아서는 등의 행위를 하고, 2013. 7. 23. 21:05경 ○○시 ○○동 소재 ‘○○건강원’에서 ○○지역 후배 C 등 민간인 3명이 판돈 584,000원을 놓고 홀라 도박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다 신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장 적발되는 등 2회에 걸쳐 민간인들의 도박현장에 함께 있다 적발되어 경찰관으로서 그 품위를 손상하고,

2012. 6월 일자 불상 16:00경 ○○톨게이트 고속도로에서 ‘안전벨트 미착용 단속’ 업무를 수행하던 중, 직속 상관인 ○○팀장 경위 D가 안전벨트 미착용 운전자를 단속치 않고 그냥 보내버림으로써 소청인이 단속 중인 운전자 등에게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민간인들이 보는 자리에서 “야 이 새끼야, 너 때문에 내가 저 사람한테 욕을 먹었는데 가만히 사무실에나 있지 뭐 하러 나와서 방해를 하느냐”고 폭언하고, 같은 날 저녁 19:00경 ○○대 팀장실 앞에서 위 D가 ○○팀장 경위 E에게 소청인을 지칭하며 ‘지가’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위 E에게 “나이도 어린 놈이 까불고 있네, 너 이 새끼 죽여 버린다.”는 욕설과 함께 먹살과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는 등 위계질서 문란행위(하극상)를

자행하여 복무규율을 위반한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뷰티숍 관련, 소청인은 집안 동생인 F를 만나 대화를 하고 나오던 중 소청인과 출동한 경찰관이 G의 뷰티숍 앞에서 맞닥뜨렸을 때 경찰관 1명이 아무런 말이 없이 막무가내로 몸을 감싸 안으며 붙잡기에 황당하여 “왜 잡느냐”고 뿌리친 것으로, 공무수행을 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내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선 것은 아니었고,

○○건강원 단속 관련, 고향인 ○○에 ○○을 혼자 운영하는 둘도 없는 친구 H가 중복 날 내려와 삼계탕이나 먹자고 하여 전복 삼계탕을 시켜 먹은 후, 고향 후배인 C와 자신의 친구들 2명이 카드를 돌리는 것을 보고 C등에게 “도박하면 안 된다”라고 만류하자, 술 한 잔 더 하려고 홀라한다고 하여 적극적으로 만류를 할 수가 없어 그냥 한곳에 있었을 뿐이었는데, 이후 도박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된 것으로 도박에 참여한 것이 아니고, 단지 고향 선후배들이 모여 홀라 도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못하고 그냥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정직이라는 징계 처분은 다소 과한 처분이라 여겨지며,

○○팀장과의 폭언 관련, 2012. 6월 일자 불상 10:00경 ○○톨게이트에서 안전벨트 미착용 운전자 단속 중 팀장 경위 D가 안전벨트 미착용 운전자를 단속하지 않고 보내는 것을 본 소청인에게 단속당한

운전자가 “왜 나 만 단속하고 다른 차량은 그냥 보내주느냐, 이 씹 할 놈들이” 욕설을 하며 소청인의 가슴을 밀치고 강력하게 항의하였고,

소청인이 팀장 경위 D에게 “왜 단속 중에 있는데 안전벨트 미착용한 차량을 그냥 보내주느냐”고 항의하자 팀장 경위 D가 “그런 민원 하나도 처리하지 못하느냐”며 편잔을 주기에, 순간 너무 화가 나서 D와 좋지 못한 언성이 오고 갔으며, 같은 날 19:30경 소청인이 팀장 경위 D에게 전화하여 대화하자고 하여 사무실에서 같은 날 20:00경 팀장 경위 D와 ○○팀장 경위 E에게 당일 발생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팀장 경위 D는 자신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 것처럼 소청인을 ‘지가’라고 지칭하면서 “지가 먼저 욕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5년 지역후배에게 그런 말을 듣는다는 것이 너무 화가 나서 팀장 경위 D에게 “야 지가 라고 하려면 앞으로 형님이라고 부르지를 말든지” 라고 하며 욕설을 하자, 팀장 경위 D도 욕설을 하면서 서로 밀치는 몸싸움이 있었으며,

하극상이라고 검찰에서 주장하는 것과 달리 팀장 경위 D가 처음부터 공무를 부당하게 편파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인하여 소청인과 언쟁이 오가게 된 것이며, 또한 사안을 보더라도 공무원으로서 업무적 지시나 명령에 불복종하여 하극상을 일으켰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경찰공무원으로 19년 나름대로 성실히 근무한 점, 경찰청장 표창 2회를 포함하여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2013. 1. 15. ○○뷰티숍에서 단속 경찰관이 막무가내로

달려들어 몸을 감싸 붙잡아 당황하여 뿌리쳤을뿐 경찰관을 상대로 내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선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2013. 1. 15. 도박현장인 ○○뷰티숍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안에서 문을 막고 있었는지 아니면 밖으로 나와서 내실 문 손잡이를 잡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으나, 소청인이 내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하므로 둘이서 소청인을 밀어내고”, “내실로 접근 시 막았던 사람은 소청인이 맞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뷰티숍 운영자인 G는, 소청인이 경찰관을 보고 놀라서 내실 문을 막았지만 경찰관 2명이 “옆으로 나오라”고 요구하자 어쩔 수 없이 옆으로 비켜섰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소청인은 2013. 7. 23. 친구가 운영하는 ○○건강원에서 고향 선후배들이 술을 한 잔 더 하기 위해서 ‘홀라’를 하는 것을 적극 만류하지 못하고 그냥 있다가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2013. 7. 23. 도박현장인 ○○건강원에 출동한 경찰관도 “경장 I가 내실에서 나오려고 하는 소청인을 제지하였고, 경장 I가 다가와 제지를 당해 내실로 들어가 버린 소청인이 ○○대 직원이라고 하는데 책임자를 찾는다”고 진술한 점, 소청인도 “제가 한판 구경을 하고 원탁이 놓인 사무실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였는데 이미 경찰관이 현관으로 들어와 있었고, 저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제지를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도박행위를 단속해야 할 경찰관인 소청인이 도박현장에서 체포되는 등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 판단된다.

소청인은 팀장의 편파적이고 부당한 업무수행에 대해서 순간 화가

나서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욕설이 나오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가벼운 몸싸움이 있게 되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피소청인은 모든 위반차량을 단속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스티커 발부 대기시간이 길어지면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스티커를 발부할 여유 직원이 없을 경우에는 계도한 후 그냥 보낼 수도 있는 등 통상 교통단속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고 이런 피소청인의 판단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은 민원인이 있는 곳에서 직속상관에게 욕설을 하였고, 동료 경찰관과 같이 있는 곳에서도 직속상관에게 욕설을 하고 먹살을 잡는 등의 행동을 하였던 것이 사실인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처분의 적정성에 대해 살펴보면, 소청인은 2회에 걸쳐 지인 등이 도박을 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출동한 경찰관에 적발된 점, 민원인과 동료 직원들 앞에서 직속 상관에게 욕설과 폭언 등을 하였던 점, 도박을 단속해야 할 경찰공무원으로서 지인들의 도박을 방관하는 등의 행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경찰조직내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는 행동 또한 비난받아 마땅한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43. 상습적 경마도박 행위(정직2월→기각)

처분요지 :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경마장에 출입하고, 사건 청탁자
이자 경찰대상업소 업주인 B와 접촉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경마에 빠져 변제능력이 없는 민간인과 부적절한
금전거래를 한 비위로 정직2월 처분

소청이유 : 경마는 정부가 주관하는 스포츠 사업임에도 불건전하다고
하는 것은 오류이며,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간 것 뿐인데
경찰대상업소 접촉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징계사유
는 부당하며, B와는 17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이고,
소청인이 취급한 '○○파' 참고인 겸 협조자임을 감안
하여 원 처분의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 :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3-405 정직2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2006년 사설경마위반 사범을 검거하기 위한 수사목적으로 스크린 경마장을 출입하면서 경마에 빠지게 되었고, 2010. 1. 8.부터 2012. 2. 18.까지 약 25개월간 경마개장일 354일 중 근무 날 51일 등 146일간 경마장을 출입, 동 경마장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323회에 걸쳐 79,730,000원을 인출하여 경마에 탕진하였으며,

특히, 2010. 12. 2. 17:23경 소청인에게 상습도박 사건을 청탁한 지인 B에게 모친과 장인의 병원비가 급히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500만 원을 빌려 ○○동 경마장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440만 원을 인출하여 경마에 소비하는 등 2006.경부터 2012. 5.경까지 수년간 사설경마를 단속한다는 명분으로 ○○도 ○○동, ○○시 ○○구 ○○동 소재 스크린 경마장 등을 전전하면서 근무 날, 휴무 날을 가리지 않고 상습적으로 경마도박을 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고, 도박 등 불건전한 오락행위를 금지하는 복무규정을 위반하였으며,

또한, 소청인은 불법오락실, 룸살롱 등 경찰단속 대상업소를 운영해 오던 B와 약 17년 전부터 친분관계를 유지해왔고, 2010. 5.경 위 B의 처 C가 운영실장으로 종사하던 ○○구 ○○동 ○○호텔 지하 ‘○○’라는 룸살롱에 조직폭력배 자금원을 수사한다며 동 업소에 2~3회 출입하여 업주와 접촉하였음에도 대상업소 출입 신고를 결락하고,

2010. 10.부터 2012.말경까지 위 B와 그 배우자가 ○○도 ○○시

○○동 소재 ‘○○’ 단란주점을 공동운영하여 경찰 대상업소이자 관련 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출입하고, B와 함께 경마를 하면서 수시로 접촉하였음에도 출입 및 접촉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등 지시명령을 위반하였으며,

소청인은 지인 B가 수년전 불법오락실, 룬살롱 등 대상업소를 운영 하였고, 그 배우자와 단란주점 형태의 주점을 공동운영하고 있으며, 2010. 12. 2. 소청인이 취급하던 상습도박 사건을 청탁한 자로, 대상 업소이자 사건관련자임을 알면서도 차용증도 없이 500만 원을 차용 하여 1년이 넘도록 변제하지 않고 있다가 B의 배우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경찰서장을 찾아가겠다며 항의하고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내사가 이루어지자 그때서야 변제하는 등 부적절한 금전거래를 하였으며,

또한, 군대 선·후배기간인 D가 경마도박에 빠져 변제능력이 없는 사실을 알면서도 소청인의 신용카드를 빌려주어 100여회에 걸쳐 인출하여 경마에 탕진함을 알면서도 3,000여만 원을 빌려주는 등 경찰공무원 으로서의 통상의 상식을 벗어난 부적절한 금전거래를 한 사실도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 (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되고,

소청인은 22년 8월간 팀원들과 함께 열정적으로 근무하여 2001년 조직폭력 ○○파, 2007년 ○○파, 2010년 ○○파 검거, 2006년 1,650억대 사설경마도박단 152명을 검거하여 경위로 특진하는 등 범인 검거 공적이 있는 점, 경찰청장 표창 4회 등 총 29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 등 제반 감경사유 적용하여 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외근 형사로 근무 날 어디든지 갈 수 있고, 현재 경마는 정부가 주관하는 스포츠 사업임에도 경찰공무원이 경마를 하였다고 하여 불건전하다고 하는 것은 법률적 오류이며,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2010. 5.경 관내 ○○ 룬살롱에 2~3회 출입하고 사전 또는 사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당시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1회 출입을 하였다가 우연하게 사건관련 피해자를 만나게 된 것이 전부이며, 술을 마시러 가는 것도 경찰 대상업소라는 이유로 신고를 하고 가야 되는 것인지 상식에 어긋나고 징계사유가 될 수 없고,

또한, ○○단란주점은 친구가 운영하는 곳으로 친구들과 술을 팔아 준다는 이유로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있으며, 2011년 가을경까지 출입을 하였는데도 2010. 10.부터 2012.말까지 위 주점에 출입하였다는 것은 과장된 사실로 징계의 이유가 될 수는 없고,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사건 청탁자인 B에게 5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문제 삼았는데, B는 소청인과 17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이며, 특히 소청인이 2007년도에 취급한 조직폭력 ‘○○파’ 참고인 겸 협조자이고,

민원과 진정은 소청인이 수사한 조직폭력 사건의 피의자가 징역을 살고 나와 진정을 한 사안이고, 언론에서 소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일방적인 행위이며,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볼 때 징계부서에서는 위법하고 근거 없이 내용을 부풀려 소청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과 상식에 어긋나는 사항이기에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먼저, 소청인은 외근 형사로 어디든지 갈 수 있고, 경찰관이 정부가 주관하는 스포츠 사업인 경마를 하였다고 하여 불건전하다고 하는 것은 법률적 오류이며, 소청인이 동의하지 않은 통장을 징계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3호는 ‘경찰공무원은 건전하지 못한 오락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경찰청에서는 2006. 11. 20. “사행성 게임장 출입금지 지시”라는 공문을 통해 소속 경찰관들에게 불법 게임장·PC방, 강원랜드 등 카지노 시설, 경마·경륜장 등 도박장 및 사행성 레저시설에서의 일체의 도박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지시를 하였으며,

소청인은 2010. 1. 8.부터 2012. 2. 18.까지 근무 날 51일을 포함하여 총 146일 간 경마장을 출입하며 그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7,973만 원 상당을 인출한 사실이 검찰 내사기록에서 확인되었으며, B는 ‘소청인이 오래전부터 경마를 하였고,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려서 경마로 쓰고 다닌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진정인 E와 그의 친구 F는 ‘2012. 3~4월 ○○ 스크린 경마장에 출입하는 소청인을 각각 11회 및 7회 정도 보았다.’고, 진정인의 친구 G는 ‘소청인이 경마장에서 마권을 구입하는 장면을 사진촬영 했다.’고, 진정인의 다른 친구 H는 ‘2008.~2012. 1.간 소청인이 경마장 개장일(금~일요일, 3일)중 2일은 마권을 구입하여 경마를 하였으며, 2012. 3월과 4월에도 마권을 구입하여 경마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소청인은 2010.~2012. 2.간 소청인이 경마장에서 범인을 검거한

사실이 없고, 외근 형사는 2인 1조로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답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이 상습적으로 경마를 한 것은 사실로 인정되므로 경찰공무원이 경마를 하였다고 하여 불건전하다고 하는 것은 법률적 오류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2010. 5.경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룸살롱에 1회 출입하였다가 사건관련 피해자를 만나게 된 것이 전부이며, 2010. 11.에 개업한 ‘○○’에는 술을 팔아준다는 이유로 2011. 가을경까지 출입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지방경찰청은 유착비리를 근절하고자 2010. 1. 12. ‘경찰 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시’를 하달하여 사행성게임장·도박 및 성매매업소(유호업소 포함) 운영·종사자, 업소운영 관련 조직폭력배 등 대상업소 관련자와의 접촉행위 일체를 금지하는 한편 대상업소 접촉 시 사전신고토록 하였고,

경찰청은 2010. 12. 17. ‘유착비리 근절을 위한 경찰 대상업소 접촉금지 제도 전국 확대 시행’을 통하여 ‘경찰 대상업소’ 및 ‘접촉금지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는데, 동 지시는 접촉금지 대상업소를 원칙적으로 ‘가’급 대상업소로 한정하였으며, 접촉금지 범위를 ‘전화통화(문자메시지·이메일 등 포함), 사적면담, 회식, 금전거래, 사건과 관련 없이 신고현장 진출 등 부적절한 접촉 행위’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B가 배우자와 함께 운영한 ‘○○’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도 단란주점 형태로 영업하였기에 위 업소를 접촉금지 대상업소로 인정한 피소청인의 판단에 부당함은 없어 보이는 점,

2012. 7. 8.자 청문조서(면담)에서 ‘○○ 가게를 개업(2010. 11.경)하고 난 후 한 달에 2~3회 정도 가게에 와서 술을 마시고 갔는데,

2011년 여름 이후에는 오지 않았다.’는 진술이 확인되며, 소청인도 위 업소에 출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행위에 징계시효 2년을 초과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접촉행위는 성실의무 등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소청인이 2010. 5.경 B의 처 C가 운영실장으로 종사하던 ○○라는 업소에 출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 역시 위 지시명령에 위배되는 행위이기는 하나, 2013. 5. 15.에 징계의결요구 한 사실에 비추어 이 부분을 징계사유에 포함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소청인은 B와는 17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이고, 특히 소청인이 취급한 ‘○○파’ 참고인 겸 협조자임에도 그에게 500만 원 차용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펴건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이 B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시기는 2010. 12. 2.이고, 소청인에 대한 징계의결요구는 본 비위에 대한 징계사유의 시효 2년을 넘긴 2013. 5. 15.에 이루어졌으므로, B와의 부적절한 금전거래 비위에 대한 징계시효는 도과되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D와의 금전거래는 경마에 사용하기 위한 거래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그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최종적으로 금전거래가 있었던 2012. 2.경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841 판결 참조), 이는 기타 직무관련성이 없는 자와 통상의 한계를 이탈한 채권·채무·보증행위를 금지한 ‘경찰공무원 채권, 채무, 보증행위에 관한 처리지침’에 위배되는 부적절한 행위에 해당한다.

4. 결 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된다.

본 건의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강조되는 경찰관의 신분으로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경마장에 출입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공무원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으며, 경마에 빠져 변제능력이 없는 민간인과 부적절한 금전거래를 하고, 사건 청탁자이자 접촉금지 대상업소 업주와 접촉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등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할 것이므로, 소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고, 인정되지 않는 일부 징계사유를 배제하더라도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44. 상습적 휴무 지연신청 및 불건전 오락 행위(감봉1월→기각)

처분요지 : 상습적 휴무 지연신청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직원 간 화합을 저해하고, 민간인 4명과 불건전 오락(고스톱)을 5회한 비위로 감봉1월 처분

소청이유 : 휴무신청은 모두 불가피하게 신청한 것이지 고의적으로 직원화합을 저해하려 한 것이 아니고, 약 20년 넘게 거주한 지역주민들과 친하게 지내다 보니 가끔 음료수내기 등을 하였으나 오락행위일 뿐 사행성은 없었던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의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3-400 감봉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파출소 근무체제가 3조2교대로 출근시간이 주간근무는 08:30, 야간 근무는 17:30인 상황에서 소청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주간근무일에 총 4회에 휴무를 신청하면서 1시간 이내 갑자기 휴무를 신청하였으나

정확한 소명을 하지 못하고, 이러한 상습적 휴무 지연신청으로 순찰팀장의 근무일지 작성 등 업무와 직원들의 휴무 예견 가능성을 불투명하게 하는 등 지장을 초래하고 직원 간 화합을 저해하였고,

* 2013. 3. 4. 모친의 병원진료, 3. 13. 본인 감기몸살, 3. 24. 친구 상가집 방문, 4. 11. 모친의 병원진료

2013. 4. 25. 19:00~21:15경 ○○ ○○군 ○○읍 ○○리 ○○슈퍼 내에서 본인 판돈 63,300원을 가지고 민간인 4명과 함께 총 판돈 221,300원을 놓고 화투 50매를 이용, 점당 100원씩 불건전오락(고스톱)을 하여 같은 날 21:15경 청문감사관 등에게 적발되었으며, 이외에도 3월 2회, 4월 2회, 각 주간 불상일시에 약 30~40분간 동일 장소에서 대부분 본인 판돈 1~2만원 포함 총 판돈 2~3만원정도의 소액 오락 등 총 5회의 불건전오락(고스톱)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2013. 3. 4 및 4. 11. 휴무신청은 ○○에 혼자 사시는 노모(74세)의 침술원 치료차, 나머지도 불가피하게 휴무 신청한 것일 뿐 고의로 직원간 화합을 저해하려 한 것이 아니었고 그 후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불건전오락 행위 관련, 소청인이 ○○슈퍼가 있는 아파트에 약 20년간 거주하다보니 슈퍼주인 B 등 4명과 친하게 지냈고 가끔씩 음료수내기 고스톱을 하였으나 점당 100원으로 사행성이 없는

오락행위였으나 깊이 반성하고 있고, 21년 11개월 동안 성실히 근무한 점, 경찰청장 표창 등 수상공적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1시간 전 갑작스런 휴무신청으로 업무에 지장을 주고 직원 간 화합을 저해했다는 징계사유와 관련, 휴무는 연일근무나 당직근무 등을 한 후 누적된 피로회복 등을 위해 근무일이지만 자유롭게 쉬는 것을 의미하고, 일선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개인휴식 시간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나, 매월 말 다음 달 근무상황표 편성에 미리 반영하도록 휴무일을 사전 지정 하도록 하는 것이 통례인 점, 2교대로 근무하는 파출소의 업무특성상 갑작스런 휴무신청은 근무편성을 다시 해야 하고 대체근무자를 지정해야 하는 불편을 주고, 업무에 공백을 초래할 수도 있는 점, 다른 직원들의 휴무사용에 영향을 주거나 팀원들에게 업무를 전가시키게 되는 등 직원간 화합을 저해하게 되는 측면이 상당한 점, 감찰조사 과정에서 모친 병원 진료기록 등 휴무 사유에 대한 근거를 요구했으나 소청인이 이를 소명 하지 못하였고, 휴무 사유가 급박하고 불가피한 사정이었다고도 보기 힘든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처신을 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만, 소청인이 파출소 내 사용 가능한 휴무일수 내에서, 팀장에게 보고하고 허가를 받아 휴무를 사용하였고, 만약 소청인의 휴무사용이 부적절한 것이었다면 결재권자가 결재하지 않으면 된다는 것을 고려 하면, 소청인의 휴무사용 자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불건전오락(고스톱) 징계사유 관련, 소청인은 사행성이 없는 단순 오락행위였다는 주장이나, 2013. 4. 25.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직원들에게 도박현장이 적발된 점, 당시 판돈이 총 221,300원으로 확인되었고, 경찰 내부규정에 따르면 판돈이 20만원 이상의 경우 입건 대상에 해당하는 점, 소청인이 이전에도 3월에 2회, 4월에 2회 등 4차례 정도 같은 장소에서 고스톱을 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 점, 이전에는 판돈 4~5만원 정도였다고 하나 적발 당일 판돈이 20만원을 상회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일부 동석자들은 타 지역 거주자들임이 확인되고 있어, 주민들 간 음료수내기 등의 단순한 오락 차원의 행위라고 단정하기 곤란한 점, 무엇보다 소청인이 도박행위를 단속해야 할 경찰관의 신분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드나드는 지역 슈퍼에서 여러 차례 고스톱을 친 행위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기 충분한 부적절한 처신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정

소청인은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거주지 인근 슈퍼에서 민간인들과 도박행위를 한 비위행위와 갑작스런 휴무신청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한 점이 인정되고, 2013. 4. 25. 현장 적발된 건 이외에도 3~4월간 4차례 고스톱 친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행위가 반복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도박행위를 방지하고 단속해야 할 경찰공무원으로서 민간인들과 도박

행위를 하는 것은 국민의 시각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행위로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소청인이 2012. 5.부터 ○○경찰서 사전경고 대상자로 관리되고 있어 더욱 자중하고 성실히 생활했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보이는 점, 비록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려우나, 갑작스런 휴무신청을 반복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평소 기본적인 근무태도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처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도박 및 부적절한 근무태도 등에 대해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3. 8. 23. ○○시 ○○구 ○○동 소재 ○○동호회 사무실에서 ○○연습을 하고 나와 귀가하여, ○○시 ○○구 ○○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23:15경 주차장에서 관련자 B에게 담뱃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B가 없다고 하고 가버린 후,

주차장 밖으로 나와 ○○동 출입구 앞에서 B가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담뱃불을 빌려주지 않은 것에 대하여 “씨발, 싸가지 없네” 라는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B가 소청인의 가슴을 밀쳐 넘어지자, 일어나서 주먹으로 B의 턱을 때리고 얼굴과 가슴, 어깨, 다리 등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하였고,

같은 날 B로부터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의혹을 제기 받은 ○○경찰서 ○○지구대 순경 C 등이 소청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8. 24. 01:47~02:07경까지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소청인은 “나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 집에서 술을 마신 것이다”라는 말을 되풀이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경찰서에 형사 입건되고 연합뉴스 등 언론에 보도되어 물의 야기한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인근주민과 싸움 끝에 폭행죄로 입건된 부분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당시 소청인이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이 아니라 다투는 과정에서 상호 폭행을 한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B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으며,

소청인은 당일 B와 다투고 난 후 집에 들어와 술을 마신 것으로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이 없으며, B는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소청인과 싸울 때 술 냄새가 났다,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한 바 있으나, 이후 경찰조사 시 “소청인과 술 냄새가 났다고 이야기한 것은 당시 소청인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소청인에게 보복적 심정에서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거부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성립하고,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응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호흡조사 측정요구가 있어야 하나,

이 사건의 경우 소청인이 당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경찰관들이 소청인에게 무리하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권한이 없으며, B의 진술은 당시 소청인과의 몸싸움 이후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의 진술이므로 신빙성이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이었고, 설령 소청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경찰관들이 사인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가 음주측정을 요구할 권한은 없는 것으로, 소청인은 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소청인의 청구 이유와 제반 사정을 면밀히 살펴,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B 폭행 관련하여 살펴보건대, 소청인은 법을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그간 수시로 의무위반행위 금지에 대한 지시를 받아왔고, ○○계장으로서 직원들이 의무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양·감독하며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B가 담뱃불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청인이 먼저 수차례 욕설을 하여 본 폭행사건이 발생하기에 이른 점, B가 먼저 밀쳤다고 하나 이후 거의 일방적으로 소청인이 B를 폭행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B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되었다 하더라도, B를 시비 끝에 폭행하여 형사입건 되고 경찰공무원으로 품위를 심히 손상시킨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 될 수 없으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 할 것이므로 그 책임은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음주측정 거부 관련하여 살펴보건대, 도로교통법 제44조 2항에서는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청인은 폭행사건 직전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아파트 주차장 CCTV 녹화화면으로 확인되었고, B는 소청인이 자신을 폭행할 당시 만취상태였다고 진술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조사도 요청한 상태였던 점, 경찰관들이 소청인의 집에 방문하였을 당시 소청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시 소청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며,

설령 소청인이 폭행사건 직후 화가 나서 주거지에서 소주 1병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일단 응한 다음 음주 운전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며, 경찰관들은 당시 음주측정을 하지 않는다면 사후에 음주운전 여부를 명백히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할 권한이 없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음주측정거부에 대하여 ○○경찰서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사건 송치 하였으나,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혐의없음(범죄성립 안됨) 처분된 바, 이를 징계사유에 포함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4. 결 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은 법을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그간 의무위반 행위를 금지하는 지시를 지속적으로 받아 왔으며 ○○계장

으로서 직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인 관련자와 사소한 시비 끝에 관련자를 폭행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형사 입건된 점, 본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실추시킨 점으로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폭행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불기소 처분된 점, 처분청에서 징계의결 시 인정한 음주측정거부에 있어서는 ○○지방 검찰청 ○○지청에서 범죄인정 안됨으로 불기소 처분된 점, 자신의 과오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을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V. 금품향응수수

46. 경찰대상업소 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파면→해임, 징계부가금 3배→기각)

처분요지 : 2012. 5월 초순경 관내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관련자로부터 대포폰을 받고 사용요금 18만원을 대납토록 하였고, 2012. 5. 17. 18:00경 관련자의 차량 내에서 휴가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수수하는 등 총 218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비위로 파면 및 징계부가금 3배 처분

소청이유 : 휴가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은 사실 없고 다른 명목으로 20만원을 받았는데, 그에 비해 파면 처분은 과중하며 기타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원 처분 사유 중 일부는 인정하기 어렵고, 단속정보 제공 등 부정처사는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감경 결정

사 건 : 2013-81 파면 및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2013-82 징계부가금 3배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13. 1. 7. 소청인에게 한 파면 처분은 이를 해임으로 변경하고, 징계부가금 654만원 부과 처분은 이를 600만원 부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경무과에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으로서, 풍속 업소 요원으로 근무할 당시인 2012. 5월 초순경 ○○경찰서 관내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B로부터 대포폰을 받고 사용요금 18만원을 대납토록 하였고, 2012. 5. 17. 18:00경 ○○역 부근 B의 카니발 차량 내에서 휴가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수수하는 등 총 218만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등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2,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파면 및 징계부가금 3배(654만원) 부과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경찰서에 근무할 당시인 약 15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B가 2012. 4월경 소청인을 찾아와, 고향 친구인 C가 심의가 난 오락기를 가지고 오락실을 하려는데 어떠냐고 문의하여, 소청인은 “오락실 단속을 하는 곳이 많아 단속을 피할 수 없다고 하면서 오락실을 하지 말라”고 극구 말렸었다.

그 후 며칠 뒤에 D(C의 친형)가 B에게 200만원을 주면서 소청인에게 갖다 주라고 하였고, B가 이를 받아 가지고 있다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소청인에게는 자신의 지갑에서 20만원(오만원권 4장)을 빼주면서 차량에 기름을 넣으라고 하여 소청인이 뺏다고 하니까, B가 자기 돈으로 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소청인의 잠바주머니에 넣어, 이를 받은 사실이 있다.

B는 D에게 사채를 빌려 쓰고 주거지인 아파트에 근저당을 설정해

주었는데, B가 D에게 위 20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말하자, D가 욕을 하면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소하고 아파트도 경매처분을 한다고 하여, B가 무서워서 소청인에게 200만원을 전달해주었다는 진술을 하였는데, 사실은 아무런 대가 없이 차량 기름 값 명목으로 20만원을 받았을 뿐이다.

B가 위 거짓진술 이후에 마음이 괴로워 ○○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을 다시 찾아가 진술하려고 하였는데도 그 진술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점, B로부터 20만원을 받은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지만 파면 처분은 너무 과한 징계인 점, 부모님과 처 및 대학에 다니는 두 딸의 가장인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가. 대포폰을 제공받고 요금 18만원을 대납하게 한 비위 관련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인 C의 진술에 따르면, “B를 통해 대포폰을 건네주고 며칠 있다가 전화요금을 내달라고 하는 말을 B를 통해 듣고, ○○역 부근 핸드폰 가게로 가서 요금 18만원을 현금으로 지불하였다”고 하는바, 이로 볼 때 위 납부된 대포폰 요금은 ‘소청인이 사용을 개시하기 이전의 대포폰 사용료(대포폰 판매자 E 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소청인이 대포폰을 제공받아 사용한 비위는 인정하더라도 그 사용요금 18만원을 수수했다는 징계사유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휴가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수수한 비위 관련

소청인은 이 사건 감찰조사 당시에 일관되게 금품수수 사실과 대포폰 사용 사실을 모두 부인해오다가, 2013. 1. 4.자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출석해서야 ‘대포폰 사용 사실’을 시인하고 나머지 비위는 계속 부인 하였으며, 이후 소청심사청구서에서 비로소 B로부터 20만원을 휴가비로 받았을 뿐 200만원을 전달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주장도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이 낮아 중한 처분을 모면하기 위하여 그때그때 꾸며낸 진술일 개연성이 높아 보이는 점, 소청인은 B를 통하여 사건 게임장의 업주인 C로부터 게임장 개업(2012. 5. 15.) 2~3일 전에 대포폰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고, 위 대포폰을 제공받은 목적이 오락실과 유흥업소 관계자, 즉 접촉금지 지시가 내려진 바 있는 경찰 대상업소 관계자들과의 은밀한 통화를 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그 이후에 해당하는 2012. 5. 17.경에 이 사건 게임장의 관계자로부터 2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점, 금품제공자라고 자처하는 D가 2012. 5. 17.에 ○○은행 계좌에서 200만원을 인출한 증거가 명백하고, D는 뇌물공여의 죄를 감수하면서까지 B를 통하여 소청인에게 200만원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D가 B로부터 직접 이 같은 말을 들었거나 소청인과 B와의 전화통화 장면 등을 직접 목격하여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사건 검찰조사에서 위 200만원이 소청인에게 정상적으로 전달되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B가 위 최초 진술의 전반부에서 말한바 있는 ‘D로부터 받은 200만원을 2012. 5. 17.경 소청인에게 전달해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함부로 배척하기도 어려운바, 그렇다면 소청인이 대포폰을 제공받아 사용했던 비위 부분과 위 200만원을 수수했다는 혐의 부분의 강한 연계성을 유의하여 징계사유를 그대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정

소청인은 ○○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소속 풍속팀장으로서 관내 유흥업소와 오락실 등의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유흥업소에 종사한 경력이 많은 B와 친분관계를 유지하며 수시로 접촉한 사실이 있고, B 등이 이 사건 게임장을 개업하려 한 사실을 알고도 그 들로부터 대포폰을 제공받아 5개월 이상 사용 또는 보유하면서 수십 회 통화를 하였으며, B로부터 휴가비 명목으로 건네주는 D의 돈 200만원을 수수하는 등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심하고 고의가 있어 보이는 바 중징계로 처벌함이 불가피해 보이기는 하나,

원 처분 사유 중에서 대포폰을 제공받아 사용한 부분과 B로부터 200만원을 전달받은 비위만 인정할 수 있고 나머지 비위는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실업주인 C는 소청인에게 대포폰을 전달한 뒤 10일 후 경에 이 사건 게임장이 단속됨으로써 소청인으로 부터 단속편의나 단속정보 제공 등의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감찰조사에서도 부정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혐의사실을 밝혀내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 처분은 다소 과다하여 감경함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하고,

징계부가금에 있어서는,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어 보이므로 원 처분과 같이 금품수수액의 3배를 부과할 필요가 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청인이 대포폰을 제공받아 사용한 비위는 인정하더라도 그 사용요금 18만원을 수수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징계부가금의 기초금액을 200만원(원 처분 218만원)으로 조정한 뒤 그 3배에 해당하는 600만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47. 고소사건 관련자로부터 사건처리 명목으로 금품수수
(정직1월→취소, 징계부가금 1배→취소)

처분요지 : ○○과 ○○팀 당직 근무를 하면서 고소인이 ‘배임사건 처리를 잘 해달라’며 노란색 대봉투(A4크기) 안 서류 중간에 현금 100만원(5만원권 20매)이 들어 있는 ○○은행 흰색 돈 봉투를 끼워 책상 위에 놓고 나가자, 위 돈 봉투를 수수한 비위로 정직1월 및 징계부가금 1배 처분

소청이유 : 징계사유의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 처분의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 : 소청인의 비위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취소 결정

사 건 : 2013-202 정직1월 처분 취소 청구

2013-203 징계부가금 1배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13. 3. 14. 소청인에게 한 정직1월 처분 및 2013. 3. 19. 소청인에게 한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 ○○팀에 근무 중인 자로서,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함에도, 2012. 4. 22.(일) 09:20경 경제팀 당직 근무를 하면서 고소인 B가 “배임사건 처리를 잘 해 달라”며 노란색 대봉투(A4크기) 안 서류 중간에 현금 100만원(5만원권 20매)이 들어 있는 ○○은행 흰색 돈 봉투를 끼워 책상 위에 놓고 나가자 위 돈 봉투를 수수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규정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및 제78조의2(징계부가금)에 해당되며,

소청인은 관련자 B로부터 금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소청인이 관련자(B)를 고소하여 벌금 300만원이 부과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관련자가 고소하였던 피고소인들(C, D)에게 소청인이 돈을 받은 부분을 이야기 한 것이지 관련자가 소청인에게 돈을 주었던 부분을 이야기 했던 것이 아닌 점, 관련자 B는 2012. 4. 22. 참고인과 함께 조사를 받으러 소청인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서류 봉투에 100만원(5만원권 20매)이 들어 있는 돈 봉투를 건네주며 “약소한테 식사라도 하세요”라는 말을 하자 소청인이 “5. 4. 휴가 때 잘 쓰겠습니다”라는 말을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는 것이고, 참고인 E는 B가 돈 봉투를 건네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으나, 돈 봉투를 양복 주머니에 넣는 것을 보았고, B가 서류봉투를 가리키며 “휴가 잘 다녀오세요”라는 말을 하여 서류봉투 안에 흰 봉투가 들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였고, 사무

실을 나오면서 B에게 “일요일 날 수고하시는데 인사비용입니까?”라고 묻자 B가 고개를 끄덕여서 ‘인사를 하려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으로 관련자 및 참고인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정황상 금품 수수 사실이 인정되고, 과오 없이 업무에 충실하였던 점을 참작하여 정직1월 및 징계부가금 1배(100만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감찰조사 시 금품수수를 부인하며 자진하여 대질조사와 거짓말탐지기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B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하지 않았고, 진술이 상반되는 상황에서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청인에게 혐의를 둘 수 없는 점, B가 소청인에게 주었다고 주장하는 금원은 차용이 불분명한 G로부터 변제받은 것이라고 하면서 20일 전부터 은행 돈 봉투에 넣어 둔 것을 사건 당일에 B에게 건넸다고 하는 등 금원 출처의 신빙성이 없고, 무엇보다 돈을 주는 장소에 있었다고 하는 참고인 E는 돈을 주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E는 B가 서류봉투를 가리키며 ‘휴가 잘 다녀오세요’라는 말을 하여 서류봉투 안에 흰 봉투가 들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E의 추정에 불과한 점, B는 서류봉투를 약간 비스듬하게 하여 돈 봉투가 보이게끔 소청인에게 주었다며 이를 E가 목격하였다고 피의자신문 시 진술하였으나 E는 B가 대봉투가 아닌 서류봉투를 가리켰고 서류 봉투 안에 돈 봉투가 들어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하는 등 진술이 상이한 점, B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소청인의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진실로 반응한 반면 B는 이를 거부하였고, 소청인이 누구로

부터도 돈을 받지 않았다고 B를 고소하여 벌금 3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점, B로부터 금원을 수수하지 않은 사실이 형사사건을 통해 밝혀졌음에도 ○○지방경찰청의 ‘중징계’ 가이드 라인에 구속되어 본 처분을 한 것은 명백히 부당한 처분이므로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본 건 징계처분 사유와 관련하여 소청인이 금원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관계자인 B와 E, G의 진술에 근거하고 있는데,

① G는 4. 22. 09:00경 B가 사무실에서 만난 자리에서 경찰서 담당 조사관에게 돈을 줘야 된다고 100만원을 가져 왔냐고 하여 건네 준 사실이 있다며 금원을 특정하였음에도, E는 B가 G에게 준비해 온 것을 달라고 하였고, 구체적인 금액은 모른다고 진술하여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참고인들의 진술이 상이한 점, ② E는 감찰관이 ‘자필진술서를 보면, B회장이 서류 중간 쯤 넣어 둔 봉투하나를 지칭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서류뭉치 중에 흰 봉투가 끼어져 있는 것을 본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서류뭉치 안에 흰 봉투를 본 것이 아니고 B가 서류뭉치를 가리키며 휴가 잘 다녀오라는 말을 하여 서류뭉치 안에 흰 봉투가 들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도 소청인과의 전화통화 내용(2012. 10. 15. 녹취록)에 의하면, ‘소청인이 휴가가 있는지도 모르고 B가 식사 잘 하라고 하니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들었다고 하는 등 진술 내용을 일부 번복하였고, 금원의 제공 방법과 관련하여서도 B는 2012. 9. 28. 진술 시에는 ‘(소청인)책상위의 서류를 들어 서류 밑에 100만원이

들어 있는 ○○은행 흰색 돈 봉투를 넣어 두었다고 진술하였다가도 E가 2012. 10. 9. 감찰조사에서 금원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자, 2012. 10. 15. 감찰조사에서 ‘제가 제출할 증거서류(일부만 A4용지 대봉투에 넣었고, 나머지는 대봉투에 넣지 않음) 중간에 미리 끼워 넣은 후 증빙서류 중간에 끼워 놓았던 흰색 돈 봉투를 소청인 쪽에서만 볼 수 있도록 윗부분을 약 0.5~1cm 정도 보이게 한 후 돈 봉투를 왼손가락으로 지칭하며…’ 라고 진술하였고, G도 9. 28. 감찰진술 당시에는 노란색 대봉투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다가 B가 2012. 10. 15. 2차 감찰조사 시 이에 대한 진술을 번복한 후에야 2012. 11. 5. 감찰관과의 전화 청문을 통해 ○○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옆에 앉았던 B가 양복 안주머니에서 흰 돈봉투를 꺼내 서류 봉투 중 누런 봉투 안에 넣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는 등 관련자들 간에 짜 맞추기식 진술을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보이는 점, ③ B가 참고인으로 내세운 E나 G는 소청인 또는 B와 이해관계에 있는 자들로 그 진술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이들이 직접 B가 소청인에게 금원을 건네는 것을 목격한 것도 아닌 점, ④ 소청인이 본건 관련 진실 규명을 위해 대질 및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적극 요청하였고,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2013. 1. 21.) ‘진실반응’으로 나온 점, ⑤ 소청인은 본 건에 대한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B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고, 검찰에서 이를 기각하자 법원에 재정신청을 한 사실 까지 있는 점, ⑥ 소청인과 B는 2012. 3. B가 고소한 사건 외에는 친분 관계가 없었고, 조사 중인 사건 관계자로부터 금원을 수수하면서 ‘후가 때 잘 사용하겠단’는 말을 하였다거나, 통상 금품수수 행위가 당사자 간 은밀히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음에도 B가 G에게 ‘경찰서 담당 조사관에게

돈을 줘야 한다는 말을 하며 G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았다는 등의 진술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이에 더하여 사건의 일방 당사자로부터 금원을 수수하고 금원 공여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사건을 처리한 경우라면, 금원을 다시 공여자에게 반환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음직도 한테 이에 대한 노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⑦ 감찰관이 B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소청인의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열람(2012. 9. 28.)시킨 사실이 있어 그 과정에서 B가 소청인의 개인정보(생년월일이나 출생지 등)를 알게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⑧ B는 이견 외에도 사기죄(2004. 5. 징역 2년6월) 및 명예훼손죄(2008. 2. 200만원)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소청인이 금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B가 고소한 사건에 대해 소청인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2012. 9. 6.)한 것에 불만을 가지고 E 및 G와 말을 맞추어 감찰에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소청인이 금원을 수수하였다는 입증책임은 피소청인에게 있고, 소청인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기 위해 징계혐의에 대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함에도, 위와 같은 사정으로 볼 때, B가 자신이 고소한 사건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자 그 조사관인 소청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을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소청인의 이에 대한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정

소청인의 비위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주문과 같이 각 결정한다.

48.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수수(감봉1월→견책, 징계부가금 1배→기각)

처분요지 : 직무관련자로부터 2013. 2. 4. 18:10경부터 ○○청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시작으로 다음 날 01:30경까지
장소를 달리하며 총 6차례에 걸쳐 도합 117,288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비위로 감봉1월 및 징계부가금 1배 처분

소청이유 : 일부 향응은 인정되지 않고 친분이 있어 직무관련자가
될 수 있음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소청인이 수동적으로 응한 점, 향응 수수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부정처사는 없었던 점, 다른 관련자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감경 결정

사 건 : 2013-376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2013-377 징계부가금 1배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청 6급 A

피소청인 : ○○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13. 6. 11. 소청인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견책
으로 변경하고, 소청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청 ○○지청 ○○과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으로서, 직무 관련자인 ○○ 사무소 부장 B로부터 2013. 2. 4. 18:10경부터 ○○ 지청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시작으로 다음 날 01:30경까지 장소를 달리하며 총 6차례에 걸쳐 도합 117,288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에 위반되며, 인정되는 향응 수수액이 ○○부 징계요구기준인 10만원을 초과하는 점, 사건 상대방의 요구에 수동으로 응한 점, 최근 사건 상대방과 업무관련 처리 내용이 없는 점, 소청인의 평소 행실 및 근무 성적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소청인을 감봉1월에 처하고 징계부가금 1배(117,288원)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관련자 B와 식사와 음주를 같이 한 사실은 인정하나, 노래방에서 현금을 되돌려 받고 앉아 대화를 나누다 나왔는데도 그 돌려받은 노래방 비용 12만원까지 모두 포함하여, 10만원이 초과하는 금액의 향응을 직무관련자로부터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내려진 원 처분은 가혹하고,

직무관련자로부터 형식을 갖추어 의례적으로 접대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관련자 B는 10여 년 전부터 친분이 있는 선배이고, 사건 당일 B가 계산을 한다며 소청인을 만류하였고, 또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B가 외롭다며 같이 있어 달란 부탁을 단호히 거절하지 못한 것으로, B가 직무관련자로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반성하고 있고,

1985년부터 근무하며 모범공무원 표창 등 총 4회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본 사건 징계로 심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다시 한번 심기일전 하여 직무에 전념할 각오인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한다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돌려받은 노래방 비용 12만원까지 포함하여, 10만원이 초과 하는 금액의 향응을 직무관련자로부터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내려진 원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부 감사관실의 소청인과 B에 대한 문답 내용, 해당 노래방 업주의 확인서 내용 등에 따르면, 소청인과 B가 선불로 노래방 비용을 지불하고 20여 분 후에 환불받은 것은 사실로 보이나, 해당 노래방 비용은 선불로 내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소청인이나 B가 자의로 이미 지불한 비용을 환불받은 것이 아니라, 소청인 등을 뒤따르며 감찰하고 있던 ○○ 직원을 노래방을 단속하러 나온 경찰관으로 오인한 노래방 업주가 도우미들을 되돌려 보내자 이에 소청인 등이 항의하여 사후에 환불을 받은 것으로, 이미 수수행위가 이뤄진 후에 이를 반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청인은 B에게 형식을 갖춘 의례적인 접대를 받은 것은 아니고, B와 평소 친분이 있어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줄 것을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B가 직무와 관련하여 접대의 목적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소청인에게 식사 등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B는 ○○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임금체불 등 근로조건 관련 사건을 수임하여 소청인이 소속한 ○○부를 상대로 업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소청인의 소관인 근로감독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 판단되고,

소청인과 B에 대한 문답 내용에 따르면, 소청인은 B와 10여 년 전부터 친분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2. 9.경 B가 수임한 사건을 소청인이 배당받아 처리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평소 소청인은 B가 직무관련자임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인식이 있었음에도, 소청인이 직무관련자 B에게 향응을 제공받은 비위는, 사건 당시 소청인이 B를 만나게 된 경위나 목적, 향응을 제공받은 형식 등에 관계없이 그 책임이 가볍지 않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정

징계양정과 관련하여서는, 향응을 제공한 B는 소청인의 근로감독 업무와 직무상 관련이 있는 자로 인정되는 점, 향응 수수 비위는 고비 난성 비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은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우나,

소청인이 B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점, 향응 수수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사건 당시 B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거나 사후 부정한 처사를 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소청인의 경우 향응 수수액이 노래방 비용을 포함 10만원을 다소 초과하여 감봉 처분을 받았는바, 당시

동석하여 함께 식사 등을 제공받은 소청인의 동료 C, D는 향응 수수액이 10만원 미만에 해당하여 ○○부 공무원 비위사건 조치기준에 따라 경고 처분을 받은 것과 비교할 때, 다소 형평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이 징계전력 없이 약 28년간 근무하며 모범공무원 표창 등 4회 수상한 점 등 제 정상을 고려할 때,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하여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과 관련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르면, 향응 수수 후 반환한 금액도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므로, 환불받은 노래방 비용을 포함한 향응수수액 117,288원을 기초금액으로 삼은 것은 타당해 보이고, ○○부 공무원 비위사건 조치 기준 [별표4]의 규정 등을 고려할 때, 1배수를 부과한 원 처분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49. 부하직원으로부터 승진인사 명목으로 금품수수 (감봉3월→감봉1월)

처분요지 : 부하 직원에게 승진인사 명목으로 200만원을 수수한
비위로 감봉3월 처분

소청이유 : 받은 돈을 회식과 직원들 축하모임에 충당하였고 승진
대가와는 무관했던 점,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의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 : 일회성이었던 점, 중간관리자 C가 소청인에게 금품을
제공하도록 유도하여, 이로 인해 수동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인 점, 인사상 불이익이 매우 큰 점 등을 참작
하여 감경 결정

사 건 : 2013-569 감봉3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지방경찰청 총경 A

피소청인 : 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13. 8. 2. 소청인에게 한 감봉3월 처분은 이를 감봉
1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관으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서장 근무 시, 2010. 1. 15. 오후 경 경찰서장실에서 같은 해 경장에서 경사로 심사 승진한 경사 B로부터 승진인사 명목으로 200 만원을 수수하였던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고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깊이 반성하는 점, 본 건 처분으로 향후 받게 될 인사 상 불이익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평소 인사업무는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소신을 가져왔고 실제 B의 승진도 공정한 심사결과이지만, 당시 B가 승진심사가 끝나고 얼마 후 200만원을 가져와 과장들과 회식을 하라고 건네어 사례 값지 못하게 과장들 회식과 직원들 축하모임에 충당해 버렸던바,

승진 대가와 무관했던 점, 처와 두 자녀를 둔 가장인 점,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대통령 표창 등 수상경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명예를 회복하고 남은 공직생활을 경찰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2항은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소청인이 B에게 수수한 200만원이 승진과 무관한 돈이었다 하더라도 이는 위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고,

B는 ‘저는 1년만 있으면 자동으로 경사 승진을 하기 때문에 심사 승진에 뜻을 두고 있지 않아 과장님에게 선물이나 돈 봉투를 주지 않았다가 승진심사 시기에 임박하여 갑자기 과장님이 저에게 준비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승진 후에 돈 봉투를 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를 지시한 B의 상사인 ○○과장 C도 이를 빌미로 B에게 100만원을 수수한 점, 이외 다수의 부하직원들에게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여 면직 처리된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은 지역경찰의 수장으로서 엄정한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청렴을 솔선수범하여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여 부하 직원에게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위 C와 같은 중간관리자가 이를 빌미로 본인도 부하직원들에게 금품을 수수하고 이를 조직문화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원인 제공을 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소청인의 처신은 부적절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정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규칙 제4조는 ‘300만원 미만의 금품 수수’ 비위에 대해 중징계 처분토록 하고 있는바,

소청인은 경찰고위직 간부로서 솔선수범하여 청렴한 경찰조직을 조성하여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건과 같이 부하직원 B에게 승진대가 명목으로 200만원을 수수한 점, 이는 위 규정에 따라 중징계 상당의 비위인 점, 징계위원회에서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경정계로 의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은 인정된다.

다만, 본 건 발생 후 2년여 동안 경찰청의 감찰이 있었음에도 다른 비위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일회성으로 보이는 점, 중간관리자 C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소청인에게 금품을 제공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로 인해 수동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감경대상 비위는 아니지만 대통령 표창 등 다수의 수상경력이 있는 점, 피소청인의 평가가 좋은 점,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로 인해 인사상 불이익이 매우 큰 점 등을 참작하여 볼 때, 본 건 징계를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0. 범죄조사사건 피조사자로부터 금품수수(해임→정직3월)

처분요지 : 범죄조사사건 피조사자로부터 금품 300만원을 수수 하였으며, 2012. 12. 5, 12. 10.에 소속과장에게 사전 보고 없이 피조사자와 2회에 걸친 저녁식사를 하고 그 결과를 소속과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비위로 해임 처분

소청이유 : 일부 금액(30만원)은 돌려줬고 나머지도 돌려줄 생각이었으며 대가성이 없었던 점, 관련 조사 건이 ○○사건으로 대대적으로 언론보도 되는 등 성과가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의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조사 축소 등 부정처사가 없었고 검찰에서 사안이 경미하여 입건유예한 점, 상훈 및 업무공적 등을 참작하여 감경 결정

사 건 : 2013-616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세관 6급 A

피소청인 : ○○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13. 8. 27.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정직 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세관 ○○과에서 ○○수사 및 ○○사범 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세공무원으로서,

2012. 12. 10. 범죄조사사건 피조사자(B)로부터 금품 300만원을 수수하였으며, 2012. 12. 5, 12. 10.에 소속과장에게 사전보고 없이 피조사자(B)와 2회에 걸친 저녁식사를 하고 그 결과를 소속과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고,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무) 및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 제한), 제27조(특정 직무 관련자와의 사적접촉 금지)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 및 제78조의2(징계부가금)에 해당되고,

일부인 30만원을 돌려주고 나머지를 돌려줄 생각이었다고 하더라도 300만원 금품수수 사실이 확인되고 관세청공무원행동강령 제34조에 금품 받은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보고 후 처리토록하고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점, 공여자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점, 직무관련자와 보고 없이 사적 접촉한 비위가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유사사례 재발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엄히 문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해임 및 징계부가금 3배(9,000,000 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2012. 12. 10. 사건피의자 B가 사건송치 후 절차 등에 대해 문의할 사람이 없다며 애원하여, 이미 범죄인지보고서 전산등록을 마쳐 사실상 사건 종료되어 임의변경 가능성이 없는 상태였다고 생각해 만나서 문의 사항에 설명해주고 하소연을 들어주었고(밥값은 소청인이 계산), 헤어지

면서 인간적으로 감사하다며 팀 회식비로 쓰라며 코트주머니에 봉투를 강제로 넣어 수차례 거절했으나 지나는 사람들 이목도 있어 받았고, 부담스럽다고 하자 정 부담스러우면 교통비라도 달라고 하여 봉투에서 잡히는 대로 B에게 돌려주었고(다음날 보니 270만원이 들어있어 30만원 준 것으로 추정했음),

나머지 금액도 돌려줄 생각으로 소지하고 있다가 연말 사건 실적 마감 등 업무에 정신이 없어 시기를 놓치고 2013. 1. 7. 만나자고 했으나 만나주지 않은 채 해외교육, 사건 처리 등으로 바쁘다가 2013. 4. 13.경 09:30쯤 B 자택으로 찾아갔으나 어른이 없어 14:00까지 기다리다 돌아왔는데 일이 커져버렸으나 검찰에서 300만원을 모두 인정하면 입건유예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300만원 수수를 시인했고 입건유예 되었으며,

B가 구속수감 후 조사직원인 소청인에 대한 악감정으로 30만원을 돌려준 사실을 확인해주지 않다가 2013. 8. 6. 돌려받았다는 확인서를 받았음에도 입건되지도 않은 뇌물죄를 적용하고 300만원 전액을 인정한 것은 대법원의 즉시반환 적용을 배제하고 검찰에서 확대 해석한 것으로, 금품수수 당일 즉시 그 장소에서 B의 요구에 따라 30만원을 반환한 부분은 영득의사가 없다고 보아야하므로 수수액은 270만원이 되고 ○○청 상벌규정상 해임미만의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대가성이 없는 점, 관련 조사 건이 ○○사건으로 ○○청에서 대대적으로 언론보도 하는 등 성과가 있었던 점, 검찰에서 입건 유예 된 점, 16년간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가족들이 받을 충격 등을 감안해 해임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가. 금품수수액이 270만원이라는 주장 관련

뇌물공여자 B는 관세법위반 혐의로 소청인이 직접 조사를 수행하고 사건송치 한 피의자로서 직무관련자임이 명백하고,

소청인은 돌려주려했다고 하나 돌려준 바가 없고, 검찰 및 감찰조사에서 수표 7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교회현금, 직원이나 친구들과 식사비용으로 썼다고 진술한 점, “감사하다며 팀 회식비로 쓰라며 봉투를 주어 거절하다가 받았다”는 소청인의 진술 등으로 금전수수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를 사적으로 사용했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되며,

받은 즉시 B가 요구하여 반환한 30만원은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수수액은 270만원이 되어야한다고 주장하나, ① 소청인이 검찰조사에서 300만원 받은 사실을 인정한 점, ② 공여자가 돈을 주면서 다시 일부를 교통비조로 되돌려 받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소청인의 주장대로 30만원을 교통비조로 준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이는 소청인이 봉투 전체를 받은 상태에서 금원의 일부를 자의적으로 B에게 준 것으로 보여 ‘반환’이라고 보기 어렵고, 소청인이 뇌물수수가 아니라고 제시한 판례상 “뇌물임을 알고 즉시 반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보이지 않는 점, ④ 대법원 판례에서 “뇌물을 수수한 자가 그 후에 자신의 편의에 따라 그 중 일부를 타인에게 교부하였어도 뇌물 전액을 수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91도3364, '92. 2. 28.)”, “영득의 의사로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면 후일 이를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뇌물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판 97도1472, '87. 9. 22.)”고 판시한 법리에 비추어보더라도 뇌물을 수수하고 이를 반환했다고 하여 청렴의무 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 점, ⑤ 검찰에서 300만원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하면서 정상을 참작해 입건유예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직무관련자로부터 300만원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직무관련자와의 사적접촉 금지위반 관련

관세청공무원행동강령 제27조 3호에 따르면 특정업무 수행에 있어 “조사업무직원과 조사가 진행되기 직전이거나 진행되고 있는 경우 그 대상이 되는 개인 및 업체직원”인 직무관련자와 사적접촉을 금지하고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소속과장에게 보고하거나 사후 즉시 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소청인은 직무관련자인 B를 피의자 신분으로 범칙조사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 2회에 걸쳐 만난 사실이 있고, 소속과장에게 사전 보고를 이행하지 않은 점, 2012. 12. 5. 저녁식사에 동석한 C는 사후 과장에게 구두 보고한 점, 2012. 12. 10. 두 번째 만남은 B의 연락을 받고 약속 하여 만난 것으로 고의성이 인정되고 이 만남에서 금품수수까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직무관련자와 사적접촉 금지를 위반한 비위사실이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2012. 12. 5. 만남과 관련, 피소청인은 C의 사후보고 사실은 인정 하면서 소청인은 사후보고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C는 소청인의 직속 상관으로서 과장에게 보고 시 소청인과 동석한 내용으로 보고했을 개연성이 크고, 소청인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C가 과장에게 B와 저녁 먹은 사실을 보고했다고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C가 과장에게 대표로 보고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상당하여, 2012. 12. 5. 만남에 대해서는 C와 같이 사후보고는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관세공무원으로서 ○○에 대한 관세법 위반 범칙조사를 진행하면서 피조사자(대표 B)와 사전·사후보고 없이 사적으로 만나 3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비위가 인정되고,

금품수수 사실을 알고 받아 개인적으로 금원을 사용한 소청인의 행위는 설령 고의성이 없었더라도 관세공무원으로서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중한 과실에 해당하는 점, 청렴의 의무는 국가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서 이를 위반한 것은 어떤 이유로든 용납이 어려운 고비난성 비위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검찰 및 감찰조사 과정에서 소청인이 조사축소 등 부정처사를 한 사실은 없음이 확인된 점, B에 대한 조사사건이 본청의 특별단속 지시로 조사가 착수되어 애초부터 축소가능성이 거의 없었다는 피소청인의 설명, 검찰에서 사안이 경미하고 소청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인정하여 입건 유예한 점, 약 16년간 관세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징계전력이 없고 감경 대상 3회를 포함해 총 6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소청인의 소속팀에서 ○○범죄 적발 관련 약 2조 4천억원의 실적을 보였고, 업무실적이 탁월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점, 자신의 비위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어 개정의 전이 뚜렷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본 건을 거울삼아 더욱 직무에 매진하여 성실하고 청렴한 공무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1. 사기사건 피의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수수(파면→기각)

처분요지 : 피의자에게 사건을 잘 처리해 준다는 명목으로 총 11회
21,095,000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비위로
파면 처분

소청이유 : 피의자를 적법하게 조치했고, 무죄를 주장하며 재판 중에
징계위원회에서 공소사실만으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므로
원 처분의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 : 수사 중인 사건 피의자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해
수수한 점, 형사재판에서 무죄로 인정된 부분을 제외한
425만원 상당의 뇌물수수 및 뇌물요구 사실이 인정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
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3-29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2. 11. 15. 직위해제 된 경찰공무원으로서, 2010. 4.

6.경 사기피의사건 피의자 B(이하 관련자)를 조사하면서 알게 된 후, 관련자에게 사기피의사건 관련 “합의할 시간을 충분히 줄 테니 걱정마라, 너에게 유리하도록 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고 말하는 등 사건을 잘 처리해 준다는 명목으로, 관련자 등으로부터 총 11회 21,095,000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검찰의 처분결과, 관련자 B 진술조서, 청문 조사결과 등 제 증거로 보아 혐의 사실이 인정되어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10. 4. 6.경 사기 피의사건 피의자 B를 조사하면서 알게 된 후 B가 피의사건 발생 경위를 인정하며 합의를 우선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하여 2차 조사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관련법에 따라 적절히 조치 하였으나, 2차 조사 과정에서도 곧 합의를 볼 수 있다고 하여 계속 시간을 연장하기에 법령대로 하여 기소의견 제시하였고 다른 부서로 발령 나서 간 것인데,

징계위원회에서 공소사실을 바탕으로 징계하였으나 무죄를 주장하며 재판을 진행 중이고, 다수의 공소사실이 위증임이 밝혀지고 있어 징계 위원회에서 공소사실만으로 처분한 것은 공무원의 지위적인 특수성 때문에 타의적 모함과 무고에 20여년간 몸담아온 자부심에 상처와 고통을 주는 것이므로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본 건 처분은 검찰수사를 통해 소청인의 비위가 적발되고 검찰의 공소 사실을 바탕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되어 내려진 처분으로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소사실만으로 징계처분이 가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징계벌과 형사벌은 그 권력의 기초, 목적, 내용 및 그 사유를 각각 달리하는 것이므로 형사재판의 결과는 징계사유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대법원 1982. 9. 14. 선고82누46),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련된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확정되지 아니 하였거나 수사기관에서 이를 수사 중에 있다 하여도 징계처분은 할 수 있고(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누110), 징계처분을 한 후 형사 사건에서 벌금이하 형을 받거나 면소 또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한 따로 징계절차를 취할 수 있다(대법원 1967. 2. 7. 선고 66누168)는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징계혐의가 인정되는 한 형사사건 확정전이라도 징계처분이 가능한 것이고,

소청인은 수사 중인 사건피의자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이를 수수한 비위로 검찰에 기소된 점, B의 뇌물공여 인정 진술, B가 합의할 시간을 달라고 하여 기다려주었고, 합의가 되면 불기소의견으로 건의하겠다는 등의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직무관련자에게 청탁받고 향응 등을 수수하여 검찰에 체포된 공소사실과 경찰관으로서 공정성을 심히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해 징계처분에 이른 처분청의 결정에 특별한 하자는 발견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소청인의 비위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봐야 할 것인데, 공소사실을 바탕으로 한 본 건 징계

사유에 대해 소청인은 법원에 제출한 변론서를 첨부한 소청심사청구서를 통해 혐의사실을 모두 부인하였으나, 형사재판에서 뇌물요구 및 수수에 대한 일부 혐의에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25만원이 확정되었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참조),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그와 관련된 민사나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것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1981. 1. 27. 선고 80누13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는바,

소청인이 유죄판결 이후 이를 달리 입증할 만한 주장이나 증거자료를 제출한 바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도 적법하게 조사해 채택한 증거를 바탕으로 충분히 검토되어 내려진 형사재판의 판결 결과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법원에서 무죄로 판결한 징계사유(11개 중 6개)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 즉, 소청인이 B로부터 2010. 4. 28.경 골프우산 및 골프핀 등 시가 15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사실, 2010. 5. 25.경 액수불상의 여성용 골프채를 구입해 보내달라고 요구한 사실, 2010. 7. 17.경 시가 170만원 상당의 금장퍼터 2개를 요구해 받은 사실, 2010. 7. 19.경 골프채를 보내달라고 요구한 사실, 2010. 7. 19.경 ○○룸살롱에서 240만원 상당의 술과 성접대를 받은 사실 등의 징계사유는

그 비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비위혐의가 무죄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은 수사 중인 사건피의자에게 뇌물요구 및 수수 혐의에 대해 형사재판에서 무죄로 인정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 즉 425만원 상당의 뇌물수수 및 뇌물요구의 비위사실이 인정되고,

비록 당초 징계사유 상 적시된 총 21,095,000원 상당의 금품수수 혐의중 상당부분이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되었고 부정처사가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수사 중인 사건 피의자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해 수수한 행위는 공정한 업무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경찰조직 전체의 위신을 저해하는 고비난성 비위인 점,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 관한규칙(경찰청예규, 2010. 1. 1. 시행)」 징계양정 기준상 직무관련 부정처사가 없더라도 300만원 이상 금품수수의 경우 중징계 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으로 확정판결을 받아 국가공무원법 제69조 및 제33조에 따라 당연 퇴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2. 금품 및 향응수수 후 개인정보 유출

(파면→기각, 징계부가금 1배→기각)

처분요지 : 사건관련자에게 금품을 요구하여 250만원을 수수하고
위 관련자로부터 타인의 개인정보를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5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수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여 제공한 비위로 파면 및 징계부가금
1배 처분

소청이유 : 관련자와는 호형호제 하는 사이로 휴가비 및 추석 떡값
등 명목으로 150만원을 받은 적은 있으나 대가성은
없었고, 그 외 200만원은 수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의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 :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3-137 파면 처분 취소 청구

2013-138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주 문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형사과에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서 형사과 근무 당시인 2011. 5. 19.경 관련자 B(40세, 남)이 건 외 C(50세, 남)를 폭행, 상해(6주)를 가한 사건을 담당·수사하여 본 건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지검에 송치한 후, 같은 해 6월말 경 ○○서 본관 건물 좌측 출입구에서 “벌금으로 사건이 잘 해결됐으니 인사해라”고 금품을 요구하여, 위 B로부터 100만원을 수수하였고, 그 후 ○○경찰서로 전입하여 근무하면서 같은 해 7. 11.경 ○○은행 ○○지점에서 ○○은행계좌로 금 50만원을 송금 받아 수수하였고, 같은 해 9월 중순경 ○○동 ○○주점 출입구에서 100만원을 수수하는 등 3회에 걸쳐 그 직무와 관련하여 총 25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였으며, 2012. 9. 8.경 위 B로부터 건 외 채무자인 D의 주소를 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100만원을 ○○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날 ○○동에 있는 ○○주점에서 105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 받는 등 2회에 걸쳐 총 205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후,

같은 달 10. 10:23경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사건수사시스템에서 건 외 D의 주민조회를 하여 검색된 주소를 위 B에게 전송(카카오톡)하는 방법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알려주어 성실·청렴·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형법 제129조(수뢰), 동법 제131조

(수뢰후부정처사),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등을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 호 및 동법 제78조의2(징계부가금) 제1항에 해당되어 파면 및 징계부가금 1배 (2,025,00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형사과에 재직할 당시 사건 관계자인 B를 알게 되었는데, 징계의결 사유에 기재된 것처럼 B에게 금품을 요구한 것은 아니며,

B의 사건을 조사하면서 친분이 생기게 되었고, B는 고마움의 표시로 금품을 제공하였으나 공무원 신분으로 금품을 제공 받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하면서 반려하였으며,

그 후로 B와 호형호제 하는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고, 2011. 7. 11.경 휴가비에 보태라고 하면서 50만원을 제공해 주었고, 약 1년이 지난 2012. 9. 8.경에는 추석이 다가오니 떡값이라도 하라면서 금 100만원을 제공해 주었던 것으로서 대가성으로 금품을 제공받은 것은 아니며,

B가 2011. 6.말경 ○○서 건물 좌측 서출입구에서 제공해 주었다는 금 100만원 및 2011. 9.중순경 ○○동 ○○주점 출입구에서 제공하였다는 금 100만원은 결코 받은 사실이 없으며, 이는 B의 말 뿐인 주장이고 그 어떠한 증거도 없으며,

20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점, 경찰청장 표창을 수상한 점, 제공받은 금품이 대가성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B가 고마움의 표시로 제공한 금품을 반려한 사실이 있음에도 오히려 소청인이 금품을 요구하여 뇌물수수하였다는 사실판단의 오인이 있고, B와는 호형호제하는 사이로 휴가비와 추석 전 떡값 명목으로 대가성 없이 150만원을 받았으나, 그 외 200만원은 수수한 사실과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B는 진술조서·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시 일관되게 형사사건의 처리를 잘 해 주었다는 이유로 인사를 하라는 소청인에게 25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고, 제3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목적으로 1,525천원 상당의 뇌물 및 향응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B는 진술조서 작성시 소청인에게 현금을 제공한 장소의 약도를 정확하게 그렸고, 전달방법 등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도 B로부터 금품을 받지 않았다는 소청인의 진술이 거짓 반응을 보인 반면에 소청인에게 금품을 주었다는 B의 진술은 진실반응을 보인 점,

소청인도 소청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 받은 150만원과 유흥주점에서 B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고 있고, 또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B에게 제공한 사실도 인정하고 있는 점,

소청인은 B와 호형호제하는 사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B는 소청인과 만난 지 1년 6개월이 되었지만 단 한 번도 마음을 터놓고 얘기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소청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검찰에서도 소청인이 B로부터 25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205만원

상당의 뇌물 및 향응을 수수하고 제3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사실을 인정하여, 소청인에 대하여 수뢰후부정처사, 뇌물수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불구속구공판으로 처분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형법 제129조(수뢰), 동법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등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금품·향응 수수의 비위는 같은 법 제78조의2(징계부가금)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에 해당된다.

징계 처분의 적정성에 대해 살펴보면, 소청인은 형사사건을 잘 처리해 준 대가로 B로부터 25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점, B로부터 1,525천원의 금품·향응을 수수하고 제3자의 개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B에게 무단으로 제공한 점, 검찰에서도 소청인의 비위를 인정하여 수뢰후부정처사, 뇌물수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불구속구공판으로 처분한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하고,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에 대하여는 소청인의 비위사실이 모두 인정되므로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3. 수사관에게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 수수

(해임→기각, 징계부가금 3배→기각)

처분요지 : 고소사건 관련하여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담당
검사실 수사관에게 청탁해 준다는 명목으로 약 13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비위로 해임 및 징계부가금 3배
처분

소청이유 : 고소사건 관련하여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중고 골프채
및 중고 TV도 사건 청탁이 아닌 사적인 특수한 친분관계
에서 받은 것이고, 현금 30만원을 받은 적 없으며,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3-164 해임 처분 감경 청구

2013-165 징계부가금 3배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지방검찰청 6급 A

피소청인 : 검찰총장, ○○지방검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검찰청 ○○과에서 근무하던 중 2013. 1. 25. 변호사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2013. 2. 4. 직위 해제된 자로서,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1. 5. 초순경 ○○지방검찰청 앞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로부터 그가 ○○지청에 고소할 예정인 그의 누나 C와 고종사촌 D에 대한 사기 및 횡령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1. 5. 7.경 ○○IC 부근 ‘○○폐차장’ 앞 노상에서 위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담당 검사실 수사관에게 청탁해 준다는 명목으로 B로부터 시가 50만원 상당의 중고 골프채 세트 1개를 교부받았고, 2011. 8. 14.경 ○○아파트 B단지 부근에서 같은 명목으로 위 B로부터 현금 30만원을 교부받았으며, 2011. 11. 14.경 소청인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에서 같은 명목으로 위 B로부터 시가 50만원 상당의 중고 TV 1대를 교부받은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 및 제78조의2(징계부가금)에 해당되고, 검찰공무원의

금품·향응 수수행위에 대한 신분 조치 강화 지시(대검-감찰1과, 2010. 6. 30.) 및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처리지침 제4조(검찰공무원의 비위 처리) 제4항에 의거하여 해임 및 징계부가금 3배 부과(3,9000,00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본 건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B와 E가 함께 찾아와 사건을 문의하여 조언해 주고 서류 작업을 도와 준 적은 있지만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은 없고, 같이 있었던 E도 소청인이 부탁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으며, 골프채와 중고 TV는 가치가 별로 없는 중고품이라서 받은 것으로 사건 청탁과는 무관한 것이었고,

2011. 5. 7. B는 소청인에게 “마누라가 골프 때문에 바람이 나서 골프채를 치우려고 한다”라며 골프채를 주었고, 골프채를 받은 자리에서 ○○지청 F 수사관에게 전화를 한 것은 개인적인 약속을 잡기 위한 것이지 사건 청탁을 위해 한 것은 아니었으며, 또한 F 수사관은 본 건 고소사건 담당 검사실에 근무하지도 않았고,

B는 2011. 8. 14. 소청인에게 30만원을 주고 이를 수첩에 적어 놓았다고 주장하나 소청인은 정말 받은 기억이 없으며, B의 다이어리 기록 내용도 소청인의 휴가 부분의 사실 관계가 다르며,

B로부터 중고 TV 1대를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중고 가격 정도는 주어야 하겠다고 마음먹고 현금 30만원을 주려고 하였으나, 극구 사양하여 소청인의 집에서 B에게 10만원 상당의 소고기를 구입하여 식사를

대접하고 20만원 상당의 보이차도 선물하였으며,

소청인과 B는 약 15년 전부터 알아 가족들과도 서로 알고 지내는 등 오랜 기간 동안 친분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는 사람으로서 직무관련자가 아니며, 소청인이 골프채 및 TV를 받은 시점이 오해의 여지는 있을 수 있으나 사적인 특수한 신분관계에서 받은 것이고,

소청인의 해임 처분은 검찰공무원 비위처리 양정기준 및 소청결정례에 비추어 과중한 처분이고, 소청인이 85세의 고령의 부모님, 두 자녀 등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라는 점, 21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과오가 없었던 점, 법무부장관 등 표창을 수상한 점, 조직에 누를 끼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해임 처분에 대해서는 감경을, 징계부가금 3배 처분에 대해서는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본 건 금품수수는 대가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 관련, 소청인은 검찰 수사관으로서 B로부터 ○○지청의 고소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받고 중고 골프채 1세트, 현금 30만원 및 중고 TV 1대를 교부 받아 징계사유와 동일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법원 1·2심에서 소청인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및 압수된 물품 몰수, 추징금 30만원을 선고하였으며, 2014. 1. 17. 동 재판 결과가 확정된 점, 법원 판결문을 보면 소청인도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은 사건 청탁 명목이 아니라 친분관계에서 받았다고 주장하나

B와는 2004년경부터는 거의 서로 연락을 하지 않다가 2010년 10월경 B의 연락을 받고 B의 고소사건에 관한 도움을 요청받은 것으로 평소 친분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검찰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도 청렴하여야 할 직분에 있으면서도 고소사건의 담당검찰수사관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수수 한 점 등을 살펴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 본 처분이 형평성을 잃은 과중한 처분이라는 주장 관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13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비위가 인정되고,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 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비위정도, 과실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징계위원회의 재량행위라는 점, 검찰 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처리 지침에 따르면 직무 관련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의 금품·향응을 수수하였을 경우 정직~해임 상당의 책임을 묻도록 한다는 점, 대검찰청의 「검찰공무원 금품·향응 수수 행위에 대한 신분조치 강화 지시(2010. 6. 30. 시행)」에 따르면 검찰 공무원이 그 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또는 그 지위를 이용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금품·향응을 수수할 경우 청탁 유무 또는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파면·해임에 처하도록 한 바,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정

소청인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검찰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 하여 성실하고 엄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직무상 책임을 망각한 채 관련자의 고소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3차례에 걸쳐 13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한 점, 본 건 관련 형사재판에서도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된다는 점, 소청인의 비위 사실이 당시 언론에 보도되어 검찰조직에 대한 대국민 신뢰가 실추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하고,

징계부가금과 관련하여, 금품 수수 비위가 인정되고,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금품 및 횡령 수수액의 3~4배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부가금 3배 처분이 과중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 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4. 노래방 단속무마 명목으로 금품 수수

(파면→기각, 징계부가금 1배→취소)

처분요지 : 노래방 단속 무마를 핑계로 업주에게 금품을 요구하여 200만원을 수수하고 사건 담당자에게 청탁을 했으며,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차용, 과다 채무 등으로 파면 및 징계부가금 1배 처분

소청이유 : 노래방 업주와 선후배 관계로 간곡히 부탁하여 금전을 받았으나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고 200만원 전액을 반환 했으며, 딸의 병원비가 필요하여 차용하고 바로 변제했던 것이며, 변제 능력을 초과한 과도한 채무행위는 없었으므로 원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징계처분은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하고, 징계부가금 처분은 형사처벌을 받고 수수한 금품의 액수만큼 추징된 점, 수수한 금품 200만원 전부를 노래방 업주 B에게 반환한 점, 경제적 곤란을 호소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취소함

사 건 : 2013-208 파면 처분 감경 청구

2013-209 징계부가금 1배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13. 2. 27. 소청인에게 한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소청인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으로서,
가. 금품수수 관련

○○시 ○○노래방이 2012. 10. 26. 주류 판매로 단속된 사실을 알고 2012. 10. 29. 저녁 ○○노래방으로 업주 B를 찾아가 “단속에 걸린 것을 안다. 앞으로 잘해라.”며 말을 하고, 다시 2012. 10. 31. 20:00경 ○○노래방으로 B를 찾아가 “노래방이 단속되었는데 빼는 방법이 있다. 뺄 의향이 있느냐.”, “빼려면 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자 B가 “얼마가 필요하냐”고 묻자 “2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고,

2012. 11. 1. 11:26경 B의 휴대폰으로 “어제 말씀 드렸던 단속된 것 뺄 의향 있으면 연락주세요, 누구한테도 말하면 안돼요.”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B가 2012. 11. 1. 11:37경 “부탁드려요, 어떻게 하면 되죠.”라고 문자를 보내자, 같은 날 15:43경 B에게 전화하여 “일을 해결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계좌번호를 찍어 줄 테니 200만원을 넣어라.”고 금품을 요구하였으며,

이어 같은 날 16:20경 B에게 소청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문자로 알려주었고, B는 16:30경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소청인 ○○은행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2012. 11. 6. 16:51경 B에게 “전에 얘기했던 나머지 준비해주세요.”라고 문자를 보내 추가로 금품을 요구하여 2012. 11. 7. 14:20경 B ○○은행 계좌에서 소청인 ○○은행 계좌로 추가로 100만원을 송금받아 2회에 걸쳐 총 200만원을 단속무마를 빌미로 수수하였으며,

나. 사건 청탁(알선) 관련

○○ 노래방 사건 담당조사관인 같은 서 경제팀 C에게 2차례 전화를 해 “우리 동네 누님인데 조사받으러 오면 잘 좀 해달라.”, “업주가 몸살이 나서 조사를 연기해 달라.”고 하였고, B에게는 “팀장이 연락이 안 되니 출석 일자를 뒤로 늦춰라.”고 말하는 등 일정한 청탁(알선)을 하였고,

다.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차용 관련

2012. 11. 29.경 ○○시 소재 ○○노래방 업주 D에게 100만원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여 100만원을 빌리고, 2013. 1. 4. D에게 되돌려주는 등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으며,

라. 과다 채무 관련

일자미상경 관련자 E로부터 1,000만원을 빌려 이를 갚지 못해 E가 법원에 채권압류를 신청 2013. 1. 7. ○○지방법원으로부터 17,082,256원에 대해 채권압류 되는 등 변제능력을 초과한 과도한 채무행위로 품위를 손상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1조 제1항(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및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알선·청탁의 금지), 제14조(금품을

받는 행위의 제한), 제16조(금전의 차용금지)의 규정에 위반되고, 사건 문의절차 일원화 제도, 경찰 공무원 채권·채무·보증에 관한 처리 지침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및 같은 법 제78조의2(징계부과금) 제1항에 해당하며,

평소 팀장, 지구대장 등 상급자의 지속적인 의무위반행위 예방 교육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4대 근절대상 의무위반행위를 하여 언론에 보도되는 등 경찰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켜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점이 인정되어 엄중 문책할 필요가 있어 소청인을 파면 및 징계부가금 1배(200만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금품수수 및 알선 관련

소청인은 2012. 10. 29. 저녁 시간불상경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 이 사건 관련된 ○○노래방에 들어갔는데 업주인 B와 이야기를 하다 서로 학교 선·후배 사이라는 것과 주류판매로 단속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2. 10. 31. 친구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다시 ○○노래방에 들어가 B와 이야기를 나누다 B가 주류판매로 단속된 것을 뺄 수 있느냐고 물으며 알아보아 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여 소청인이 그럼 알아보겠다고 하자 B가 그럼 식사라도 같이 하면서 이야기를 나눠야 되지 않겠느냐, 혹시 돈이 필요하면 연락을 하라고 말을 하였고, 고향 선배인 B가 딱한 실정이라서 담당직원과 식사라도 하면서 선처를 부탁하려고 2012. 11. 1. B로부터 100만원을 이체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 200만원을 받았으나 담당직원과 이야기를 해본 후

금전이 필요치 않으면 반환하려고 보관하고 있었고 또한 200만원 전액을 B에게 반환하였으며,

○○노래방 주류판매위반 사건 담당자 C에게 전화하여 업주 B가 고향 선배인데, 조사받으러 오면 잘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또한 B로부터 C에게서 출석하여야 한다고 전화가 왔는데 몸이 아파 출석요구일자에 나갈 수가 없다고 하여 C에게 전화하여 B가 아파서 출석을 할 수 없다고 하였더니 C가 B 본인이 직접 전화를 하라고 하여 B에게 직접 전화를 하라고 알려준 것으로, 고향 선배인 B를 친절하게 대해 달라고 담당자에게 부탁한 것이지 알선이나 청탁을 한 것은 아니고,

나.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전차용 관련

2012. 11. 29. ○○시 소재 ○○노래방 업주 D로부터 100만원을 빌려 사용하고 변제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당시 소청인의 딸(2012. 5. 3. 출생)이 갑자기 아파 입원 치료를 받게 돼 급히 병원비가 필요하여 차용하고 바로 변제한 것으로 고의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사용한 것은 아니며,

다. 과다채무 관련

2012. 7.경 노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소청인의 부친(73세)이 급히 금전 지원을 부탁하여, 급여로 처와 세 자녀 및 처조가 둘을 부양하고 교육시키면서 생활에 여유가 없어 부득이 지인인 E로부터 1,000만원을 빌려 부모님에게 드리고 매월 변제하여 왔으나, E가 소청인이 징계 받는 것을 알고 ○○지방법원에 채권압류를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명령을 받은 것이고, 또한 채무 전액을 변제하였기에 이는 변제능력을

초과한 과도한 채무행위가 아니고,

라. 기타 참작사유

소청인은 금품을 수수한 잘못을 마음 속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6명의 식구와 노부모까지 부양하여야 하는 형편으로 생활이 매우 어려운 점, 수수한 금품을 200만원을 모두 반환한 점, 채권자 E에 대한 채무를 전액 변제한 점, 22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 하면서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등 총 35회 수상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 중 파면에 대하여는 감경을 징계부가금 1배(200만원) 처분에 대하여는 취소를 각각 구한다는 것이다.

3. 판 단

가. 금품수수 및 알선 관련

소청인은 단속 무마를 명목으로 2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나, 업주 B가 먼저 자진하여 금품을 주었고 알선을 시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이 사건 소청인 알선뇌물수수죄 관련 경찰 및 검찰 조사 결과에서도 징계이유와 같은 혐의사실 그대로 송치 및 기소된 점, 알선뇌물수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한 형사재판 확정 판결에서도 소청인의 알선뇌물수수죄 관련 피의사실을 기소된 그대로 인정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금품수수 및 알선 관련 사실관계는 징계 이유와 같이 인정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직무관련자와의 채무관계 관련

소청인이 관내 노래방 업주 D에게 빌린 100만원 원금 전액을 반환한 것은 사실로 보이나, D는 관내 노래방 업주로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제1호 소정의 직무관련자로 인정되며, 금전의 사용 목적이 소청인 딸의 치료비 마련에 있었다고는 하나, 직무관련자와의 금전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 및 경찰 공무원 채권·채무·보수에 관한 처리 지침에 위배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과다채무 관련

과다채무인지 여부는 소청인의 기타 채무관계 및 변제능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채무가 과다하거나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당해 채무를 지게 되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소청인의 전반적인 채무관계나 변제능력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부족한 상태이며, 1,000만원의 채무 자체만 두고 보았을 때는 경찰관으로 20여 년간 근무한 소청인의 평균적인 월 소득금액 등에 비추어 과도한 규모라 보기는 어렵고, 또한 당해 채무에 대하여 압류 명령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변제능력을 초과한 과다채무로 판단하기도 어렵다고 보이므로, 변제능력을 초과한 과다채무라는 징계사유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1조 제1항(청령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파면처분의 경우, 원 처분 사유 중 변제능력을 초과한 과도한 채무라는 징계사유를 제외하더라도, 금품수수 비위와 관련하여 소청인이 노래방 업주 B에게 먼저 접근하여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며 사건 무마를 권유하고, B가 쉽게 결정하지 못하자 다시 문자 메시지를 보내 승낙을 얻어낸 점, 1차로 100만원을 수수한 후 다시 B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추가로 100만원을 수수한 점, 경찰공무원의 직무관련 금품수수는 고비난성 비위이며 이와 같은 비위사실이 언론에 비난 보도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의 비위는 그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이 인정되므로,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징계부가금 1배 처분에 대해서는, 소청인이 알선뇌물수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추징금 200만원의 형이 확정되는 등 형사처벌을 받고 수수한 금품의 액수만큼 추징된 점, 소청인이 수수한 금품 200만원 전부를 노래방 업주 B에게 반환한 점, 소청인이 현재 경제적 곤란을 호소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다소 과한 처분으로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5. 뺑소니 교통사고 사건 무마 명목으로 금품수수
(파면→기각, 징계부가금 1배→기각)

처분요지 : 뺑소니 교통사고 사건을 무마하면서 가해자의 부친에게
금품을 요구하여 1,000만원을 수수한 비위로 파면 및
징계부가금 1배 처분

소청이유 : 가해자가 고1 학생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사건을
미등재했으며, 관련하여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적이
없으므로 원 처분의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 :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3-255 파면 처분 취소 청구

2013-256 징계부가금 1배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주 문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으로, 2011.

8. 14. 16:00경 ○○경찰서 교통조사계 근무 당시, B(45세, 임대업)의 아들인 C(고1)가 B 소유의 ○○승용차량에 친구 2명을 태우고 무면허 상태로 운전 중 불상지에서 불상의 차량을 충격(인·물적 피해 미상) 후 도주하였다가, D(42세, B의 처)와 함께 교통사고 피의사실을 자진 신고함에 따라, 소청인이 B의 거주지 지하주차장에서 가해차량의 앞, 뒤, 옆 부분을 사진 촬영 및 가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고도, 교통경찰 업무관리시스템(TCS)에 미등재하는 등 사건을 무마하면서,

2011. 8. 17.경 B에게 피해신고가 접수되었다며 출석요구, 방문한 B가 피해상황 및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자, “피해차량은 많이 망가지지 않았고 3명이 병원에 갔다”며 사건 무마를 위해서는 “피해 합의 및 윗선(경비교통과장) 등에게 인사를 해야 하니 한 장(일금 1,000만원, 추정)이 필요하다”고 금품을 요구하고, 2011. 8. 18. 16:00경 금품을 수수할 목적으로 B에게 전화하여 ○○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 뒤편 ○○은행 앞으로 오라고 하여, B가 처 소유의 ○○승용차량에 대기 하던 중 조수석 내에서 1,000만원을 수수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경찰청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등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징계는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파면에 처하고, 징계부가금 1배(1,000만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에 사건을 미등재한 경우

교통사고 당일 16:00~17:00경 D가 C를 데리고 와서 “아이가 사고를 났는데 교육적 차원에서 혼을 좀 내줘야 한다.”며 사고사실을 알려왔고, 그날 23:00~24:00경에 피해자가 나타났는데, “피해가 경미하지만 지금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역으로 뺑소니를 당할까봐 신고하러 왔다.”고 한 사실이 있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위 C의 자진신고 사실을 알려주니, 피해자도 가해자가 학생이고 하니까 “문제 삼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하였고, 소청인은 다음날 아침에 가해자의 사과를 받고 합의를 할 수 있게끔 자리를 주선해 주었는데, 다음날 아침 가해자와 피해자는 경찰서 주차장에서 서로 만나 소청인을 만나기 전에 이미 서로 간에 합의를 끝내고 피해자는 바로 귀가하였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니, 피해자는 “가해자가 어린 학생이고, 피해도 경미하니 우리가 그냥 알아서 하겠다.”고 하여, 소청인은 굳이 고1 밖에 안 되는 학생에게 선도적 차원에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어린애를 전과자로 만드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나. B에게 금원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사실이 없음

소청인은 징계 혐의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기에 감찰조사를 받을 때부터 “사실과 다르다. B와 대질조사를 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징계심의 시에도 같은 주장을 했음에도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소청인측의 징계의결서에 의하면, 소청인이 B에게 다른 사람을 통하여 수수금액을 돌려주려고 시도하였고, 소청인이 B에게 “그냥 뺏어라, 잠수 타라”는 등 사건무마를 권유하면서 사표를 제출할 시간을 달라고 말하였다는 등으로 B의 진술내용을 징계위원회에서 여과 없이 사실로 받아들였음을 볼 수 있는데, 소청인은 위와 같은 말을 전혀 한 사실이 없고 B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처분은 관련자인 B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징계의결이 이루어졌는데, B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고 상당부분 진술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소청인에 대한 형사절차에서도 경찰수사 단계에서 뇌물수수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고 있다.

다. 기타 주장 및 정상 참작 관련

피소청인측은 2013. 3. 13. 소청인에 대한 감찰조사를 진행하고 같은 달 15. 징계심의 출석요구, 같은 달 20. 징계심의를 하는 등 일련의 징계절차에서 소청인에게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해명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사건을 미처리한 것이 되었지만, 당시 소청인의 행동에는 그만한 참작 사정이 있는데도 이러한 경우까지 징계로써 처벌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고, 당시 고1 밖에 되지 않는 어린 가해자에게 선도적 차원에서 행한 소청인의 충심을 헤아려 주기 바라며, 경찰수사 결과의 공식적 의견이 무혐의 의견이라고 한다면, 이 사건에 대한 소청심사에 있어서도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가. 금품 수수 비위 관련

비위사건에 관하여 현재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계류 중이라 하더라도 형사사건의 귀추를 기다릴 것 없이 징계처분을 할 수 있음은 물론, 징계와 형벌은 그 권력의 기초, 목적, 내용 및 그 사유를 각각 달리 하는 것이므로 형사재판의 결과는 징계사유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누46 판결 참조),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피소청인이 이 사건 소청인의 비위에 대하여 수사결과를 지켜보지 아니한 채 먼저 징계절차를 진행한 것이 위법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징계처분 이후에 이루어진 ○○경찰서의 수사결과에서 비록 ‘소청인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 부분이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소청심사 단계에서 이 사건 금품수수 비위를 인정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관계기록에서 확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가 감찰조사 당시(2013. 3. 12.경)에 한 자신의 진술을 수사단계(2013. 4. 3.경)에서 일부 번복하였으나, 뇌물공여자를 자신이 아닌 자신의 처로 변경한 것 이외에는, 아들의 무면허운전 뺑소니사고의 사건목살을 위해 소청인에게 1,000만원을 제공하였다는 취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소청인의 비위가 첩보로 입수된 경위를 보면, B가 자신의 처는 사망하고 아들은 뇌사상태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에서 지인들에게 위로의 말을 들으며 술을 마시던 중에 자신의 처와 아들이 관계된 과거사를 얘기

하다가, 자연스럽게 소청인에게 금품을 제공했던 이 사건 비위사실을
 언급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㉓ B의 감찰조사 당시 진술에 따르면,
 ㉔ 아들인 C가 2011. 8. 14.경 교통사고를 낸 후 도망을 왔다고 하여,
 처에게 전화하여 아들을 안심시킨 다음 자수하게 하였고, 처와 아들이
 걸어서 ○○경찰서로 가서 자수를 하였고, ㉕ 당시 자진신고를 받은
 소청인이 B의 거주지 주차장에 와서 가해차량의 앞, 뒤, 옆 부분을
 카메라로 사진촬영하고, 처의 연락처와 아들 인적사항을 기록한 뒤
 피해자가 신고를 접수하면 연락을 해준다고 하며 집에 가서 기다리라고 하면서
 소청인의 명함을 주어 받아 왔다고 하며, ㉖ 그 이틀 후 B가 소청인이
 준 명함에 기재된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여, 피해자가 교통사고 신고를
 하였냐고 물어보니, 소청인이 신고가 아직 안 들어 왔다고 하였고, B가
 다시 이틀 후에 소청인에게 전화를 하니, 소청인이 신고가 접수되었다며
 경찰서로 나오라고 하여, 교통조사계를 찾아갔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㉗ 이후 B가 혼자서 소청인을 찾아갔더니, 소청인이 교통조사계
 에서 나와 옆 테라스가 있는 곳에서 둘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소청인이 ‘피해자의 신고가 접수되었는데 상대방 차량에 3명이 타고
 있었다’고 하며 사무실로 다시 들어가 자리에 앉았고, B가 교통사고
 처리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아이들이 사고를 낸 것이고 자수를 하였
 으니 잘 좀 처리해 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피해가 어떻게 되냐고 하였
 으니, 소청인이 ‘차량은 쏘나타인데 많이 망가지지 않았고 사람 3명은
 병원에 갔다’고 하여, B가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였더니, 소청인이
 ‘굵어서 부스럼 만들지 말라’고 하여, B가 ‘300만원을 줄 테니 잘 처리해
 달라’고 하였더니, 소청인이 ‘뽕소니사고는 다른 부서에서 처리를 하는

데 그곳에도 얘기해야 되고 과장님도 알게 되어 인사를 해야 되고 피해자와 합의를 보려면 한 장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전화를 할 테니 돌아가 있으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 이후 다시 하루가 지난 뒤 소청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경찰서로 가면 되냐고 하였더니, 소청인이 교통조사계 뒤 ○○은행 앞으로 오라고 하여, 그곳에서 처의 차량인 푸조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B가 5만원권 1,000만원을 편지봉투에 넣어 주었으며, 소청인은 '깨끗이 정리될 테니 걱정 말고 아들이 다시 사고를 치면 책임을 못 진다'고 하여, B가 '우리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 보낼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헤어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B의 위 진술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내어 말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띠고 있을 뿐만 아니라, B가 뇌사 상태에 빠진 아들의 입원과 처의 사망사고를 겪은 이후에 지인들과 만나 옛일을 회고하면서 자연스럽게 행한 발언을 바탕으로 첩보가 제출된 것이고, 이후 진행된 감찰조사의 결과도 그 첩보내용과 별 차이가 없음을 볼 때, 그 진술의 객관적 상당성도 인정할 수 있어 보인다.

또한, 소청인에게 제공하였다는 1,000만원의 출처가 다소 불분명하기는 하나, B는 '피해자와 합의를 보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자신의 처가 은행에서 미리 찾아 두었는데 어느 통장에서 찾았는지는 모르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처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자금을 담당해서 회사계좌나 개인계좌에서 움직이는 돈이 많게는 한 달에 몇 억 원씩 인출을 하기도 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그렇다면, 소청인에게 제공되었다는 1,000만원의 은행인출 자료 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소청인의 이 사건 비위를 부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오히려, 소청인이 2013. 5. 14.자 피의자신문조서에서, 2013. 3. 10. 19:00경 B를 만났을 당시 B에게 ‘사건처리 안한 건 맞다, 당신이 1,000만원을 요구한다면 당신에게 그 돈을 줄 용의가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결과적으로 B로부터 1,000만원을 수수하지 않았다는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사건목살 비위 관련

소청인의 주장과 같이, 교통사고 당일인 2011. 8. 14. 16:00~17:00경 D가 C를 데리고 와서 “아이가 사고를 냈는데 교육적 차원에서 혼을 좀 내줘야 한다.”며 사고사실을 알려왔고, 그날 23:00~24:00경에 피해자가 나타나서 “피해가 경미하지만 지금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역으로 뺑소니를 당할까봐 신고하러 왔다.”고 한 사실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교통사고 처리담당자는 당연히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차후에 다른 마음을 먹고 상대방을 서로 뺑소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그 신고사건을 제대로 처리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 소청인은 당해사건을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에 등재하지도 않았고 상관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이를 미루고 있다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000만원을 수수한 뒤 아무런 근거서류를 남기지 아니하면서 임의로 종결·처리하였다고 볼 수 있는바,

이 부분 사건목살의 비위, 즉 직무유기 또는 직무태만 행위도 그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이므로, 소청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등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각 해당된다.

징계양정 등에 있어서는, 2011. 8. 14.경에 발생한 C의 무면허운전 및 뺑소니사고를 신고 받아 B의 거주지 주차장까지 진출하여 가해차량의 앞, 뒤, 옆 부분의 사진까지 촬영하였음에도 이를 TCS에 입력하지 않은 채 사건을 목살하였고, 이 과정에서 C의 부친인 B로부터 위 사건의 무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수수한 비위를 모두 인정할 수 있어 보이므로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6. 감독대상 사업장 직원으로부터 항응수수

(감봉1월→기각, 전보→기각)

처분요지 : 직무관련자로부터 2차에 걸쳐 211,200원의 항응을 수수한 비위로 감봉1월 및 전보 처분

소청이유 : 직무관련자가 아닌 대학 후배로서 친분을 위해 만난 자리였으며, 술자리 다음 날 소청인의 몫을 부담했으므로 항응수수가 아니고, 부정처사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의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 :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3-396 감봉1월 및 전보 처분 취소 청구

2013-397 전보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청

6급 A

피소청인 : ○○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청 ○○지청 ○○센터 ○○과에 근무 중인 자로서, ○○청 ○○지청 ○○과에 근무하던 2013. 5. 6. 19:00경부터 같은

날 22:25경까지 2차에 걸쳐 직무관련자인 ○○공업(주) B 총무팀장 으로부터 211,200원(총금액 1,056,000원/참석자 5인)의 향응을 제공 받은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 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제1호 및 제78조의 2(징계부과금)에 각 해당되어 감봉1월 및 징계부가금 1배(211,200원)에 각 처한다는 것이며,

위와 같은 사유로 2013. 5. 24. ○○부장관이 소청인의 징계 조치를 요구하였고, ○○부 인사운영 혁신지침에 따라 ○○청 ○○지청장이 문책성 전보인사로 소청인에게 2013. 6. 1.자로 ○○청 ○○지청 ○○센터 ○○과 근무를 명한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직무관련자로 볼 수 없는 근거에 대하여

향응을 제공했다는 ○○공업(주) B 총무팀장은 지금으로부터 13~14년 전인 1999년경 ○○지역 노사정화합행사를 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고, 알고 보니 소청인의 대학 1년 후배로서 그 이후 각별한 관계를 유지 하면서 선후배 또는 형님 동생으로 주기적으로 만나며 현재까지도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가는 돈독한 관계로 오랜 친분이 있으며, 사적으로 5~6개월에 한번 씩 만나 식사 등을 하고 만날 때의 경비는 상호 공동 부담하였고,

2013. 5. 3.경 소청인이 B 총무팀장의 회사로 C와 함께 산업안전보건 파트에 점검을 간 적이 있었는데, 이 때 B 총무팀장은 인사총무노무 파트

업무를 보기 때문에 입회하지 않았으나 뒤늦게 소청인이 방문한 사실을 알고 점검장으로 찾아 와 사내 휴게실에 가서 담소를 나누던 중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나자”하여 만나게 된 것으로서 향응수수를 위해 만난 것이 아니라 순수한 친목도모로 만난 것이고,

사건 당일 저녁 술자리에 소청인과 B 총무팀장 2명만 만나기로 하였으나, 같은 날 오후 3시경 B 총무팀장이 식사할 시간과 장소를 핸드폰 문자로 보내면서 “저희 이사님 모시고 가도 되겠습니까? 불편하시면 저만 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여, 소청인은 B 총무팀장이 회사 내 간부를 모시고 오겠다는 것을 매정하게 뿌리칠 경우 회사 내 입장이 곤란해 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 함께 오도록 하였고, 상대방이 2명인지라 소청인도 서먹할 것 같아 같은 팀 후배 직원 C에게 퇴근 무렵 같이 가자고 제의 하여 데리고 간 것이며, D 공무팀장은 B 총무팀장이 아무런 통보나 양해 없이 ○○대학교 동문이라 소개하기 위해 데려온 것으로서 우연히 겹치면서 5명이 술자리를 함께 하게 된 것이고,

사건 당일 모임의 경비는 1차 고기집에서 23만원 정도 나온 것을 자리를 마치기 전 B 총무팀장이 아무에게 알리지 않고 개인 카드로 계산을 하였고, 2차 노래방 자리에서는 E 이사가 자신이 노래방 자리를 주도했다고 법인카드로 계산을 하려고 하길래 소청인이 이를 말리면서 계산하려고 했으나 B 총무팀장이 소청인을 뿌리치고 자기의 카드로 계산 하여 ‘내일 일부 부담해 줘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그 자리에서 B 총무팀장에게 계산을 양보한 것이며, 다음날인 5. 7. 오후 늦게 사무실로 B 총무팀장을 불러 술자리 경비 중 소청인과 C의 몫인 42만원을 현금으로 건네주어 회사 경비와 무관하게 개인 부담으로 처리하였으며,

2013. 5. 3. 소청인들이 실시한 ○○공업(주) 정기감독은 B 총무팀장 소속 부서의 업무 및 조직과는 해당되거나 중복되는 바 없기에 B 총무팀장을 본건 정기 감독에 있어 ‘불이익을 직접 받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의 직무관련자’로 볼 수는 없을 것이고, 비용 또한 B 총무팀장 개인카드를 사용하여 사측에서 부담한 사실이 없고 소청인이 비용의 반을 부담하였으므로 더욱 직무관련자로서 볼 수 없을 것이며, 2013. 5. 3. 정기감독 시 교육 미실시 등 3건의 법 위반을 적발하여 과태료 60만원, 시정명령 2건을 조치하였는데 이는 2012년 정기 감독 평균 수준에 비춰 결코 낮은 조치가 아니고,

나. 징계양정과 양정 판단에 참고할 점 등 기타 주장에 대하여

소청인은 현재까지 18년 동안 근무하면서 많은 성과를 달성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1년 모범공무원 포상을 받는 등 근무실적이 우수하고, 노사 화합을 위한 노력에 경주하여 외부단체로부터 공로패를 수상한 적도 있으며,

향후 2~3년 내 사무관 승진이 예상되나 본 징계로 인해 관련 규정 및 관행에 따라 1회 배제될 것으로 보이고, 서울, 경기, 경북 등 비연고지로 발령이 예상되어 가정생활이 한꺼번에 무너지게 될 것 같으나 이에 대한 뚜렷한 대책도 없는 등 불이익이 너무 크고, 소청인의 청렴성을 높이 평가한 관련자들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 및 전보 발령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제1항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

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고 하고, ○○부 공무원 행동강령(○○부훈령 제689호, 시행 2009. 2. 1.) 제2조 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은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작업·사용중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와 '수사, 감사, 감독, 검사, 단속, 조사, 점검,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소청인과 B 총무팀장이 대학 1년 후배로서 개인적 친분이 이미 있었다 하나 서로 알게 된 경위가 소청인이 담당하던 업무로 알게 되었다는 점, 비위 발생 당시 B 총무팀장은 ○○공업(주)의 인사·노무·총무부서장으로 소청인들이 담당하는 안전보건점검 업무와 직접적인 직무관련성이 있는 직위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2013. 5. 3. 산재예방결의 대회에 회사의 안전관리자 대신 참석하였던 점, B 총무팀장이 이틀간에 걸친 감독 기간에도 행정지원을 하였고, 감독 완료 사실을 공무팀에서 자신에게 통보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살펴볼 때 소청인들과 간접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점,

저녁식사를 했던 사건 당일은 ○○공업(주)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시정 조치가 완료되기 전이었다는 점, 동석한 E 이사 및 D 공무팀장은 소청인들과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었으며, E 이사는 ○○공업(주)의 안전관리책임자이고, D 공무팀장은 감독 관련 담당 부서장으로서 소청인들과 직접적인 직무관련자였다는 점, 따라서 동석 경위는 별론에 두더라도 당일 저녁식사는 직무관련자와 함께한 부적절한 자리로 보이는 점, B 총무팀장이 E 이사는 안전관리자 책임자 교육을 받지 않아 소청인

들에게 지적되었다는 내용을 듣고 소청인에게 당일 저녁 식사에 참석 가능 여부를 물었고, D 공무원장도 소청인과 사적인 자리에서 안면을 익혀 놓으면 향후 업무에 도움이 될 것 같아 동석시켰다고 진술한 점, 당일 저녁식사에서 소청인의 담당업무인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적절하게 처리하는 방법 등에 대하여 조언이 있었다는 점, 대법원의 판례 및 진술한 모임 경위 등을 고려할 때 B 총무팀장 및 동석자들과 소청인들이 단순히 개인적인 친분에 의한 자리에서 만난 것이고, 직·간접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없다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살펴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부당 전직 여부에 대한 판례(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 11566 판결 참조)에 따르면,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 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 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소청인의 향응수수 비위가 인정되고, 이에 따라 ○○부 인사운영혁신지침의 전보기준에 의거 소청인을 ○○고용센터로 전보한 것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는 점, ○○센터 ○○과로 전보됨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소청인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정

가. 감봉1월 처분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공업(주) B 총무팀장으로부터 각 211,20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고, 본 건 비위가 다소 개인적 친목모임에서 확대되어 발생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청렴의 의무는 국가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하기 어려운 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한 징계기준에 따르면, 청렴의무 위반 비위에 대하여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라 하더라도 ‘감봉’ 상당의 책임을 묻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 건은 그 최소기준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나. 전보 처분

본 사건 전보 처분은 소청인의 비위 행위에 근거한 문책성 처분인 바, 소청인에게 감봉1월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고, 전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해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고, 본 사건 전보 처분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소청인이 통상 감수하여야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7. 세무조사대상업체로부터 상품권 수수(감봉1월→기각)

처분요지 :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업체 관계자로부터 8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비위로 감봉1월 처분

소청이유 : 추석 무렵 사무실에서 직원이 상품권이 들어 있는 봉투를 주는 것을 출장여비를 아껴 쓰고 남은 것을 직원들에게 나눠 주는 것으로 알고 40만원 상당을 받은 것인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3-570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세무서 6급 A

피소청인 : ○○세무서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세무서에 근무하는 세무공무원으로서, 2009. 2. 26.부터 2011. 2. 28.까지 ○○국 ○○과 ○○팀에 근무하면서 ○○(주)에 대한 법인 정기세무조사 시 수입금액 및 경비 부분을 담당하였고,

○○국 ○○과 ○○팀에서 2009. 7. 27.부터 9. 4.까지 ○○(주)에 대한 법인세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반장 6급 B가 ○○ 관계자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4백만원(10만원권 40매)을 받아 조사팀원들에게 배분하였는데,

소청인은 추석(2009. 10. 3.)전인 2009. 9월말경 ○○ 별관 조사1국 3과 7팀 사무실 자신의 자리에서 B 반장으로부터 ○○에서 받은 ○○백화점 상품권 80만원(10만원권 8매)을 수수한 사실이 경찰청 수사과정에서 확인되었는데,

이와 같은 소청인이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무) 및 국세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 제한)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소청인이 일부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점, ○○지방국세청 통보 문답서 등으로 혐의사실이 확인되어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경찰조사의 발단은 2009년 근무한 ○○지방국세청 ○○국 ○○과 ○○팀 팀장과 반장이 다른 세무조사업체로부터 금품수수 사건관련 조사를 받던 중, 2009년 세무조사 내용까지 수사하면서 같이 근무한 소청인이 조사대상이 된 것으로,

○○(주)로부터 세무조사 후 회식자리에서 현금이 들어있는 수첩을 받은 것을 추궁했으나 소청인이 ○○치료 중에 있어 명단에 있었지만 세무조사에 참여하지 않았음이 회식 참여한 직원들과 업체관계자들 대질 심문으로 확인되었고,

○○ 상품권 수수 관련, 2009. 10월초 추석 무렵 반장이 봉투(○○ 백화점 상품권)를 주기에 조사업무는 매일 출장이 있어 출장여비를 반장이 관리하는데 이것을 아껴 쓰고 남은 것을 직원들에게 나눠주는구나 생각하여 출처도 확인치 않고 집에 가져다주었고 처에게 40만원으로 들었는데, 수사관이 팀장과 반장 진술 등을 가지고 추궁당하면서 ○○에서 상품권을 받아 80만원을 준 것으로 처음 들었으며, 수사관이 다른 직원들도 조사하겠다는 등 강압적으로 다그쳐서 일단 시인하였으나 절대 사실이 아니며, 소청인이 약 25년을 ○○지역에서 근무하다 처음 ○○에 발령받아 분위기가 익숙치 않아 여비의 일환으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 2009. 8월말 세무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2009. 10월초 조사업체에서 준 것은 상상도 못했고, B 반장은 금액이 40만원이고 출처를 말하지 않은 것이 맞지만 자신의 처지(불구속기소 상태로 검찰조사 때 불이익)상 이를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하였는바,

쓰고 남은 여비를 주는 것으로 알았고 금액도 40만원인 점, 25년 2개월 여간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하고 ○○청장상 3회 등 수상공적, 창의적인 업무추진으로 6급으로 특별승진한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고, ○○청공무원행동강령(○○청훈령 2012. 8. 1.시행) 제15조에서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품 등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2조

제1호 다목 및 바목의 규정은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자로서 조사·감독·검사·단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와 국세부와 및 징수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관직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등을 명시하고 있는바,

소청인이 직접 참여해 실시한 ○○에 대한 법인세 정기세무조사 직후 반장 B가 ○○ 관계자로부터 상품권 400만원을 받아 이를 직원들에게 배분한 사실이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B와 팀장 C가 ○○에서 받은 금원을 직원들에게 나눠준 사실을 인정했다고 하고, 소청인도 상품권을 받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은 세무조사 대상업체로서 직무 관련자임이 분명한 점 등으로 보아 소청인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비위사실이 인정되고,

금액이 80만원이 아닌 40만원이라고 주장하나, 경찰수사에서 80만원 받았음을 인정하였고, 강압이 있었다는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감찰조사(2013. 6. 11. 진술조서)에서도 “B 반장이 상품권을 준적이 있고 80만원이었다”, “정확한 금액은 기억나지 않지만 80만원인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반장 B가 경찰수사과정에서 80만원 준 것으로 인정한 점 등에서 소청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해 보이고,

조사업체에서 준 것을 전혀 몰랐고 여비를 쓰고 남은 것을 나눠주는 것으로 알았다고 하나, 여비 남은 것을 상품권으로 직원들에게 나눠주는 행위 자체가 부적절한 것이고, 80만원이라는 큰 액수의 상품권을 받으면서 전혀 출처를 확인치 않고 받았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점, 약 25년간 세무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을 감안하면 충분한 주의

노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금원의 출처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중한 과실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과실 책임이 인정되고,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세무공무원으로서 ○○에 대한 법인세 정기세무조사 실시 후 ○○ 관계자가 조사반장 B에게 건넨 상품권 400만원 중 B가 배분한 80만원을 수수한 혐의가 경찰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비위가 인정되고, 소청인이 고의적으로 금품을 수수할 의도가 없었고 금원의 출처를 모르고 받았다는 것을 감안 하더라도 팀원이 이유 없이 지급하는 금원에 대해 출처도 확인치 않고 받아 결과적으로 직접 세무조사에 참여한 업체에서 지급한 상품권을 받은 과실 책임이 있는 점, B로부터 같이 돈을 받은 팀원(D)도 감봉1월의 처분을 받은 점,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2조 ‘징계기준’에 따르면 청렴 의무 위반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감봉’ 처분토록 규정되어 있는 점, 향후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세무업무의 공정성 유지와 부조리 척결을 위한 기강확립 차원에서 엄중 문책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8. 수배자인 정보원으로부터 명절선물 등 금품수수
(감봉2월→ 기각, 징계부가금 1배→기각)

처분요지 : 지명 수배자를 조직폭력 관련 정보원으로 활용하며 약
123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수배사실을 알면서도 검거
하지 않은 비위로 감봉2월 및 징계부가금 1배 처분

소청이유 : 대가성이 없었던 금품이었고 의도적으로 검거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며, 검찰에서 징계사유가 된 사실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한 점을 감안하여 원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3-614 감봉2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2013-615 징계부가금 1배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지방경찰청 ○○대 ○○팀 근무 시 2010. 7월경부터 B를 자신의 정보원으로 활용하여 조직폭력 관련 제보를 받아오던 중, 2011. 10. 11. 17:53경 휴대용조회단말기를 이용하여 B의 수배여부를 1회 조회한 사실이 있고,

2011. 9월 초순경 B로부터 추석 선물 명목으로 소고기 선물세트(30만원 상당)를 택배로 받은 사실이 있고, 2012. 1. 26. 22:30경 ○○동 소재 ○○스파 로비에서 B를 만나 아들 돌잔치 명목으로 아동용 옷 1세트(77만원 상당) 선물을 교부받고 현장에서 B가 수배된(당시 지명수배 10건) 사실을 알면서도 검거하지 않았고, 2012. 4. 2.경 위 ○○스파 맞은편 커피숍에서 사기 사건 피해자(C)와 함께 나온 B(당시 지명수배 11건)를 만났음에도 검거하지 않았으며, 2012. 7월경 소청인이 신발 구입을 요구하여, B로부터 ○○운동화(16만원 상당)를 택배로 제공받은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및 경찰청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 및 같은 법 제78조의2 징계부가금 부과사유에 해당되어, 감봉 2월 및 징계부가금 1배(1,230,00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11. 2월경 B에 대한 폭력사건(피해자 B관련 조직폭력배

사건)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검사지휘로 인해 범죄경력조회를 해 본 것이며, 다른 조회내역은 정보원으로 활용하던 B가 지명수배 중이어서 가끔씩 전화상으로 조직폭력배의 동향을 제공받던 중 B가 한번 씩 연락이 두절될 때마다 수사기관에 검거된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에 정보원 관리목적으로 조회하였을 뿐 B의 부탁을 받고 조회정보를 누설한 사실이 없어 비밀을 누설하였다는 피소청인의 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2011. 9월 추석 전 B가 추석선물이라며 일방적으로 소고기 세트를 보냈는데 당시 B는 수배 중으로 ○○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 B에게 반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생물이라 버릴 수도 없고 하여 주위 동료들과 나누었으나, B에게 대가성이 있어 받은 사실은 아니며,

소청인이 2012. 1. 26.경 B에게 받은 아동용 옷 한 벌은 퇴근 후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하던 중 갑자기 B가 찾아와 클럽로비로 나오라는 말에 운동복과 슬리퍼 차림으로 잠시 만났던 것으로 갑작스런 상황이라 B가 수배자란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으며, 소청인의 아들 둘 선물로 현금이 아닌 아기 옷 한 벌을 주어 별 뜻 없이 받은 것이고, 이 또한 얼마 후 있을 B의 결혼식 때 받은 아기 옷 가격 상당의 부주를 할 것이라고 B에게 말을 하였는 등 대가성이 있어 받은 것이 아니며,

2012. 7월경 ○○ 신발 한 켤레를 교부 받은 것은 당시 B가 서울 ○○○시장 근처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전화상으로 돈을 지불하기로 하고 동대문시장에서 신발을 구입해서 택배로 보내 줄 것을 부탁하여 받았던 것으로, 5만원 상당의 구입단가를 지급하려 하였으나 완강히 거절하여 그 후 교도소에 수감 중인 B를 면회하여 당시 지불하지 못했던 신발 구입비를 사식비 8만원으로 대체 지불하였으므로 직무와 관련 대가성 선물로 받은 것은 아니며,

2012. 4. 2. 경 B의 제보로 사건의 피해자 여성만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스파 맞은 편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하였으나 예상치 못하게 B가 피해자를 대동하여 함께 나와 피해자를 인사만 시켜주고 볼 일을 보고 오겠다고 나간 후 나타나지 않아 수배자 검거조치를 취할 수 없었던 등 두 번의 만남과정에서 B를 수배자로 검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뿐 의도적으로 수배사실을 묵인하고 검거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며,

이 사건 소청인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지방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한 바 소청인의 위와 같은 모든 징계사유에 대해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내사 종결 처리 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피소청인의 소청인에 대한 감봉2월(징계부가금 1,230,000원) 처분은 명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하지 않은 징계로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넘어선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며,

또한, 소청인은 2002. 7. 1. 순경으로 임용되어 이 건 외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였으며, 경찰청장 3회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사실이 있는 점, 정보원 B를 상대하면서 평소 대가성 있는 물품이나 금품을 일체 받은 사실이 없지만 미숙한 업무를 수행한 잘못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소청인에 대해 검찰에서 장기간 조사를 하였으나 아무런 혐의점이 없어 무혐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가. 비밀엄수 의무 위반 관련

먼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목적외 용도로 사용 및 유출은 엄격히 금지되고, 「경찰정보통신 운영규칙」 제51조에 따르면 전산자료 조회는 경찰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범죄수사자료 조회규칙」 제3조는 ‘검거한 피의자, 불심검문대상자, 신원조사 대상자에 대하여 신원확인조회, 범죄경력조회, 지명수배·통보조회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개인정보 조회와 관련하여 당시 소청인이 B에 대한 수사 진행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닌 점, 전산조회를 하여 수배사실(당시 지명수배 4건)을 인지하고도 체포하려는 노력도 없었고 실제 체포 등의 조치를 취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이 B를 조회한 행위는 사적 목적의 조회로 봄이 상당하며,

설령, 개인정보의 조회에 부정한 의도나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소관 경찰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사적인 경우라면 조회사실만으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인 바, 소청인은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으로서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비위행위는 명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금품 등 수수행위 관련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에서는 ‘경찰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대가성 여부는 형법상 뇌물수수죄와 관련하여 중요한 판단기준일 수

있으나, 본 건의 경우, 형사처벌이 아닌 징계벌로서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위 관계규정에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 수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바, B는 수배자로서 수사 대상이므로 직무관련자에 해당함에도 3차례에 걸쳐 1,230,000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비위가 인정되고,

또한,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받는 경우 즉시 반환하고, 반환이 곤란할 경우 소속기관장 등에게 신고하여 인도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노력은 소홀히 한 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직무태만행위 관련

소청인은 당시 ○○지방경찰청 ○○대에 근무하면서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종사한 경찰관으로서 수배사실을 인지하고 만났음에도 검거치 않은 행위는 형법상 직무유기 수준은 아니라도 직무를 태만히 한 비위사실은 인정되는 바,

최근 1년간 B와 소청인이 수십 차례 통화(B 발신 105통, 소청인 발신 48통)을 하며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 온 점, 특히 2012. 4. 2. 2번째 만남의 경우 수배 중인 B를 정보원으로 활용하여 사건을 제보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현장에 나간 것인 점, 사법경찰관이 지명수배자에 대하여 자신의 정보원이라는 이유로 자의적으로 체포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징계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 관련

징계벌과 형사벌은 그 권력의 기초, 목적, 대상 등을 각기 달리하여 동일 비위에 대하여 징계벌과 형사벌을 병과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형사별로 처벌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의무 위반행위 자체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인 바,

소청인에 대한 ○○지방경찰청의 내사 결과보고 자료에 따르면, 소청인이 B에 대해 수배 조희한 사실, 수배자로부터 3차례 금품 등 수수사실, 수배자를 2차례나 만나고도 검거하지 않는 사실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다만, 형법상 범죄(공무상비밀누설, 뇌물수수, 직무유기)로 삼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본 사건 징계사유의 사실관계는 그대로 인정되므로,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징계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및 경찰청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 및 같은 법 제78조의2 징계부가금 부과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지명수배로 도피 중인 자를 정보원으로 활용, 지속적으로 연락을 유지하면서 문제의식 없이 금품 등을 반복적으로 수수한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수배자를 정보원으로 활용한 경찰이라는 제목의 비난기사로 언론 보도되는 등 경찰의 품위를 훼손하고 경찰조직 전체의 위신을 실추시킨 점, 수배자를 만나고도 검거하지 않은 행위는

경찰관으로서의 직분을 망각한 행위로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마땅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징계부가금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직무관련자(B)로부터 소고기 선물 세트 30만원 상당, 아동용 옷세트 77만원 상당, ○○ 운동화 16만원 상당, 합계 1,230,000원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비위가 인정되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의 3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그 수수액의 1~2배에 해당하는 징계 부가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어 징계부가금 1배 처분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9. 법인 리스 자동차 무상사용 및 수감자 부당접견 기회 제공
(정직3월→기각, 징계부가금 3배→기각)

처분요지 : 평소 알고 지내던 ○○회사 대표로부터 법인 리스 자동차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약 5개월 동안 사용했고, 성명불상자의 부탁을 받고 교도소 수감자를 조사목적과 무관하게 소환하여 접견하게 한 비위로 정직3월 및 징계부가금 3배 처분

소청이유 : 약 4개월간 차량을 사용했으나 예전에 빌려준 원금에 대한 이자비용으로 생각했으며 직무관련성도 없었고, 접견 제공은 수사 활동의 일환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3-804 정직3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2013-806 징계부가금 3배 부과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지방검찰청 5급 A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검찰청 ○○지청 ○○과장으로 근무하였고, 2012.

7. 2.부터 ○○지방검찰청 ○○지청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가. 법인 리스 자동차 무상사용

2011. 6.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주) 대표 B가 ○○(주)와의 리스계약을 통해 보증금 9,417,000원을 지급하고 36개월간 월 923,600원씩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리스 계약한 ○○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지방검찰청 ○○지청 ○○과장으로 근무하던 2011. 6. 초순경부터 같은 해 8. 23.경까지 사용하고, ○○지방검찰청 ○○지청 ○○과장으로 근무하던 2012. 7. 2.경부터 같은 해 9. 26.경까지 약 5개월 동안 위 법인 리스 자동차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함으로써 자동차 렌트 비용 매월 923,600원씩 총 4,61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제공받아 검찰공무원으로서 위신을 손상한 사실이 있고,

나. 부당한 접견 기회제공

2011. 7. 26.경 ○○지방검찰청 ○○지청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성명불상자의 부탁을 받고 소청인의 사무실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수감 중인 전 ○○시청 ○○과장 C를 조사목적과 무관하게 소환하여, 성명 불상 남자 2명과 C를 접견하게 하여 호송 교도관에게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하고 부당한 접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검찰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지난 22여 년간 소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법무부

장관 표창 2회를 받은 공적이 있는 점, 개전의 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와 청렴의 의무를 크게 위반한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어 정직3월 및 징계부가금 3배 부과 처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법인 리스 자동차 무상사용

소청인은 2002. 12. 2.경 B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부도가 나는 등 사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은행에서 1,000만원을 대출받아 B에게 빌려 주었다가 약 2년 후인 2004. 8월경 원금만 변제받고 약 93만원의 이자금은 소청인이 부담한 사실이 있는데, B는 그때의 빚을 갚는다는 의사를 피력하면서 차량 대여료를 지급하겠다는 소청인의 제의를 거절하며 차량을 제공하였던 것이고, 2012. 2월경에는 약 30만원 상당의 진돗개 새끼 1마리를 무상으로 B에게 분양해준 적도 있었으며,

소청인이 B로부터 원금은 변제받았으나 이자금은 한 푼도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이자 납입 이후 7년간의 이자금을 계산한다면 B로부터 차량을 제공받아 사용한 기간의 임차대금은 상계되고도 남으며, ○○지청 재직 시 차량을 사용하였던 행위는 무상 대여가 아니었을 뿐 아니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도 아니므로 본 건 징계이유는 사실과 다르며,

소청인이 ○○지방검찰청 ○○지청에 재직할 무렵 약 2개월간 차량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서는 소청인에 대한 복무감찰과 상관없이 차량을 매입 하였으며, 2012. 9. 27.경 차량이 출고된 후 B의 차량을 반환하고 그

대여료로 200만원을 송금하는 등 정당하게 차량대여료를 지급하였으므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임대차 계약은 유상계약이 원칙이고 무상계약이라는 것이 명백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으면 이를 근거로 징계이유로 삼아서는 아니 됨에도, 소청인과 B 사이의 차량대여행위는 임대차계약으로서 당연히 유상계약 이었고 무상으로 하자는 사전이나 사후의 약정도 없었으므로 차량 대여료를 지급하였던 것인데, 무상계약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명백한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무상대여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할 것이고,

○○지검에서 수사하였던 상법위반 사건은 소청인이 B를 알기 이전에 발생하였던 사건이어서 소청인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고, ○○지청의 1999 형제○○호 사건은 1999. 6. 22. 수리되었다가 1999. 8. 18. 혐의 없음 처분되었으며, 2000형제○○호 사건은 2000. 5. 4. 수리되었다가 2000. 8. 28. 혐의 없음 처분되었고, 소청인은 위 사건을 처리하거나 담당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또한 위 사건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수사 담당자에게 부탁을 하거나 청탁을 한 사실도 없고, 공무원행동강령 상 B가 ‘수사 대상인 개인’에 해당되어야 소청인과 직무관련성이 인정 된다고 할 것이며, 또한 소청인이 B로부터 차량을 대여 받을 당시에도 B는 수사 대상이 아니었고 소청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청탁을 받은 적도 없었으므로 직무관련성은 전혀 없는 바, 위와 같은 사실에 근거한 소청인에 대한 정직3월 및 13,850,000원의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은 취소되거나 감경되어야 할 것이며,

나. 부당한 접견 기회제공

소청인이 ○○교도소에 수감 중인 C를 소환하여 ○○과장실에서 그의 형인 D와 접견을 하도록 해주었던 것은 사실이나, 당시 D는 소청인에게 ○○군청에서 추진하였던 ○○마을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공사업자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의 범죄 정보를 제공하면서 자신의 동생인 C의 접견을 부탁하였고,

소청인은 23년간 검찰에 재직하면서 약 19년간을 ○○부나 ○○과 등 인지부서에서 근무를 하였는데, 인지부서에서는 정보수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다소 절차에 위반되더라도 범법행위만 아니라면 정보취득을 위하여 피의자나 피고인의 접견을 허용하기도 하였으며, 이에 소청인도 범죄 정보를 취득하여 수사를 해야겠다는 의욕이 앞서 C를 소환하였던 것이나,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없었을 뿐 아니라 개인적인 영달이나 이익을 위한 행위가 아니고, 당시 취득한 범죄정보로 인하여 문힐 뻔 했던 비리 공무원을 적발하여 처벌을 받도록 하였던 것은 공익적인 면에서는 비난받을 행위는 아니었기 때문에 징계이유에는 공감하기 어려우며,

피고인 또는 피의자 등을 소환하여 조서를 작성하는 것만이 조사가 아니 듯 구두 상으로 묻고 그 대답을 듣는 행위 또한 조사 목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C를 소환하였던 소청인의 행위가 조사목적이 전혀 아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소청인은 23년간 검찰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대부분 수사업무에 종사하면서 각종 유혹과 청탁을 모두 뿌리치고 오로지 국민을 위하여 노력해 왔다고 자부하며, 그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회에 걸쳐 법무부

장관의 표창을 수상한 점,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동으로 조직에 누를 끼친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법인 리스 차량 무상 사용 관련, 소청인은 B로부터 차량을 제공받은 기간이 2012. 7월~9월까지 2개월이 전부라는 등 혐의 사실을 부인하다가 소청이유에서 처음으로 2012. 7월 중순경~2012. 9. 26.에도 제공 받았다고 인정하는 등 진술을 번복하여 소청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중앙징계위원회 징계의결 이유서에도 5개월간 무상 리스 받은 사실에 다툼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 소청인이 중앙징계위원회 참석 시 무상 제공 기간(5개월)에 대해서는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본 건 ○○ 차량이 출고된 2011. 6. 1. 직후인 2011. 6. 7. ○○(주)에서 소청인의 사무실로 팩스가 송신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설령 소청인의 주장대로 차량 이용 4개월간이라고 하여도 소청인의 비위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

B에 빌려 주었던 1,000만원의 이자에 대한 반대급부 명목으로 그랜저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면 이는 소청인에게 유리한 소명자료이었음에도 본 건 검찰 착수 직후 작성한 소명서(2013. 10. 23.) 및 검찰 진술조서(2013. 1. 8.)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가 1차 진술서(2013. 1. 21.) 처음 주장하였다는 점, 소청인은 당 위원회 심사 시 B와 위 이자 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고 진술한 바 리스료와의 상계 처리 관련 주장은 소청인의 변명에 불과하다는 점, B는 검찰조사

시 단지 소청인의 새 차가 출고될 때까지 그냥 빌려 주었다고 진술하여 소청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는 점,

소청인이 B에게 지급한 리스료 200만원은 소청인이 당초 2개월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던 기간의 사용료로서 징계이유의 5개월 동안 사용한 리스비 461만원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고, 감찰조사가 시작된 직후에 대금을 지급한 점 등으로 볼 때 처음부터 B에게 대가를 지급한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대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대검찰청 훈령 175호) 제2조 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은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와 ‘수사(내사를 포함한다), 감사,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주) 사업장이 ○○시에 소재하고 있고 혐의자가 근무한 ○○지청의 관할구역이라는 점, B 및 B의 며느리인 ○○(주) 이사 E와 관련한 사건들이 ○○지청에 수리되어 조사한 사실이 있는 점, 특히 소청인이 ○○지청 ○○과 재직 시에는 B의 처인 ○○(주) 감사 F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 처분 된 사실이 있다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경험칙으로 비추어 볼 때 법인에서 리스한 고급 승용차를 검찰공무원이 10여년 전에 빌려 주었던 이자에 대한 대가로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 점, 소청인이 무상으로 제공 받은 렌트 금액 461만원도 의례상 대가로는 보기에는 큰 금액인 점 등을

살펴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부당한 접견 기회 제공 관련, 소청인은 조사 및 범죄 정보 취득을 목적으로 C를 소환하였다고 주장하나, C는 사회 선배 2명과 서로의 안부를 묻고 이런 저런 사람을 나누었을 뿐 조사나 수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C와 접견한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감찰조사 진술 및 1차 진술서 작성 시에는 이름도 모르고 단지 ○○지청 재직 시 안면만 있는 사람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고 소청이유에서 처음으로 C의 형인 D라고 반복 주장한 바 소청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또한 정보수집 등 수사목적의 정당한 취지로 접견을 추천했었다면 위와 같이 진술을 반복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통상 범죄 정보 수집이 은밀성을 요하는 일임에도 여럿이 모인 장소에서 그러한 시도를 하였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고 구체적 범죄정보도 없이 막연히 지인들의 말만 듣고 C를 소환했다는 것도 상식에 반할 뿐 아니라 수사실적도 C의 접견과 무관한 사안을 억지스럽게 연결시켜 의무 부여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피소청인이 답변한 점, 무엇보다 징역 8년의 실형을 받고 복역 중인 자를 소환하면서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 자체가 의무 위반 사실이고 소청인도 이를 인정한 점 등을 살펴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정

정직3월의 처분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고급 승용차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하고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수감 중이 재소자를 조사목적과 무관하게 소환하여 사적인 접견 기회를 제공하는 등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한 점,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처리 지침에 의하면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 금품을 수수하였을 경우 해임~파면이 조치 기준이라는 점,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로 징계의결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 되고,

징계부가금 3배 처분과 관련하여, 금품 수수 비위가 인정되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금품 및 횡령 수수액의 3~4배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 처분청에서 직무 고발 등을 별도로 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부가금 3배 처분이 과중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각 결정한다.

60. 직무관련자의 차량 무상 사용(견책→기각)

처분요지 : 약 11개월간 직무관련자의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한
비위로 견책 처분

소청이유 : 관련자에게 돈을 빌려주기 전에는 직무관련자임을 몰랐고,
빌려준 돈의 이자로 생각하고 차량을 타고 다니라고 해서
사용했던 점을 감안하여 원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3-48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2011. 3. 4.부터 4. 4.까지 관련자 B(건설업자)에게 3차례에 걸쳐 각각
2천만원(선배 C의 돈으로 소청인이 보증을 섰), 8백만원, 1천만원 등
총 3천 8백만원을 빌려주었으나, 2011년 5월 말경부터 2012년 1월까지
6회에 걸쳐 6백만원만 돌려받고 나머지는 현재까지 받지 못하고 있던 중,

2012년 1월 중순경 B의 사무실에 찾아가 “빌려준 돈을 달라”라고 말하자, 갑자기 “너, 지금 뭐 타고 왔냐”라고 물어 “차가 없어 걸어 왔다”라고 답변하자, “그럼 지금 공사용으로 사용하는 ○○ 차량이 있으니 타라”라고 하면서 조건 없이 빌려 주어 2012년 1월 중순경부터 2012. 12. 19.까지 약 11개월간 무상으로 ○○ 차량(××모×××, 보험개발원 가액 358만원)을 타고 다닌 바,

소청인은 직무관련자로부터 대가없이 제공되는 물품이나 유가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금품, 향응 등 받아서는 아니 되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수차례 사기 등의 혐의로 입건·조사 받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차량을 받아 약 11개월간 소유권 이전도 하지 않고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한바, 이는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를 위반한 것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등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2,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본인의 과오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17년 4개월간 성실히 근무한 점, 경찰청장 표창 1회 받은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는바, 피소청인은 B를 직무관련자로 판단하고 소청인이 부당한 이익을 받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한 것이나,

소청인이 B에게 돈을 빌려주기 전까지 B는 경찰관서에 출두한 사실이 없었고 돈을 빌려주고 난 이후에 건축을 한 빌라가 잘못되어 소송을

하면서 법원 및 경찰서에 출석한 것으로, 전과조회를 해보지 않는 한 범죄기록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신용이 있어 보였기에 사적으로 돈을 빌려주었던 것이므로 직무관련성이 있는 자라고 할 수 없으며,

빌려준 금액 중 1천 8백만원은 소청인이 차량이 없어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저축한 것으로 2012년 1월 중순경 B의 사무실에 빌린 돈을 받으러 갔었는데 이자로 생각하고 원금을 갚을 때 까지만 이라도 사용하라고 하여 타고 다녔던 것이며,

○○ 차량은 2002년식으로 중고차 가격이 1백50만원 정도에 불과한데 빌려준 3천 8백만원 중 대부분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뇌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건설업자 B로부터 차량을 받아 약11개월간 무상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2011. 3. 4. 선배 C에게 부탁하여 처음으로 B에게 2천만원을 빌려주기 전에는 B가 경찰관서에 출두한 사실이 없고 전과조회를 해보지 않는 한 범죄기록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신용이 있어 보였기에 돈을 빌려준 것으로 B는 직무관련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청인은 B와 2009년 봄부터 알게 되어 그 후 호형호제하며 지냈고, 알고 지내는 당시인 2009년 1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B가 사기 등 12개 죄명으로 피고소인 신분 28회, 고소인 신분 20회에 걸쳐 ○○서 수사과 경제팀, 지능팀, 강력팀 등 3개의 수사부서에서 조사관 8명

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고,

당해 기간 동안 소청인 역시 ○○서 수사과 지역형사팀에 근무하면서 (2009. 6. 3. ~ 2011. 7. 17) 2010년 11월경 B가 횡령 혐의로 고소 당했을 당시 사건 담당자로서 수사에 관여하였으며 이때는 소청인이 B에게 최초로 돈을 빌려주기 전이므로 소청인과 금전거래가 있기 전에는 B가 경찰관서에 출두한 사실이 없고 전과조회를 해보지 않는 한 범죄 기록을 알 수 없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소청인이 1차 진술에서 “B가 경제팀에 고소가 몇 차례 되어서 직원들 사이에 제가 사기꾼과 친하다고 소문이 조금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2차 진술에서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관련자라는 것을 알면서 차량을 받은 것은 잘못 되었다고 시인한 점, 심사 시 B가 직무관련자임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B는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며 이를 소청인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소청인은 B에게 빌려준 총 3천8백만원 중 6백만원만을 변제 받은 상황에서 2012년 1월경 B의 사무실에 돈을 받으러 갔으나 B가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대신 ○○ 차량을 이자대금으로 생각하고 타라고 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용이라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B가 1차 진술에서 “D 소장(B의 사무실 현장소장)이 8~9월경에 세금이 나온 것을 (소청인에게) 주면서 세금을 내든가 차를 돌려주든가 하라고 말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2차 진술에서 “2~3일만 빌려 달라고 하여 믿고 빌려주었는데 현재까지 주지 않고 지금도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라고 언급한 점, 소청인 역시 처음에는 자신이 B에게 돈을 빌려준 것과 관련 없이 차량을 빌린 것이며 단지 돈을 변제받지

못한 것이 억울하여 차량으로 변제받아야겠다고 생각하고 타고 다녔다고 시인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B가 이자 대금 명목으로 차량을 빌려주었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운 바,

소청인이 빌려준 돈을 대부분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점, ○○ 차량의 보험가액(358만원)이 소액에 그치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경찰공무원으로서 약 11개월간 차량의 소유권도 이전하지 아니하고 보험·세금 등을 한 번도 납부하지 않고 위 차량을 사용한 것은 직무관련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은 것으로서 정당한 처신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소청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본 건 견책 처분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있어, 소청인은 직무관련자임이 명백한 B와 2009년 처음 알게 된 이후 친분관계를 유지하며 2011. 3. 4.부터 수차례 금전거래를 한 점, 2012년 1월경 B로부터 ○○ 차량을 빌려 약 11개월간 소유권 이전도 하지 아니하고 보험·세금도 내지 않은 채 무상으로 사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직무관련자와의 금전거래 및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수수를 함으로써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실추시킨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V. 공 금 횡 령

61. 출장비 부당 사용(감봉1월→견책, 징계부가금 1배→취소)

처분요지 : 출장비를 삭감하여 지급하고 이미 지급된 개인출장비를 임의로 회수해 부당 사용하는 등 규율을 위반한 비위로 감봉1월 및 징계부가금1배 처분

소청이유 : 출장비 삭감은 실제 더 근무한 직원들을 보전해 주기 위한 집행이었고 회수 후 반납하려 하였으나 회계처리가 어려워 보관한 것이지 사적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은 점, 18년째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대부분 사적용도가 아닌 부대 운영경비로 사용된 점, ○○대장에게 관련 사실을 사후에 보고한 점 등을 참작하여 감경하고 징계부가금 처분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적 사용한 부분도 불분명한 점 등을 감안하여 취소함

사 건 : 2013-56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2013-57 징계부가금 1배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지방경찰청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12. 12. 19. 소청인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견책으로 변경하고, 징계부가금 1배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반장으로 근무하며 2012. 5. 22. ○○처로부터 행사 관련, ○○대 동원경찰관 23명의 출장비 10,335,000원이 경장 B의 통장으로 입금되자,

예비대 동원 경력이 최초 출장일(2012. 3. 16.~28.)보다 하루 먼저(27일) 철수하였다는 이유로 ○○처에서 통보된 문서를 숨기고 1일 출장비가 삭감된 것처럼 새로 문서를 작성, 2012. 6. 5. 경리담당에게 새로 작성한 지급내역서를 주면서 경장 C의 출장비를 제외한 9,885,000원을 송금 받아 22명에게 지급하였고,

2012. 6. 8. 20명의 1일 출장비 삭감액 690,000원과 이미 지급된 개인출장비 855,000원을 임의로 회수해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 규율을 위반하였고(총 1,545,000원 부당사용),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개인적 용도가 아닌 부대 내 행사를 위해 불가피하게 사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출장비는 개개인 통장으로 입금되어야 하는 점, 하루 조기 철수하여 출장비를 반납했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의가 인정되어 중한 처벌을 해야 하나 그간 성실히 근무한 점을 감안하여 감봉1월 및 징계 부가금 1배(1,545,00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대 동원 경찰관은 출장비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2012. 5. 22. ○○처로부터 13일치 출장비가 지급이 되었는데, 예비대 20명은 하루 일찍 철수하여 실제 근무일수가 12일이었으므로 이들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1일치 출장비를 삭감하여 지급하고 남은 출장비(690,000원)는 실제 하루를 더 근무한 ○○지방경찰청 순찰대 41명에게 출장비를 보전해 주기 위해 집행하였고,

○○회의 경찰동원 인력은 ○○처에서 사전에 계획한 인원을 맞춰달라고 하여 실제 필요인원 외 추가로 2명을 명단에 포함시켰으나 이들은 실제 근무한 것이 아니어서 출장비 지급이 부당하다고 판단, 출장비(855,000원)를 회수하여 ○○처에 반납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집행된 비용이라서 회계처리가 어렵다고 하여 반납할 방법이 없어 보관해 두고 있었으며,

이후 2012. 7. 14. ○○대원 및 가족 초청 ○○경내 관람 행사에 경비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예산부족을 고민하던 중, 위에서 보관한 두 건 총 1,545,000원을 모두 식사비 등 행사경비로 사용하게 된 것으로, 징계사유와 같이 고의적으로 공금을 유용했다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고, 출장비 회수비용 등을 전 직원 공지 후 운영비로 사용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으나 조사과정에서 잘못된 판단인 것을 알고 반성하고 있고,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노력하였고, 23년간 연고지 전출을 포기하면서 줄곧 ○○청 및 ○○청에서 18년째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점, 이로 인해 15년간 주말부부로 생활해 온 점, 견책 등으로 처분 받은 유사 소청례, ○○청장 표창 등 수상공적 등을 참작해,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출장비를 지급하는 것은 이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게 되므로 1일분 출장비를 감액 지급한 것이라고 하나, 이는 소청인이 임의로 결정해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마땅히 국고금 관리법상 정당한 절차에 따라 국고금의 집행 주체인 ○○처에 변경된 사항을 알리고 적절히 조치했어야 함에도 부적절하게 예산을 목적외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하루를 대신 근무한 직원들의 출장비를 보전해 주고 싶었다고 하나, 이 역시 23명에 대한 출장비 처리와는 별도로 ○○처에 따로 출장비를 요청하는 등 절차에 맞게 업무를 처리했어야 함에도 국고금을 임의대로 처분한 것이며,

기 지급된 직원 2명의 출장비를 회수했다는 징계사유 역시, 정당한 반납절차 없이 출장비를 소청인 자의적으로 처분한 점이 인정되고, 사전에 당사자들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출장비를 지급하고 이를 개인별 휴대폰으로 연락해 소청인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 받거나 직접 현금으로 수령한 점, 455,000원 중 55,000원은 가지고 40만원만 달라고 하는 등 국고금을 마치 개인 돈인 것처럼 처리한 점 에서 더욱 부적절하게 행동한 것으로 보이고,

○○처에 연락해 반납하려는 노력을 했다고 하나, 공문으로 통보하는 등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설령 ○○처에서 반납이 어렵다는 태도를 보였더라도 정당한 절차에 따라 처리토록 했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반납 노력이 충분했다고 보기 어렵고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 소청인은 예산지원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 출장비 삭감액 등을

부족한 ○○ 관람행사 경비에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행사계획상 중식비는 ○○처 특별격려금으로 집행하도록 명기되어 있고, 행사시작 한 달 전인 2012. 6. 14. 격려금 200만원이 입금된 점, 주기적으로 매달 초 ○○에서 10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받고 있었던 점, 격려금 통장에 6. 12. 약 150만원, 이후 약 한달간 200~300만원 정도의 잔액이 유지되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행사비 부족으로 인한 급박한 사정이나 출장비 부당사용의 불가피성은 발견하기 어렵고,

특히, 1일 출장비 삭감액 690,000원 사용과 관련, 하루를 더 근무한 직원들 출장비를 보전해 주었다고 하면서도 모두 행사비에 사용했다고 하는 등 불분명한 주장을 하는 점, 소청인이 직접 작성해 직원들 사인을 받았다는 문건(「3. 28. 국가별 재배치자 초과지급 현황(6. 5.)」)이 실제 근무현황과 내용이 다르고, 돈을 받지 못한 직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신뢰하기 어려운 점, 위 문건에 대해 소청인이 대신 사인한 경우가 있다고 진술하고, 돈을 나눠주지 못한 직원이 있다고 하면서도 따로 명단은 파악하지 않았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직원들에게 출장비를 지급했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이상과 같은 소청인의 행위를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이 임의로 내역서를 다시 작성해 개인별 출장비를 무단으로 삭감하거나, 기 지급된 출장비를 개인적으로 회수해 행사경비로 사용하고, 일부 금원에 대해서는 사용처가 명확치 않는 등 국가예산을 자의적으로 목적외 사용한 비위가 인정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

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은 ○○처에서 개인별로 지급된 출장비를 임의로 삭감하여 사용하고, 기 지급된 직원의 출장비를 개인적으로 회수해 행사경비로 사용하는 등 공금을 목적 외 부당 사용한 비위가 인정되고,

○○반장으로서 ○○대 경리업무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어 더욱 엄격한 도덕성과 성실성이 요구됨에도 자의적으로 공금을 사용한 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비위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출장비 지급 내역서와 직원들의 허위 사인이 포함된 문건을 임의로 작성한 점, 향후 재발을 방지하고 건전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공금의 대부분이 사적용도가 아닌 부대 운영경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대 출장비 지급과 ○○ 관람행사는 모두 이례적으로 발생되었는데 소청인이 행사경비 마련에 어느 정도 부담이 있었을 사정을 감안하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대장에게 관련 사실을 사후보고 한 점, ○○처에서 계획인원에 명단을 맞춰달라고 하거나 개인통장으로 출장비를 일괄 보내주는 등 예산 집행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책임도 있어 보이는 점, 감경대상 표창 7회 등 상훈 공적 등을 감안하면, 본 건 징계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징계부가금 1배 처분에 대해서는, 소청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도 불분명한 점, 대체로 행사경비 및 부대 운영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다소 과한 처분으로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62. 급여의 각종 수당 횡령(파면→해임)

처분요지 : 급여업무를 하면서 학비수당과 가족수당 등 각종 수당을 허위입력하여 총 8,236,450원을 횡령한 비위로 파면 처분

소청이유 : 징계사유 중 징계시효가 완성된 부분이 있고 횡령금액 또한 8,196,450원이며, 2009. 11. 20. 횡령한 2,919,200원에 대하여는 치안활동수당 등을 일할 계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액으로 업무상 부득이하게 소청인의 계좌로 이체하였으나 깜빡 잊고 반환하지 못한 것이지 고의가 아니었던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요구

결정요지 : 횡령금액을 전액 반환하여 변제한 점, 27년간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개전의 정이 뚜렷한 점 등을 감안 하여 감경으로 결정

사 건 : 2013-442 파면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기능7급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13. 6. 18. 소청인에게 한 파면 처분은 이를 해임으로 변경한다.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계에서 근무하던 자로 2007. 4월경부터 2010. 2. 3.경까지 보수(경찰·기간제·전의경)와 공공요금·채권압류·공탁업무를 담당하면서 e-사람과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D-BRAIN)에 허위로 정보를 입력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 및 행사하여 소청인의 급여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①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던 자신의 장남을 고등학생인 것처럼 하여 국가예산 과목 중 용도가 특정된 인건비(학비수당)를 2007. 5. 18. 같은 해 8. 18. 같은 해 11. 20. 등 3회에 걸쳐 각 360,450원씩 총 1,081,350원 횡령하고, ② 가족수당을 지급받으려는 공무원인 부양가족 신고서를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고 2008. 6. 20. 가족(부양자) 소급수당 580,000원을 횡령하고, ③ 2008. 11. 20. 장남의 학비수당을 이중으로 입력하여 422,400원, 가족(부양자) 소급수당 360,000원 등 총 782,400원을 횡령하고, ④ 2008. 12. 19. 시간외 수당을 이중으로 입력하여 447,690원, ⑤ 2009. 2. 20. 시간외 수당을 이중으로 입력하여 441,010원, 허위로 학비수당을 입력하여 844,800원 등 총 1,285,810원, ⑥ 2009. 8. 20. 시부를 부양하고 있는 것처럼 하여 가족수당 360,000원, ⑦ 2009. 11. 20. 폐기된 기타 수당 2,919,200원, ⑧ 2008. 2월 ~ 2009. 12월경 부양가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회에 걸쳐 가족수당(부양자)을 총 780,000원 횡령하는 등 합계 8,236,450원을 횡령한바,

이러한 비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반되며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고, 공직기강 및 회계질서 확립을 위하여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공금 횡령·유용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비위의 정도,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관련 증거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징계사유 중 2007. 5. 18. ~ 2009. 3. 20.경 공금을 횡령한 행위는 구 국가공무원법(시행 2008. 3. 28. 법률 제8996호) 제83조의2 제1항에 따라 2012. 3. 31. 그 시효가 모두 완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2009. 8. 20. 당시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 4만원은 정당하게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었으므로 2009. 8. 20. 당시 가족수당(자녀) 320,000원 및 가족수당(부양자) 40,000원을 횡령한바 징계사유 ⑥의 금액을 320,000원으로 수정하고, 합계 ‘8,196,450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2009. 11. 20. 횡령한 2,919,200원에 대하여 치안활동수당 등을 일할계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액으로 업무상 부득이하게 소청인의 계좌로 이체하였으나 업무과다로 인하여 이러한 사실을 감박 잊고 반환하지 못한 것일 뿐 고의로 횡령한 것은 아니고,

소청인은 약 23년 10개월 동안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지방경찰청장 표창 등 총 8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비위 사실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횡령 금액을 전액 반환하여 변제한 점, 소청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족들(남편, 아들 2명)의 생계를 책임

지고 있으며 파면 처분 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점, 가족·친지·직장동료 등이 소청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관련 판례, 당 위원회의 입장, 관련 부서의 견해 등에 따르면, 횡령 또는 금품 및 향응수수 행위가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것인 경우 비록 그 횡령 또는 금품 및 향응수수 행위 중 일부의 징계시효기간이 도과하였더라도 그 시효도과 된 부분도 모두 포괄하여 징계하여야 하고, 이 때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일련의 행위 중 최종의 것을 기준으로 하며,

소청인의 비위 양태를 살펴보면 2007년 5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e-사람 시스템과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에 정보를 허위 또는 이중 입력하여 각종 수당을 자신의 계좌에 지급하는 동일한 방식으로 약 23회에 걸쳐 사적인 이득을 취한바, 상기의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청인이 2007. 5. 18. ~ 2009. 3. 20.경 행한 비위도 일련의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고, 이 때 징계시효의 기산점을 최종 비위가 발생한 2009. 12. 18.로 본다면 징계의결이 요구된 2013. 6. 13.까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바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2009년 급여명세서를 살펴보면, 소청인이 2009. 8월 가족수당(자녀) 항목으로 360,000원, 가족수당(부양자) 항목으로 40,000원을 수령한 것이 확인되는바, 소청인이 감찰 조사 과정에서 당시 시부를

부양한 것처럼 하여 허위로 가족(부양자) 소급 수당 360,000원을 수령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하더라도 급여명세서에 따라 자녀수당 명목으로 횡령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당시 자녀수당은 자녀 1명당 20,000원으로 소청인은 자녀 2명에 대하여 40,000원을 정당하게 수령할 수 있었으므로 가족수당(자녀) 부분에서 320,000원만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보아 2009. 8. 20. 총 360,000원(320,000원 + 40,000원)을 부당 수령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총 비위 기간 동안 합계 8,196,450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또 확인 결과 e-사람 시스템 상에서는 수당을 일할 계산하는 과정에서 차액이 발생하기 어렵고, 만약 차액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2,919,200원의 차액이 각종 항목 중 어딘가에 잘못 기재되어 있었을 것인 바, 소청인이 어느 항목에서 잘못된 것인지 확인하지 못하였다면 직원들의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을 것임에도, 소청인은 당시 직원들의 급여 및 공제액은 모두 정확히 지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청인은 e-사람 시스템 상에서 해당 금액만큼을 삭제 하여 처음부터 2,919,200원의 예산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면 정상적으로 업무처리가 종결됨에도 불구하고, 굳이 자신의 급여 명세서에 ‘기타 수당(폐기)’ 항목을 임의로 기재하여 자신의 계좌로 해당 금원을 이체 시킨바, 처음부터 고의성이 있었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이고,

소청인은 2007. 4월부터 약 2년 7개월 동안 보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업무 처리 경험이 많았던 점, 당시 소청인이 2,919,2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지급함으로써 2009.11월 총 보수액이 6,758,790원 (실수령액 5,903,990원, 평소 보수액 3,364,510원 ~ 4,865,320원)이

되어 평소보다 많은 소득세(433,630원)를 부담하였던 점, 소청인은 횡령 금액이 확정되기도 전인 2013. 6. 7. 2,919,200원을 포함한 5,491,330원을 자진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업무과다로 인하여 당해 수당에 대하여 기억하지 못하였다는 주장 또한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정

소청인은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007. 5. 18.부터 2009. 12. 18.까지 e-사람과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여 허위 공문서를 작성 및 행사하는 방법으로 총 8,196,450원을 부당하게 수령한바,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책임이 매우 중하며,

소청인의 비위는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행하여졌고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르면 공금횡령·유용에 대하여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을 징계기준으로 삼고 있는 점, 관련 법령 상 업무상 횡령과 공전자기록의 위작·변작, 위조 등 공문서 행사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소청인에 대하여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약 27년 4개월 동안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하며 지방경찰 청장 표창 등 총 8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비위 사실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어 개선의 정이 뚜렷하고, 2012. 2. 6. ○○경찰서 ○○과 ○○계에 재발령 받아 2013. 6. 9.까지 동일한 보수 업무를 담당하면서는 공금을 횡령하는 등의 비위 사실이 없는 점, 횡령 금액을 전액 반환하여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63. 자녀학비 보조수당 중복 수령(해임→기각)

처분요지 : 자녀학비 보조수당 1년분을 중복수령하고 또 동 수당에 대해 6개월분을 중복 신청하였으며 보조수당을 더 많이 수령할 목적으로 허위신청서류를 작성·제출하고 부당 이득을 취한 비위로 해임 처분

소청이유 : 반납을 하지 못한 건 시기를 놓친 것이고 반납통지서를 받자마자 바로 반납을 하였으며, 2심 법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500만원)을 선고하면서 횡령행위를 명시적으로 인정한 문구가 없으므로 원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 요구

결정요지 :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3-214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부 4급 A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8. 1.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중복 입금 된 사실을 확인

하고도 이를 반납하지 않고 본인 명의의 계좌에 두고 있다가 3년 4개월이 지난 2011. 5. 25. 20,000달러, 2011. 6. 20. 40,000달러, 계 60,000달러를 인출하여 ○○ 소재 1,320㎡의 토지를 매입하는 데 사용한 사실이 있으며

소청인은 2009. 9. 3. 자녀 2명의 학비(2009. 1. ~6.) 보조수당으로 38,158달러를 신청한 것에 대해 같은 해 9. 24. ○○부 본부에 지급 신청하여 2009. 10. 25. 보수지급 시 위 금액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았으나 이 후 ○○대사관 자녀학비 보조수당 담당자인 3등 서기관 B에게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입금되지 않았으니 재차 처리해 달라고 독촉 하였고, 그 결과 3등 서기관 B는 2009. 11. 13. 최초 신청한 서류를 그대로 첨부하여 전문으로 다시 ○○부 본부에 지급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며,

소청인은 2009. 9. 3.(2009. 1. ~6.), 2009. 11. 9.(2009. 9. ~12.) 자녀 2명의 학비 보조수당을 ○○대사관에 신청하는 과정에서 자녀학비 보조수당 담당자가 자신이 제출한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자신이 신청한 금액을 그대로 지급 신청하면 첨부 서류인 ‘학비수당 산출근거’에 유로화로 납부한 학비를 미화로 환산하면서 유로화의 미화환산율이 아니라 1유로의 원화 환율이 마치 미화환산율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 하여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허위로 산출하여 제출하였고, 위 대사관에서는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허위로 산정되었는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자녀 학비 보조수당을 더 지급하는 등 소청인은 3차례에 걸쳐 업무담당자를 기망하여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더 많이 수령할 목적으로 신청서류를 허위로 작성·제출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있으며,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및 제78조의2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자녀학비수당(1년치) ○○부 착오 중복입금액 미반납 관련하여, 소청인은 착오 중복입금 사실을 인지하고 나약한 한 인간으로서 돈에 욕심이 생긴 것은 사실이나 또한 공직자로서 그 동안 공직생활을 성실히 해 왔는데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도 그리고 자녀들에게 파렴치한 부모가 되지 않기 위해서도 자진신고·자진출두의 형식으로라도 이 문제를 정리하려 했으며, 이 부분은 감사원 감사 당시에도 미반납 행위의 잘못을 인정 하면서 솔직히 진술하였고, ○○부의 착오로 중복 입금된 학비수당을 즉시 반납을 하지 못하고 시기를 놓친 것에 대해 그 동안 극심한 고통과 불안, 깊은 후회와 반성 그리고 엄중한 양심의 가책을 수없이 느껴왔으며, 반납통지가 올 것이라 믿고 해당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 보관하였고 반납통지를 받자마자 즉시 반납을 완료하였으며, 소청인의 급여통장에 봉급분과 학비수당이 섞여 있었는데 토지를 매입할 당시 봉급분과 은행 대출을 받아 토지를 구입하면서도 반납을 위한 해당 금액은 금융기관에 보관하고 있다가 반납통지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었으며, 주재국과 귀국 후의 여러 사정으로 그 반납시기를 놓치고 실천하지는 못했지만 그 동안 동 건으로 인한 마음 고생은 형언할 수 없을 정도였으며, 미반납 행위가

잘못이고 죄가 된다면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으나 착오입금과 동 사실의 사후인지 그리고 반납통지에 따른 최종 반납이 있기까지 극심한 심적·육체적 갈등을 겪었다는 사실과 토지매입 시 부족분은 은행대출을 받아 매입하면서도 반납해야 할 해당금액은 금융기관에 보관하고 있었기에 반납통지를 받자마자 즉시 반납을 완료한 사실은 인정해 주실 것을 간청드리며,

자녀학비수당(6개월치) 이중신청과 관련하여 소청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일방 당사자인 대사관 담당자의 “독촉 전화 받았던 것 같다”는 진술만 인정되는 등 소청인의 진술은 그 동안 전적으로 외면하였으며,

환율적용을 달리하여 신청했던 것은 감사원 지적처럼 고의적으로 담당자를 기망하여 학비수당을 더 많이 수령할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고, 감사원 처분요구서에는 환율허위신청 관련 학비수당 과다수령은 2009. 11. 25. 기준 징계시효 2년이 도과한 것으로 되어 있었고,

소청인은 추가 제출 자료에서, 횡령을 전제로 한 1심 판결(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2심 법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500만원)을 선고하면서, 횡령행위를 명시적으로 인정한 문구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2012. 6. 3. 반납통지를 받기 전까지 같은 ○○은행에 중복 수령하여 반납해야 할 금액 등을 예치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판 단

소청인의 자녀 3명에 대한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2007. 7. 26. 보수지급 시 52,640,24달러가 소청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또한 같은 명목으로 2008. 1. 28. 보수지급 시 소청인 명의 계좌에 52,607,74

달러가 입금된 것은 사실인 점, 소청인은 토지를 매입하면서 계좌에 중복수령한 금액을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2011. 6. 20. 계좌잔액이 55,356달러이나, 감사 이전인 2011. 12. 19.에는 12,901달러만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중복수령한 학비보조 수당을 반납할 금액은 남겨 두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져 수용하기 어렵고, 또한 반납할 금액을 남겨 두었다 하더라도 중복 수령 후 4년 이상 반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감사원 감사 적발된 이후에 반납한 것으로 보아 진정성에 의심이 가는 점 등을 볼 때 위와 같은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자녀학비수당(6개월치) 이중신청의 경우, 소청인이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입금되지 않았다고 독촉한 시점이 2009. 11. 13.이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실시한 시점은 2014. 4. 30.이므로 중앙징계위원회에서 본 사안은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징계시효 2년인 일반비위에 해당되어 징계시효가 도과되었다고 판단한 바, 다희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자녀학비수당 환율적용 건 관련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2008. 11. 25. 자녀 2명의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신청하면서 환율을 달리 적용하여 신청하였으나 ○○부 담당공무원이 과다 청구한 사실을 알고 정당한 금액만을 지급받았고, 2009. 5. 26. 자녀 2명의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신청하면서 규정에 맞게 산정하여 청구한 점, 문답서 작성시 “유로화를 미화로 환산하면서 원화 환율을 적용한 사유는 무엇인가요?”라는 감사관의 질문에 “환율적용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소청인이 답변한 점, ○○징계위원회에서는 소청인의 허위

신청으로 ○○부에서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과다 지급한 건에 대하여 징계시효가 2년인 일반비위가 아닌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에서 징계시효 5년에 해당하는 ‘공금횡령’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2심 법원에서도 2차례나 자신에게 유리한 환율을 적용하여 신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편취할 범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판단하면서 벌금 500만원으로 판결한 점 등을 종합하면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소청인이 허위로 청구한 자녀학비 보조수당 3건 중 ○○부에서 2008. 11. 25. 지급한 건은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었기 때문에 징계시효가 2년인 일반비위에 해당되어 본 건에 대한 감사시점이 2012. 4. 30.인 점을 감안하면 징계시효가 도과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청인은 2심 법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500만원)을 선고하면서, 횡령행위를 명시적으로 인정한 문구는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2심 판결문을 보면 1심 판결에 대하여 소청인이 항소한 이유는 ‘유리한 환율을 적용하여 편취할 범의 없었다’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으로 2심 법원에서는 소청인이 2차례나 자신에게 유리한 환율을 적용하여 학비보조수당을 신청한 사실이 인정되어 편취할 범의가 있는 것으로 보았고, 다만 직원의 착오로 학비보조수당이 중복 입금되었고, 반납통지를 받고는 바로 반납하였으며,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파기

하였으므로 소청인의 비위사실은 모두 인정이 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 처분의 적정성에 대해 살펴보면, 소청인은 중복 수령한 자녀학비 보조수당 52,607.74달러를 반납하지 않고 보관하던 중 토지매입을 할 목적으로 임의 소비하는 등 횡령한 점, 환율적용을 달리하는 방법으로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신청하여 미화 10,777.15달러를 과다하게 수령한 점, 비위를 저지른 기간이 길고 중복수령 또는 허위신청으로 횡령한 금액이 큰 점, 2심 법원에서도 소청인을 벌금 500만원으로 처분한 점, 소청인의 비위사실 중 징계시효가 도과되어 일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건이 있지만 본 건 처분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간부공무원으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64. 급여공제금 유용(해임→기각, 징계부가금 1배→취소)

처분요지 : 급여담당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등과 과오급금 회수금
및 직원 상조금 등 23,834,000원을 개인 부채상환에
사용한 비위로 해임 및 징계부가금 1배 처분

소청이유 : 혐의에 대해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26년 성실히
일한 점, 국가유공자의 자녀인 점, 업무미숙의 과실인 점,
감사 개시 전에 모두 변제한 점을 감안하여 원 처분의
감경 요구

결정요지 : 해임 처분에 대해서는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하고, 징계부가금 1배 처분에 대해
서는 유용한 금원을 모두 변제하였고 연체료와 가산세를
소청인이 부담하여 국고 손실은 없었던 점을 참작하여
취소함

사 건 : 2013-263 해임 처분 감경 청구

2013-264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처 ○○지청 8급 A

피소청인 : ○○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13. 3. 25.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에 관한 청구는
이를 기각하고,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처 ○○지청에 근무 중인 자로서, 2011. 1. 24.부터 2012. 1. 24.까지 급여 및 지출업무를 담당하면서 국민건강보험료 등 급여공제금 중 8,540,000원,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회수금 및 직원 상조금 중 15,294,000원을 포함하여 총 23,834,000원을 개인의 부채상환에 사용한 사실이 있다.

감사원 ○○국에서 2012. 9. 17.부터 같은 해 10. 19.까지 ○○지청에 대하여 실시한 ‘재정누수 관련 취약분야 비리점검’ 결과, 소청인은 2011. 10. 25.부터 2012. 1. 25.사이 4회에 걸쳐 지출결의 후 금고 은행에 이체한 건강보험료 등 급여공제금을 적게는 6,288,760원에서 많게는 6,917,940원까지 현금으로 인출(합계 26,151,620원 중 부채상환에 8,540,000원, 현금보관 등 17,611,620원)하여 적게는 14일에서 많게는 63일 동안 부채상환 등에 사용하거나 현금으로 보관하다가 늦게 납부한 사실이 있고,

2012. 11. 30. ○○청 자체적으로 실시한 소속기관 회계업무 집행에 대한 지도·확인 결과, 소청인은 2011. 3. 4.부터 2012. 1. 31.까지 ○○급여금 과오급금 회수 통장 등에서 적게는 1,972,000원에서 많게는 20,000,000원을 인출(합계 40,310,821원 중에 부채상환에 15,294,000원, 현금보관 등 25,016,821원)을 하여 적게는 11일에서 많게는 246일 동안 부채상환 등에 사용하거나 현금으로 보관하다가 늦게 납부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규정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소청인이 개인 부채상환에 유용한 건강보험료 등 급여공제금 8,540,000원, ○○급여금 과오급금 회수금 등 15,294,000원 등 합계 23,834,000원은 제78조의2(징계부가금)의 징계부가금 대상이 되며,

26여년 간 단 한 번의 비리도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점, 회계업무를 처음 맡으면서 교육을 받지 못해 기본적인 회계 관념이 없었던 점, 개전의 정이 큰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소청인의 공금유용 비위가 빈번할 뿐 아니라 고액으로 고의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엄중 문책 하여야 할 것이나, 감사원 감사 실시 전에 공금유용액 23,834,000원을 스스로 반납한 점을 감안하여 해임 및 징계부가금 1배(23,834,00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건강보험료 등 급여공제금 유용혐의, ○○급여금 과오급금 회수금 유용 혐의에 대해 모두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다만 26년 동안 비리 없이 성실하게 보훈업무에 기여한 점, 국가유공자(○○훈장)의 자녀인 점, 감사원 재무감사에서 보도된 사례들과 달리 서류를 조작하거나 은폐하지 아니한 점, 업무미숙에서 비롯된 과실인 점, 감사원에서도 이례적으로 징계종류를 명시하지 않았던 점, 더욱이 소청인에 대한 처분사유 3건 통합하여 처분하더라도 감사 개시 전에 모두 변제한 점 등의 제 정상을 고려하여 다시 한번 공무원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원 처분을 감경하여 줄 것을 청원하며,

본건 발생이후 속죄하는 의미로 ○○시 ○○복지관에서 봉사활동 중에

있고, 1여년 전부터 과중한 업무와 자녀교육 문제 등으로 인해 우울증으로 고통을 받으면서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나, 이 건 사건 발생 후 우울증이 더욱 심해져 ‘중등도의 우울성 에피소드 진단(2013. 4. 22.)’을 받고 병원 통원치료 중에 있는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그동안의 심적 고통 등을 헤아리어 다시 한번 참된 공무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급여업무 및 직원 상조금, ○○급여금 과오급금 통장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공금을 임의적으로 출금하여 사적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여야 함에도, 관리자들이 그 출납상황을 일일이 확인하지 아니하는 점을 이용하여 수십 회에 걸쳐 공금을 출금하여 적게는 11일에서 많게는 246일간이나 개인부채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감사원 재무감사 보도 자료와는 달리 서류를 조작하거나 은폐하지 않았고, 감사원에서 이례적으로 징계종류를 지정하지 않았던 점을 참작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도, 본 건은 감사원에서 처분 요구한 비위 외에도 자체 회계업무 집행에 대한 지도·확인을 통해 밝혀낸 직원 상조금 및 ○○급여금 과오급금 유용 비위에 대하여도 추가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았고, 그 비위 내용에 있어서도 공금을 유용한 횟수나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아울러, 소청인은 본 건을 업무미숙에 의한 것으로 고의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회계·경리업무를 담당하거나 이에 대한 회계전문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누구나 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하는 비위를 저질러서는 아니 됨은 알 수 있는 사안인 점, 소청인의 근무경력(26년)이 적지 아니하여 사전에 그 부적정성을 인지하고도 이 같은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이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판단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이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정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규정에 위배되어 같은 법 같은 법 제78조 제1항 및 제78조의2에 해당된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건강보험료, 소득세 등 급여 공제금과 ○○급여금 과오급금, 직원 상조금을 관리하면서 임의적으로 이들 공금을 개인 부채상환 등에 적게는 11일에서 많게는 246일간이나 사용하는 등 공금을 유용하거나 부적절하게 관리하여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소청인의 공무원 경력 등을 감안해 볼 때, 이를 단순 과실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징계기준)에 의하면 ‘파면-해임’ 처분을 하도록 정해져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 정상들을 참작해 보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징계책임을 면키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징계부가금과 관련하여서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3 징계 부가금 부과 기준에 따르면, 공금 횡령·유용 비위에 대하여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그 횡령·유용액의 1배에 해당하는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원 처분 상당이 책임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공금 유용·횡령 비위로 '해임' 처분을 받은 경우 공무원 연금 관련 법령에 의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이 각 4분의 1 상당을 감액하도록 되어 있어 경제적 불이익이 상당한 점, 본건 비위에 있어 유용한 금원을 모두 변제하였고,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연체료 및 가산세를 소청인이 부담하여 납부하는 등 국고 손실은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징계부가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65. 특정업무경비 개인용도로 사용
(건책→기각, 징계부가금 1배→기각)

처분요지 : 특정업무경비를 배우자 등 가족과의 식사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총7회에 걸쳐 910,000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비위로 건책 및 징계부가금 1배 처분

소청이유 : 특정업무경비를 수당으로 알고 사용한 것으로 유흥업소나 사행업소에서 사용한 게 아니므로 징계 처분은 부당하고 행정지도를 하는 등의 보완 조치 없이 징계 처분을 한 것은 지나친 점, 34년간 소외된 직책에서 묵묵히 경비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각 기각함

사 건 : 2013-429 건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2013-430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해양경찰서 경감 A

피소청인 : ○○해양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해양경찰서 ○○함 ○○장으로 근무 중인 자로서, 2010. 2. 2. ~ 2012. 2. 12.까지 ○○해양경찰서 ○○함 ○○장으로 근무하면서 2011. 6. 28. ○○시 소재 ‘○○식당’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할 130,000원 상당의 육류(소고기) 구입비, 같은 해 8. 11. 같은 식당에서 배우자 등 가족과의 식사대금 130,000원, 같은 해 9. 9. 같은 식당에서 배우자 등 가족과의 식사대금 130,000원, 같은 해 10. 26. 같은 식당에서 육류(쇠고기) 구입비 130,000원, 같은 해 12. 7. 같은 식당에서 사위 등 가족과의 식사대금 130,000원을 특정업무경비로 지급하였고,

2012. 1. 27. 같은 식당에서 육류(소고기) 구입비로 130,000원, 같은 해 2. 9. 같은 식당에서 배우자 등 가족과의 식사대금으로 130,000원을 특정업무경비로 사용하는 등 '11. 6. 28.부터 '12. 2. 9. 까지 총7회에 걸쳐 기관장 특정업무경비 910,000원을 ○○함 ○○부 직원 및 전경의 사기진작을 위한 공적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용도로 사용한 비위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해양경찰공무원 행동강령 제8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 및 제78조의2에 해당되어 견책 및 징계부가금 1배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당시 특정업무경비를 수당으로 알고 있었고, 경리사가 식당 음식점 영수증이면 가능하다고 하여 ○○시 소재 ○○식당 영수증을 정상사용이라 생각하고 증빙처리 한 것으로, 유흥업소나 사행업소에서 사용하거나 청탁이나 부정한 분야에 사용한 것이 아님에도 징계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고,

징계위원회 구성을 보면 위원 2명이 불참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2013. 5. 28. B 조서관이 조사할 때도 정상처리라고 진술한 바 있음에도 징계의결서에 이를 변명이라고 적시한 점,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에 기재된 대상자 성명이 소청인과 다른 점 등을 볼 때, 징계 위원회에서 형식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여지고,

소청인은 유흥업소가 아닌 식당에서 사용하면 정상인 것으로 알고 사용하였고, 경리계통에서도 부당성을 지적하지 않다가 지난해부터 참석자 실명제로 전환되어 2012년부터 경리사가 실명이 없으면 영수증 접수를 거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행정절차 전환기에 행정지도를 하는 등의 보완조치를 한 뒤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지나친 처분으로 판단되는바,

34년이 넘도록 ○○장이라는 위험하고 소외된 직책으로 묵묵히 경비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당시 경리사로 있던 순경 C는 ‘소청인에게 특정업무경비는 소속 직원과 전경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음식점 등에서 사용하여야 하고, 사적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고 수회에 걸쳐 공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소청인도 '특정업무경비는 소속 직원들의 사기진작 등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해야하는 예산이지만 총 7회에 걸쳐 가족 및 친인척과의 식대로 910,000원을 지불하거나 육류 구입대금 등 사적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특정업무경비를 정상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먼저,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6조 제1항은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 3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14조는 '징계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당시 징계위원으로 선정된 5명 중 2명이 교육훈련 등으로 불참하였지만 위 규정에 의한 위원회 구성에는 하자가 없는 것이고, 소청인도 징계위원회의 출석을 포기하여 적극적인 자기구제의 기회를 회피하고서 심도 있는 검토가 부족하였다는 것은 소청인의 억지주장에 불과하고,

둘째,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이 부서장으로 수년간 근무하였고, 그동안 특정업무경비 사적사용 등 편법집행 금지지시가 수차례 시달되어 동 경비의 사용용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감찰조사 시 "특정업무경비를 수당으로 인식하였고, 식당에서 사용하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은 변명에 불과하다'는 의견으로 의결한 것이고,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기재된 대상자 성명이 소청인과 다른 것은 인사담당자 D가 '같은 비위사실로 징계의결된 ○○해양경찰서 경감 E에 대해 징계처분사유 설명서를 먼저 작성하고 이후 소청인의 징계처분 사유서를 작성하면서 소청인의 성명을 'E'로 오기하였지만 설명서 하단에

소청인의 성명이 기재되어있고 동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와 함께 교부된 인사발령통지서 및 징계의결서에도 소청인의 성명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보면 징계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처분을 형식적으로 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셋째, 소청인이 ○○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관서운영경비 편법집행 방지대책(2010. 6. 14.)’등 약 10여 차례의 특정업무경비 편법사용 금지에 대한 지시공문이 시달되었던 점, 경리사 C는 ‘소청인이 특정 업무경비를 사용한 후 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카드전표만 제출하였기에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아무런 제지를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이 행정전환기 운운하며 특정업무경비의 사용용도를 잘 몰라 사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정

예산 및 기금은행집행지침에 의하면 ‘특정업무경비는 편성된 경비목적에 맞도록 투명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업무추진비나 축·조의금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해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8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는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청인은 ○○정 ○○장으로서 직원사기 진작을 위해 매월 지급되는 특정업무경비를 2010. 2. 2.~2012. 2. 12.기간 중 총 7회에 걸쳐 가족들과 식사를 하는 등의 사적용도로 910,000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어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하고,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의 규정은 공금의 횡령·유용인 경우에 그 횡령·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도록 되어있고, 소청인도 직원사기 진작용으로 편성된 공적자금인 특정업무경비를 7회에 걸쳐 개인적인 용도로 910,000원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징계위원회에서 그 유용금액인 910,000원에 대하여 1배 부과 처분한 것은 소청인의 비위의 정도에 상응한 적절한 처분이라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66. 수사활동비 횡령(해임→기각, 징계부가금 3배→1배)

처분요지 : 법인통장에서 총 18회, 850만원을 계좌이체 또는 현금
인출하여 사적용도로 사용한 비위로 해임 및 징계부가금
3배 처분

소청이유 : 업무의 과중과 회계업무를 잘 몰랐다는 점, 불기소결정서에서 횡령액을 다시 입금하여 사실상 피해가 없다고 한 점과 그간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해임 처분에 대해서는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하고, 징계부가금 3배 처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기소유예한 점, 본건 비위로 공직에서 배제된 점 등을 참작하여 징계부가금 1배로 변경

사 건 : 2013-451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2013-452 징계부가금 3배 부과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13. 6. 18.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에 관한 청구는 이를 기각하고, 징계부가금 3배 부과 처분은 이를 징계부가금 1배 부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서 ○○팀에서 범죄신고보상금 등 수사활동에 필요한 국고금을 경리계에서 지원받아 관서명의 통장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 관리하면서 필요시 집행하는 국가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4개의 ○○은행 법인통장에서 총 18회, 850만원을 계좌이체(14회, 680만원) 또는 현금인출(4회, 170만원)하여 모친의 약값, 여성의류, 화장품, 스포츠센터회원권, 상품권 구입 등 사적용도로 사용하는 등 횡령하였고,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계좌이체 및 이체한 금원을 수표 등으로 이체해 사용한 것은 인정하면서 개인적인 횡령을 아니라고 하는 점, 감경대상 표창이 없고 공금 횡령은 상훈감경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해임 및 징계부가금 3배(19,800,00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팀에 지원하였다가 갑자기 ○○팀 예산담당으로 발령이 났고 회계업무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전임자와 인수인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스스로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업무지침 등을 제대로 숙지하기 어려웠고,

수사예산 업무뿐만 아니라 통신수사, 정보공개, 유치장 관리, 인터넷 민원처리 등 경찰서 내부의 잡무까지 도맡아 하여 업무가 과중한 상황에서 법인 통장은 직접 은행을 방문해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법인카드도 사용할 수 없어 자주 은행방문이 어려운 소청인이 편의상 부득이 카드 입출금이 자유로운 개인계좌로 입금하여 예산을 처리한 것인데 예산 업무를 잘 몰라서 발생한 일이지 횡령의 의도는 전혀 없었고, 인출된 금액은 모두 해당업무에 지출되거나 경찰서 비품구입에 사용하였고,

모친 약값으로 사용 등 사적으로 유용을 인정하였으나 이는 수표 출금후 개인금원을 같이 보관하다 혼재되어 사용한 것으로 수표사용 기간과 법인계좌 및 소청인 개인계좌를 비교해 공공유용이 아님이 확인되며,

소청인은 법인계좌에서 개인계좌로 금원을 이체시킨 것은 잘못을 인정하지만 이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의도로 발생한 업무미숙이지 공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해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부당한 처분이고, 검찰에서도 횡령금액이 모두 반환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진술이 번복된 것은 감독자들에게 누가 될지 모른다는 생각과 징계를 피하고자 하는 감정에 기인한 점, 그간 성실히 근무해온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① 소청인은 국고금 관리계좌에서 개인계좌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금을 이체하거나 현금을 인출한 사실이 거래내역상 확인되며,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② 금원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했다고만 하면서 사용내용에 대해 전혀 소명하지 못하고, 기억나지 않지만 사적사용은 아니라는 식의 진술로 일관하고 있는 점, ③ 사무실 비품 등을 구입했다고 하면서 어떤 물품을 구입했는지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고 근거자료도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④ ‘사무실 운영비는 서무가 담당했고 필요경비는 경리계 지원을 받으므로 소청인이 따로 경비지출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담당팀장·과장 및 서무담당자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는 점, ⑤ “다른 예산과목을 사용하고 채워놓으면 된다고 생각했다”(2012. 11. 9. 감사문답서), “일일이 보고하면 업무처리도 안되고 상관들이 싫어할 것 같아 보고를 하지 않았다”, “법인통장을 용도와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을 몰라서 인출한 것이다”(2013. 1. 15. 피의자신문조서),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 관련) 교육받거나 인계받은 적이 없고 처음 듣는 내용이며, 그냥 업무를 하였다”, “(옷가게 등에서 수표사용 관련) 제가 사용한 것은 맞으나 국고금 출금 방법이 번거로워 편하게 제 통장에 이체하거나 출금한 것이지 횡령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예산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숙지조차 되지 않았거나 이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국민의 혈세인 예산 담당 공무원으로서 이는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⑥ 감사문답 시 수사예산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증명 없이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했다고만 주장하고 있어 고의성이 없었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그대로 신뢰하기도 어려운 점, ⑦ 소청인이 인출한 일부 수표가 의류매장, 화장품가게, 스포츠센터 등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여 사적용도로 사용했을 개연성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이 공금을 횡령하고 회계질서를 어지럽힌 비위사실이 인정되며,

업무가 과중했다고 하나, 이것이 공금횡령의 위법행위를 정당화하는 이유는 결코 될 수 없고,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난 과도한 업무 부담이 있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또 회계업무를 잘 몰랐다고 하나, 소관 업무에 대한 규정을 숙지하여 적법하고 정당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일 것이고, 몰랐다는 자체로서 중한 과실에 해당하는 점, 형사법적으로도 업무상횡령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된 점, 불기소결정서에서 횡령액을 다시 입금하여 사실상 피해가 없다고 한 것이 업무상 지출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하나, 피소청인에 따르면 4개의 국고금 관리통장에서 반환이 확인된 220만원 외에 630만원에 대한 추가 입금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설명이고, 소청인이 업무를 인계한 2011. 2. 11.경을 전후해 약 550만원 가량이 4개 통장별로 입금된 내역이 있으나 의뢰인 미상의 입금으로서 소청인의 반환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소청인이 입금했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업무인계 직전 입금한 금원의 성격이 횡령금원의 반환일 개연성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징계부가금과 부과처분에 대해서도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에 공무원의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비위의 경우 징계부가금 부과결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고,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1의2 부과기준에 따르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유용액의 2~3배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청인의 공금유용 비위에 따른 본 건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 특별한 흠결은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4. 결 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은 ○○팀 예산담당업무를 하면서 목적외 사용이 금지된 수사예산을 총 18회에 걸쳐 본인 개인계좌에 전하이체 하거나 현금 출금하는 방법으로 8,500,000원을 횡령한 비위가 인정되고,

사용목적이 분명한 예산을 개인계좌에 아무런 인식없이 혼용해 사용 하거나 임의로 사무실 운영비로 집행했다고 하는 등 회계질서를 심히 문란케 하고, 국가예산 8,500,000원을 횡령한 비위행위는 국민들로부터 용납이 어려운 고비난성 행위로서 중한 사안인 점, 사무실 경비로 사용했다고 하나 전혀 소명하지 못하고 일부 금원의 사적사용이 확인되므로 고의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징계부가금 3배(19,800,000원) 처분에 대해서는, 공금횡령의 비위가 인정되고,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횡령액의 4~5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횡령액의 2~3배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어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검찰에서 대부분의 횡령액을 반환한 점을 인정해 기소유예한 점, 소청인의 회계업무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본 건 비위로 공직에서 배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부 ○○과에서 근무하였던 자이고, B의 후임으로 건강보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 기타경상이전 수입 등 수입 징수업무를 담당하면서 지출관의 보조자가 건강보험료 등 지출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출금전표에 관인을 날인해 준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2010. 4. 14.부터 2012. 2. 13. 사이에 허위의 출금전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별표 2] “건강보험료 등 국고금 횡령 명세”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12,749,756원을 횡령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다가, 2010. 7. 22. 위 국고금 관리 계좌 잔액이 부족하자 자신의 돈 1,392,920원을 입금시키는 등 1,964,950원을 반환하였으나 나머지 10,784,806원은 반환하지 않고 있다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후인 2012. 10. 23. 전액 반환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 및 제78조의2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대상에 해당되고, 지난 12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횡령한 금액을 전부 반환한 점, B의 횡령행위를 발견하고 상급자에게 보고한 점, 개전의 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 공금 12,749,756원을 횡령한 행위는 그 책임이 매우 무겁고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문책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해임 및 징계부가금 1배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10. 2월부터 2012. 2월까지 ○○부 ○○과에서 근무를 하던 중 건강보험료 신고·납부가 전임자 때부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를 바로 잡고 납부하고 나니 통장잔고가 남게 되어 이 잔액을 소청인의 통장으로 옮기게 되었고, 당시 소청인은 월세로 살던 신혼집이 누수와 소음문제로 11개월 만에 이사를 해야만 했고 그러다보니 조금씩 생활비로 충당이 자연스럽게 되었던 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것이며, 본건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전임자가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를 전혀 해주지 않았고, 육아휴직, 퇴직신고 등 대상자 수십 명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정산되어 있지 않아 며칠간에 걸쳐 신고를 마쳤지만 위낙 신고 건수가 많아 급여에서 공제한 부분과 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한 내역이 상이하여 이를 정산하여 납부하고 보니 통장잔액이 남게 되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일단 소청인 계좌에 이체를 한 것이지 의도적으로 처음부터 잔액을 횡령할 의도로 이체를 하게 된 것은 절대 아니었으며, 발령 당시에도 전임자가 건강보험료를 연체하여 지출관 C 계장에게 사실을 보고하자 C 계장이 전임자를 직접 만나 처리하라고 지시하여 전임자가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후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 징계부가금의 감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 소청인은 본건 징계처분을 받기 이전에 모두 반환하였고 직장을 잃게 되어 수입원이 없는 상태임에도 징계부가금 1배(12,749,756원) 부과는 너무나도 가혹한 한 처분으로 여겨지며,

평소 소청인이 금품 관련으로 동료와 조직 내 지탄을 받아오지 않았고

공직자로서의 품위에 손상을 주지 않은 점, 12년 동안 성실히 근무하면서 징계전력이 없다는 점, 아파트 전세자금 대출 상환 및 투병중인 부모님의 진료비 부담 등 어려운 경제 사정과 부모님과 아내, 어린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라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전임자 때부터 건강보험료 정산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를 바로 잡고 납부한 뒤에도 ○○은행 국고계좌에 잔액이 남아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 소청인의 계좌로 이체한 것이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횡령할 목적은 절대 아니었고, 징계처분을 받기 전에 횡령액을 모두 반환하였고 해임으로 인해 수입원이 없는 상태임에도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은 너무나 가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먼저, 국고금 관리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부가가치세 등 공제한 금액은 법령 등에서 정한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수입금은 지체 없이 수입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10. 4월부터 2012. 4월까지 약 2년 동안 장기간에 걸쳐 12,749,756원을 횡령한 점,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22조에 따르면 출납공무원은 세입세출외현금(보관금) 중 국고에 귀속되는 것이 있을 때에는 그때마다 국고귀속보관금의 납부절차에 따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바, 세입세출외현금계좌인 소청인이 관리하던 ○○부 농협 국고계좌의 잔액 처리 방법을 몰랐다는 이유로

임의로 자신의 개인계좌로 이체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적으로 사용한 점, 소청인이 2010. 2. 24.자 B의 후임으로 업무를 처리하면서 B의 횡령사실을 인지하고 지출관인 정리계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 보고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B가 횡령했던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횡령한 바 그 비위 사실에 고의성이 상당해 보이는 점, 공금의 유용·횡령은 관련 법령 등에서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중한 비위로서 어떤 이유에서든 용납될 수 없다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다음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에 공무원의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비위의 경우 징계부가금 부과의를 요구하도록 하고 있고,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1의2 부과기준에 따르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횡령액의 2~3배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징계처분 전에 반환하였다고는 하나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후인 2012. 10. 23.에 반환하여 자발적 의사에 의해 반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당초 징계부가금 3배로 징계의결 요구되었으나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 1배 처분으로 이미 감경된 점 등을 살펴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정

먼저 해임처분에 대해서 소청인은 회계 관계 공무원으로서 자신이 관리하던 공금을 총 15회에 걸쳐 12,749,756원을 횡령한 비위가 인정되고, 사용 목적이 분명한 정부보관금을 약 2년간 동안 장기간에

걸쳐 개인계좌로 이체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국가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전임자의 횡령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전임자와 같은 방법으로 횡령을 하여 고의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상당한 점, 공금이 횡령한 비위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높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고,

징계부가금 1배(12,746,756원) 처분에 대해서도 공금횡령의 비위가 인정되고,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횡령액의 2~3배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 횡령액을 모두 반환하였다고는 하나 감사원에 적발된 후 반환한 것이므로 자발적 의사에 의해 반환하였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부가금 1배 처분이 과중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각 결정한다.

68. 시간외근무수당 및 특근매식비 부당수령

(감봉3월→기각, 징계부가금 1배→취소)

처분요지 : 같은 과 직원 B에게 시간외근무실적을 대리 입력케 하는 방법으로 총 94회에 걸쳐 368시간의 시간외근무수당 3,934,700원 및 특근매식비 376,000원을 부당 수령한 비위로 감봉3월 및 징계부가금 1배 처분

소청이유 : 주차장 출차시간과 퇴근시간이 불일치하는 것만으로 시간외근무 실적을 전면 부인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B의 진술이 있었음에도 평소 소청인과 갈등관계에 있는 C의 진술만 신뢰하여 총 94회를 대리등재로 간주한 것은 부당하며, 대리등재가 불가능한 상황 및 전자결재 및 한글 등 문서작성 기록으로 시간외근무가 확인되는 경우도 부당수령에 포함되는 등 대리등재를 인정한 26회 외에 68회는 부당수령이 아니므로 원 처분의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징계처분은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하고, 징계부가금은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수령액이 환수조치 되고 2배의 가산금이 징수되는 등 금전적 제재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취소함

사 건 : 2013-528 감봉3월 처분 감경 청구

2013-530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지방청 5급 A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소청인의 감봉3월 처분 감경 청구는 이를 기각하고, 피소청인이 2013. 8. 1. 소청인에게 한 징계부가금 1배(4,289,728원) 부과 처분을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청 ○○과장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과장 근무 시, e-사람 시스템을 통해 초과근무 사전신청을 한 후 같은 과 직원 B에게 시간외근무실적을 대리 입력케 하는 방법으로 2011. 5. 30. 부터 2013. 5. 15.까지 총 94회에 걸쳐 368시간의 시간외근무수당 3,934,700원 및 근무 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한 자에게 지급되는 특근매식비 376,000원을 부당수령하여 국가공무원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한 가산금(12,180,100원)을 징수한 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이 행위는 제56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 및 국가공무원법 상 징계부가금 제도가 도입된 2010. 3. 22.이후 공금횡령액 4,289,728원은 같은 법 제78조의2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대상에 해당되고,

22년간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모범공무원 선발 공적, 개전의 정을 감안하더라도 과장의 직위를 가진 공무원이 같은 과 직원에게 허위로 시간외근무 실적을 대리 입력 하게 하여 시간외근무수당

및 특근매식비를 상습적으로 부당 수령한 행위는 그 책임이 무겁다 할 것이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감봉3월 및 징계부가금 1배(4,289,728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청 자체조사 결과 소청인 자택이 23:00 퇴근이후 대중교통이 없어 월 3~4회 공항에서 20여분 거리의 소형마트에서 16:00~23:00 까지 일하는 아내에게 차량을 전달하고 돌아와(10:00~19:30경) 근무한 점, ○○내 ○○에 재직 중인 아들이 개인용무를 위해 차량을 이용하기도 한 점(총 10여회), B와 인근 ○○에서 저녁식사나 야식을 구입하고 돌아와 청사 앞이나 업무용차량 주차장에 주차한 점 등을 확인하고 재심의 신청을 허락하였음에도 단지 출차시간과 퇴근시간이 불일치하는 것만으로 시간외 근무 실적을 전면 부인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소청인은 아들에게 차량을 전달하고 시간외근무를 하기위해 돌아 온다는 것과 몸이 쇠약한 아내를 소형마트 일용직으로 일하게 한다는 것이 자존심상하고 처제가 오갈데 없어 같이 거주하면서 소청인이 일찍 출근하고 늦게 귀가하는 등의 가정사를 밝히기 싫어서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아들이 차량을 사용한다고 한 최초답변은 일찍 출차한 이유의 한가지 이지 거짓진술이 아니며,

소청인은 상황발생에 따른 업무를 위해 청사에 출동했다가 바로 퇴근 하기 위해 B에게 대리등재를 20여 차례 부탁했다고 하였으나 B는 기억을 더듬어 26회 대리등재 했다고 했고, 소청인의 시간외근무실적이 없는 일자(2011. 11. 30.)나 본인이 근무하지 않은 일자(2011. 7. 7.)

까지 포함되어 있는 등 신뢰성이 떨어지지만, 소청인도 대리등재를 부탁한 사실이 있고 일자가 확실치 않아 이를 인정했는데, 평소 소청인과 갈등관계에 있는 C가 직원들과 식사가거나 소청인이 현장 방문이 없었다고 하는 등 왜곡된 답변한 것을 인정해 B의 진술은 모두 무시된 채 C와 시간외근무를 총 31회 하였음에도 C 진술만 신뢰하여 26회가 아닌 94회를 대리등재로 간주한 것은 지나친 적용이며,

총 7회 소청인이 혼자 근무한 경우(특히 2011. 7. 7.은 혼자 출동하였음), C와 단둘이 근무한 경우(C와는 갈등관계였음), 핵안보정상회의 등 상황반 근무실적(연속 48시간 근무)을 인정치 않았으나 소청인은 상황반 총괄로서 2011. 3. 6. 상황종료 후 퇴근했다가 익일 08:34 출근했고, 운영계획은 청장결재를 득했고 총괄업무수행을 위해 별도로 시간외근무 사전승인을 받았고 통상 상황반근무일지에 서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출차시간 이후 전자결재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대리결재로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시간외근무 중에는 급하지 않으면 전자결재를 하지 않고 비정상적 운항 대체, 현안사항 보도자료 작성 등 다른 자료작성을 하고 있어 전자결재 실적으로 시간외근무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소청인이 인정한 21회도 문서작성이 있다고 하나 청사 출동 전까지 작성한 문서인데 이를 바탕으로 다른 한글문서 등 작성 실적까지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고, 출차 이후 사무실에서 근무했는지 여부를 중시해야 할 것으로 ○○청 ○○국 실시 시간외근무 자체검점 시에도 지적된 바가 없고,

시간외근무를 직접 등재해야 하나 규정을 어긴 부분에 대해 어떠한

처분도 감수하겠으나, ○○ 운항과 ○○안전을 위해 밤늦도록 일하고, ○○건설, ○○서비스평가 등 현안대책 수립에 전념해 온 점, 특히 핵안보정상회의를 위해 시간외근무 신청 없이도 출근해 업무를 챙기는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공적으로 ○○부장관 유공 표창을 받는 등 공적 등을 참작해,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출차시간과 시간외근무 퇴근시간이 불일치하는 것만으로 부당수령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감사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불합리하고, 아들이 차량을 이용했다는 것은 출차이유의 한 부분이지 거짓진술이 아니며, 평소 갈등관계에 있는 C의 왜곡된 진술만을 인정하고 B의 진술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고, 대리등재가 불가능한 상황(단독 근무, 핵안보정상회의 상황근무 등)도 대리등재로 간주했고, 전자결재 및 한글 등 문서작성 기록으로 시간외근무가 확인되는 경우도 부당수령에 포함되는 등 전반적으로 대리등재를 인정한 26회 외에 68회는 부당수령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건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5항에 따르면 규정된 근무 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47조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 시 가산 하여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보수등의 업무지침(안전행정부 예규)」에 부정한 초과근무수당 수령행위로서 대리입력, 사적용무 후 입력, 심야복귀 후 입력 등을 명시하고 있는 바,

소청인이 “20번 정도 ○○소요, ○○고장 등으로 ○○에 나갔을 때

바로 퇴근하기 위해 B에게 전화로 컴퓨터 비밀번호와 e-사람 아이디를 알려주고 초과근무실적을 등재하게 했다”고 진술하고, B가 “○○에 나갔다 퇴근하면서 등재를 요청한 21번과 일찍 퇴근하면서 요청한 6번 정도 초과근무를 대신 등재해 주었다”고 진술한 점, 이로써 소청인의 초과근무 대리등재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횡수와 관계없이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에 해당하는 점,

소청인은 ○○ 현장출동으로 편의상 대리등재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소청인이 대리등재를 인정하는 날과 ○○보고가 있는 날이 거의 일치한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소요 등 사고발생시 과장이 현장에 나간적은 거의 없다”는 C의 진술, “과장이 부재중엔 본인이 나가지만 대부분 과장이 나간다”는 B의 진술, 2011. 6. 27. 부하직원이 현장 출동하여 사고처리 후 결과를 메모보고 한 것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발생 처리를 모두 소청인이 했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해보이고, 설령 사실이라 해도 사고처리 후에 근거리(10분내외)인 사무실로 복귀하여 정상적으로 시간외근무 실적을 입력하지 않고 부하 직원에게 비밀번호와 아이디를 알려주고 대신 등재케 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서 부당수령 행위에 해당 하는 점,

출차시간과 시간외근무 퇴근시간의 불일치를 부당수령이라고 보는 것이 감사자의 자의적 판단이라고 하나, 시간외근무 종료시간보다 출차 시간이 앞서는 것이 정상적인 시간외근무라면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고, 그 사유에 대해 아들이 차를 가져갔다고 하다가 아들의 근무시간 비교 자료를 제시하자 아내에게 차를 주고 온 것이라거나 사무실 도로변에 세워두었다고 진술을 반복한 점, 밝히기 힘든 가정사 때문에 진술을

반복했다는 이유가 납득되지 않는 점 등에서 소청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고,

단독근무 등으로 대리등재가 불가능한 상황도 부당수령으로 인정했다고 하나, 단독 근무했다는 일자 모두 출차시간이 시간외근무 퇴근 시간보다 앞서고 있고, 소청인이 대리등재를 인정한 2011. 7. 7.에도 단독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시간외근무였는지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한글 등 문서작성 기록과 전자결재 기록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리등재해 준 사실로서 B가 소청인의 전자결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소청인이 직접 결재한 것이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이 경우도 출차시간이 시간외 근무 종료시간보다 빨라 시간외 근무 목적에 충실히 업무를 수행한 것이지도 불분명한 점, 전자결재 기록이 있는 4회중 3회는 소청인 스스로 대리결재 사실을 인정한 점, 문서작성 기록이 있다고 하나 감사조사 당시는 이에 대해 전혀 주장한 바가 없는 점, 소청인이 문서작성 기록이 있다고 주장하는 57회 중 18회에 대해서 대리등재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B가 6회의 대리등재는 소청인이 일찍 퇴근하면서 요청한 것이라고 진술한 일시에도 문서작성 기록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소청인의 주장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우며,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의 제출한 근거자료와 주장하는 바에 전반적으로 신빙성이 부족하고, 소청인 스스로가 26회의 대리등재는 인정하고 있는바, 초과근무수당 관련 관계법령 및 지침에서 대리등재 자체를 금지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실제 초과근무를 했는지 여부, 위반 횟수 등에 관계없이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26회를 제외한 68회는 부당수령이 아니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정

소청인은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부하 직원에게 시간외근무실적을 대리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시간외근무 수당 및 특근매식비 총 4,289,728원을 부당수령한 비위사실이 인정되고,

총 9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위반행위가 행해진 점, 부하직원의 비위 행위를 관리·감독해야 할 과장의 직위에서 부하직원에게 아이디어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대리입력하게 한 행위는 사안이 더욱 중한 점,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초과근무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고비난성 비위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하고,

징계부가금 1배 처분에 대해서는, 대리 입력이라는 부정한 방법으로 공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비위가 인정되는바,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상 공금횡령 비위에 대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도 횡령액의 1배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다고 하겠으나,

소청인이 국가공무원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부당 수령액이 환수조치 되고 2배의 가산금이 징수되는 등 금전적 제재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본 건 징계부가금 처분은 다소 과중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69. 연구개발과제비 부당 사용(정직3월→기각, 징계부가금 1배→기각)

처분요지 : 연구책임자로서 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자녀 2명에 대해 연구보조원 및 보조원으로 등록하고 근무상황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연구개발과제 인건비 총 4,969,700원을 자녀 계좌로 지급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한 비위로 정직3월 및 징계부가금 1배 처분

소청이유 : 부당하게 지급받은 금액을 모두 직원들의 식사비, 교통비, 선물 지급과 유관기관 직원과의 식사비로 사용했으며 32년간 소관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점, 징계전력이 전혀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의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각 기각함

사 건 : 2013-662 정직3월 처분 감경 청구

2013-663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청 5급 A

피소청인 : ○○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청 ○○과장으로 근무 중인 자로서, 舊 ○○청으로부터 수탁한 ‘○○연구’(연구개발비 5,000만 원)의 연구책임자로서 과제를 수행하면서 2012. 9. 12.부터 2013. 1. 24.까지 독일에 체류하여 위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2명의 자녀를 2012. 8.말경 연구보조원 및 보조원으로 등록하고, 2012. 9. 1.부터 같은 해 10. 30.까지 이들이 위 과제 수행에 참여한 것처럼 근무상황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도장을 날인한 후 같은 해 10. 2. 및 10. 31. 두 차례에 걸쳐 연구개발과제 인건비 총 4,969,700원을 위 2명의 자녀 계좌로 지급하여 해외 체류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2010. 3. 22. 이후 소청인이 수수한 4,969,700원은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대상에 해당된다.

소청인이 지난 32여년간 소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이 있는 점, 개전의 정을 감안하더라도 연구개발과제 인건비를 자녀 계좌로 지급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행위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고,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문책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되어 정직3월 및 징계부가금 1배(4,969,700원) 부과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이 사건 잘못을 범하게 되었지만 부당하게 지급받은 4,969,700원을 거의 모두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시험분석에 매진하며 고생했던 직원들의 식사비, 교통비, 명절 때 선물, 가정형편이 어려웠던 직원 부인의 병원치료비 지급에 사용을 했고, 소청인이 ○○과장의 직책을 맡고 있어 기관운영을 위하여 유관기관 직원과의 식사비로 사용하였으며,

32년간 소관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점, 국무총리 표창까지 받는 등 근무기간 동안 성실히 모범적으로 근무한 점, 재직기간동안 이 사건 징계 처분 이외에 징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부당하게 사용한 금액 모두 자진 반납한 점,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주변 동료들도 소청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소청인이 얼마 남지 않은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칠 수 있도록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지급받은 4,969,700원을 거의 모두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시험분석에 매진하며 고생했던 직원들의 식사비, 교통비, 명절 때 선물, 가정형편이 어려웠던 직원 부인의 병원치료비 지급, 기관운영을 위하여 유관기관 직원과의 식사비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2조의2 제2항 및 ○○청 연구개발비관리지침(舊 ○○청 지침)에 따르면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인건비는 연구

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점,

설령 소청인의 주장처럼 횡령한 금원을 직원들의 식사비, 교통비, 직원 부인의 병원치료비 등에 사용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공금횡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2010. 3. 22. 이후 소청인이 수수한 4,969,700원은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대상에 해당된다.

본 건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 부과에 적정성에 있어서는, 소청인은 일반직원들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성실성을 갖추고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위치에 있는 관리자로서 국가예산인 연구용역개발비를 횡령하면서 허위공문서까지 작성하는 등 그 일련의 행태로 볼 때 중한 처분이 불가피한 점, 횡령액을 모두 반환하였다고는 하나 감사원에 적발된 후 반환한 것이므로 자발적 의사에 의해 반환하였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각 결정한다.

70. 이전비 부당 수령(견책→기각, 징계부가금 1배→기각)

처분요지 : 실제 80만원에 이사를 했음에도 이전비를 과다 수령할 목적으로 220만원에 이사한 것처럼 이전비를 신청하여 152만원을 지급받아 72만원을 과다 수령한 비위로 견책 및 징계부가금 1배 처분

소청이유 : 고의성은 없었던 점, 이전비를 지급받을 시 경리계 직원에게 문의해 본 점, 징계 전력 없이 4년9개월 동안 근무하며 표창 3회 수상한 공적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각 기각함

사 건 : 2013-687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2013-688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해양경찰서 경장 A
피소청인 : ○○해양경찰서장

주 문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해양경찰서에 근무 중인 자로서, 2011. 3. 28. ○○해양경찰서에서 ○○해양경찰서로 인사발령을 받아, 2011. 4. 17. 지인

B가 소개한 이사업체 1톤 봉고차량으로 자신의 이사짐을 80만원에 이사했음에도 이전비를 과다 수령할 목적으로 ○○익스프레스(○○소재)의 견적서, 계산서, 현금영수증을 이용하여 5톤 탑차로 220만원에 이사한 것처럼 이전비를 신청, 이전비 152만원을 지급받아 실제 이사비용인 80만원보다 72만원을 과다 수령한 비위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 및 제78조의2 징계부가금 부과사유에 해당되고,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3항에 따라 감정사유를 미적용, 견책 및 징계부가금 1배(720,00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해양경찰서 근무하던 중 ○○. ○○. ○○.에 결혼하면서 ○○에 보관하고 있던 혼수와 부부의 짐을 근무지인 ○○로 가져오게 되면 비용이 2배 발생하고, ○○에서 ○○으로 이사하는 비용보다 ○○에서 ○○으로 이사하는 견적이 적게 들었기에 ○○(80만원)와 ○○(140만원)에서 각각 이사한 비용을 합산하여 220만원을 청구한 것이며, 이전비 지급에 대해 경리계 직원에게 문의해 보는 등 이전비를 과다 청구하여 이익을 보려는 고의는 전혀 없었고

또한 감찰관의 본 사건 조사는 2일전 출석요구, 조사일시, 의무위반 행위사실 요지의 통지 절차가 없었고, 조사에 잘 협조하면 승진발령 이후에 징계의결 하겠다고 말하는 등 위계, 위협에 의한 하자가 많은 조사로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으며, 징계위원회 개최시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6조에 따른 위원수 1/2이상 민간위원 위촉 규정을 위반하였고, ○○해경청의 징계의결 후 소청인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가 없는 등 징계위원회 구성 및 준비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위반이 있었고

고의는 전혀 없었고, 많은 방법과 견적을 비교해 보고 이전비를 조금이라도 더 절약하여 국가예산을 아끼려 했던 점, 이전비를 지급받을시 경리계 직원에게 문의해 본 점, 지금까지 징계없이 4년 9개월 동안 근무하며 해양경찰청장 표창 등 3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먼저, 공무원여비규정 제19조 및 20조에 따르면, 국내 이전비는 전임지에서 신입지로 거주지와 이사화물을 이전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이전비를 지급받으려는 공무원은 이전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거주지 변경 및 이사화물 운송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도록 하고 있는 바,

소청인이 ○○해양경찰서 경리계에 제출한 국내이전비 신청서류상에 ○○에서 ○○으로 이사한 것 외에 ○○에서 ○○으로 이사한 내역에 대한 기재 사항이 없으므로 2곳의 이사비용을 합산하여 청구하지 않았고, 설령, 소청인의 주장대로 ○○와 ○○ 2곳에서 이사한 비용을 합산하여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소청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하여 ○○부 ○○과에서 답변한 자료에 따르면, 소청인의 경우 실제 거주한 ○○ 1곳에 대해서만 이전비 지급이 가능하고, 짐을 나누어 둔 ○○에서 ○○으로 짐을 옮겨오는 것은 이전비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해양경찰서 경리계 근무한 직원도 전임지 이외의 타지역에서 신입 지로의 이사비용 청구는 불가능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소청인이 이미 진술조서에서 이전비 과다청구에 대해서 인정한 바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다청구로 이익을 보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소청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감찰관과 소청인은 조사일시, 조사장소 등에 대해 사전에 통제한 점, 진술조서에서 조사받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이전비 신청이 사실과 다르기 때문이라고 답변하고 있으므로 소청인이 의무위반행위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는 점, 조사과정에서 억압이나 강요, 회유에 의해 진술한 사항이 없다며 진술조서상에 자필로 기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감찰조사 절차에 일부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진술조서의 효력을 부인할 정도로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징계위원회 구성에 대한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6조 내용은 2013. 10. 22 개정·시행된 것으로 본 사건의 징계위원회는 동 규정 개정 이전인 2013. 9. 30. 개최되어 민간위원이 절반 이상 의무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소청인이 ○○지방해양경찰청 감찰관의 감찰조사에서 이전비 과다 청구사실을 시인한 점, ○○지방해양경찰청 감사결과 이전운송비 허위 청구 확인서도 직접 날인하여 제출한 점,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에 대해서도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이 소청을 제기하기 전까지 본건 비위사실을 인정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소청인의 소청인에 대한 추가 사실관계 조사가 없어 징계위원회 준비 절차에 하자 있다는 소청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 및 제78조의2 징계부가금 부과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은 1톤 봉고차량으로 이사했음에도 허위의 계약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이용하여 5톤 탑차로 이사한 것처럼 이전비를 신청하여 720,000원을 과다 수령한 비위사실이 인정되고,

해양경찰청 시달 공문 ‘자체감사 반복 지적사항 근절방안 시달’(2011. 1. 14.) 등을 통해 유사사례 근절을 위해 이전운송비 허위·과다 청구 행위에 대해서는 신분상 가중 처분 등 엄중문책 대상임을 강조해온 점, 고도의 준법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이사서류를 허위로 발급받아 이전비를 부당 수령한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는 점,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경징계 상단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징계부가금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허위서류 등을 통해 이전비 720,000원을 과다 수령하는 등 공금을 횡령한 비위가 인정되며,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공무원징계령 제17조의2에 따라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비위에 대해서는 수수액의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의 2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그 수수액의 1배에 해당하는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어 징계부가금 1배 처분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Ⅵ. 감 독 책 임

71. 피의자 관리소홀 감독책임(감봉2월→기각)

처분요지 : 2013. 9. 20. 19:40경 ○○파출소 ○○팀장으로 근무 시
피의자 관리 소홀로 피의자간 흉기사용으로 중상해 사건
발생 및 보고지연 등 감독자로서의 직무를 태만히 한
비위로 감봉2월 처분

소청이유 : 경사 C에게 소지품 검사 등을 하도록 하고, 피의자간
간격유지 및 도주방지를 위해 의경을 출입문에 배치한 후
○○팀에게 수사서류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사건 발생
후 상황이 긴박하여 사건이 종료된 후에 신속하게 파출
소장·서장 및 ○○과장에게 보고한 것이고, 소내 근무
여건이 열악하여 발생한 사건임에도 감독책임을 묻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원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3-749 감봉2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 중인 자로서, 전 근무지인 ○○파출소 ○○팀장으로 근무 시 2013. 9. 20(금) 18:00~9. 21. (토) 09:00간 야간근무 중 팀원인 경위 B, 경사 C가 2013. 9. 20. 19:00~21:00 순 23호 112순찰차 근무를 지정 받고 근무 중, 2013. 9. 20. 19:40경 ○○역 광장 쌍방 폭행 피의자 D(55세)와 E(39세)에 대해 임의 동행하여 조사대기 시 흉기소지 여부에 대한 신체수색을 하였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피의자 감시 전담경찰관을 지정해야 함에도 지정하지 않고 지원의경만 출입문에 배치하였으나 조사대기 중인 피의자들에 대해 분리 조치를 하지 않아 임의 동행된 피의자 D가 피의자 E와 말다툼을 하고 욕설을 하며 옆으로 이동하여 잠바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칼(잭나이프 20cm)을 꺼내 피의자 E의 왼쪽 얼굴과 오른 쪽 어깨를 찌르는 피의자간 흉기로 살인 미수 사건 발생을 미연에 예방하지 못하여 파출소 사무실 내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자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팀장으로서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으며,

이 사건의 경우 속보 상황임에도 2시간 15분 지연보고와 언론취재 시 부적절하게 대응하고 언론보도 예상보고를 지연 보고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하며,

소청인이 26년 4개월간 재직하여 오면서 ○○지방경찰청장 등 총 20회에 걸쳐 표창을 수상하는 등 성실히 근무하였으나, 피의자 관리소홀로 피의자간 흥기사용에 의한 중상해 사건이 발생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행위는 그 책임을 면키 어렵다고 판단되어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19:35경 순찰근무 중이던 경위 B와 경사 C가 폭력혐의자 2명을 임의 동행하여 들어 왔기에 신속하게 경사 C로 하여금 소지품 검색을 하도록 하였고, 이어 3m 간격을 유지시키고 도주방지를 위해 의경을 출입문 입구 쪽에 배치한 후 ○○팀으로 하여금 피의자 검거 동향보고서 및 목격자 자필진술서 작성 등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상황근무를 하던 경위 F는 피의자를 감시하면서 전화수발 등 상황근무를 하던 중에 다른 사건이 들어와 분리하여 상황판단을 하는데 먼저 들어 와서 대기하던 폭력 용의자들끼리 잘 아는 사이로 사이 좋게 대화 하며 합의할 분위기에 있어 다른 사건 용의자와 대화를 한 것인데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려 돌아보니 폭력용의자가 함께 들어 온 용의자에게 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게 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경위 B로 하여금 구급차를 요청하여 3~4분간 응급조치를 한 후에 ○○병원으로 후송하고 조사 서류를 마무리하여 경찰서로 연행한 후에 상황보고를 하기에 이른 것이고,

상황보고 또한, 20:30경 모든 상황이 종료된 후 소내 정리를 하면서 직속상관인 파출소장에게 유선보고하고 경찰서장이나 ○○과장에게는 나름 신속하게 보고하였으나 15분 이내에는 절대로 보고할 겨를이 없었으며,

파출소 내 근무인원 등 열악한 상황에서 모든 근무자가 분주하게 열심히 근무하는 과정에서 발생 된 상해사건에 대해 당시 상황 등은 참작하지 않고 무조건 감독책임으로 일관하였고, 부득이 징계를 받음에 있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징계 감경사유 등을 인용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행위이며,

공직생활 26년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근무하여 ○○지방 경찰청장 표창 등 20회에 걸친 표창 수상 공적이 있는 점, 국민들의 신체수색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법체계와 파출소 내 근무자 수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 발생된 건에 대해 일선 경찰관들에게만 그 책임을 전가 시키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 생각되는 점, 잘못에 비해 본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한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먼저, 소청인은 폭력혐의자를 임의 동행해 온 경사 C에게 소지품 검색 등을 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 건 관련 소청인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팀장으로서 연행된 피의자에 대해 흥기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연행한 근무자에게도 이를 지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바 있고, C 소청인도 감찰조사 과정 D에 대해 신체수색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로 볼 때, 이에 대한 주장은 변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에도, 소청인은 팀장직위에 있는 자로 지역경찰 피의자 도주 방지 대책 등을 통해 수차례 피의자 감시담당 경찰관을 지정하도록 지시한 바

있음에도, 의경으로 하여금 출입문만 통제하도록 하고 피의자 담당 경찰관을 지정하지 않는 등 피의자 관리를 소홀히 하였고, 치안상황실 운영규칙(경찰청 훈령 제688호)에 따르면, 경찰관서의 화재, 피습, 체포된 피의자·유치인의 도주 및 자·타살 사건 등 중요 자체사고 등 속보사항 발생 시 지구대(파출소) 등으로부터 경찰서까지 15분 이내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2시간 15분이나 지연 보고하고, 본 건 관련 언론취재에 부적절하게 대응하고 언론보도 예상보고를 지연 보고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한 점,

파출소 내 근무상황이 열악한 상황이었다고는 하나, 팀장으로서 피의자 감시 경찰관을 지정하거나 피의자를 호송해 온 경찰관에게 신체검사 여부를 확인하지 못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CCTV를 통해서도 근무자들이 피의자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특히, 파출소 내 흉기사건으로 피해자가 사망(2013. 9. 23.)에 이르렀고,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경찰조직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명예를 크게 훼손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정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된다.

소청인의 경우, 팀장으로서 피의자에 대한 흉기소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피의자 감시 전담관을 지정하는 등 피의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기본적인 임무를 소홀히 하여 경찰관서 내에서의 흥기에 의한 살인미수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점,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어 국민의 지탄을 받고 경찰에 대한 신뢰와 명예를 크게 훼손한 점, 또한 속보사항을 지연보고하고 언론대응도 부적절 했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팀장으로서의 위기관리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점, 무엇보다 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무고한 인명이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 정상을 참작해 보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징계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 ○○팀장으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2013. 1. 8. 팀 회식을 주재하였으면 회식 후 음주운전 등 사고예방을 위하여 소속 직원들에게 교양 및 제반조치를 하는 등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소속직원이 음주운전을 하였고,

B의 음주운전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의 대리운전 주장, 군부대 영내사고인 점, 자기피해 교통사고인 점 등을 이유로 2013. 1. 9. 01:00경 ○○단 ○○대 상황실에서 ○○지구대장, ○○팀장과 함께 협의하여 음주측정 없이 B를 귀가조치 하는데 동조하였으며,

같은 날 02:30~03:00경까지 ○○지구대 사무실에서 ○○·○○ 지구대장, ○○팀장과 함께 음주측정 지연처리에 동조한 결과 B의 채혈이 사고발생 후 13시간가량 지난 2013. 1. 9. 13:55경에서야 이뤄지고,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 조직의 위신이 실추된바,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12. 2. 3.부터 ○○경찰서 ○○지구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직무 관련 회의뿐만 아니라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리에서도 경사 B 등 소속직원 7명을 상대로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2012. 2월~2013. 1월 총 170회 정도 실시)하였고, 특히 사건 당일인 2013. 1. 8.에는 직원회의와 회식장소에서 ‘금일 회식으로 음주운전 절대금지, 대리운전 등 이용 귀가’를 지시하였으며, 21:00경 회식이 끝난 다음에는 같은 방향에 거주하는 직원들끼리 함께 귀가하도록 주선한 바,

B의 경우 자신 소유의 승용차량에 경위 C를 태워 대리운전으로 귀가하려는 것을 확인하였고, 같은 날 21:36경 B가 소청인에게 전화하여 “집 앞이니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믿고 잠을 잔 것임에도 음주운전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을 근거로 소청인이 팀원의 음주운전예방 노력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고,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 내지 제9조 등에 따르면 소속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은 법령상 직무시간 중 부하직원의 담당업무에 국한되는바,

사건의 발단이 된 회식은 직장동료 간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자리였고, B는 회식이 끝난 후 개인적으로 2차 음주를 한 후 음주운전을 한 것이므로 감독자의 실질적인 감독범위를 벗어남에도 소청인에게 ‘직무상 감독자’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며,

소청인은 2013. 1. 9. 01:00경~02:00경 ○○대 상황실에서 ○○대 수사관과 ○○지구대장, ○○지구대 ○○팀장 등이 서로 ‘직무관할 및 그 범위’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을 뿐이고, 당시 B에 대한 인권 침해가 우려되어 신원보증을 해주었던 것이며, B가 귀가를 위하여 ○○대 수사관과 ○○지구대장 등이 귀가 조치한 것으로 이는 인권보호와 수사의 적정성을 도모한 조치라고 판단되고,

같은 날 02:30경~03:00경 소청인이 ○○지구대에서 ○○·○○ 지구대장, ○○지구대 ○○팀장과 함께 사건지연처리에 동조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는, 소청인은 직무 외 시간으로 직무권한이 없다고 생각하여 의견개진을 하지 않았고, 단지 동료 직원인 B에 대한 사건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눈치를 보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며,

언론 보도 내용과 달리 ○○지구대장의 지시로 ○○지구대 ○○팀 직원들이 B를 상대로 동료애에 호소한 결과 2013. 1. 9. 13:55경 채혈을 하고 B가 음주운전 사실을 자백하게 된 점, 감찰조사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으며 징계위원회에서도 소청인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위법한 감찰조사결과를 토대로 징계의결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감독책임과 관련하여, 감독자는 철저한 지시·교양 등을 통하여 부하 직원이 법령을 준수하며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책임은 법령상 직무시간 중 부하직원의 담당업무에만 국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건이 근무시간 외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은 감독자로서 B의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우나,

경찰공무원 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르면 부하직원에 대하여 평소 철저한 교양감독 등 감독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징계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바,

소청인이 회식 당일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수시로 음주운전 관련 지시·교양을 한 것이 경위 C, 경사 D 등의 진술과 근무일지에서 확인된 점, 사건 당일 B에게 대리운전을 이용할 것을 재차 당부한 점, 경사 B는 실제로 대리운전업체에 대리운전기사를 요청하였으나 만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사고를 일으킨 점, 소청인은 21:36경 B로부터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한다는 전화를 받아 B가 음주운전을 할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 등은 참작의 여지가 있으므로 소청인의 위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사건 목인·지연처리와 관련하여, 먼저 소청인은 2013. 1. 9. 01:00~02:00경 ○○대 상황실에서 ○○대 수사관과 ○○지구대장, ○○지구대 ○○팀장 등이 협의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을 뿐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위 F가 “(○○대 사무실에서) 주로 ○○팀장(소청인)이 얘기를 한 것 같았는데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는지는 못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최초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위 G가 “○○지구대 ○○팀장 A가 자기가 이야기를 할 테니 저보고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여 밖으로 나왔으며 약 10여분 후 B 경사와 A 경위가 나와 부대 밖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점, 당시 ○○대 수사관이었던 H가 2013. 1. 9. 11:00경 수사 상황을 문의할 때 사건을 관할하고 있는 ○○지구대 경찰관이 아닌 소청인에게 연락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대 사무실에서 군부대 관계자, ○○지구대장 등과 협의한 적이 없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소청인이 B의 음주 및 음주운전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였음에도 음주

측정도 하지 않은 채 B를 귀가 조치한 것은 부하 직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사건을 무마하려는 시도로서 B에 대한 인권 침해 여부와 상관없이 부적절한 처신이므로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 소청인은 직무권한이 없어 사건지연처리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청인이 조사과정에서 “○○경사는 ○○지구대 순찰차량을 타고 (○○지구대)대장은 저와 딸 차량에 타고 ○○지구대로 갔습니다.”라고 진술한바, 딸이 먼저 귀가하여 교통수단이 없는 관계로 어쩔 수 없이 ○○지구대 순찰차를 타고 ○○지구대 사무실에 동행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지구대장이 사건 목인을 주도하였고 소청인은 사건 처리에 관하여 직접적인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더라도 ○○·○○지구대장의 의견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지 않은 것은 의무위반행위를 묵인하는데 동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더욱이 소청인은 2013. 1. 9. 11:00경 ○○대 수사관 H의 연락을 받고 ○○·○○지구대장과 함께 군부대에 재차 방문하여 사건 처리에 관해 협의한 사실이 있고, “만나서 얘기해보니 더 이상 물을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두 분 대장과 의논하여 지금이라도 B 채혈을 해놓고 지휘보고를 해야겠다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라고 진술한바, 사건을 묵인하려고 하였으나 군부대에서 사실대로 보고하여 더 이상 사건 처리를 미루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소청인이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

본 건 감봉1월 처분의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은 1차 감독자로서 B의 음주운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고, 경찰공무원으로서 공사를 구분하여 공정하고 엄중하게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여하고 교통의 단속과 위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 위반행위자가 부하직원이라는 이유로 당해 사건을 묵인하고 처리를 지연시키는 데 동조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며,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조직 전체의 위신이 실추되고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점, 경찰조직의 기강을 확립하고 음주운전 및 사건지연처리 등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다만, 소청인은 감독자로서 회식당일을 비롯하여 평소에도 음주운전 근절에 관한 지시·교양을 성실히 수행하였고, 당시 사건의 관할이 ○○지구대에 있어 사건처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기 어려웠을 개연성이 있는 점, 경사 B의 음주운전사고 묵인·지연처리를 주도했던 ○○·○○지구대장이 견책처분을 받은 점, 32년 3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고 국무총리 표창 1회 등 총 25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양정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73. 부하직원 금품수수 행위 감독책임(견책→불문경고)

처분요지 : ○○팀장으로서 소속 부하직원이 사건관련자에게 금품 요구 및 수수로 파면 조치된 데 대한 1차 감독책임으로 견책 처분

소청이유 : 부하직원이 관내를 벗어난 지역에서 금품을 수수한 것은 1차 감독자의 실질적인 감독범위를 벗어난 것인 점, 휴가·휴무·일과 후 타 관내 거주 팀원에 대한 적극적인 감독은 사생활 침해요소도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원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행위자의 비위가 휴가기간 중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소청인과 직접 연관이 없는 관외지역 사건과 관련해 발생한 점, 경찰청장 표창 3회 등 총 17회의 표창공적, 처분청의 평가가 좋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경 결정

사 건 : 2013-28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12. 12. 28.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 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0. 7. 30.~2012. 2. 3. 까지 ○○파출소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평소 관리·감독을 통해 소속 부하직원의 의무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해야 함에도

부하직원 경위 B가 2010. 10. 26.~28.간 ○○사업법 위반 사건 관련자에게 ○○시청과 ○○경찰서에 알선·청탁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여 1,500만원 수수, 2011. 8월, 9월 초순경 위와 같은 명목으로 1,250만원을 수수하는 등 총 5회에 걸쳐 2,750만원을 수수한 비위 등으로 2012. 11. 5. 파면 조치된 데 대한 1차 감독책임이 있고,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부하직원의 비위가 비번일 등에 발생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소속 팀원이 금품수수 등으로 구속되어 조직이 비난받은 행위를 예방하지 못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평소 팀원들에게 의무위반에 대한 교양을 실시해 왔으나 B가 휴가·휴무·근무시간 후에 ○○경찰서 관내를 벗어난 ○○에서 금품을 수수한 것은 1차 감독자의 실질적인 감독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휴가·휴무·일과 후 타 관내에서 거주하는 팀원에 대한 적극적인 감독은 사생활 침해요소도 있다고 생각하며,

팀원의 금품수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깝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청장 표창 3회 등 총 22회의 상훈공적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평소 교양을 충실히 하였고 감독자의 감독범위를 벗어난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B는 2회의 중징계 전력(정직3월,
정직1월)이 있고 2009. 4. 19.~2010. 4. 14.까지 관심직원으로 특별
관리 대상이었으므로 더욱 신중하고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했다고
보이는 점, 그럼에도 소청인은 2010. 2. 7. 부임 후 약 2개월 남짓
같이 근무한 B를 2010. 4. 9. 관심직원에서 삭제할 것을 건의해 관심
직원에서 해제되고, 이후 약 6개월 후인 10월에 B가 비위행위를 저질러
1년여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해진 점, 소청인이 징계위원회에서 “○○
에서 누나와 래프팅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하여 B가 영리업무에
관여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B가 관리대상자는 아니었다”고 진술하여 평소 주의
깊은 관찰노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결과적으로 B의 수뢰 후 부정
처사 비위가 발생하여 구속수감·파면되고 이러한 사실이 언론보도되어
조직전체의 위신을 크게 손상시키게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B에 대해 충분하고 실효성 있는 감독과 교양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은 부하직원 경위 B가 사건관련자에게 알선·청탁명목으로 2,7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요구해 수수하는 등의 비위로 구속, 파면처분 받은 데 대해 1차 감독자로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은 인정되나,

행위자의 비위가 휴가기간 중 발생된 것으로 보이고, 소청인과 직접 연관이 없는 관외지역 사건과 관련해 발생한 점, 경찰청장 표창 3회 등 총 17회의 표창공적, 처분청의 평가가 좋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로 문책하기 보다는 소청인이 이번 건을 교훈삼아 앞으로 더욱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74. 부하직원 공금횡령 감독책임(견책→기각)

처분요지 : ○○대학교 ○○장학사업 분임지출관으로서 사업비 예산을 기성회예산에 편성요청하지 않고, 사업비를 수기작업으로 관리하였으며, B 조교에게 인감과 공무원증 사본을 주어 B조교가 1억 2,394만원을 횡령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고, 지출원인행위부 및 지출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분임지출관으로서 직무를 다하지 못한 비위로 견책 처분

소청이유 : ○○장학사업이 기성회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사업비 관리 통장 신규발행을 위하여 B 조교에게 인감도장과 공무원증 사본을 준 것이며, 매달 내부결재에 의한 지급결의를 받고 지출내역 확인서 등을 확인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3-320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부

4급 A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1. 4. 1.부터 2011. 11. 13.까지 ○○대학교 ○○처 ○○과장으로 근무한 자로서, ○○대학교 ○○처 ○○과 B 조교(2012. 5. 1. 의원면직)가 2010. 10. 21.부터 2011. 3. 22.까지 학생회비 3,167만 원 및 2011. 8. 29.부터 2012. 3. 2.까지 ○○장학사업비 1억 5,174만 원, 합계 1억 8,341만 원을 횡령한 사건과 관련하여,

2011. 4. 1.부터 2011. 11. 13.까지 ○○ 장학사업 분임지출관으로서 한 회계연도의 모든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동 사업비를 기성회예산에 편성요청하지 아니하였고,

사업비를 ○○대학교 회계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산으로 관리·운영하지 아니하고 ○○대학교에서 전부터 사용하던 지출내역 확인서에 담당자, 주무관, 소청인 등이 서명하여 작성하고, 입금의뢰 명세서에 분임지출관 인감과 기성회 분임출납관인을 날인하여 사업비를 이체하고, 입금의뢰 명세서에 은행의 수납인을 받아와서 ○○처장(분임재무관)까지 결재한 내부결재 문서에 붙임자료로 보관하는 방법으로 사업비를 수기작업으로 관리·운영하였으며,

사업비 관리 통장을 신규 발행하면서 B 조교가 전자문서로 인감변경 관련 결재를 올린 것에 근거하여 소청인의 인감과 공무원증 사본을 B 조교에게 주어 B 조교가 백지 인출증에 자신의 계좌번호와 금액을 기입하는 방법으로 2011. 8. 29. 2,95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부당하게

입금하는 등 5회에 걸쳐 1억 2,394만 원을 횡령할 수 있도록 원인을 제공하였으며,

지출원인행위부 및 지출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분임지출관으로서 직무를 다하지 못해 B 조교가 1억 2,394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대학교에서는 ○○재단의 장학금 관리 지침에 따라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 ○○ 장학사업 교부금을 신청하였고, 그 사업에 필요한 대응 투자금을 기성회 예산에서 집행하고 있었던 점, 당시 ○○대학교 회계 정보시스템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았고, 모든 사업비를 그 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지도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비록 ○○ 장학사업 전체를 기성회계에 포함하여 관리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성회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재단의 장학금 관리 지침에 따라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야 했고, 당시 B 조교는 사업비 관리 통장을 신규 발행하면서 필요한 서류를 전자결재로 올렸는데 거기에는 통장 개설내역과 함께 통장 개설에 필요한 서류인 ○○과장의 인감도장과 공무원증 사본이 붙임서류로 기재되어 있어 B 조교에게 소청인의 인감과 공무원증 사본을 주게 되었으며,

소청인은 ○○ 사업이 ○○대학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시작되었기에 이와 관련된 사업비 관리도 투명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매달 장학금이

지급될 때마다 내부결재에 의한 지급결의를 받고, 지출내역 확인서 및 입금의뢰 명세서도 꼼꼼하게 확인하였으며, 은행으로부터 지출이 확인된 직인을 보고 ○○장학금이 집행되고 있는 것도 확인하였는데, 이러한 문서를 작성하고 확인하는 절차들이 명확한 형식을 갖춘 지출부나 지출 원인행위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성격이었다고 생각하고,

○○ 장학사업도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자는 취지에서 대학의 대응투자금을 이끌어내는 등 적극적으로 검토한 끝에 도입된 장학사업 이었던 점, 소속 직원의 횡령사건으로 인하여 소청인이 받은 심적 고통을 헤아려 주신다면 다시 한 번 심기일 전하여 교육정책에 이바지 할 각오인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장학금 관리 지침에 따라 별도의 ○○대학교 계좌를 만들어 ○○ 장학사업 교부금을 신청하였고, 그 사업에 필요한 대응투자금을 기성회 예산에서 집행하고 있었으며, 당시 회계정보시스템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 장학사업이 기성회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대학교 비국고회계 관리규정(○○부훈령 제191호) 제5조는 기성회 규약에 의한 회원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규정 제6조는 기성회회계의 모든 수입금은 모두 기성회 회계의 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단의 국가근로장학사업 관련 업무처리 지침은 대학은

국가근로장학 교부금 운영을 위한 교비회계의 별도 계정을 마련하여 교부금을 수령 및 관리·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청인은 2011. 4. 1.부터 2011. 11. 13.까지 ○○대학교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기성회계 분임출납관(기성회계의 출납업무를 행한다)으로 임명되어 있었고, ○○ 장학사업 총괄자로서 2011. 8. 17. ○○재단으로부터 장학금 2억 2,5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동 사업비를 기성회회계의 예산에 편입하여 당시 운영 중이던 회계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운영해야 하는 점,

소청인의 주장처럼 ○○ 장학사업비의 대학 자체 대응투자금이 ○○대학교 기성회회계 예산에서 집행되었다 하더라도 동 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해줄 것을 요청할 의무는 소청인에게 있으며, 이를 확인할 책임 또한 소청인에게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 소청인은 사업비 관리 통장 신규발행을 위하여 B 조교에게 소청인의 인감도장과 공무원증 사본을 준 것이고, 매달 내부결재에 의한 지급 결의를 받고, 지출내역 확인서 및 입금의뢰 명세서를 확인하는 절차들을 거쳤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92조 제3항은 지출관은 지출부를 갖추어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6항은 지출부 등 장부는 매월 말일자로 마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는 지출관은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의 2서식의 지출결의서에 따라 지출을 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지출부에 기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학교의 2011학년도 기성회회계

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지출원인행위부와 지출부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통합행정정보시스템 기성회회계 프로그램에서 전산 출력하여 계약관 및 출납관의 결재를 득한 후 자체적으로 정리·보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설령 소청인이 사업비 통장 개설을 위하여 소청인의 인감과 공무원증 사본을 B 조교에게 주었고, 지출내역 확인서 등으로 장학금 지출내역을 확인하였다 하더라도 관계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결과, B 조교가 장학 사업비 2억 2,500만 원 중 1억 2,394만 원이나 횡령할 수 있도록 원인을 제공한 것은 사실로 인정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1항에 해당된다.

본 건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은 기성회계 분임출납관으로서 ○○ 장학사업비를 기성회예산에 편성을 요청하지 아니한 점, 동 사업비를 수기작업으로 관리·운영하면서 매월 말 사업비 잔고를 확인하지 않고, 소청인의 인감과 공무원증 사본을 소속 직원에게 주어 동 사업비 1억 2,394만 원을 횡령할 수 있도록 원인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최근 공무원의 공금횡령 비위가 증가하고 있어 감독자의 소속직원에 대한 감독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 ○○대 ○○전경대장 근무 당시, 2009. 4.~2010. 9. 4. 기간 중 내부반 등에서 상급대원이 하급대원의 성기를 만지는 등 11회에 걸쳐 강제 추행을 한 사건과 관련하여, 2010. 9. 6. 피해대원의 부친으로부터 피해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지휘보고, 감찰조사 및 직무고발을 하지 않고 피해대원을 외박 보내는 등 사건을 묵살하였다가 2010. 9. 8. 기자가 취재를 시작하자 지휘보고를 하였고, 위 사건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대원 부친의 신고에 앞서 파악하지 못하는 등 부대관리를 태만히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2,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바, 소청인이 2010. 11월경의 감봉1월 처분에 불복하여 2년 6개월간의 소청과 행정소송 등을 통해 그 취소판결을 받기까지 심한 고통으로 혈압이 160이상 나가 혈압억제제를 먹고 있는 사정 등을 감안하여 선처를 해달라는 것에 대해 그동안 경찰공무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근무하였고 감경대상 공적인 경찰청장 표창을 3회 수상한 경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에 대한 최초 징계는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견책으로 의결되었

으나 지휘관 결재 과정에서 다시 징계를 지시하였고, 이후 징계위원들도 없는 상태에서 징계위원들이 맡겨둔 도장을 이용하여 임의로 감봉1월로 공문서를 위·변조하여, 그 결과 소청인은 징계위원회에서 최초로 의결된 것과는 무관한 감봉1월 처분(2010. 11. 2.)을 받고 12개월간 시험응시 제한, 승진 제한, 표창 제한 대상에 묶여 온갖 불이익을 받았으며, 2012. 12. 11. 법원의 취소판결 이후 호봉 회복 및 급여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받았으나, 피소청인이 경찰의 승진 및 인사이동이 있는 민감한 시기(2013. 1. 8.)에 재징계를 요구하는 바람에 승진 및 인사에 있어 불이익을 받았는데,

이는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하여 재징계를 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동일 건으로 두 번 처벌을 받는 것으로 이는 명백히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생각하며, 또한 애초에 견책을 받아야 할 불이익이 피소청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감봉1월로 변경되면서 받은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바,

애초에 견책으로 의결한 징계를 임의대로 공문서를 위·변조하여 감봉1월 처분을 함으로써 2년 6개월간 고통을 준 것도 모자라서 재징계 절차를 밟아 2년 6개월 전과 동일한 의결을 하면서 마치 봐주는 것 같이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소청인에게 교부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견책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당시 ○○대 중대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부대관리를 하였으나 성격 가혹행위라는 대원 간 자체사고가 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는 점, 그동안 이 건에 대한 책임으로 인해 소청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과 불이익은

이루 말할 수 없는바 원치 않는 원거리 경찰서로 인사조치 및 보직관리의 어려움과 쟁송과정 등을 겪었다는 점, 피해대원의 부친이 행정소송 과정에서 ‘이는 전경대의 구조적인 문제이지 중대장의 일방적 잘못으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는 점, 그동안 마음을 가다듬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왔으나 또다시 동일 건으로 징계가 이루어져 상심이 크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무효로 확인 또는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고등법원은 2012. 12. 11. 피소청인이 이 사건 종전처분을 하면서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위법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판결을 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피소청인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다시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점, 위 제78조의3의 재징계 의결 요구 등에 관한 규정이 신설(2008. 12. 31. 본조신설) 되기 이전의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소청심사 단계에서 하자 있는 징계의결의 무효를 선언하고 그 후 같은 징계사유로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파면결의를 한 조치는 이중으로 징계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가 있는 점(대법원 1971. 3. 9. 선고 70누160 판결 참조) 등을 감안하면,

비록 피소청인이 이 사건 종전처분 당시에 징계절차를 위법하게 처리함으로써 소청인에게 동일 사건으로 재징계를 받도록 한 결과를 초래하여 그 고통이 가중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또한 위법한 이 사건 종전처분으로 인하여 소청인이 2년여 동안에 걸쳐 소청심사와 행정소송 등을 진행하면서 받은 고통이 매우 컸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른 금전적 손해 등은 공무원보수규정과 소송법 상의 보전 규정에 따라 일정부분 회복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에서 재징계의결 요구의 조항을 둔 것은, 그 비위에 상응하는 징계처분을 통하여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 사건 종전 처분의 징계절차 위반에 따라 소청인이 그동안 입게 되었던 정신적 고통과 금전적 손해 등의 사정을 일정부분 고려해야 하겠지만, 원 처분 사유에 적시된 소청인의 비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따진 다음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그에 합당한 수준의 징계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관계기록에서 확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청인은 2010. 9. 6. 12:40경 피해대원 부친과의 면담을 통해 대원 간의 성추행 사건을 인지하였음에도 상급자인 ○○경비대장에게 즉시 보고하지 않고 있다가, 2010. 9. 8. 16:20경 ○○방송국 기자가 관련 사건을 취재하자 그때서야 ○○경비대장에게 보고를 하였던 점, 피해대원의 부친은 이 사건 감찰관과의 전화청문 과정에서 항의를 하자, 그때서야 소청인이 가해대원을 조사해서 형사입건하고 영창도 보내겠다고 하기에, 사건을 축소하려 한다고 생각되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까지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이로 볼 때 소청인이 위 성추행 사건을 적극적으로 묵살 또는 은폐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위 사건을 축소

또는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고, 이 사건 ○○대 생활반 등에서 소속대원 간 성추행 사건이 2010. 4월 중순경부터 같은 해 9. 4.경 까지 장기간에 걸쳐 11차례나 발생하였으며, 소속 소대원들도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 사건을 목격하였음에도 ○○대장인 소청인이 이를 사전에 예방치 못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대원의 부친으로부터 항의를 받기까지 이를 파악조차 하지 못하였던 점, 이 사건 가해대원의 피해대원에 대한 성추행의 정도를 보더라도, 결코 가벼운 수준에 머문 것이 아니라 그 육체적·정신적 피해가 상당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소청인이 당시 대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상관에 대한 지휘 보고를 지연한 행위 등에 대하여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피소청인이 일선 ○○대 지휘관들에 대하여 대원들 사이의 인권침해 행위를 철저히 감독하고 그와 같은 사건이 발생할 경우 즉시 지휘보고할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청인이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소속 소대원들 사이의 성추행 사건을 인지하였음에도 지휘보고를 즉시 하지 않음으로써 사건을 축소·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점, 피해대원의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가해대원들도 형사

벌을 받게 되는 등 소청인의 부대관리 소홀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도 볼 수 있겠으나,

이 사건 종전처분이 법원에서 취소 판결을 받고, 이후 피소청인이 관계규정에 따라 2년 4개월 만에 재징계 처분을 함으로써 소청인이 입게 된 정신적·금전적 피해가 작지 않아 보이는 점, 법원이 이 사건 종전 처분을 취소함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과 소송법 상의 보전 규정에 따라 금전적인 피해부분은 일부 회복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송진행 과정에서 투입된 비용 등이 전부 회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종전처분에 따라 감봉1월의 징계처분이 이미 집행되는 과정에서 소청인이 13개월여 동안 승진심사 및 승진시험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부서 배치 등의 인사상 불이익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종전처분이 법원에서 취소 판결되기 이전에, 사실상 그 위법한 처분(감봉1월)의 집행으로 인하여 소청인이 인사상 불이익과 경제적 손해 등을 이미 감수한 결과가 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 피소청인도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통해 그 기강을 확립하고 공무원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징계의 목적을 이미 일정부분 달성한 결과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소청인은 20여 년간 근무하면서 징계 없이 상훈 감경 대상인 경찰청장 표창 4회를 비롯하여 총 15회의 표창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소청인이 본 건을 거울삼아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76. 회계검사 감독 태만(견책→기각)

처분요지 : ○○부 ○○과장 재직 시 C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한 번도
검사하지 않아 C가 2011. 8. 8.부터 2012. 2. 13.사이에
4회에 걸쳐 1,944,450원을 횡령하는 단초를 제공한
비위로 견책 처분

소청이유 : 검사공무원 임명을 통한 관리감독은 없었지만 과장으로
전보된 직후 등 계기시마다 지출관과 담당직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아왔고,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검사 및
관리감독을 해왔던 점, 전문적인 감사시스템을 통해서도
수년간에 걸친 횡령사건을 인지하지 못한 점, 횡령사건이
진행된 기간 중 시효가 지난 경우는 자체 주의·경고로
처리된 점 등을 고려하여 원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3-446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부 3급 A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1. 8. 8.부터 현재까지 ○○부 ○○과장으로 근무 중인 자로서,

○○부 ○○과 지출담당 기능8급 B는 2007. 2. 2.부터 2010. 3. 5. 사이에 총 145회에 걸쳐 합계 293,482,975원을 횡령하였고, 후임자인 기능9급 C는 2010. 4. 14.부터 2012. 2. 13. 사이에 총 15회에 걸쳐 합계 12,749,756원을 횡령한 사실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부의 모든 회계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과장 직위에 있었으므로 매년 12. 31.과 출납공무원의 전출·면직 그 밖의 이동이 있을 때에 검사공무원을 임명하여 그 출납 공무원의 장부와 자금을 정기적·일시적으로 검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2011. 12. 31. 및 2012. 2. 13.(C가 ○○교육원으로 전보된 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C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한 번도 검사하지 않아 C의 횡령사실을 알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C가 2011. 8. 8.부터 2012. 2. 13. 사이에 4회에 걸쳐 1,944,450원을 횡령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 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지난 21년간 성실 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통령 표창 등을 수상한 점, 개전의 정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문책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도 판단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징계의결서와 같이 검사공무원 임명을 통한 관리감독은 없었지만 소청인이 과장으로 전보된 직후와 담당직원이 전보된 직후 등 계기마다 지출관(○○계장 D)과 담당직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아왔고,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검사 및 관리감독을 해왔다고 할 수 있으므로 한 번도 검사하지 않아 횡령이 초래되었다는 판단은 지나치다고 볼 수 있으며, 다만 업무보고 과정에서 과장이 직접 회계 증빙서류까지 검토하지는 않았으나 관련 서류 검토는 지출관 책임 하에 이루어 질 수밖에 없었고, ○○과장은 인사 및 서무 등 여타 광범위한 업무를 맡고 있는 직무여건상 회계 시스템의 원활한 관리에 업무 중점을 둘 수밖에 없어 사건발생 이후 후속조치를 통해서도 건강보험료 관련되어 건강보험공단 측과 회계처리 방식을 바꾸는 등 시스템 보완에 주력하였으며, 검사 공무원 임명 및 활동이 다른 부처 경우를 보더라도 업무 현장에서 지극히 형식적일 수밖에 없고, 그런 기능은 각 부처 감사담당관실과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매년 회계감사 및 검사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또한 전문적인 감사시스템을 통해서도 수년간에 걸친 횡령사건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제도적인 문제로 볼 수 있으나 본 횡령사건이 진행된 기간의 담당과장 및 공무원 중에서 시효가 지난 경우는 ○○부 자체 주의·경고로 가볍게 처리하고 사건이 드러난 시점의 담당 공무원들에게만 전원 징계 처분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으로 생각되며, 소청인은 징계의 감경대상에 해당되는 표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경 없이 견책처분을 받았고, 사건을 인지하고도 적절히 조치를 취하지 않은 핵심적 위치에 있었던 지출관

까지도 엄중 문책해야 하지만 더욱 업무에 정진하라는 이유로 감경 적용을 받았으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2명의 지출관 보조공무원 중 1명은 감경되고, 다른 1명은 적용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징계 양정과 감경 적용의 형평성을 잃은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지난 21년간 주의·경고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본 건 발생으로 보다 완벽한 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 등을 통감하고 있다는 점, 근정포장 및 장관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점, 심기일전하여 공직수행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검사공무원 임명을 통한 관리감독은 없었지만 소청인이 과장으로 전보된 직후 등 계기시마다 지출관과 담당직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아왔고,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검사 및 관리감독을 해왔으므로 한 번도 검사를 하지 않아 횡령이 초래되었다는 판단은 지나치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89조, 제90조와 제92조의 규정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매년 12월 31일과 출납공무원의 전출·면직 그 밖의 이동이 있을 때에 검사공무원을 임명하여 그 출납공무원의 장부와 자금을 정기적·일시적으로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소청인은 ○○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부 모든 회계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었으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회계 업무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했어야 함에도 한 번도 검사를 하지 않는 등 회계 검사 업무를 소홀히 하여 C가 4회에 걸쳐 공금을 횡령하는 국가회계

질서를 문란하게 한 감독 책임이 인정되는 점, C가 관리하고 있었던 ○○은행 국고계좌는 계좌이체를 통해 입금되므로 위 계좌에 현금을 입금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소청인의 관리기간 동안 C가 2회에 걸쳐 건강보험료 부족분을 횡령액으로 변제하기 위하여 입금하였고, C도 감사원 문답 시 ○○은행 국고계좌의 출금 내역만 확인했어도 자신의 횡령한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소청인도 감사원 조사 및 심사 시 비위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2011. 12월경 C가 B의 부가가치세 횡령 사실을 지출관인 D에게 보고하였음에도 D는 이를 소청인에게 보고하지 않은 바, 소청인이 만약 위 사실을 보고받았더라면 관련자들의 회계업무처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등으로 C의 추가 횡령은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점은 인정된다.

4. 결 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 ○○부의 모든 회계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과장임에도 불구하고 소속 직원의 회계 검사 감독 업무를 태만히 하여 C가 수차례에 걸쳐 횡령할 수 있도록 원인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최근 공무원의 공금횡령 비위가 증가하고 있어 감독자의 소속직원에 대한 감독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제2편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77. 징계처분에 따른 수사경과 해제(견책→기각, 수사경과 해제→기각)

처분요지 : 대상업소 종사자와 18회 접촉하고 신고하지 않아 대상
업소 종사자 접촉금지 지시위반 등으로 견책 처분 및
수사경과 해제 처분

소청이유 : 소청인은 통화한 것은 사실이나 대상자가 대상업소
종사자인 줄 몰랐고 실제 통화내용도 해당 사건과 무관한
내용이고 모범적인 경찰공무원이라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의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 : 대상업소 종사자와 통화 후 사후라도 신고하지 않은
비위가 인정되며, 이는 수사경과 해제 사유로 삼기에
무리가 없으므로 청구를 각 기각함

사 건 : 2012-901 견책 처분 취소 청구
2013-10 수사경과 해제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

2010. 6월경 ○○과 ○○팀 근무당시 알게 된 B가 2011. 2. 18. 부터 ○○ 소재 ‘○○게임랜드’ 불법 오락실 업소를 운영해오다가 2011. 10. 26. 실제업주로 구속되기까지, 2011. 3. 7.~2011. 3. 18. 사이에 발신 3회, 수신 11회 등 총 14회에 걸쳐 전화 통화를 하였고,

2011. 3. 15, 21:10경 ○○경찰서 ○○계가 단속한 피의자(종업원)를 다음날인 3. 16. 10:13경 조사한 후 같은 날 4회에 걸쳐 B와 전화 통화(수신)하는 등 불법오락실 업주와 전화통화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유착 의혹을 받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1호, 2호에 해당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고,

2013. 1. 22. ○○경찰청장은 소청인이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소청인에게 부여된 수사경과를 해제하는 인사발령을 하였다.

2. 소청 이유 요지

전화통화의 내용과 무관하게 전화통화한 사실만으로 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피소청인은 불법오락실 업주인 B와의 통화내역이 14회에 이른다는 이유만으로 성실의무 및 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 하였으나 위 판단은 전화통화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전화통화 사실만을 근거로 한 것으로서 전화통화한 사실만 가지고는 성실의무 및 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판단할 수는 없고,

B와 통화할 당시 B를 병원 사무장으로만 알고 있었을 뿐 불법 오락실

업주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당시는 수사 중이던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해 B에게 전화한 것일 뿐이므로 이를 소청인이 불법오락실 업주와 통화한 것으로 보아 지시위반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며,

26년간 재직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5회를 포함하여 총 35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각종 범죄 분야에 있어서 높은 수사실적을 쌓아온 모범적인 경찰공무원이라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고,

2012년 상반기 경찰청 검거유공 특진심사에 ○○청 심사에 선발되는 등 실적이 우수하고 수사에 임하는 태도 또한 매우 적극적이고 수사기법이 탁월하며 팀내 동료·후배들에게 우수한 수사능력을 인정받는 등 평소 수사관으로서 모범이 되는 수사관이며, 경찰생활 대부분을 수사경찰로 근무하였는데 수사경과 해제는 너무도 가혹한 처분이며,

보험사기 등 수사업무에 최고의 업무성과를 거두고 있고, 그간 수사 경찰에 이바지한 공을 참작하여 수사경과 해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견책 처분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소청인은 다년간 수사부서에서 근무하여 경찰 대상업소 운영자와 접촉한 경우에는 사전 사후 모두 신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2011. 2. 18. ~ 2011. 10. 26.까지 불법 오락실을 운영한 실제업주인 B와 동 기간 중 14회에 걸쳐 전화통화를 하면서 접촉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고, 특히 ○○경찰서에서 단속한 B의 불법 오락실 종업원을 조사하고 석방한 직후 4회에 걸쳐 B에게 전화가 와 통화하였던 점, 불법 오락실 업주인

B에게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해 전화통화 하였다는 주장하지만, 2011. 8. 5.일경 B가 불법 오락실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경위 C에게 조사받고 있는 것을 보고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면서도 경찰 대상업소 종사자 접촉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고, 이는 경찰 대상업소 종사자 접촉금지 지시를 위반한 것에 해당되는 점, 불법 오락실 업주 B와 관련 되어 징계 처분을 받은 경찰관들의 징계 양정을 소청인과 비교하더라도 특별히 소청인이 과중한 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 하면 위와 같은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수사경과 해제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15조 제2항 제1호에서 금품수수·직무태만·음주운전 등 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수사경과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소청인은 경찰 대상업소 운영자와 접촉한 경우에는 사전 사후 모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2011. 2. 18. ~ 2011. 10. 26.까지 불법 오락실을 운영한 실제업주인 B와 동 기간 중 14회에 걸쳐 전화통화를 하면서 접촉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고, 특히 ○○경찰서 ○○계에서 단속한 B의 불법 오락실 종업원을 조사하고 석방한 직후 4회에 걸쳐 B와 통화하여 2012. 12. 3. 견책 처분을 받은 점,

소청인은 전문적인 의료 분야 지식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병원 사무장인 B와 통화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 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시’를 위반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대상업소 종사자와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 온 사실을 볼 때 소청인에게 성실한 수사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고, 또한 해당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 이외에 해당 팀원이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해당 팀원이 진정인을 임의동행 하면서 임의동행동의서를 받지 않아 이에 대한 감독책임을 지고 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은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15조 제2항 제3호의 수사경과 해제사유에 해당되는 점,

○ ○경찰청 수사경과 해제심사위원회에서도 불법 오락실 업주인 B 관련자들 중 견책 이상 징계 처분 받은 경찰관의 수사경과를 해제하기로 결정하는 등 절차상 하자나 법령을 위반한 점도 발견되지 않고, 인사권자가 재량을 남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유도 보이지 않는 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사경과 해제 처분은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속하여, 경찰조직의 목적 달성과 그 운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 할 것이며, 인사권자가 그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권한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정황이 없고, 본 처분의 절차나 내용에 있어서도 이를 취소할 만한 중대한 하자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소청인이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소청인에게 부여되어 있던 수사경과를 해제한 것에 위법 또는 부당함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 정

경찰 대상업소 접촉금지 제도에 의하면 대상업소 운영자와 접촉한 경우에는 사전 사후 모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2011. 2. 18. ~ 2011. 10. 26.까지 불법 오락실을 운영한 업주인 B와 동 기간 중 총 14회에 걸쳐 전화 통화하였고, 특히 2011. 3. 16. B가 운영한 불법오락실의 종업원을 조사·석방한 후 4회에 걸쳐 B와 전화 통화

(수신)한 점, 또한 B가 불법오락실 업주임을 알고 난 이후에도 접촉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경찰 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시를 위반한 점, B와 관련되어 징계 처분을 받은 경찰관들의 징계 양정을 보더라도 소청인이 과중한 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하고,

수사경과 해제처분과 관련하여, 인사권자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해 수사경과의 해제 등 경과 변경이나 전보처분을 할 수 있고, 소청인은 수사경찰로서 경찰 내 다른 업무에 비하여 더 높은 수준의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불법 오락실 업주인 B와 14회에 걸쳐 전화통화를 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비위로 견책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이를 수사경과 해제 사유로 보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는 점, 이와 같은 사정으로 피소청인이 소청인에 대해 본 건 수사 경과해제 처분을 행함에 있어 재량권을 현저히 남용하였거나 그르쳤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처분에 따라 다소 불이익한 영향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이는 소속 공무원으로서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크게 벗어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78. 수사업무능력 및 의욕부족을 이유로 수사경과 해제 (수사경과 해제→기각)

처분요지 :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소청인에 대하여 수사경과 해제 처분

소청이유 : 경찰입문 후 지금까지 수사부서에서만 근무하며 뛰어난
공적이 있었고 암으로 병가·휴직하였으나 회복 후에도
악성수배자를 검거하는 등 수사업무를 게을리 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여 수사경과 해제 처분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 : 수사경과 해제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없고 인사권자의
재량권내의 처분이므로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3-145 수사경과 해제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지방경찰청장은 소청인이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7조 제1항
제4호(기타 적성·건강 등의 사유로 수사업무능력 및 의욕부족이 현저
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소청인에게 부여된 수사경과를 해제

하는 인사발령을 하였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1999년 수사경찰에 입문하여 강력형사 7년, 폭력형사 3년 등의 수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여러 건의 강도를 검거하는 등의 공적이 있었고 1999년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는 수사부서 이외 부서에 근무한 사실조차 없으며,

또한, 소청인은 2011년 암으로 병가·휴직을 하긴 하였으나 현재 암이 완치되어 수사부서로 복직하였다가 ○○서로 발령받았을 때에도 수사과 보직공모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악성수배자를 검거하여 표창을 수상한 사실이 있는 등 수사경과 업무에 전혀 장애를 주지 않을 뿐 아니라, 수사역량강화 교육까지 받는 등 노력을 기울리 하지 않았고,

이와 같이 수사업무 능력이나 의욕이 현저하게 부족하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의 수사업무 능력이나 의욕의 부진과 관련한 아무런 입증자료도 없이 소청인의 수사경과를 일반경과로 변경한 것은 인사권자의 재량권 한계를 벗어난 것인 점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이 2012. 7월경 일반경과 부서인 ○○경찰서 ○○파출소로 발령을 받은 직후에 같은 경찰서 ○○과에 보직공모서를 제출한 점이나 ‘수사면담기법전문과정(2012. 11. 12. ~ 12. 7.)’을 이수하는 등의 사정으로 볼 때, 수사업무에 대한 의욕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은 있으나, 소청인이 2011. 2월경 ○○암의 발병으로 휴직을 하고,

치료 후 2012. 1. 25.자로 복직을 하여 ○○경찰청 ○○계에 근무하던 중 건강을 이유로 한 소청인의 고충에 의해 2012. 7. 12. 위 ○○파출소(일반경과 부서)로 전출하여 현재까지도 주간근무만 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 점, 암 발병에 따른 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담당 전문의도 건강에 문제가 없다는 소견을 내 놓고 있으나, 암의 경우 장기간의 관리와 건강상 주의가 요구되고, 지금까지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등 관리 중에 있는 점, 수사경과 해제 처분은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여 경찰조직의 목적 달성과 그 운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 할 것이며, 인사권자가 그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권한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사정이 없고, 본 처분의 절차나 내용에 있어서도 이를 취소할 만한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정

소청인이 현재 특별한 항암 치료를 받고 있지 않다고 하나, 암의 경우 장기적인 관리와 주의가 요구되는 점, 인사권자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해 수사경과의 해제 등 경과변경을 할 수 있고, 피소청인이 소청인에 대해 본 건 수사경과 해제 처분을 행함에 있어 재량권을 현저히 남용하였거나 그르쳤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이 사건 처분이 소청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소 불이익한 영향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이는 소속 공무원으로서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 정상을 감안해 보더라도 원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79. 의사에 반하는 전보 처분(전보→기각)

처분요지 : 피소청인은 소청인을 ○○원 ○○과장에서 ○○원 무보직으로
○○원에서 ○○부로 또다시 ○○부에서 ○○원으로 전보 처분

소청이유 : ○○원장의 비리를 방지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미움을
사 특별조사를 받은 것이고 사전에 통보나 구체적인 설명 없이
소청인의 근무경력과는 무관한 직군으로 인사 조치된
것이고, 비리근절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로
표적이 된 것이므로 원 처분의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 : 소청인의 인사처분이 관련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점,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한 처분인 점 등을 감안하여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3-39 전보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원 5급 A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2. 11. 8. ○○원 ○○과장에서 ○○원으로 무보직
전보되었고, 2012. 11. 21. ○○원에서 ○○부로 전보되었으며,
2012. 12. 18. ○○부에서 ○○원으로 전보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2010. 11. 22.부터 ○○원 ○○과장으로 근무하였으나 B ○○부 인사과장과 C 인사담당 사무관으로부터 “○○원 관리자로서 역할에 이견이 있다”며 서울로 올라와야 한다고 통보 받고, 2012. 11. 8.자로 ○○원 대기발령 된 후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2012. 11. 21.자로 ○○부 대기발령, 2012. 12. 18.자로 ○○원으로 전보되었으며,

전보발령의 주된 이유는 원장(○○원장, 이하 ‘원장’이라 함)과의 갈등, 직원들의 투서 및 노조의 본인에 대한 전보요구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원장은 감사실에 투서가 들어가 감사를 받고 감봉1월의 징계를 받았고, 2012. 10월경에 또 다시 17장 분량의 투서가 ○○장에게 들어갔는바, 원장은 소청인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었을 것이라고 오해하고 원장은 징계를 받고서도 부적절한 행위를 계속하여 행정을 불투명하게 하여 관련 직원들의 심적 부담이 컸으며, 직원과 단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해 이를 방지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한 것이며,

소청인이 동 비리의혹 직원들이 더 이상 비리를 못 저지르게 하니까 이들이 ○○부 노조에 본인을 전보시켜 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보이고, ○○부 ○○실과 ○○과가 노조의 의견만 일방적으로 들어준 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며,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해 2년 이내에는 전보를 시킬 수 없음에도 구체적 설명도 없이 “○○원 관리자로서 역할에 이견이 있다”면서 “서울 소재기관으로 올라와야 한다”고 통보해 와 소청인이 반발하였음에도 대기발령 후 전보 처분하였으며,

○○부는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근무경력을 고려, 몇 가지

직군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소청인은 ○○직군에서 근무하여 왔으며, ‘공무원임용령’ 제43조 제2항 및 ‘○○부 공무원 임용규칙 제17조 제1항 (보직관리 일반원칙)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을 소청인의 경력, 적성 등과 전혀 무관한 ○○직군인 ○○원으로 일방적으로 전보발령하여 소청인이 적응하기 어려우며,

원장이 징계를 받고도 부적절한 행위를 계속하여 현재 대기발령 상태이고 이러한 기관장 밑에서 올바른 행정을 하기 위한 처신이 쉽지 않았던 점, 원장이나 직원과의 갈등은 소청인의 비리근절에 대한 의지를 바탕으로 원장과 일부 직원들의 비리를 막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직원에 대한 욕설부분도 당시 상황이 너무 답답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단 한 번의 실수였고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장도 나중에 전화 통화 중 오해로 ○○부나 ○○원에 소청인을 비난했음을 내비친 점,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어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직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전보발령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부 인사담당으로부터 사전에 전보발령 통보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부 인사담당은 기관 전보 시 소청인이 주거지를 옮겨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소청인에게 1차로 서울로의 전보가능성을 알려 주었고, 이후 소청인과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하여 전보 사항에 대해 답한 바 있는 바, 소청인은 전보발령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원장의 부적절한 행위를 방지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원장과의

갈등이 발생하였고, 소청인에게 불만이 있던 직원들을 ○○원장이 사주하여 투서하여 감사실의 특별조사를 받은 것이며, 비리 의혹이 있고 평소 소청인에게 불만이 있던 직원이 소청인을 전보해 달라고 노동조합에 요청하였고, 노동조합에서 이를 요청한 것을 일방적으로 들어주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원의 간부진에 대한 민원이 계속 제출됨에 따라 감사실에서 특별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 ○○원장과의 잦은 마찰과 직원들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폭언을 하는 등 소청인의 문제점을 파악하였고, 이에 감사실에서 동 내용을 인사과로 통보하여 소청인을 인사 조치토록 요청하였던 점,

동 내용을 통보받은 인사과에서 조직의 안정과 정상화를 위해 소청인을 일정기간 무보직 대기상태에서 교육훈련 및 과제를 수행토록 하여 관리자로서의 역량강화 기회를 부여한 후 소속 기관으로 전보를 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였던 점,

또한,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주장과 같이 ○○원장이 직원들을 동원해 소청인에 대해 투서한 것인지의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나 ○○원에 대한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소청인에 대한 제보 내용들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되어 ○○원장이 직원들을 동원하여 투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실익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와 같은 피소청인의 주장에 무리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공무원임용령에 2년 이내에는 전보를 시킬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구체적 설명없이 대기발령 후 전보 처분하면서, 그 간 ○○직군에서

근무한 적성·경력 등과 전혀 무관한 ○○원으로 전보 발령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공무원임용령 제45조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기관장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 공무원 임용규칙 제30조에서도 감사 결과 인사 조치 지시된 자와 기타 부내 인력관리 및 업무형편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공무원임용령 제43조 제2항, 공무원임용규칙 제45조 제1항, ○○부 공무원임용규칙 제17조 등에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요건과 공무원의 인적요건 등을 고려, 직무의 전문성과 능력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본인의 희망을 반영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피소청인은 직원들의 다양한 행정 경험을 위하여 분야별 순환 보직을 하고 있고, 조직통합에 따른 ○○처와 위화감을 줄이기 위하여 상호 전보 등의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었고, 조직운영상 소청인이 ○○원 등 2차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였던 점, 소청인의 현 보직과 기존 보직을 비교하더라도 유사점이 많아 보직 관리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던 점 등을 볼 때 위와 같은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정

공무원임용령 제45조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기관장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 공무원 임용규칙 제30조에서도 감사 결과 인사조치 지시된 자와 기타 부내 인력관리 및 업무형편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원의 간부진과 관련된 민원이 계속 제출되어 ○○부 감사담당관실에서 ○○원을 조사한 결과,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여 조직 전체 분위기와 직원들의 사기를 감안하지 않은 처신을 하고, 직원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언행과 폭언을 하는 등 소청인의 문제점을 파악하였고, 이를 인사과로 통보하여 소청인을 전보 조치토록 요청하였던 점,

피소청인은 소청인을 포함한 ○○원의 과장 2명을 일정기간 대기 발령 후 타 부서로 인사조치 결정하고, 이에 따라 소청인을 ○○원으로 전보발령하였던 점,

또한, 직원들의 다양한 행정 경험을 위하여 분야별 순환보직을 하고 있고 ○○처와 조직통합에 따른 위화감을 줄이기 위하여 상호 전보 등의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었던 점,

소청인에 대한 본 건 인사 처분이 관련법령을 위반하지 않았고, 국가 공무원으로서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본 건 전보 처분은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정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80. 근속승진 제외처분(근속승진 제외처분→취소)

처분요지 : 피소청인은 2013. 2. 1. 소청인에 대하여 근속승진임용에서 제외처분

소청이유 : 징계처분으로 인해 포상점수가 0점 처리되어 근무성적 미달로 근속승진에서 제외되었으나, 해당 징계처분이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됨에 따라 포상점수를 환원하여 근속승진 임용에 필요한 절차 이행 요구

결정요지 : 소청인의 근무성적평정 점수가 환원됨에 따라 근속승진 임용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함이 타당하므로 제외처분을 취소함

사 건 : 2013-87 근속승진 제외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13. 2. 1. 소청인에게 한 근속승진임용 제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피소청인은 2013. 2. 1. 소청인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점수가 미달되어 근속승진임용 제외처분을 하였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05. 7. 7. 경사로 승진하였고, 경위로 근속승진 하기 위해서는 7년 6개월이 소요되어 정상적으로는 2013. 2. 1.이 경위로의 근속승진 일자가 되나 근속승진을 위해 해당년도를 제외한 최근3년(2010년~2012년)간 근무성적평정점수가 37.5점 이상이어야 하는데 2010년도 근무성적평정 점수가 이에 미치지 못해 2013. 2. 1. 근속승진에서 제외되었으며,

2010년도 근무성적평정 점수가 37.5점에 미달하는 이유를 확인해 본 결과, 2010년도 근무평정에서 상훈점수 3점이 있음에도 0점 처리가 되었다는 것이고,

2010년도는 근무실적이 불량한 것이 아니라 불가항력적 사항 즉, 처분청에서 무책임하고 신중하지 못한 채 내린 일방적 징계처분 [2009. 12. 15. 파면 → 2010. 4. 23. 정직1월로 변경(소청) → 2010. 7. 15. ○○대 → 2010. 11. 25. 정직1월 처분 취소(○○법원)] 으로 4개월간 근무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여 객관점수에서 직장훈련 점수는 받았으나, 전문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상황에 있어 이에 대해서는 평가조차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았으며,

2010년도 근무성적평정에서 포상점수 0점의 원인이 된 2009. 12. 15.자 정직1월 징계처분이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2010. 11. 25. ○○행정법원)되었고, 경찰청장 표창(2개, 3점)이 있으므로 포상점수를 환원시켜 근속승진 임용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및 결정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규칙(경찰청훈령 제650호, 2012. 2. 5. 시행) 제6조에 따르면, 경사에서 경위로 근속승진하기 위해서는 해당연도를 제외한 최근 3년간(이건의 경우 2010년~2012년) 근무성적평정점이 각 37.5점 이상이어야 하나, 소청인의 2010년도 근무성적평정점이 37.148점으로 이에 미달하였다.

이에 대하여 소청인은 위 규칙 부표 2(포상 등 평가기준)에 의한 가점 대상인 경찰서장 표창 2회가 있고, 2009. 12. 15.자 정직1월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10. 11. 25. 취소(○○법원)되었음에도 이를 그대로 반영한 결과, 포상점수가 '0' 점으로 처리되어 근속승진에서 제외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소청인도 이 부분에 대해 인정하고 있어 다툼은 없다.

다만, 피소청인은 본건 답변서를 통해 근무성적평정 후에 발생한 사유로 정당하게 실시된 근무성적평정을 정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나 사례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소청인의 2010년도 근무성적평정이 2010. 10. 31.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근무성적 평정 그 자체에 위법이나 부당이 없다고 할 것이나, 본건 근속승진 제외처분 훨씬 이전인 2010. 11. 25.에 2010년도 근무성적 평정에 있어 포상점수를 0점 처리한 원인이 된 징계처분이 취소되는 사정의 변경이 있었고, 이 취소 판결의 효력이 원 처분일(2009. 12. 15.)로 소급하여 적용되는 점, ② 본건 소청인이 근무성적평정의 정정을 요구하는 사항은 제1평정 요소(경찰업무 발전에 대한 기여도, 포상, 직장훈련, 견문제출, 근무태도 등)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는 것으로 근무성적

평정이 완료 된 후에 그 잘못이 발견되거나 정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정하거나 근무성적평정 기관에 정정을 요구하여 그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③ 근속승진 제도의 목적이 장기간 재직한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조직의 활성화에 있고, 당해 계급에서 일정기간이 경과하고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승진이 된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어 근속승진은 심사승진 등과는 달리 인사권자의 재량이 축소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소청인의 경우, 2010년도 근무성적평정점이 기준에 미달하는 것 외에 달리 2013. 2. 1.자 근속승진에서 제외하여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고, 소청인의 2010년도 근무성적평정점을 다시 산정하여 그 결과 소청인의 근무성적평정점이 37.5점 이상인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청인의 근속승진 임용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81. 명예퇴직 무효확인 청구(명예퇴직 무효확인→기각)

처분요지 :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른 명예퇴직 처분

소청이유 : 명예퇴직 서류가 남편에 의해 작성되었고 소청인에게 강제로 사인을 요구한 것으로, 소청인은 심신 미약상태에서 무슨 서류인지도 모른 채 지적하는 곳에 사인만 한 것이므로, 이런 상황에서 제출된 사직원 등을 기초로 한 명예퇴직에 대하여 무효확인 청구

결정요지 : 소청인이 사직원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3-155 명예퇴직 무효확인 청구

소 청 인 : ○○청 기능8급 A

피소청인 : ○○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피소청인은 2009. 3. 31.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인을 기능7급 사무원으로 승진 발령하면서, 같은 날자로 소청인의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한다는 명예퇴직 처분을 하였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에 대한 2002년도 직위해제 처분에 대해서는 수긍하나, 직위해제 이전에 폭행사건의 불미스러운 일을 당했고, 직위해제 당시 정신적 충격으로 하혈을 하여 그 기간 중에 병원을 4차례나 방문하는 고통이 있었으며, 이후 업무에 복귀했지만 자존감에 상처를 받는 등 그 후유증이 심했고,

스무 살이 갓 넘은 시기에 입사한 후 24년을 몸담은 기관에서 하고 싶지 않은 명퇴를 하게 되었는데, 충격적이고 엄청난 현실에 따라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관계 서류에 서명을 했고, 인사발령장에는 ‘월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한다.’고 되어 있으나, 그 당시 제3자에 의해 타이핑 되어 퇴직 신청과 수당 신청이 이루어졌는데, 소청인은 앞이 캄캄했고 글씨체들이 보이질 않아 지적하는 곳에 서명을 했고 사인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남아 있으며 자의가 아닌 타인에 의해 강제로 병원에 후송되었고 여러 장의 용지가 전해져 사인 또는 서명을 하였는데, 후송 전에 이미 언질이 있었고 명퇴 앞에 고개를 숙여야만 했으며,

2002년도의 직위해제와 폭행 이전에는 평화로웠으나 이후 여러 가지 후유증이 찾아왔고 이 사건 명예퇴직일까지 6년여 동안 엄청난 일을 겪었는데, 소청인은 원하지 않았던 사직이라 받아들일 수 없어서 그동안 사직서의 유·무효 여부에 관해 132번 유료법률상담 등을 했는데, 무효라고 의견을 받았으며,

2002년 5월 이전에 폭행을 당하였고 2002년 5월 직위해제, 그 이후로 2009년까지 자궁부정출혈, 코뼈수술, 우울증 등의 이유로 입원 등의 고통을 겪다가 2009년 3월에 억울한 명퇴를 하게 되었는데, 병원에 있는 사람에게 소속기관장이 퇴직관련 서류를 보냈다면 이는 거부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며

① 소청인은 당시 심신이 미약한 상태로 시력도 좋지 않았는데 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이끌려 간 것이었는바, 당시 소속과장이 입원 전에 소청인에게 그만두라 하였고 제3자인 남편을 통해 정서불안정을 근거로 퇴직시킬 것을 종용하였으며 종국에는 청장이 퇴직시킬 것을 요청하였다는 점, ② ○○의학과에 입원했을 때 소청인은 약과 주사에 의해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전달되어진 서류들이 무슨 서류인지조차 알 수 없고 글씨가 두 개로 보여 읽을 수도 없는 상태에서 그저 지적인 곳에 서명을 한 것인 점, ③ 사직원을 보면, 제3자인 남편에게 당시 빈 용지가 전해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 소속, 성명, 주민번호, 서명날인은 소청인이 한 것이나 직급 등 나머지는 소청인의 글씨체가 아니라는 점, ④ 퇴직연금과 수당 청구서는 제3자인 남편이 작성하고 도장을 찍었는바 소청인과는 상관 없이 제3자와 ○○청장에 별어진 일이라는 점, ⑤ 소청인의 의견은 전혀 개진되지 않은 채 남편을 통해 모든 서류가 작성되었고 소청인은 단지 정신이 명확하지 못한 상태에서 반강제적으로 명예퇴직 서류에 서명을 하였다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 사건 명예퇴직 처분을 무효로 확인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당시 ○○청 관계자가 ‘지금 퇴직 안 하면 퇴직금조차 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남편에게 서류를 작성하게 하고 소청인의 사인을 요구케 하는 등의 반강제적 행위를 함에 따라, 사직원과 수시명예퇴직원 등이 제출된 것이므로 무효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펴보건대,

사직서의 제출이 감사기관이나 상급관청 등의 강박에 의한 경우에는 그 정도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할 정도에 이른 것이라면 그 의사표시가 무효로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에 그친 경우라면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제11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효력을 따져보아야 할 것이며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3962 판결 참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하는바, 여기서 어떤 해악을 고지하는 강박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기 위해서는 강박행위 당시의 거래관념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강박의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법질서에 위배된 경우 또는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그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의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관계기록에서 확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관계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 즉 ① 소청인은 2005년 이후로 3차례에 걸쳐 ○○병원 ○○과에 입원하여 ‘○○장애’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바 있고, 그즈음 위 치료를 위해 상당기간 병가를 실시한 사실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명예퇴직 처분이 행해진 때인 2009. 3. 31.경에도 소청인은 위 ①항의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 ③ 이러한 때에 피소청인측(○○청 관계자)이 소청인 또는 소청인의 남편에게 명예퇴직의 절차를 알려주고, 만약 명예퇴직을 하지 않았을 경우의 불이익을 고지한 정황이 있어 보이는바, 당시 피소청인측이 소청인의 신체·정신상의 장애를 이유로 직권휴직을 명한 다음, 소청인이 1년 이내에 회복되지 못하여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최종적으로

직권 면직의 처분을 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음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지금 퇴직 안 하면 명예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안내 해준 것이라 보여지고, 이는 소청인에게 어떤 해악의 고지를 통한 사직의 강박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소청인에게 명예퇴직의 방법을 통한 추가적인 금전이라는 현실적 이익을 선택하도록 하는 안내의 성격이 강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소청인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소청인은 ○○병원에 입원하여 ○○과적인 치료를 받고 있던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무슨 서류인지조차 모른 채 글씨들도 잘 보이지 않는데 제3자가 지적하는 곳에 서명을 하였던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출된 사직원 등을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펴보건대,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의원면직처분을 하는 경우, 비록 사직원제출자의 내심의 의사가 사직할 뜻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제107조는 그 성질상 사직의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그 의사가 외부에 표시된 이상 그 의사는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하는바(대법원 97누13962 판결 참조),

관계기록에서 확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09. 3월경 작성된 사직원에는 소청인이 그 소속,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자필로 기재하였고, 그 하단의 신청인 란에도 소청인의 이름을 자필로 쓴 뒤 그 옆에 사인까지 하였다는 점, ② 수시명예퇴직원과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서의 하단에도 소청인이 각각 소청인의 이름을 자필로 쓰고 그 옆에 사인을 하였는바, 이 서류들의 각 항목을 타이핑으로 처리하고 다른 사람이 대신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서류들은 위 ①항의 사직원에 기초하여

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부대서류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위 사직원보다 그 중요도가 낮아 보이는 점, ③ 2013. 3. 20.자 발행의 ○○병원 진단서를 보면, “2009년 3월초 입원 당시 소청인의 정신상태가 온전한 현실 판단 능력이 미흡하였던 것으로 추정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로 볼 때 소청인이 당시 의사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박사학위 소지자인 남편이 소청인의 사직원 제출행위를 옆에서 도와준 정황도 있어 보이는 점, ④ 한편으로, 소청인의 자필서명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는 퇴직연금 및 퇴직수당 청구서는 이 사건 명예퇴직 처분이 행해진 이후인 2009년 4월경의 행위에 해당하느바, 이는 퇴직이 확정된 사람이 퇴직연금 등을 신청하기 위한 후속조치에 불과하고 이를 다른 사람이 대신 작성하여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정당하게 행해진 명예퇴직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정

따라서 소청인의 사직원 제출에 따라 이 사건 명예퇴직 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이고, 설령 소청인이 당시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던 상태여서 온전한 현실 판단 능력이 다소 떨어져 있는 때에 해당한 데도 피소청 인측이 명예퇴직을 무리하게 권유하는 등 일부 부당한 행태를 보인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일부의 하자에 불과할 뿐 객관적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명예퇴직 처분을 무효로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82.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직위해제→취소)

처분요지 : 소청인이 ○○소장으로서 ○○소가 을지훈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을지훈련을 미 실시하여 국가 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해 직위해제 처분

소청이유 : 부하직원의 잘못된 보고로 인해 대상기관임을 인지하지 못해 을지훈련을 실시하지 못한 것으로 이것만으로 직무 수행능력 부족이라 보기도 어려우며 직위해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직위해제 처분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 : 소청인이 을지훈련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소청인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 처분을 취소함

사 건 : 2013-619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부 4급 A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피소청인이 2013. 8. 27. 소청인에게 한 직위해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소장으로 기관을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자로서, 2013년

을지연습 계획상 ○○소가 2일간 참가기관으로 선정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을지연습 실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여 을지연습을 실시하지 못하는 결과를 야기하는 등 직무수행 능력이 극히 부족하여 계속 직무를 수행할 경우 기관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2013. 8. 27.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그 직위를 해제 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2012년 및 2013년 을지연습과 관련하여, 서무 및 보안담당 주임에게 확인한 바, ○○소는 을지연습 참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연습 첫날 비상소집만 실시하면 된다는 보고를 받았고, 이후 공식적인 간부회의에서도 확인한 바, 과장도 을지연습참가기관이 아니라서 비상소집 응소 정도만 신경쓰면 된다고 하였고, 2013. 7월 초순경 을지연습 담당자가 을지연습 시행계획과 비밀문서 책자를 가지고 결재를 받으러 왔을 때 재차 ○○소가 참가기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였는데, 그때도 ○○소는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비상소집 및 안보교육만 하고 다른 을지연습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소청인은 만약 담당자가 ○○소가 을지연습 참가대상 기관이라고 보고를 하였다면 당연히 그에 따른 준비를 하도록 지시하였겠지만 참가기관이 아니라는 말에 ‘을지연습 시행계획 비밀문서 책자’를 상세히 살펴보지 않았던 것이며,

소청인으로서 부하직원의 보고가 명백히 잘못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부하직원의 잘못된 보고 또는 업무미숙을 인지하지 못하고 을지연습을 미실시하는 결과를 초래한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직위해제라는 중한 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고,

대법원에서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라 함은, 정신적·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를 의미하고,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명령위반, 직무상의 의무 위반 또는 직무태만의 행위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5. 2. 26. 83누218 판결)”고 판결한 바 있으며,

2013 을지연습 실시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은 부하직원의 잘못된 보고를 믿고 이루어진 것으로 직무수행 능력 부족에 기인한 것이 아니며, ○○소장의 주된 업무는 을지연습참가가 아니므로 이것으로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소청인은 ○○부 표창 등을 수상하고 논문을 기고하는 등 조직 기여를 인정받았으며, 2012년도 근무성적평정점수도 보통으로 미흡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직무상 명령을 위반하거나 품위 손상 없이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하였으므로 위 처분은 위법 부당하므로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대법원에서 직위해제의 법적성질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는 당해 공무원이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의 해제를 의미하므로 과거의 공무원의 비위 행위에 대하여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고 판시하였고(2003. 10. 10. 선고2003두5945 판결), 직무수행능력 부족의 의미에 대하여는 '직무수행능력의 부족이란 정신적·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현저한 부족을 의미하고,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명령위반·직무상의 의무위반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대법원 1985. 2. 26. 선고83누218 판결)하고 있는 바, 직무수행능력 부족(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을 이유로 한 직위해제 처분이 적절한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직무상의 의무위반 등의 징계사유와 구별되는 직무수행능력의 부족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그러한 사실이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반복적·누적으로 존재하였는지 여부 등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본 건은 소청인이 2013년 을지연습관련 지시 공문이 몇 차례 하달 되었음에도 ○○소가 2일간 참가기관으로 선정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을지연습을 실시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 사실에 근거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한 것인데,

소청인이 2회에 걸쳐 국가비상시를 대비한 중요훈련인 을지연습에 참여하지 아니하여 기관장으로서의 책임이나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국가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피소청인 스스로도 이를 징계사유로 판단하여 2013. 11. 7. 소청인에 대해 징계 의결(중징계)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 점,

위 대법원 판례 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직무수행능력 부족은 정신적·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입증되지 아니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명령위반·직무상 의무위반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소청인은 근무성적 평정에서도 보통이상의 평가를 받았고, 부하직원도 본건 조사과정에서 ‘항상 직원들을 배려하고, 스트레스 받는 직원이 없는지 살피는 등 온화한 리더십으로 편안하게 이끌어 직원들도 소청인에 대해 불만 없이 존경하는 편이었다고 진술하는 등 을지연습을 실시하지 아니한 이유 외에는 그 직위를 해제해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이 기관장으로서 을지연습을 시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직위를 해제하여야 할 정도의 직무수행능력 부족에 달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소청인의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에 근거한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소청인의 이에 대한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정

소청인이 기관장으로서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한 중요 훈련인 2013년도 을지연습을 시행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한 본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83. 세액산정 소홀로 부실과세 초래(불문경고→취소)

처분요지 : ○○개발에 대한 주식변동 조사와 관련하여 주식평가를 하면서 1주당 평가액 산정 시 시가가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계산하여 결과적으로 납세자에게 과다부과에 따른 부실과세를 초래한 사실로 불문경고 처분

소청이유 : 당시 조사대상자들이 주식양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그 자료는 모른 채 다른 자료를 수집하여 평가해야 했으며, 모든 주주의 개별적 사정까지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며, 열심히 노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허물인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의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 : 납세자들이 조사과정에서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비상장주식의 거래 특성상 자체 조사에는 한계가 있는 점, 소청인이 적극적으로 과세하는 과정에서 본 건 비위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함

사 건 : 2013-563 불문경고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세무서 6급 A

피소청인 : ○○세무서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13. 8. 16. 소청인에게 한 불문경고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세무서 ○○과에 근무 중인 자로서, ○○청 ○○과에 근무할 당시, (주)○○개발에 대한 주식변동 조사와 관련하여 주식평가를 하면서 1주당 평가액 산정 시 시가가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계산하여 결과적으로 납세자에게 과다부과에 따른 부실과세를 초래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에 위반되어 제78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나, ○○청장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하여 불문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조사 착수 당시 조사대상자(B, C)와 연락이 되지 않았고, 주식 매수자인 (주)○○건설을 방문 및 전화통화를 하였으나, 당해 주식 매매 당시 관계인들은 모두 퇴사하고, 서류는 지방에 보관되어 있는 걸로 안다는 모과장의 진술만 들을 수 있었으며, ○○건설(주)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상태로 지방에 보관된 서류 등은 검찰에서도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부연 설명이 있었고,

소청인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어 법인 신고내용·전자공시 된 관련보고서 및 언론보도자료 등을 수집하여 매매가액의 적정성을 검토하였으나 고가로 거래할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함)상 평가방법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과세하기에 이른 것이며, 거래 당사자간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동 법령에 따라 과세결정을 하는 것 외에 다른 방안이 존재하지 않았고,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과세자문위원회 및 과세사실판단지문위원회의 자문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들은 주식양도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주장한 각종 매각협상 등이 존재하는 사실 역시 진술하지 않는 등 주식거래 사실만 있을 뿐 납세자와 이견이 없어 위 위원회에 회부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상증법 제63조에도 비상장주식의 경우 시가가 있는 경우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상증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따르게 되어 있고 상증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과세할 경우 상당한 조세부담이 예상된다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관련서류가 없다고 하여 납세자의 말을 신뢰할 수 밖에 없었고, 더욱이 쟁점 주식은 부도난 (주)○○건설의 후신업체로 경영권 프리미엄이 존재한다고 예측하기도 어려워 과세 자문을 신청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며,

‘비상장주식의 경우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판단과 관련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서 (주)○○건설이 납세자 등으로부터 ○○

건설(주)의 주식을 취득한 것은 경영권이 필요했기 때문이고, 제3자와의 협상가액이 330억원(주당 19,894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당해 거래가액을 특수관계가 없는 당사자간 시가로 보았으나, 이 서류들은 모두 내부분서로 조사대상자들이 제출하지 않으면 조사관서에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며, 협상이 있었다고 하나 결과적으로 거래가 발생한 사실이 없으며, 반면 법인세신고서에 첨부된 주식 등 변동사항명세서상 2009. 5. 28. 쟁점 주식 전부(1,658,925주)를 채무대위조건으로 인수한 (주)○○가 질권을 설명하면서 80억원(주당 4,822원)으로 채권자와 합의하였던 사실이 공시된 감사보고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나 불복 청구과정에서 일체 언급하지 않았던 점은 납세자의 주장내용과 상반되는 부분이 있고,

○○부가 소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에 대한 평가사례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해태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결정하였다는 부분과 관련하여서도, 거래사실 없이 명부에만 등재되어 있는 모든 주주의 개별적인 사정까지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평가한 시기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한 시가적용시점에서 벗어 날 뿐 아니라 거래가 발생한 사실이 없으며,

○○청 ○○실에서 조사대상자들에게 조사기간 중 관련서류 일체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지와 그 이유를 묻는 전화를 하여 조사대상자들이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두려워 제출하지 않았다’며 자료 미제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징계양정에 참작하지 않았고,

조사과정에서 납세자만 보유한 내부분서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 불복 과정에서 패소하지 않았거나 추가 조사가 가능했을 것이나, 납세자만

보유할 수 있는 서류가 일체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증법 평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고, 부도난 법인의 주식에 프리미엄이 존재할 것을 예측하기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하였으며, 본건과 같이 납세자가 결정적인 문건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불복 시 제출하여 승소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납세자의 구체적인 진술이나 제출서류 없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현저하게 고가로 거래된 것을 시가로 인정하여 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 소청인이 업무처리에 미진한 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려운 일을 술선 수범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허물로 공무원의 기본을 망각하거나 업무를 해태한 것이 아닌 점 등을 감안하여 심기일전하여 더욱 성실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1945호, 2012. 7. 1. 시행) 제32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조사과정에서 납세자와 이견이 있거나 단독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법령해석사항이나 사실판단사항에 대해 자문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본 건은 조사대상자들이 조사청에 주식양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적극적으로 이견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소청인은 과세기준 및 사실판단과 관련하여 자문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증법 제60조에서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관련법령(상증법 제63조 1항 다목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등)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보충적 평가방법)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과세기준 및 과세사실판단
자문은 납세자와 이견이 있거나 단독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사실이나
법령해석 사항이 있는 경우에 신청하는 것으로 본 건 조사과정에 이
같은 사정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종합해 보면, 조사의 신중성과
국세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성은 있어 보이나,
본 건과 같은 상황에서 이를 결락하였다고 하여 소청인에게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 과세적부심사위원회에서 인용의 판단근거로 삼은 자료
들은 내부분서로 조사대상자들이 조사관서에 제출하지 않는 한 확인하기
어렵고, 조사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관련법령에 의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것이며,
불복청구 과정에서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인용된 사건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조사과정에서 납세자에게 주식거래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납세자들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비상장
주식은 당사자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사청에서 시가
또는 거래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고, 주식을 매입한
(주)○○ 또한 사실상 매입자인 (주)○○건설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어 이 같은 사정을 상급자에게 보고
하고 관련 법령(상중법 제60조 및 제63조, 동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해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 점, 조사대상자들이 과세예고에 따른 불복청구
과정에서야 주식거래 관련 자료 및 사정 등을 주장하여 과세적부심사
위원회에서 ‘과세예고통지 부당’ 결정을 한 것으로 부실과세(과다부과)에

있어 소청인에게만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소청인의 이에 대한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

다만, ① 소청인이 납세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얼마나 성실히 요청하였는지 등에 대해서는 입증할 자료(공문서 등)가 없고, ②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두4447, 2004. 11. 26. 선고)에 의하면,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상증법 시행령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인 바, 즉 회사의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이를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조사대상자(B·C)들은 사실상 (주)○○건설의 최대주주의 위치에 있어 ‘경영권이 포함된 주식거래’로 확인해 볼 수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과실이 인정된다.

다음으로, 2009. 5. 28. 쟁점주식을 채무대위조건으로 인수한 (주)○○가 질권을 설정하면서 80억원(주당 4,822원)으로 채권자와 합의한 사실이 감사보고서를 통해 확인되나 불복청구 과정에서 언급하지 않았으며, ○○부가 소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에 대한 평가사례는 시가적용 시점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모든 주주의 개별적 사정까지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상증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에 의하면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는 것으로 납세자들이 (주)○○건설의 주식을 (주)○○건설에 양도한 날이 2008. 3. 13.으로 확인되는 이상 이를 과세적부심사위원회에서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부당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부의 쟁점주식에 대한 평가사례 등은 과세적부심사위원회에서 쟁점주식에 대한 평가의 한 사례로 언급한 것이고, 본 건은 주식평가액 산정시 시가가 있음에도 확인하지 아니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계산하여 납세자에게 과다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것이므로 징계사유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과세적부심사위원회에서는 납세자가 불복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판단한 것인데 반해, 세무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들이 이 같은 자료들을 일체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조사청에서 직권으로 조사하기에도 한계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주장도 이유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 정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2012. 10. 22., ○○청)와 같이 소청인이 (주)○○에 대한 주식변동 조사와 관련하여 주식평가를 하면서 시가가 있음에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계산하여 부실과세를 초래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나, 소청인이 조사대상자들(B·C)에게 주식거래 관련 자료 요청을 하였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자체 조사에도 한계가 있어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에 관련법령에 의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계산하기에 이른 점, 납세자들이 조사과정에서는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가 불복청구 과정에서야 이를 제출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서 인용한 것으로 본건 인용 결정에 있어 소청인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소청인이 적극적으로 과세하는 과정에서 본건 비위가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보충적 평가방법의 산식

오류 부분에 대해 소청인 스스로 그 잘못을 인정하였으나, 보충적 평가액이 시가 인정과 함께 그 효력을 상실하여 산식의 오류 문제는 그 의미를 상실하였고, 이를 이유로 해당 징계위원회에서도 책임을 묻지 않기로 의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소청인에게 본건에 대한 징계 책임(견책에 대한 표창감경 적용)을 묻는 것은 다소 과중하다 할 것이고, 25년 6개월간 근무하면서 국세청장 표창을 3회 수상하는 등 비교적 성실히 근무해 온 점, 처분청의 평가가 좋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청인이 본 건을 거울삼아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84. 특정 수용자에게 편의 제공(불문경고→기각)

처분요지 : 소관이 아닌 업무를 처리하면서 소속과장이나 상급자에게 어떠한 보고와 지시를 받음 없이 독단적인 업무처리와 허위의 사실로 외부정문 근무자로 하여금 허가되지 않은 차량을 진입토록하여 특정 수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한 비위로 불문경고 처분

소청이유 :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결과적으로 특정수용자에 대한 편의제공, 지시사항위반 등이 이루어졌으나 대가를 바라고 한 행위가 아니고 선의에 의한 행동이므로 원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 요구

결정요지 :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3-664 불문경고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교도소 6급 A

피소청인 : ○○교도소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교도소소 ○○과에 근무하는 자로서, ‘2013년 광복절

기념 가석방' 대상자 출소 시 가석방 대상자인 B(목사)에 대한 ○○신문의 취재요청 등과 관련하여 “B를 CRPT(기동순찰대)로 하여금 외부정문까지 동행하여 물리적 충돌에 대비하라”는 기관장의 지시가 있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고,

2013. 8. 12.(월) 13:00경 ○○교도소 ○○과에 근무할 당시 종교위원으로 알고 지냈던 C목사로부터 B가 몸이 불편하니 차량으로 모셨으면 한다는 부탁을 받고, 같은 월 14일 09:20경 외부정문 근무자에게 종교행사와 관련된 회의가 있어 교정위원 한 분이 은색 ○○차량으로 오시면 보내달라는 허위의 사실로 부탁하여 ○○교회 장로 D의 ○○차량을 구매 사무실 옆 주차장에 대기하도록 하여, 같은 날 10:00경 가석방으로 출소한 B가 위 차량에 탑승한 채 외부정문을 통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외부정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신문 취재기자 및 ○○교회 신도 등으로부터 교도소 측이 특혜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항의시위와 인터넷 신문의 의혹성 언론보도의 원인을 제공하여 교정행정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등 기관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발생시킨 사실이 있다.

소청인은 본인의 소관이 아닌 업무를 처리하면서 소속과장이나 상급자에게 어떠한 보고와 지시를 받음 없이 독단적인 업무처리와 허위의 사실로 외부정문 근무자로 하여금 허가되지 않은 차량을 진입토록 하여 특정 수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게 됨으로써 기관장의 업무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고 CRPT와 가석방담당자와 외부정문 근무자의 정상적인 업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결과적으로 교정행정의 신뢰를 추락시켰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사건 당시 ○○교도소로 전입된 지 채 3주가 되지 않아 업무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점, 기관장의 지시사항과 당시 현장 상황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행한 비위인 점, 대가성이 없는 선의의 행위인 점, 징계의 감경사유인 ○○부장관 표창 공적을 적용하여 불문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관할구역에서 가석방 상태인 자에 대하여 차량을 이용한 출소를 금지한 규정이 없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지참해야 할 물건이 많은 경우 차량을 진입시켜 출소하도록 배려한 사례가 있었으며, 특히 B는 가석방 상태이긴 하지만 석방절차를 통해 출소한 상태의 신분이므로 징계이유 중 특정수용자에 대한 편의제공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보고할 만한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하지 않았고,

당시 B에 대한 취재요청이나 B 사건 관련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외부정문 앞에서 B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과 그와 관련된 기관장의 지시사항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동료직원들의 정상적인 업무집행을 방해할 고의성이 없었으며,

소청인이 외부정문에 차량진입을 부탁한 시간은 면회 등 민원인들의 출입이 빈번한 시간대로 전화로 그 과정을 길게 설명하기가 번거로워 업무의 편의상 교화행사 차 방문하는 위원이라고 하였을 뿐 고의로 속이려고 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은 결과에 이르는 과정에 불법이나 규정을 위반함이 없었음은 물론 어떠한 대가나 이익을 바라고 한 행위도 아니었고 거동이 불편한 수용자가 온전하게 귀가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선의의 행동이었으며, 더구나 특정수용자에 대한 편의제공이나 지시사항의 위반, 동료근무자의 업무방해 부분은 설령 결과적으로 그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우 억울하고 인정하기 어렵고,

약 14년의 공직생활 동안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한 점, 단 한 번의 징계나 업무적 과오 없이 근무하였고, 추후 보다 신중하고 사려 깊게 검토하여 업무를 수행할 각오인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B와 관련된 일련의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특정수용자에 대한 편의제공이나 지시사항의 위반, 동료 근무자의 업무방해 부분은 설령 결과적으로 그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우 억울하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제출된 자료 및 관련 법령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가석방 상태인 자의 출소와 관련하여 그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한 세부규정 등은 제출되어 있지 않으나, 이 사건 당일인 2013. 8. 14. 08:50경부터 09:00경 사이에 가석방 대상자인 B 목사를 기동순찰대원으로 하여금 외부정문까지 동행하여 물리적 충돌에 대비하라는 기관장의 지시가 있었던 점, ② ○○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부령) 제16조(교도소·구치소) 제9항, 제11항 및 제17항에 따르면 보안과장은 수용자의 구금 및 체호, 수용자의 상벌·출정·접견·무기 및 경비사항을, 사회복귀과장은 수용자의 교육·교화·생활지도 및 서신, 귀휴와 석방자 보호사항을, 분류심사과장은 가석방 및 가석방심사위원회 운영사항 등을

분장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③ 소청인은 이건과 관련하여 ‘2013. 8. 12. C 목사로부터 같은 월 14일에 가석방으로 출소하는 사람이 차량으로 출소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고, 사건 당일인 8. 14. 09:20경 외부정문 근무자에게 “업무상으로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차량을 위로 올려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였으며, 같은 날 09:30경 정문 밖에서 기다리다 B를 태우러 온 차량을 구매사무실 옆 주차장으로 안내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2013. 8. 14. 10:00경 가석방으로 출소한 B 등 12명이 ○○교도소 관할구역 내에서 대열을 이루어 이동하다 B만 위 차량에 탑승한 채 외부정문을 통과한 점, ⑤ 이로 인하여 특혜 의혹 관련 항의 시위 및 언론보도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징계사유는 사실로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정

소청인은 직무특성상 고도의 근무기강이 요구되는 교정공무원임에도 소관 업무가 아닌 사항을 처리하면서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의 사실로 다른 근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결과를 야기한 것은 사실인 점, 소청인의 행위로 인하여 특혜 제공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등 교정행정의 신뢰를 실추시킨 점,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징계의 종류인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중에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한 뒤 소청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 대부분을 참작하여 불문경고로 의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이 비위의 정도에 비해 과중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85. 시보경찰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직권면직→취소)

처분요지 : 소청인의 징계 전력, 시보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청인의 정규임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직권면직 처분

소청이유 : 시보경찰공무원으로서 임용에 필요한 교육성적, 학업성적 등 소청인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징계처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직권면직 처분하는 것은 가혹하여 원 처분의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 : 징계전력 외에 자질, 직무수행능력 등에게 임용을 배제할 정도의 문제점을 발견하기 어렵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

사 건 : 2013-795 직권면직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순경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13. 11. 11. 소청인에게 한 직권면직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2013. 7. 14. 22:45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주취상태로 약 15m 운전하여 피해차량의 뒷범퍼를 충격, 전적 30만원 상당의 물적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2013. 7. 22. 해임 처분된 뒤 2013. 11. 1.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정직3월로 감경 결정된 사실이 있고, 정규임용심사위원회에서 경찰공무원법 제10조,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0조 및 제21조, 동 시행규칙 제9조 및 제10조, 시보경찰관 인사관리지침 등 근거법령과 2013. 7. 19.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의 자료, ○○경찰서 정규임용심사자료심의회 자료 등을 고려하여 심의한 바,

위 징계처분 사실과 채용단계 또는 정규임용 이후에는 부적격자를 배제하는데 한계가 있어 그 임용예정자의 신분·직무를 1년간 미리 부여하여 경찰관으로서의 자질과 직무수행능력 등을 관찰한 후 정규 경찰공무원으로의 임용 적격성 여부를 엄격하게 결정하는 시보제도의 취지, 경찰청의 시보경찰공무원 임용심사 강화계획에서 '정규임용 제의 사유에 해당할 때 엄격하게 적용하고 특히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 정규 임용 배제 원칙' 지시가 하달되어 시행중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소청인은 정규경찰공무원으로서의 임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므로 직권면직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당시 소청인이 인사발령나기 전날이라 갑자기 지구대에서 회식을 주선해 주었고, 팀원들과 회식 후 대리운전기사와 2회 가량 통화했으나 기사가 소청인이 있는 장소를 알지 못하여 큰 길로 오라고 한 뒤 약속장소까지 약 15m 운전하던 중 피해차량 범퍼와 접촉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피해가 경미하고 혈중알콜농도도 0.059%로 음주운전 수치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로 형사처분을 받았고, 해임 처분되어 소청심사에서 정직3월로 감경된바 있다.

소청인은 음주운전사고로 지시명령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처분청에서 경찰공무원임용령 제20조 제2항에 따라 직권면직 처분한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으나,

시보경찰공무원 인사관리지침 제14조의2 정규임용의 특례에 의하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규임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시보경찰공무원 정규임용 절차 강화방안에도 ‘징계를 받았거나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정규임용 배제를 원칙으로 하되, 배제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명기하여 경찰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보경찰공무원 인사관리지침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신상자료, 책임지도관의 의견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도록 되어있는바,

소청인은 경찰학교 교육성적이 만점의 6할, 근무성적이 만점의 5할 이상에 해당하는 등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태도에 대한 여러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음에도 소청인에 대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정직3월의 징계전력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직권면직 처분한 것은 가혹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처분에 대해 이익교량 원칙을 이유로 대법원 취소판결 받은 사례, 어려운 가정형편, 해임처분 기간 중 심장발작 환자를 심폐소생술로 살려내어 ○○청으로부터 ‘하트세이프 인증서’와 ‘○○본부장 표창’을 수상한 점, 소속팀장·동료경찰관들이 탄원서를

제출해 준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시보경찰공무원 인사관리지침 제14조의2에 따라 징계를 받았더라도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면직처분에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소청인의 근무실적, 책임지도관 의견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볼 때 징계 받은 사실만으로 직권면직 처분한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건대,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처분임이므로 특별한 위법사항은 발견되지 않으나,

소청인은 ① 경찰공무원임용령 제20조 제2항 제2,3호 관련, 교육훈련 성적이 평균 이상이고 중앙경찰학교 생활기록에 생활규칙 위반으로 일부 감점 사실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평가되어 ‘극히 불량한’ 점은 발견되지 않고, 제2평정요소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점이 16.500점으로 만점의 5할 이상에 해당하는 점, ② 같은 령 제47조 관련, 지능저하·판단력부족, 고의적 직무기피, 인격장애·알콜중독 등 정신장애, 도덕적 결함 등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평가된 점, ③ 같은 령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1,4호 및 시보경찰공무원 인사관리지침 제9조 관련, 근무실적·근무수행태도 평가에서 모두 ‘우수(상)’평가이고, 범인검거 실적 및 단속실적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소속 상사 소견이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나, 음주운전 의무위반으로 부적격’ 의견으로서 징계사유로 인한 부적격 평가로 보이는 점, ④ 시보경찰공무원인사관리지침 제13조

제2항 관련, 책임지도관 소견이 ‘업무능력과 태도 등에서 원만하며 임용이 적합함’ 의견이고, 함께 근무한 동료평가에서도 도덕성·성실성·협동성·책임감 항목에서 모두 ‘상’평가를 받은 점 등이 확인되고, ⑤ ○○경찰서의 정규임용심사자료심의회에서 부적합 판단을 하였으나 ‘음주운전 교통사고 야기로 인한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부적합’ 의견임을 감안하면 이는 소청인의 징계처분 사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이 음주운전사고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는 사실 외에 직무수행능력에 있어 특별히 배제되어야 할 사유를 발견하기 어렵고, 이와 같은 사정들로 미루어 소청인에 대한 정규임용부적격 판단의 근거는 징계처분 사실에 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한데,

징계사유인 음주운전사고 비위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중대 의무위반행위인 것은 분명하나, 이에 대한 책임으로 이미 징벌적 제재로서 징계처분을 받았고, 당초 해임 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비위의 정도에 비해 과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정직3월로 감경된 사실을 감안하면, 이것만으로 소청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기에 다소 부족함이 있어 보이고, 시보경찰공무원 인사관리지침 제14조의2에 따라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규임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직권면직 사유가 있더라도 예외로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찰공무원의 자질과 능력에서 대체로 양호한 평가를 받은 소청인에 대한 본 건 직권면직 처분은 적정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정

시보임용제도가 시험을 통해 판단하기 어려운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적격성을 보다 면밀하게 판단하고자 하는 취지임에 비추어 볼 때 시보경찰공무원의 신분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것은 비난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고, 경찰청이 온정주의 및 형식적 심사라는 시보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2010. 8. 11. 시보경찰공무원 임용심사 강화 계획을 하달하여 ‘음주운전 등으로 감봉 이상의 징계 처분시’ 정규임용에서 배제하도록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시보경찰공무원의 정규임용 여부는 인사권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는 사항이라고 하겠으나,

위와 같은 경찰청의 방침은 시보경찰공무원이 정규경찰공무원으로서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대상자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취지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고, 재량행위라 할지라도 당해 처분에 의해 달성하려는 공익목적과 이로 인해 개인이 입을 불이익을 비교교량 하여 판단해야 하는 점,

정직3월의 징계전력 외에 소청인의 자질과 직무수행능력 등에서 정규임용에서 배제할 정도의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하기 어렵고, 소청인이 음주운전 과오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복직된 후 바로 면직처분 되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기회가 없었던 점, 징계기간 중 심장발작 환자를 심폐소생술로 살려내어 ○○청 표창장을 받은 점, 시보경찰공무원 인사관리지침 제14조의2 단서규정의 취지 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본 건 처분은 소청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86. 운전면허 취소로 인한 직권면직(직권면직→기각)

처분요지 :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8호에 의한 직권면직 처분

소청이유 : 운전면허가 채용당시 필수 자격요건이 아니었으며 면허
취소가 되어도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직권면직
사유가 되지 않으며 그간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등을 감안
하여 원 처분의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 : 처분절차 및 그 내용에 특별한 하자가 없고 소청인이
집배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사유에 따른 처분이므로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3-181 직권면직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우체국 기능7급 A

피소청인 : ○○우체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우체국에서 집배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2012. 12월경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해 ○○군 ○○면 소재지에서 같은 면 ○○리
소재까지 약 500미터를 운전하다 음주혐의로 단속되었고, 당시 얼굴이

불계 상기되고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음주 운전 가능성이 상당해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총 4회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아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 취소·정지) 제1항 제3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있고,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고 국가공무원복무·징계 예규의 ‘공무원 음주사건처리 규정’과 우정사업 본부소속공무원 징계양정세칙 제2조 제1항 ‘음주운전사건 징계의결 요구기준’에 따라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고,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 취소된 사실이 분명하고 집배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경우 운전면허 취득 및 보유는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한 자격요건일 뿐만 아니라 임용된 후에도 공무원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요건이며,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운전할 수 없게 된 것은 소청인의 평소 근무실적 등이 우수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소청인을 직권면직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이 집배원 임용당시는 주로 자전거로 배달이 이루어져 운전면허가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증이 아니었고, 집배공무원이 배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편물 분류내근 및 우편집중국 근무 등 다른 보직을 수행할 수도 있어 운전면허 취소로 업무수행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단언할 수 없고, 현재 면허취소 재결 행정심판 중에 있어 2종 소형원동기 면허가

구제되면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

대선으로 업무량이 많은 상황에서 후배직원들과 저녁 겸 음주 후 대중교통이 없는 산간지역이라 어쩔 수 없이 운전하게 된 점, 우정사업본부에서 음주운전으로 직권면직 된 사례가 없고 대부분 견책이나 전보 등으로 그치는 점, 음주단속 시 입게 될 피해만 염려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한 무지함, 관련 형사재판에서도 정상이 참작되어 선고유예의 관대한 판결을 받은 점 등으로 미루어 신분을 박탈하는 직권면직 처분은 가혹하다고 생각하고,

평소 우수한 근무실적으로 평가받는 점, 지역주민이나 어르신 봉양에 힘써온 점,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 변호사 선임조차 못하는 등 딱한 사정,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남은 정년을 공직에 봉사할 수 있도록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임용 당시는 자전거로 배달이 이루어져 운전면허가 필수자격요건이 아니었고 집배공무원이 우편배달 외에 다른 업무도 수행할 수 있으며 면허취소 행정심판이 진행 중에 있어 원동기면허가 구제받으면 면직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직권면직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건대,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해당직급·직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관할 징계위원회 의견을 들어 직권면직 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소청인은 공무원임용령 제3조 제3항 별표2의 기능직공무원직급표상 ‘정보통신현업’ 직렬로서 운전을 주된 업무로 채용된 ‘운전’ 직렬과는 구별되고, 도보 등을 통한 우편배달이나 그 외 다른 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으나,

우편배달 및 택배가 소청인의 주된 업무이고 현재 배달업무의 특성상 운전면허가 없이는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점, 이로 인해 동료들에게 업무를 전가시키는 불편을 끼치게 되고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점, 집배원은 일정한 자격요건을 전제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의해 채용하고 운전면허(제2종 보통면허이상 소지자)가 필수 자격요건인 점, 「국가공무원의 복무·징계관련 예규(안전행정부 예규)」에 따르면,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직권 면직 또는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하면서 그 대상으로서 운전원과 집배원을 명기하고 있으며,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징계양정세칙(우정사업본부 훈령)」에도 집배원을 운전업무관련 공무원으로 특정해 직권 면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집배원이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사실상 담당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8호 사유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에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채용당시는 운전면허가 자격요건이 아니었다고 하나, 소청인은 ○○. ○○. ○○. 운전면허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 ○○. ○○. 집배원으로 임용된 사실이 확인되고 현재 운전면허가 집배원의 채용요건이며,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 제기된 상태라고 하나 기각결정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소청인은 이전엔 직권면직한 사례가 없고 견책이나 전보에 그쳤을 뿐이어서 형평성에 어긋나고, 형사재판에서도 선고 유예된 점, 그간 근무실적이 우수하고 성실히 근무한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건대,

본 건 처분은 소청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이로 인해 집배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결과를 바탕으로 내려진 처분인바,

①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라는 소청인의 위법행위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우편배달과 택배 업무를 수행하는 집배원으로서 운전면허가 취소됨으로서 담당 직무를 사실상 수행할 수 없게 된 점, ② 도보 등 다른 방법으로 배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필연적으로 동료들에게 업무를 전가시키게 되어 조직 전체의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점, ③ 운전면허가 취소된 집배원의 경우 직무수행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어 더욱 비난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강등이나 정직에 그치는 처분을 하여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조직의 효율적 인력운용을 저해하는 것이 묵인되어 온 측면이 있는 점, ④ 최근 이와 같은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우정사업본부에서 처벌기준에 부합하는 엄격한 처분을 하도록 방침이 하달되었고, 소청인은 그 이후 의무위반 행위를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본 건 처분에 이른 점, ⑤ 소청인도 위와 같은 방침의 취지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는 점, ⑥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등 처분 절차상 위반 사항이 없고 징계위원회에서 5명 전원일치로 '직권면직 타당'이 결정된 점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할 때, 본 건 처분에 있어 재량권이 일탈·남용된 특별한 흠결은 발견하기 어렵다.

4. 결 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건 직권면직 처분은 절차 및 그 내용에 특별한 하자를 발견할 수 없고, 소청인의 중한 과실 책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사실상 집배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사유에 따른 처분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이루어진 적정한 처분이라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제3편 형식요건

87. 징계시효 도과(견책→취소)

처분요지 : 같은 팀의 부하직원인 경장 B가 2009. 5월~2010. 4월
경까지 불법사행성게임장 업주로부터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하면서 단속관련 정보를 유출한 데 대한 감독책임
으로 견책 처분

소청이유 : 평소 금품수수 등의 비위행위를 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교양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으나, 경장 B의 지능적이고
치밀한 비위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감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던 점, 징계시효가 완성된 뒤에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 요구

결정요지 : 징계시효가 완성된 비위를 대상으로 하여 위법하므로
원 처분을 취소함

사 건 : 2013-13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12. 12. 17.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9. 4. 10.부터 2010. 2. 2.까지 ○○경찰서 ○○계장,

2010. 2. 3.부터 2010. 10. 4.까지 ○○파출소 ○○팀장의 직위에 각 있었던 자로서,

당시 부하직원인 경장 B가 2009. 5월경부터 2010. 4월 초순경까지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직무에 관하여 불법사행성게임장 업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면서 경찰의 게임장 단속 관련 정보를 유출하는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는 등 소속직원에 대한 1차 관리·감독의 직무를 태만히 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경찰공무원법 제18조 제2항 등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2012. 4. 12. 금품수수로 파면된 경사 C의 1차 감독자로 상훈감경에 의한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평소 철저한 교양 감독 등 감독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인정되는 점, 책임을 통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건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2009. 4. 20.부터 2010. 10. 4.까지 경장 B와 함께 근무하면서 ○○과 ○○계장 및 ○○파출소 ○○팀장을 할 당시인 2009년 초경에는 전국에서 일부 경찰관들이 불법게임장 업주와의 부정행위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을 때인데, ○○경찰서장은 ○○과 지역적 연고가 전혀 없는 소청인을 불법게임장 단속을 주 업무로 하는 ○○계장에 발령하였던 것이고, 위와 같은 사회적 상황과 경찰서장의 의중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소청인은 ○○계장에 발령을 받은 날(2009. 4. 20.)

부터 조·석회 시간을 이용하여 거의 매일같이 금품수수 등의 비위 행위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교양하며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지켜줄 것을 강조하였고, 비위요인 차단을 위해 3인 1조로 단속팀을 운영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과 ○○팀에서 장기간 근무한 경장 B의 지능적이고 치밀한 비위 행위, 즉 업무시간 외에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하여 사적 공간에서 은밀하게 단속정보를 누설하고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감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고,

B의 비위행위 종료일은 2010. 4월 초순이고 이에 대한 감독책임의 시효기간은 2년이 경과된 2012. 4월 초순까지이므로 그 징계시효가 완성된 뒤에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으며, 피소청인은 ‘수사개시 통보에 따른 징계절차 중지’를 통해 시효를 정지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소청인은 2012. 1. 30. 16:40경 징계 절차 중지사실을 전화로 통보받았고 2012. 3. 5.경 B에 대한 공무원 범죄처분결과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공무원징계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12. 4. 4.까지는 징계의결요구가 있었어야 할 것인데 2012. 12. 6.에야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보받는 등으로 징계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었고,

불법제임장 처결을 위한 단속 등에 최선을 다하여 2009. 7. 31.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점, 부하직원들의 부정행위 사전 차단을 위해 노력하였고 21년 4개월 동안 성실히 근무하면서 30여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가.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및 1차 감독 책임 관련

1) 경장 B는 2008. 10. 15.부터 2010. 2. 2.까지 ○○경찰서 ○○계에서, 2010. 2. 3.부터 2010. 10. 4.까지 ○○경찰서 ○○파출소에서 각 근무하였다.

2) 소청인은 2009. 4. 10.부터 2010. 2. 2.까지 ○○경찰서 ○○과 ○○계장으로, 2010. 2. 3.부터 2011. 1. 11.까지 ○○경찰서 ○○지구대 ○○팀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위 B를 부하직원으로 관리하는 1차 감독자의 지위에 있었는바, 소청인의 감독책임기간은 두 사람이 함께 근무한 2009. 4. 10.부터 2010. 10. 4.까지에 해당한다.

3) 2011. 12. 19. 09:10경 ○○지방검찰청은 B를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하였고, 같은 달 27.경 피소청인(○○경찰서장)에게 경장 B에 대한 공무원범죄 수사개시를 통보하였다.

4) 이후 피소청인은 2012. 1. 5.경 위 수사개시 통보에 따른 징계 절차 중지를 내부결재로 처리한 뒤, 같은 달 30.경 전화상으로 위 징계 절차 중지사실을 소청인에게 통지하였다.

5) ○○지방검찰청은 경장 B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2. 1. 6.경 ○○지방법원에 공소를 제기한 다음, 피소청인에게도 이와 관련한 공무원범죄처분결과(뇌물수수 혐의)를 통보해주었고, 2012. 2. 23.경 경장 B에 대한 공무원범죄처분결과(범인도피) 추가 통보를 해주었다.

6) 피소청인은 위 5항의 ‘공무원범죄처분결과 추가 통보서(범인도피)’를 2012. 3. 5.경 접수하였는데, 그 이후로는 검찰 등으로부터 경장 B에 관한 수사결과를 통지받은 사실이 없다.

7) 2012. 11. 23. ○○지방법원은 경장 B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고 위 B는 항소를 제기하여 계속 다투는 중이다.

8) 피소청인은 2012. 12. 5. 소청인에 대하여, 위 B에 대한 1차 감독책임을 이유로 징계제의결을 요구하였고,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는 2012. 12. 14. 소청인에 대하여 견책을 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소청인은 2012. 12. 17. 소청인에게 견책 인사발령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이 징계시효가 완성된 사실에 근거하여 위법한 지 여부
징계 사유의 시효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은, ‘징계 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법원은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은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징계권자가 일방적으로 그를 징계할 수 있었음에도 그 행사 여부를 확정하지 아니함으로써 당사자로 하여금 상당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하는 것을 방지하고 아울러 징계권자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징계권 행사를 게을리 하여 당사자로서도 이제는 그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된 상태에서 징계권자가 새삼스럽게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도 반하는 것이 되므로 위 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징계권행사에 제한을 가하려는 취지에서 둔 규정으로서 그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고 있는 점(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4650 판결 참조), 경장 B의 금품수수 및 범인도포 범죄행위에 대하여 소청인이 1차 감독상의 책임을 져야 하는 직무태만의 징계시효는 2년을 적용해야 하는 점, 경장 B의 마지막

비위는 ‘2010. 4월 초순경 D로부터 100만원을 수수한 비위’이고, 소청인이 위 마지막 비위 당시에 경장 B의 상관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이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12. 4월 초순경에는 위 감독책임에 관한 징계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소청인이 부하직원(경장 B) 감독소홀에 관한 책임을 물어 소청인을 징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012. 4월 초순경까지 관할 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결의 요구를 마쳤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피소청인은, ‘징계절차를 중지한 사건의 징계시효는 징계의결 시까지 중지 상태에 있게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펴보면,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2항은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3조의2 제2항은 ‘위와 같이 제83조 제2항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징계사유의 시효기간(2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시효기간은 제83조 제3항에 따른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검찰청은 2012. 2. 23.경 경장 B의 공무원범죄처분결과 추가통보서(범인도피)를 피소청인에게 보내줌으로써 최종적으로 국가 공무원법 제83조 제3항에 따른 수사의 종료 통보를 하였고, 피소청인이

이를 2012. 3. 5.경 접수하였던 점, 피소청인이 2012. 1. 5.경 관계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청인에 대한 징계절차를 중지해두었다고 하더라도, 위 수사 종료 통보서를 접수한 2012. 3. 5.로부터 1개월이 지나기 전인 2012. 4. 5.경 이전에는 소청인에 대한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였어야 하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소청인은 위 기간 내에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지 않았다가, 경장 B에 대한 형사1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2012. 11. 23.)된 뒤에서야 비로소 소청인에 대한 징계의결의 요구(2012. 12. 5.)를 하였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에 대한 징계사유의 시효기간인 2012. 4월 초순경 또는 2012. 4. 5.경 이전까지, 피소청인이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지 않았다가 그 징계시효가 완성된 뒤에서야 비로소 관련 징계절차를 개시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소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정

따라서 이 사건 감독책임 소홀 비위의 내용과 그 정도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징계시효가 완성된 비위를 대상으로 하여 위법하므로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88. 소청제기기간 도과(파면→각하)

처분요지 : ○○청 ○○과 근무 시, 2013. 9. 13.~23.까지 피의자에게 전화하여 사건무마 명목으로 뇌물을 요구한 비위로 파면 처분

소청이유 : 본 건은 함정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실제적으로 단 1만원도 수수하지 않았고, 수사를 잘 처리하려는 공명심에서 범죄에 이른 점 등 제반 정상을 감안하여 원 처분의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소청심사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각하함

사 건 : 2013-805 파면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를 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으로서, 2013. 7. 10.부터 2013. 9. 23.까지 ○○청 ○○과 ○○팀 ○○요원으로 근무할 당시인 2013. 7. 20.경 같은 과 2팀에서 착수한 사건 외 B에 대한 거액의 출처불명 자금의 증여세 포탈혐의 및 자금의 해외 반출

협약에 대한 계좌추적 지원근무를 하면서,

2013. 9. 13. 12:20~16:40경까지 ○○경찰서 ○○과 진술 녹화실에서 C의 위 범죄협약에 대한 자금형성의 중요 참고인이자 약 30년간 부하 직원이었던 B를 조사하면서 “C 회장은 100퍼센트 구속되고, 당신도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100퍼센트 구속된다. 또한 엄청난 세금이 추징되고 해외로 빼돌린 돈도 모두 알고 있다”고 겁을 주자, 위 B로부터 “좋은 길이 없습니까?”라는 제의를 받고 “○○원 만 주면 구속이 안 되게 하고 처벌수위를 낮출 수 있다.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할 수 있다”고 하고,

이후 ○○청으로 복귀하여 같은 날 23:11경 ○○구 ○○동 소재 ○○청 후문 뒤 공중전화기를 이용하여 C에게 전화를 걸어 “B를 만났던 사람이다. ○○원이 필요하다. 사건 청탁을 할 거면 물어보지 말고 ○○개를 준비하라”는 요구를 시작으로,

같은 달 23. 12:32경까지 ○○청 후문 공중전화 4개소 및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대포폰을 이용하여 9회에 걸쳐 C에게 전화를 걸어 “현금을 준비하여 배낭에 넣어 ○○역으로 와서 내가 정하는 자리에 놓아라, 국세청 추적은 걱정하지 말고 현금과 골드바를 준비해라, 더 안전하게 통화할 수 있도록 당신 머느리 명의로 휴대폰 2개를 만들어 돈과 함께 달라, 그리고 나에게 연락할 일 있으면 대포폰에 “?”를 찍으면 연락을 주겠다”라고 하는 등 수 차에 걸쳐 사건무마 등 직무와 관련하여 ○○원의 뇌물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소청인은 11년 11개월간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 없이 성실히 근무

하였고, 경찰청장 표창 2회 등 총 7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으나, 금품·향응수수 비위로 정상참작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고액의 뇌물을 요구한 부정한 경찰관으로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의 위신을 크게 실추시키는 등 감정적용의 여지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본 건과 관련하여, ○○지방법원으로부터 2013. 11. 29.자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그 잘못을 반성하고 참회의 시간을 가지며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자원봉사를 하며 자숙하고 있고, 위 법원에서 성실하게 경찰업무를 수행한 부분, 동료경찰관들의 탄원서, 장애인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부분 등으로 선처를 받게 되었으며,

범죄수사를 위한 동기에서 대형사건의 부담감, 빨리 피의사건을 해결해야 한다는 과대한 공명심으로 D의 비자금을 관리하던 피의자들의 유혹에 넘어가 수사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경찰관으로서 성실히 수사업무에 종사하여 2013년 E ○○건설업자 성범죄사건, 2012년 현직 검사 뇌물수수 사건인 F 부장검사 사건과 ○○원대 다단계 사기 피의자 G 사건을 수사하여 범죄수익금 ○○원을 환수한 사실이 있으며,

본 건은 D의 비자금을 관리하던 피의자들을 검거하기 위하여 합정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실제적으로 단 1만원도 수수하지 않았고, 수사를 잘 처리하려는 공명심에서 범죄에 이른 점, 처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국가공무원법 제75조 및 제76조 제1항에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처분을 행할 때나 강임 휴직 또는 면직처분을 행할 때에는 그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는 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이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은 그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청인이 2013. 10. 18. 피소청인 관계자 경위 H에게 징계 등 처분사유서설명서 등을 처형 I의 거주지로 송부해 줄 것을 요구하여 피소청인은 2013. 10. 31. 징계 등 처분사유서 등을 등기우편으로 위 I의 거주지로 발송하였고, 이를 2013. 11. 4.(월)에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징계 등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인 2013. 12. 4.(수)까지 소청심사를 청구하여야 함에도, 2013. 12. 10.(수)에야 본 건 청구서가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어 소청 제기기간을 초과하였다.

한편, 소청절차규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소청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소청심사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기간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의 소청제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 없는 사유의 여부는 위원회가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소청제기기간 도과가 소청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소청인은 1심 판결(2013. 11. 29. ○○지방법원)이 있고 난 후에야 징계처분 사실을 인지하게 되어 소청제기기간이 도과하여 본 청구를 하게 되었다며 그 사유서를 제출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처분사유설명서 교부 방법과 관련하여, ‘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방법에 관하여는 다른 특별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는바, 이 처분사유 설명서가 이를 받을 당해 공무원이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짐으로써 교부되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69. 7. 29 선고 68누148 판결, 1982. 3. 23. 선고 81누348 판결)’고 판시하였고, 또한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도달이란 상대방이 그 내용을 현실적으로 양지할 필요까지는 없고 다만 양지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짐으로써 충분하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처가 원고의 주소지에서 원고에 대한 정부인사발령통지를 수령한 이상 비록 그때에 원고가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고 피고 역시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원고의 처가 위 통지서를 원고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폐기해 버렸다 하더라도 원고의 처가 위 통지서를 수령한 때에 그 내용을 양지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누4963 판결)’고 판시한 점, 본 건 징계 등 처분사유설명서 등은 소청인의 요청에 의해 소청인의 처형(I)의 거주지로 교부(등기우편)되었고, 설명 등기우편물이 송달될 당시 구속 상태에 있어 양지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더라도, 소청제기 기간이 도과하기 전인 2013. 11. 29.에 법원 판결에 의하여 출소하여 충분히 양지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소청제기기간 도과가 소청절차규정 제3조 제1항에 의한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결 정

따라서 이 사건은 소청심사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본안심사를 하지 않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89. 징계위원회 구성하자(견책→취소)

처분요지 : 2012년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 시 본인명의 채무 5건 등 총 48건, 순 누락금액 408,005,000원을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하고 변동 없음으로 불성실하게 신고하여 정부공직자 윤리위원회 심사결과 징계의결 요청된 비위로 견책 처분

소청이유 : 관련 지시에 따라 소명서를 제출하고 재산등록 재 신고를 했음에도 최초 재산등록 소명행위자 23명 중에서 소청인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견책에 처분한 것은 형평성을 위배한 것으로,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빼돌린 사실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징계절차 위반을 이유로 원 처분을 취소함

사 건 : 2013-131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13. 1. 29.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2012년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 시 본인 명의 채무 5건, 배우자 명의 예금 11건과 채무 14건, 모친 명의 토지 1건, 차녀 명의 예금 8건, 삼녀 명의 토지 6건과 건물 1건 및 채무 2건 등 총 48건, 순 누락금액 408,005,000원을 증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하고 변동 없음으로 불성실하게 신고하여,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결과 징계의결이 요청되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 제1항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등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2012. 7. 10. 재산등록 서류를 제출하여 소명한 바 있고, 2012. 9. 27.에도 소명서를 제출하였으며, 이미 보완신고 했던 것을 ○○지방경찰청의 청문윤리계에 가서 다시 2012. 12. 5. 재산고를 한 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이 관련 지시에 따라 소명서를 제출하고 재산등록 재산고를 했음에도 최초 재산등록 소명행위자 23명 중에서 소청인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견책에 처분한 것은 형평성을 위배한 것으로,

소청인이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빼돌린 사실이 없는 점, 은행 채무로 미신고 처리된 것은 소청인과 배우자의 채무 중 은행과 은행 간의 대체상황에서 상계 처리해야 함에도 2중으로 기재된 부채로써 2010년도에 보완신고를 한 사안에 해당하는 점, 2000. 3. 1. 경사 임용 이후 재산등록신고 시 보완신고나 소명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소청인의 생활근거지는 ○○시여서 가족과 떨어져 있어 재산신고에 어려움이 있었는바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고 깊이 반성하는 점,

○○경찰서 개서 요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으며 경찰청장 표창 등을 다수 수상한 경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본안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 사건 처분이 관계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직권으로 살펴보면,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6조 제1항은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징계등 심의 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인 경위 이상의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해당 경찰기관의 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소청인은 2013. 1. 22.경 경위 계급의 소청인을 징계하기 위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인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소청인과 동일 계급의 경위 B와 경위 C를 징계위원으로 위촉하였고, 위와 같이 부적법하게 구성된 경위 2명과 경감 3명 등 총 5명의 위원이 참여한 상태에서 위 보통징계위원회가 개최되어 2013. 1. 28. 소청인을 견책으로 의결하였는바, 이는 위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고, 결국 그러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피소청인의 이 사건 징계처분 역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4. 결 정

따라서 본안에 들어가 더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징계 절차 위반을 이유로 취소함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90.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자에 대한 징계(파면→취소)

처분요지 : 2010년 여름부터 2011년 봄까지 유사석유업자인 직무
관련자로부터 수사청탁 등 알선 대가로 총 7회에 걸쳐
1,400만원 상당 뇌물과 150만원 상당 향응을 수수한
비위로 파면 처분

소청이유 : 금품을 수수하였다 하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없는 자로
부터 대가성 없이 소극적으로 수수한 점, 20여년간
경찰청장 표창을 수상하는 등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의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 : 소청인에 대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국가공무원
법 제69조 규정에 의한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징계 등 처분을 한 것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절차상의 무효를 이유로 원 처분을
취소함

사 건 : 2013-712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지방경찰청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13. 9. 16. 소청인에게 한 파면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대에 근무 중인 자로서, ○○지방경찰청 ○○대 근무 당시, 2010. 6월 유사석유업자 B로부터 “유사석유판매 주유업자 약점을 잡고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려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을 수사하여 징역형을 보내 달라.”는 수사청탁을 받고,

2010년 여름 무렵, ○○시 ○○구 ○○동에 있는 ○○식당에서 유사석유업자 B로부터 사건청탁 및 수사비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수수하였고,

2010년 여름 무렵, ○○시 ○○구 ○○동에 있는 ○○주유소에서 사건청탁 및 수사비 명목으로 유사석유업자 C로부터 5만원권 주유상품권 20매 합계 100만원 상당을 제공받았으며,

2010년 여름 무렵, ○○시 ○○구 ○○동에 있는 ○○식당에서 유사석유업자 C, D로부터 식사 접대를 받고, 인근 ○○호텔 옆 건물 2층 상호불상 룸살롱에서 술과 향응을 제공받으면서 C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수수하였고,

2010년. 추석 무렵 ○○시 ○○구 ○○동에 있는 ○○대 앞 ○○방송국 건물 지하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유사석유업자 C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수수하는 등 직무관련자로부터 4회에 걸쳐 도합 1,4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였으며,

소청인은 2010년 가을 무렵 ○○시에 있는 ○○펜션에서 동료경찰관 E, F와 함께 유사석유업자 B와 그를 따르는 주유업자 10여명이 마련한 모임에 참석하여 수사청탁 알선에 대한 대가 등으로 5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고,

2010년 가을 무렵 ○○구 ○○동에 있는 ○○룸살롱에서 동료경찰관

E, F와 함께 유사석유업자 B를 만나 수사청탁 알선에 대한 명목으로 50만원 상당의 술과 향응을 제공받았으며,

2011년 봄 ○○군에 있는 ○○펜션에서 동료경찰관 E, F와 함께 유사석유업자 B와 그를 따르는 주유업자 10명이 마련한 모임에 참석하여 수사청탁 알선에 대한 대가 등으로 5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150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하며,

소청인은 21년간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경찰청장 표창 등을 수상한 점을 고려해 달라는 것이나, 금품·향응수수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제1호에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명기된 점을 감안하여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10. 6~7월경 동료경찰관 F, E로부터 주유소 사업으로 성공한 건설한 사업가라는 B를 소개 받았는데, 그 자리에서 B로부터 “주유소 업자들을 상대로 가짜 석유를 판다고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게 되었으며,

이후 첩보를 보고하고, ○○팀원들과 ○○시 ○○구 소재 ○○주유소 및 ○○시 ○○구 소재 ○○주유소 등 ○○과 ○○지역 주유소들에 대한 탐문 수사를 한 결과 첩보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하여 G·H·I를 공동 공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등으로 구속시키고 그 외 7명에 대해서도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사건이 모두 종료된 후에 B로부터 “식사 한번 하자”는 연락을 받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B가 “협박범을 잡아줘서 모두 안심하고 고마워한다. F와 E의 선배니 편하게 생각해라. 별거 아니니 받아라.”고 하면서 서류봉투를 건네서 이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새벽까지 함께 술을 마시다보니 만취하여 봉투에 얼마의 돈이 들어 있었는지 몰랐고, 며칠 후에야 봉투에 들어 있던 돈을 세어보니 400~500만원 정도가 들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며,

주유소를 운영하는 C로부터 주유상품권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세어보지 않고 지인들에게 나누어 주어 금액을 알지 못하고, 2010년 추석 무렵 C가 홍삼엑기스 제품 2개와 봉투가 들어 있는 쇼핑백 2개를 건네면서 하나는 동료인 F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였으나, F의 만류로 홍삼엑기스 1개만 받았고,

소청인은 사건관계자들이 유사석유를 취급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소청인이 금품을 수수하였다 하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없는 자로부터 대가성 없이 소극적으로 수수한 점을 감안하여 주기 바라며, 20여 년간 경찰청장 표창을 수상하는 등 성실히 근무해 온 점, 이 같은 비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청장 표창을 수상하는 등 20여 년간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피소청인은 소청인에 대하여서 2013. 6. 18.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공무원 범죄처분 결과가 통보되자, 2013. 9. 3.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요구하였고, 2013. 9. 12. ○○지방경찰청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징계 등 의결에 따라 2013. 9. 16. 본 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소청인에 대하여 2013. 5. 31.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어 2013. 8. 28. ○○지방법원 ○○지원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4,000,000원, 추징금 14,000,000원이 선고되었고, 소송당사자들이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3. 9. 5.에 형이 확정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69조(당연퇴직) 제1호 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 제33조(결격사유)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퇴직한다고 정해져 있고, 소청인은 같은 법 제33조 제4호에 해당하여 위 형이 확정된 2013. 9. 5.에 경찰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본 건은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하여 징계처분 등을 한 것으로 그 절차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사유로 봄이 타당하다.

4. 결 정

본 건은 소청인에 대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국가공무원법 제69조 규정에 의한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징계 등 처분을 한 것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소청 심사위원회의 결정) 제5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절차상의 무효를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부 록

- ▶ 소청심사위원회 연혁
- ▶ 관제법령
- ▶ 소청심사 현황분석
- ▶ 소청심사 통계
- ▶ 우리 위원회 발간물 현황

□ 소청심사위원회 연혁

- 1963. 06. 20. 내각사무처에 소청심사위원회 신설
(국가공무원법, 법률 제1325호 1963. 04. 17. 제정)
사무보좌기관으로 소청과를 둠
- ※ 위원장 포함 위원 7인 : 위원장(차관급), 위원(별정1급)
- 1966. 05. 07. 소청과를 행정실로 개편, 3계를 둠
- 1967. 04. 08. 위원장을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조정
- 1972. 05. 16. 위원장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
- 1973. 02. 05. 위원장 포함 5인 이상 7인 이내로 위원회
구성·운영
- 1978. 12. 05. 비상임위원제 도입
- 1981. 06. 01. 중앙고충심사위원회 기능 추가
- 1991. 08. 24. 행정실을 행정과·심사과로 개편
- 1999. 05. 24. 행정과·심사과를 행정과로 통합
- 2004. 06. 14. 중앙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로 소속 변경
- 2007. 03. 01. 비상임위원 2인 위촉, 총 7인으로 구성·운영
- 2008. 02. 29.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로 소속 변경
- 2011. 04. 11. 비상임위원 2인 추가위촉, 총 9인으로 구성·운영
- 2013. 03. 23.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로 소속 변경
- 2013. 09. 26. 비상임위원 임기 변경(1년 → 2년)

□ 관계법령

1.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2014. 01. 07. 법률 제12202호)
- 소청절차규정(2013. 03. 23. 대통령령 제24425호)

2. 관련법령

- 행정심판법(2014. 05. 28. 법률 제12718호)
- 행정소송법(2014. 05. 20. 법률 제12596호)

□ 소청심사 현황분석

1. 소청처리 현황(총괄)

- 최근 5년간(2009년~2013년) 소청심사 처리건수는 평균 927건이며 심사결과 인용률은 평균 38.6%임
- 2013년 처리건수는 967건으로 5년 평균대비 4.3% 증가하였고, 인용률은 39.0%임

2. 소청사건의 제기 현황

- 징계시효 연장, 상훈감경 제한 및 징계부가금 신설 등 공무원 비위에 대한 징계기준이 더욱 강화되고,
 - 특히 경찰공무원의 경우, 비리 유착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사정 활동을 지속함에 따라 2009년부터 징계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사건이 늘어나고 있음
- ※ '09년 673건 → '10년 879건 → '12년 826건 → '13년 785건
- 공무원의 권리구제 의식이 높아져 수사경과해제 등 징계 외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이의 제기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
- ※ '10년 73건 → '11년 119건 → '12년 191건 → '13년 182건

□ 소청심사 통계

1. 연도별 현황

단위 : 건(%)

구 분	접 수 수	처 리 수	심 사 결 과			
			인 용			기각· 각하 등 불인용
			소 계	취소	변 경 (무효포함)	
2009	949	752	312	66	246	440
2010	878	952	367	40	327	585
2011	1,166	946	344	22	322	602
2012	940	1,017	387	24	363	630
2013	835	967	376	45	331	591
평균 (분포 %)	954	927 (100)	357 (38,5)	39 (4,3)	318 (34,3)	569 (61,5)

2. 비위유형별 현황

단위 : 건(%)

연 도	계	품위손 상	업무상 과실· 태만	금품 수수	감독 태만	기 타 비 위	기 타 불이익 처분	징계 부가금
2009	752	285	177	155	39	17	79	-
2010	952	388	259	131	68	33	70	3
2011	946	319	218	125	146	19	90	29
2012	1,017	371	222	157	41	35	109	82
2013	967	411	199	118	39	18	111	71
평균 (분포 %)	927 (100)	355 (38,3)	215 (23,2)	137 (14,8)	67 (7,2)	24 (2,6)	92 (9,9)	37 (4,0)

※ 2010. 3. 22. 징계부가금 제도 시행

3. 계급별 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3급 이상	4급 (총경)	5급 (경정)	6급 (경감· 경위)	7급 (경사)	8급 (경장)	9급 (순경)	기능직 · 기타
2009	752	7	13	52	257	304	84	19	16
2010	952	13	25	52	330	338	123	47	24
2011	946	14	22	47	334	324	143	46	16
2012	1,017	13	29	64	389	351	97	44	30
2013	967	8	26	63	372	332	79	46	41
평균 (분포%)	927 (100)	11 (1.2)	23 (2.5)	56 (6.0)	336 (36.3)	330 (35.6)	105 (11.4)	40 (4.4)	25 (2.7)

4. 공무원 유형별 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경 찰 공무원	교 정 공무원	세 무 공무원	기타 일반 행정공무원
2009	752	585	56	19	92
2010	952	733	41	28	150
2011	946	756	30	36	124
2012	1,017	791	19	32	175
2013	967	735	26	29	177
평균 (분포%)	927 (100)	720 (77.7)	34 (3.7)	29 (3.1)	144 (15.5)

5. 처분종류별 현황

단위 : 건(%)

연도별	구분 계	징계처분						기타 불이익	징계 부가금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2009	752	106	161	-	116	131	159	79	-
2010	952	98	176	5	129	169	302	70	3
2011	946	77	106	31	121	193	299	90	29
2012	1,017	84	133	43	130	187	249	109	82
2013	967	66	118	43	121	195	242	111	71
평균 (분포%)	927 (100)	86 (9,3)	139 (15,0)	24 (2,6)	123 (13,3)	175 (18,9)	250 (27,0)	92 (9,9)	37 (4,0)

※ 2009. 4. 1. 국가공무원 강등제도 시행

※ 2010. 3. 22. 경찰공무원 강등제도 시행

□ 우리 위원회 발간물 현황

1. 결정문집

접수년도	처리건수	결정문집 게재건수	결정문집	발간년도	비 고
1963	146	102	제1집	1964	1964년도 처리건수 중 39건은 제1집에 수록
1964	211	149	제2집	1965	
1965	275	151	제3집	1966	
1966	447	221	제4집	1967	
1967	378	256	제5집	1968	
1968	396	212	제6집	1969	
1969	464	162	제7집	1970	
1970	623	242	제8집	1971	
1971	472	169	제9집	1972	
1972	788	188	제10집	1973	1973년도와 1974년도 처리사건은 1975년도에 병합 발행
1973	523	89	제11집	1974	
1974	352	79	제11집	1975	
1975	562	173	제12집	1976	
1976	935	186	제13집	1977	
1977	725	175	제14집	1978	
1978	446	214	제15집	1979	
1979	407	188	제16집	1980	
1980	614	202	제17집	1981	
1981	356	156	제18집	1982	
1982	441	122	제19집	1983	
1983	414	128	제20집	1984	
1984	371	117	제21집	1985	
1985	340	105	제22집	1986	
1986	314	100	제23집	1987	
1987	254	115	제24집	1988	
1988	169	110	제25집	1989	
1989	786	106	제26집	1990	
1990	1,143	84	제27집	1991	
1991	425	80	제28집	1992	
1992	408	95	제29집	1993	
1993	663	90	제30집	1994	
1994	1,162	84	제31집	1995	

접수년도	처리건수	결정문집 게재건수	결정문집	발간년도	비 고
1995	799	83	제32집	1996	
1996	988	80	제33집	1997	
1997	1,158	75	제34집	1998	
1998	1,186	93	제35집	1999	
1999	1,251	76	제36집	2000	
2000	631	80	제37집	2001	
2001	498	80	제38집	2002	
2002	519	78	제39집	2003	
2003	1,146	74	제40집	2004	
2004	923	121	제41집	2006	
2005	694	118	제42집	2006	
2006	505	127	제43집	2007	
2007	364	127	제44집	2008	
2008	648	118	제45집	2009	
2009	752	107	제46집	2010	
2010	952	90	제47집	2011	
2011	946	90	제48집	2012	
2012	1,017	90	제49집	2013	
2013	967	90	제50집	2014	

2. 결정요지집

- 제1권(1963~1982)
 - 1963~1982년도 사이에 처리된 사건 중 주요사례
- 제2권(1983~1986)
 - 유형별 결정례의 발췌
 - 참고하고자 하는 결정문의 색인

3. 기타

- 소청사무편람
 - 소청 및 고충에 관한 규정 등
 - 관계법령
 - 우리 위원회 행정회의의 결정 사항
- 공무원 인사소청제도 결정 사항(1984년)
- 소청 및 고충사무처리 요령(1986년)
- 소청 및 고충심사 업무편람(1993년)
- 소청관계법령(추록 가제식)(1998년)
- 소청 및 고충심사 업무편람(1999년)
- 1998~1999 소청사건 중심 행정소송 결과 분석(2000년)
- 소청 및 고충심사 업무편람(2003년)
- 소청관련 법령집(2003년)
- 소청심사 실태분석(2003년)
- 선진국 소청심사제도 정책연수 보고서(2004년)
- 소청심사 참고사례 정리(2005년)

- 소청 및 고충심사 진행요령(2005년)
- 소청 및 고충심사 업무편람(2006년)
- 소청관련 법령집(2006년)
- 오스트리아와 영국의 소청심사제도 정책연수 보고서(2006년)
- 소청 및 고충심사 업무편람(2007년)
- 소청관련 법령집(2008년)
- 소청 및 고충심사 업무편람(2010년)
- 소청관련 법령집(2010년)
- 소청심사 50년(2013년)
- 소청관련 법령집(2013년)

결정 참가위원

이 사례집에 수록된 사건의 심사·결정에 참여한 위원은 다음과 같다.

위 원 장	박 찬 우	(2011. 05. 18. ~ 2013. 03. 13.)
	김 상 인	(2013. 04. 18. ~ 현재)
위 원	박 성 권	(2011. 02. 28. ~ 2013. 04. 25.)
	김 윤 동	(2011. 03. 25. ~ 2013. 01. 29.)
	오 형 국	(2011. 12. 21. ~ 2013. 04. 22.)
	채 한 철	(2012. 10. 31. ~ 2013. 05. 30.)
	김 형 선	(2013. 04. 23. ~ 2013. 12. 30.)
	이 병 록	(2013. 04. 23. ~ 2014. 03. 26.)
	박 경 배	(2013. 04. 26. ~ 2014. 02. 27.)
	조 길 형	(2013. 10. 01. - 2014. 01. 26.)
비상임위원	강 정 혜	(2011. 04. 11. ~ 2013. 04. 10.)
	함 정 민	(2011. 07. 06. ~ 2013. 07. 05.)
	한 명 수	(2012. 02. 15. ~ 2014. 02. 14.)
	임 수 식	(2012. 02. 15. ~ 2014. 02. 14.)
	윤 우 일	(2013. 05. 20. ~ 현재)
	태 지 영	(2013. 10. 04. ~ 현재)

소청결정사례집(제50집)

발 행 일 2014년 6월

발 행 처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

TEL 02) 3668 - 6748, 6763

FAX 02) 3668 - 6767

홈페이지 : <http://sochung.mospa.go.kr>

※ 이 책자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로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